

정책보고서 2014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가능성 모색 및 방안연구

이철선·김영란·황주희·김기태·김은정·한동우·권소일

【책임연구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협동조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친서민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은정 부경대학교 교수

한동우 강남대학교 교수

권소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가 의뢰한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분야
참여가능성 모색 및 방안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최근 3년 동안 한국에 나타난 신드롬을 논한다면 협동조합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거의 2년이 안된 기간 동안 약 5,500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주부들, 그리고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기업모델을 통해 창업을 시도하거나 성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자발적인 움직임에 부응하듯 국회에서는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그 동안 범부처별로 실시되었던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5대 조직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제정을 여야 상관없이 서두르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고령화와 소득양극화로 인한 한국경제의 일자리와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복지예산의 증가이전에, 기존에 투입해 왔던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그 첫 번째 취지이고, 수출중심형 경제체제 하에서 새로운 창조산업 발육을 통해 생성된 일자리가 청년 등 일부 계층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시민기반의 복지일자리인 경력단절여성과 은퇴자 등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등 우리사회에서 고용불평등이 존재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형적인 내수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움직임 속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협동조합들 중에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가 180여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촉발하게 한 주요 원인인 자생적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에 본원의 연구진은 기획재정부과 보건복지부의 의례를 받아 사회적협동조합의 확산 미흡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5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보다는 범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들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와 사회적협동조합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상의 역량과 정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시 어떤 사업과 우선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생명주기별로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철선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황주희 부연구위원, 권소일 연구원 등 본원 연구진 3인과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은정 부경대학교 교수, 한동우 강남대학교 교수 등 총 7인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비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이 저자들의 개인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복지창출 및 사회통합 움직임,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기를 기원하면서 발간사를 마치고자 한다.

2014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관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 내용	4
제3절 연구 방법	6
제2장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과 문제점	9·2 1
제1절 전체 현황	2
제2절 7대 사회서비스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	6·2
제3절 현 사회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협동조합의 보완관계	2·6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의 확산 미흡 원인	7·6
제1절 개관	9
제2절 협동조합기본법의 제도적 측면	1·7
제3절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 측면	5·7
제4절 협동조합들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 진입장벽	1·8
제4장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5·8
제1절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을 위한 방법론	7·8
제2절 사회서비스 7대 기능별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9·9
제3절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특징	6·11
제5장 협동조합의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진출가능성 모색	3·2·1
제1절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5
제2절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11

제3절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451
제4절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761
제5절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91
제6절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78
제7절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51
제6장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참여를 위한 추진 과제	3·0 2
제1절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Framework	502
제2절 기업 생명주기별 세부 지원방안	82

<표 1-1>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사회적경제 모델	3	1
<표 2-1>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설문지 취합 현황	1	2
<표 2-2>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부처별 현황	2	2
<표 2-3>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연령대별 현황	2	2
<표 2-4>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	3	2
<표 2-5>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2013년 사업예산 및 수혜자 규모	3	2
<표 2-6>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별 사업 수	4	2
<표 2-7>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체 비용 지급 방식 및 공무원 실사 현황	5	2
<표 2-8>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근로자 처우 현황	5	2
<표 2-9>	복지부 대비 타 부처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6	2
<표 2-10>	소득기준 유무별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7	2
<표 2-11>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8	2
<표 2-12>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9	2
<표 2-13>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0	3
<표 2-14>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1	3
<표 2-15>	복지부 대비 타 부처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2	3
<표 2-16>	소득기준 유무별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3	3
<표 2-17>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4	3
<표 2-18>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5	3
<표 2-19>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6	3
<표 2-20>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7	3
<표 2-21>	복지부 대비 타 부처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8	3
<표 2-22>	소득기준 유무별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9	3
<표 2-23>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0	4
<표 2-24>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1	4
<표 2-25>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2	4
<표 2-26>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3	4
<표 2-27>	복지부 대비 타 부처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4	4
<표 2-28>	소득기준 유무별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5	4
<표 2-29>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4사업현황	6	4
<표 2-30>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7	4
<표 2-31>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8	4
<표 2-32>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9	4
<표 2-33>	복지부 대비 타 부처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0	5

<표 2-34>	소득기준 유무별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1	5
<표 2-35>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현황	2	5
<표 2-36>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2	5
<표 2-37>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3	5
<표 2-38>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3	5
<표 2-39>	복지부 대비 타 부처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4	5
<표 2-40>	소득기준 유무별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5	5
<표 2-41>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5	5
<표 2-42>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6	5
<표 2-43>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6	5
<표 2-44>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7	5
<표 2-45>	복지부 대비 타 부처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8	5
<표 2-46>	소득기준 유무별 시설이용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9	5
<표 2-47>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9	5
<표 2-48>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0	6
<표 2-49>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1	6
<표 2-50>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1	6
<표 2-51>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3	6
<표 2-52>	주요국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 비교	3	6
<표 2-53>	주요국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임금과 일반경제 종사자의 임금 비교	4	6
<표 2-54>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5	6
<표 3-1>	부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현황(2014.1기준)	9	6
<표 3-2>	기존 사업자의 협동조합 전환에 관한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내용	1	7
<표 3-3>	기존 사업자의 업력이전에 관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내용	2	7
<표 3-4>	기존 사업자의 업력이전에 관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내용	3	7
<표 3-5>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내용	4	7
<표 3-6>	사회적협동조합 소속부처 지정과 관련된 범부처 인가담당자의 의견	6	7
<표 3-7>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접수 후 인가율	7	7
<표 3-8>	사회적협동조합 통계누락과 관련된 범부처 인가담당자의 의견	7	7
<표 3-9>	사회적협동조합 개념과 관련된 범부처 인가담당자의 의견	8	7
<표 3-10>	부처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기준 충돌 시, 대응방안에 대한 인가담당자 의견	9	7
<표 3-1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주체 변경에 관한 범부처 인가담당자 의견	0	8
<표 3-1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간담회 개관	1	8
<표 3-13>	협동조합 운영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상의 어려움	2	8

<표 3-14>	협동조합 운영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 및 사업운상의 어려움	3	8
<표 4-1>	협동조합 사례 분석 대상	9	8
<표 4-2>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6	1 1
<표 4-3>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주력시장	7	1 1
<표 4-4>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9	1 1
<표 4-5>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도입기 성공요인과 투자분야	0	2 1
<표 4-6>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성장기 성공요인과 투자분야	1	2 1
<표 5-1>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6	2 1
<표 5-2>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소관부처별 수혜자 1인당 예산 현황(2013년 기준)	7	2 1
<표 5-3>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년 기준)	8	2 1
<표 5-4>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의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2013년 기준)	9	2 1
<표 5-5>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의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현황(2013년 기준)	1	3 1
<표 5-6>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3	3 1
<표 5-7>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4	3 1
<표 5-8>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5	3 1
<표 5-9>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6	3 1
<표 5-10>	돌봄 부문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시장 모색을 위한 지원방향	0	4 1
<표 5-11>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2	4 1
<표 5-12>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소관부처별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3	4 1
<표 5-13>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년 기준)	4	4 1
<표 5-14>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의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2013년 기준)	5	4 1
<표 5-15>	상담 부문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현황(2013년 기준)	6	4 1
<표 5-16>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7	4 1
<표 5-17>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8	4 1
<표 5-18>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9	4 1
<표 5-19>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9	4 1
<표 5-20>	상담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부문과 도구	3	5 1
<표 5-21>	건강관리서비스 1인당 연간예산(2013년 기준)	5	5 1
<표 5-22>	주관 부처별 건강관리서비스 분류(2013년 기준)	6	5 1
<표 5-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부에 따른 서비스 분류(2013년 기준)	7	5 1
<표 5-24>	소득기준 여부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분류(2013년 기준)	8	5 1
<표 5-25>	기관 선정방식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분류(2013년 기준)	9	5 1
<표 5-26>	시장진입가능성과 표준화 여부에 따른 구분(2013년 기준)	0	6 1
<표 5-27>	개방적-비표준화 건강관리서비스(전체 복지부 사업)(2013년 기준)	1	6 1

<표 5-28>	제한적-표준적 건강관리서비스 (2013년 기준)	2·6·1
<표 5-29>	건강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부문과 도구	6·6·1
<표 5-30>	사회참여지원 부문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8·6·1
<표 5-31>	사회참여지원 부문 소관부처별 수혜자 1인당 예산현황 (2013년 기준)	9·6·1
<표 5-32>	사회참여지원 부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13년 기준)	0·7·1
<표 5-33>	사회참여지원 부문 소득기준별 서비스현황 (2013년 기준)	1·7·1
<표 5-34>	사회참여지원 서비스 부문 사업체 일반 현황	2·7·1
<표 5-35>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3·7·1
<표 5-36>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4·7·1
<표 5-37>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5·7·1
<표 5-38>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5·7·1
<표 5-39>	사회참여지원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도구	8·7·1
<표 5-40>	문화예술 부문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9·7·1
<표 5-41>	문화예술 부문 부처별 사업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0·8·1
<표 5-42>	문화예술 부문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년 기준)	0·8·1
<표 5-43>	문화예술 부문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2013년 기준)	1·8·1
<표 5-44>	문화예술 부문 사업선정방식 현황(2013년 기준)	1·8·1
<표 5-45>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2·8·1
<표 5-46>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3·8·1
<표 5-47>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3·8·1
<표 5-48>	문화예술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방향 설정	6·8·1
<표 5-49>	학습지원 부문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7·8·1
<표 5-50>	학습지원 부문 부처별 사업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8·8·1
<표 5-51>	학습지원 부문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년 기준)	8·8·1
<표 5-52>	학습지원 부문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2013년 기준)	9·8·1
<표 5-53>	학습지원 부문 사업선정방식 현황(2013년 기준)	9·8·1
<표 5-54>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0·9·1
<표 5-55>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1·9·1
<표 5-56>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1·9·1
<표 5-57>	학습지원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방향 설정	4·9·1
<표 5-58>	시설이용 부문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5·9·1
<표 5-59>	시설이용 부문 부처별 사업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6·9·1
<표 5-60>	시설이용 부문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년 기준)	6·9·1
<표 5-61>	시설이용 부문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2013년 기준)	7·9·1

<표 5-62>	시설이용 부문 사업선정방식 현황(2013년 기준)	7·9·1
<표 5-63>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메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8·9·1
<표 5-64>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9·9·1
<표 5-65>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9·9·1
<표 5-66>	시설이용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방향 설정	2·0·2
<표 6-1>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 육성정책 비교	5·0·2
<표 6-2>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생명 주기별 지원방안	7·0·2
<표 6-3>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	9·0·2
<표 6-4>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구매시장 우선권 부여 정책	1·1·2
<표 6-5>	협동조합들의 정부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1·1·2
<표 6-6>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 사업의 사업장 지원 사항	2·1·2
<표 6-7>	시설장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들이 지원 받은 상황(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2·1·2
<표 6-8>	이탈리아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자산이전 세금면제 조항	2·1·2
<표 6-9>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건비 및 인건비 지원 사항	3·1·2
<표 6-10>	인건비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들이 지원받은 상황(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4·1·2
<표 6-11>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 주의 비영리 금융체계 및 지원 방안	4·1·2
<표 6-12>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 사업의 경영컨설팅 지원	5·1·2
<표 6-13>	민간자발형 협동조합들의 성공요인(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5·1·2
<표 6-14>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적협동조합에 컨설팅 지원 정책	6·1·2
<표 6-15>	협동조합 역량과 사회서비스 유형별 결합에 의한 1순위 주력 사회서비스 사업	8·1·2
<표 6-16>	신생 협동조합들의 기존사업 지식(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9·1·2
<표 6-17>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대상	0·2·2
<표 6-18>	협동조합 역량과 사회서비스 유형별 결합에 의한 2순위 주력 사회서비스 사업	0·2·2
<표 6-19>	신생협동조합들의 인력조달 현황(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2·2·2
[그림 1-1]	사회서비스 사업체(28.7만개) 중 개인사업체 현황	3·1
[그림 1-2]	연구방법론	7·1
[그림 3-1]	협동조합 인가현황(2014.1기준)	9·6
[그림 3-2]	사회적협동조합 확산 미흡 문제점 파악을 위한 방법론	0·7
[그림 3-3]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	5·7
[그림 3-4]	FGI 관련 주요 질문	5·7
[그림 4-1]	제품시장 Grid Extension Model과 지원방식	8·8
[그림 4-2]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도출을 위한 2×2×2 분석표	9·8
[그림 4-3]	돌봄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0·9
[그림 4-4]	돌봄 부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1·9

[그림 4-5]	돌봄 부문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2	9	
[그림 4-6]	돌봄 부문 서대문부모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3	9	
[그림 4-7]	돌봄 부문 협동조합 동지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3	9	
[그림 4-8]	상당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4	9	
[그림 4-9]	상당 부문 빛뜰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5	9	
[그림 4-10]	상당 부문 토닥토닥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6	9	
[그림 4-11]	상당 부문 영립중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6	9	
[그림 4-12]	건강관리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7	9	
[그림 4-13]	건강관리 부문 스포츠 제이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8	9	
[그림 4-14]	건강관리 부문 체육도장업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8	9	
[그림 4-15]	사회참여지원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9	9	
[그림 4-16]	사회참여지원 부문 주거복지협동조합 가온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0	0	1
[그림 4-17]	사회참여지원 부문 잉쿨 영어교육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1	0	1
[그림 4-18]	사회참여지원 부문 드림인터내셔널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2	0	1
[그림 4-19]	사회참여지원 부문 연리지 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3	0	1
[그림 4-20]	사회참여지원 부문 협동조합 온리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4	0	1
[그림 4-21]	사회참여지원 부문 더블어락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4	0	1
[그림 4-22]	문화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5	0	1
[그림 4-23]	문화 부문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페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6	0	1
[그림 4-24]	문화 부문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7	0	1
[그림 4-26]	학습지원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8	0	1
[그림 4-27]	학습지원 부문 협동조합 아름다운수학교실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9	0	1
[그림 4-28]	학습지원 부문 협동조합 다문화 너머서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0	1	1
[그림 4-29]	학습지원 부문 수과학교육놀이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1	1	1
[그림 4-30]	시설이용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2	1	1
[그림 4-31]	시설이용 부문 협동조합 모두들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3	1	1
[그림 4-32]	시설이용 부문 협동조합 마을닷살림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4	1	1
[그림 4-33]	시설이용 부문 동락점빵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5	1	1
[그림 5-1]	돌봄 부문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2	3	1
[그림 5-2]	돌봄 부문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 순위 결정과 기회비용 절감	7	3	1
[그림 5-3]	상당부문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7	4	1
[그림 5-4]	상당부문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 순위 결정	0	5	1
[그림 5-5]	건강관리서비스 세분화 매트릭스	0	6	1
[그림 5-6]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협동조합의 시장진입 시 고려사항	3	6	1

[그림 5-7]	사회참여 지원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3	7	1
[그림 5-8]	사회참여 지원부문 사회서비스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 순위 결정	7	7	1
[그림 5-8]	문화예술부문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2	8	1
[그림 5-9]	문화예술부문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 순위 결정	4	8	1
[그림 5-10]	학습지원부문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0	9	1
[그림 5-11]	학습지원부문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 순위 결정	2	9	1
[그림 5-12]	시설이용부문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8	9	1
[그림 5-13]	시설이용부문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 순위 결정	0	0	2
[그림 6-1]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들의 성장단계와 특성	6	0	2

1. 연구의 개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13개월 동안 3,597개의 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3.4%(122개)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은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체들로 인해 고용창출과 종사자 처우에 관한 정책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은 사회서비스 전달기관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국가 복지재정의 효율화와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 복지사각 지대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4가지 세부 연구 내용과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그 첫째는 현 사회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협동조합의 보완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현 99개 정부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지침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별 특성과 사업 운영방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부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확산 미흡에 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문헌조사와 더불어 범부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관련자 및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셋째는 협동조합들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시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우수 협동조합 사례 30여개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역량을 분석한 후, 앞서 수집한 사업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시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정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사업 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앞서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생명주기와 협동조합유형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안을 구축한 후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현황을 벤치마킹하는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현황과 문제점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기준,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은 돌봄, 상담, 건강관리, 사회참여지원, 문화예술, 학습지원, 시설이용 등 7개 부문에서 총 99개가 운영 중이며 예산은 총 7조9,165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수혜자는 약 1천 1백만 명으로 파악된다. 그 중 돌봄부문이 총예산의 85.0%를 차지하면서 25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부처별로는 복지부가 50개로 가장 많고, 여가부 15개, 문화부 10개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이 36개로 가장 많고, 전연령 대상이 27개, 65세 이상이 15개이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서는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이 48개였다.

이러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업체 규모가 소규모라는 점이다. 2013년 기준 총 사업체는 약 101,363개이나 설문에 응답한 77개 사업 중 종사자 규모가 평균 10인 미만인 경우가 57개에 달했다. 둘째는 기관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설문에 응답한 79개 사업 중 지자체 실사가 존재하는 경우는 53개였으나, 문제발생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는 15개에 불과하였다. 셋째는 근로자의 처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총 근로자 수는 71.6만 명에 이르지만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5개였으며 7대 법정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한 경우는 7개였다.

그러나 해외사례를 고려 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 중 첫째는 기업모델상 협동조합은 어느 정도 규모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설립조건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그리고 연대 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의 사회적협동조합들의 규모는 이탈리아가 평균 22.8명, 프랑스가 평균 24.3명, 스웨덴은 평균 17.7명이었다. 둘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개인배당이 금지되어 있어 이윤발생 시, 임금에 대한 우선 투자와 연합회 차원의 단체협약 등 근로자 처우개선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의 사회적협동조합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일반근로자 대비 82.6~94.0%에 이른다. 셋째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관리측면에서 자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의 협동조합들은 보통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축하는 데 이 연합회가 지역의 실시간 정보수집을 통해 자체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실례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소속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확산 미흡 원인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첫째, 유사목적의 사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업력이전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2조에는 유사목적 기관들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본법 발효이후 2년 안에 구성원의 2/3 동의 시 전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업력이전 내용이 행정지침인 기재부의 협동조합 업무지침에만 존재해 각 부처 인가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인가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둘째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 관련 미개정으로 전환 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과 관련된 법인세법 78조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며, 청산 시, 출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기존 주주·사원·출자자에게 부여하는 의제배당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셋째는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전환대상과 구성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무한책임회사들은 일반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며, 주식회사 등 유한책임회사와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전원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과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 사업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가 담당자들이 주무부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사업 비중 중 40%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타 부처 공무원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문제발생 시, 인가요청 협동조합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타 부처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있었다. 둘째는 인가 담당공무원의 지식부족으로 인가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인가업무가 부업무인 경우가 많았으며, 순환보직자의 경우 협동조합 교육과 자료 부재로 인가과정이 지연되는 반면에 고용부 등 인가 요청이 많은 부처에서는 업무과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각 부처 인가 담당자들은 신청이후 서류 미접수상황에서 인가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인가율에 관한 통계만 높아지는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실제로 기재부에서 발표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율은 78.7%이지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접수되어 처리된 인가율은 45.5%에 불과하였다. 셋째는 인가 시, 협동조합기본법보다는 자부처의 조직문화와 관련법의 사업지침에 우선하여 인가를 처리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각 부처 담당 공무원들은 인가업무를 기재부에서 직접 담당하거나, 중앙부처 산하 지방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본장에서는 협동조합의 발전단계별 핵심역량 파악을 위해 기재부 및 지방자치체가 선정한 사회서비스 참여 24개 협동조합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선 24개 협동조합은 정부지원형과 민간자발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정부지원형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의해 인큐베이팅된 협동조합들로써 7개였으며, 17개 민간자발형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로써 일부는 마을기업 등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둘째로 정부지원형의 경우,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주력해옴으로써 주요고객이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었고, 민간지원형은 부모, 강사, 청년 등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보육, 일자리 등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목적임으로 지역주민 등 취약계층 이외 국민들이 주 고객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들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도입기에서 정부지원형은 일자리지원 사업에 의한 인건비 절감이, 민간자발형은 시설장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지원이 주요 경쟁력이었다. 정부지원형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의한 인큐베이팅과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비용 우위 및 사업리스크 감소를 달성하고 있었고, 민간자발형은 사업장 마련시, 지역주민과 조합원, 지자체의 지원이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었다. 둘째로 성장기에서 정부지원형은 재가돌봄에서 시설돌봄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력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공공조달시장으로의 시장확대가 다수였다. 반면에 민간자발형은 어린이집에서 부모심리 상담을 하거나, 두부공장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는 등 거점시설에 지역 사회자본들을 연계하는 제품개발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결국, 정부지원형은 기존에 사회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습득된 인력의 서비스 전문성이 장점인 반면,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등 제품 R&D 능력이 부족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민간자발형은 시장화가 가능한 이종합종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일부는 시장화에 성공하고 있었으나 지역거점 중심의 사업 추진형식으로 인해 초기 시설장 확보가 큰 장벽이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참여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차별적 시장전략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5. 협동조합의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진출 가능성 모색

본장에서는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들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사업 참여 가능성 모색을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7대 부문 99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특성과 협동조합의 역량을 연계하여 1·2차 진입시장을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우선, 돌봄, 상담, 건강관리, 사회참여지원, 문화예술, 학습지원, 시설이용 각 부문 사업들의 연간 사업예산과 1인당 사업예산 배정액, 복지부의 사업추진가능성, 서비스표준화, 소득기준여부, 사업체 지정방식을 고려한 사업 참여가능성 등 시장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2단계로 시장 참여가능성 정도(개방적-제한적)와 서비스표준화정도(표준화-비표준화)를 고려한 2×2 Matrix에 적용하여 각 부문 사업들을 개방적-표준화, 개방적-비표준화, 제한적-표준화, 제한적-비표준화로 분류 후 각 사업군의 사업예산과 1인당 연간예산액, 그리고 앞서 분석된 협동조합 역량을 연계하여 협동조합 유형별로 1차 진입시장과 2차 진입시장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사회서비스참여 협동조합들의 유형에 따라 선정된 1차 시장진입과 2차 시장 진입 시, 필요한 세부 지원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차 진입시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지원형의 경우 돌봄부문에서는 산모신생아돌봄 등 개방적-표준화 사업군 10개(9,691억 원)가, 사회참여지원 부문에서는 자활근로 등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7개(3,612억 원)가, 학습지원 부문에서는 개방적-비표준화 2개(406억 원)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민간자발형의 경우, 돌봄부문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12개(5조 7586억 원)가, 상담부문에서는 아동정서발달지원 등 개방적 비표준화 사업군 12개(964억 원)가, 건강지원에서는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6개(1,480억 원)가,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개방적-표준화사업군 4개(439억 원)가, 시설이용에서는 제한적-표준화사업군 3개(630억 원)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차 진입시장에서는 정부지원형의 경우 돌봄부문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등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12개(5조 7,585억 원)가, 사회참여지원 부문에서는 미혼모 자립지원 등 개방적-표준화 사업군 4개(1,890억 원)가, 학습지원 부문에서는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3개(61억 원)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민간자발형의 경우, 돌봄부문에서는 10대 방과후 돌봄 등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 2개(25억 원)가, 상담부문에서

는 Wee프로젝트 등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7개(1,336억 원)가, 건강지원에서는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 9개(477억 원)가,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제한적-표준화사업군 2개(87억 원), 시설이용에서는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 3개(94억 원)가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진입시장을 1·2차 시장으로 구분한 이유는 사회서비스참여 협동조합들의 성장단계별 전략 사업군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표〉 협동조합 역량과 사회서비스 유형별 결합에 의한 1순위 주력 사회서비스 사업
(단위: 백만 원)

유형	사회서비스문	1차 목표시장	사업명	사업예산('13)
정부 지원형	돌봄	개방적-표준화 10개	-산모·신생아도우미 (복지부) -방과후돌봄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 (복지부) -다문화가족정착맞양육지원 (여가부) -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 (여가부) -가사간병서비스 (복지부) -장애대학생도우미 (교육부) -노인돌봄서비스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부) -지역정신보건사업 (복지부)	969,140
	사회참여	제한적-표준화 7개	-자활근로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복지부) -탈북민 원스톱취업지원 (통일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부) -출소자 갱생지원 (법무부) -노인일자리 (복지부)	361,236
	학습지원	개방적-비표준화 2개	-아동인지서비스 (복지부_지투사업)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복지부_지투사업)	40,689
민간 자발형	돌봄	제한적-표준화 12개	-영유아보육료지원 (복지부) -유아학비·보육료지원 (복지부) -엄마품은종일돌봄강사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시간제 (여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복지부)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복지부)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 (농림부)	5,758,583

유형	사회서비스문	1차 목표시장	사업명	사업예산('13)
			-취약농가인력지원 (농림부) -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부) -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 (여가부)	
	상담	개방적-비표준화 12개	-이동정서발달지원 (복지부_지투사업) -이동청소년심리지원 (복지부_지투사업) -인터넷과몰입치유 (복지부_지투사업) -이동청소년비전형성 (복지부_지투사업) -부모학교 (복지부_지투사업) -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 (복지부_지투사업) -고령자소외예방 (복지부_지투사업) -기타이동정서 (복지부_지투사업) -정서, 학습, 리더십 (복지부_지투사업) -아동체험 (복지부_지투사업) -근로자정서지원 (복지부_지투사업) -사례관리 (복지부_지투사업)	96,424
	건강지원	제한적-표준화 6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문체부) -신나는주말체육학교 (문체부, 교육부) -스포츠마우처 (문체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148,036
	문화·예술	개방적-표준화 4개	-예술강사지원 (문체부) -예술꽃씨앗학교 (문체부)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마우처 (문체부) -문화복지사 (문체부)	43,946
	시설이용	제한적-표준화 3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63,052

〈표〉 협동조합 역량과 사회서비스 유형별 결합에 의한 2순위 주력 사회서비스 사업
(단위: 백만 원)

유형	사회서비스	2차 목표시장	사업명	사업예산('13)
정부 지원형	돌봄	제한적-표준화 12개	-영유아보육료지원 (복지부) -유아학비·보육료지원 (복지부) -엄마품온종일돌봄강사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시간제 (여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복지부)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복지부)	5,758,583

8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분야 참여 가능성 모색 및 방안연구

유형	사회서비스	2차 목표시장	사업명	사업예산('13)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 (농림부) -취약농가인력지원 (농림부) -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부) -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 (여가부)	
	사회참여지원	개방적-표준화 4개	-미혼모 자립지원 (여가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부) -장기복무 전역 예정군인 전직지원 (보훈처) -전역예정군인 취업화동지원 (보훈처)	189,003
	학습지원	제한적-표준화 3개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부) -탈북청소년 학생지원 (교육부) -행복학습지원센터 (교육부)	6,096
민간 자발형	돌봄	개방적-비표준화 2개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지투사업) -10대 방과후돌봄(지투사업)	2,505
	상담	제한적-표준화 7개	-WEE프로젝트 (교육부) -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 (여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여성부) -법률홈닥터 (법무부) -스마일센터 (법무부) -드림스타트 (복지부)	136,617
	건강지원	개방적-비표준화 9개	-비만이동관리서비스(복지부_지투) -정신질환자토탈케어(복지부_지투) -치매예방서비스(복지부_지투) -재활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취약계층운동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복지부_지투) -노인맞춤형운동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유헬스 서비스(복지부_지투)	47,704
	문화·예술	제한적-표준화 2개	-이야기 할머니 (문체부)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문체부)	8,783
	시설이용	개방적-비표준화 3개	-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복지부_지투사업)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9,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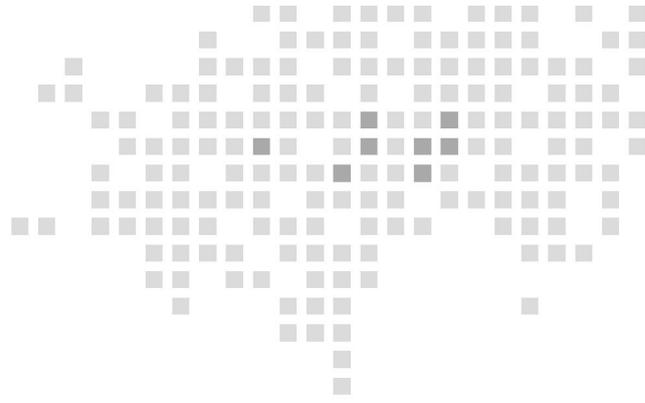
6.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참여를 위한 추진 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이후 자생적 일자리 창출과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확산을 위해서는 설립이전기-도입기-성장기-성숙기의 4단계 맞춤형 지원방안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설립이전기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설립 및 전환, 인가과정상의 문제점 등 양적 확대를 위한 진입장벽의 완화해 주력해야 한다. 둘째로 도입기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사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영리 금융인프라의 구축과 공공구매시장의 우선권 부여, 시설장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성장기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매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들의 역량에 부합하는 제1차 목표시장인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경영컨설팅과 자원봉사기관으로서의 유도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숙기에서는 매출기반 확보 후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2차 목표시장인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진출유도와 전문가 연계 등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생명 주기별 지원방안

구분	설립이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지원방향	- 진입장벽 완화	- 사업기반 확보	- 매출기반 구축	- 부가가치 확대
공통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체계 통합 -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법 개정 - 사회적협동조합 인센티브 제도마련 및 홍보	- 공공조달시장 및 사회서비스 위탁 우선권 부여 - 시설장기 임대 - 비영리금융인프라 구축 - 중간지원조직 체계개편	-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정보제공 등 경영컨설팅 - 자원봉사기관으로 지정	-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사업연대 컨설팅 - 각 사업 전문가 연계
정부 지원형	- 사회참여지원 사업체들을 협동조합으로 연계	- 협동조합 전환컨설팅	- (돌봄) 개방적-표준화 10개 사업 - (사회참여지원) 제한적-표준화 7개 사업 - (학습지원) 개방적-비표준화 2개 사업	- (돌봄) 제한적-표준화 12개 사업 - (사회참여지원) 개방적-표준화 4개 사업 - (학습지원) 제한적-표준화 3개 사업
민간 자발형	-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체들을 협동조합으로 유도	-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연계	- (돌봄) 제한적-표준화 12개 사업 - (상답) 제한적-비표준화 12개 사업 - (건강) 제한적-표준화 6개 사업 - (문화) 개방적-표준화 4개 사업 - (시설이용) 제한적-표준화 3개 사업	- (돌봄) 개방적-비표준화 2개 사업 - (상답) 제한적-표준화 7개 사업 - (건강) 개방적-비표준화 9개 사업 - (문화) 제한적-비표준화 시장 개발 - (시설이용) 개방적-비표준화 3개 사업

*주요용어: 사회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제1장 연구의 개관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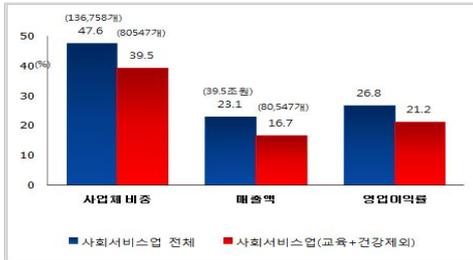
연구의 개관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배경)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후, 13개월 동안 3,59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3.4%(122개)에 불과
 - 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은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체가 중심이 되어 고용창출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효율성이 낮은 상황
 - 반면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 주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달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국가 복지재정의 효율화와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

[첨1-1] 사회서비스사업체(287만개) 중개사업체 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III
 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에 의거 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

<표 1-1>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사회적경제 모델

구분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모델	캐나다 퀘벡 모델
중심 도시	- 볼로냐	- 퀘벡시티
특성	- 수평적 네트워크 (중소기업네트워크 모델)	- 정부-시민단체 협업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이상적 공급모델)
업종	- 제조업(기계), 유통, 금융, 사회 서비스	- 사회서비스, 금융, 유통
금융 성격	- 협동조합 네트워크 기금, 협동조합 보험, 정부예산	- 공동체 기금, 정부예산, 협동조합은행
현황	- 협동조합 15,000개 중 사회적협동조합 584개(105) - 사회적협동조합 3.3만 명 고용	- 협동조합 3,000개 중 사회적협동조합 1,068개 - 협동조합 7.8만 명 고용

주: 서울시(2013),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참조해서 재구성

- (목적)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및 복지사각 지대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
 - 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존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협동조합 참여 가능 사업군 및 유망 전략모델 군을 발굴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새로운 지원방식 및 인프라 조성 방안을 모색

제2절 연구 내용

- (연구내용)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가능성 모색을 위해 총 4개 세부 연구내용을 설정
 - 세부내용 1과 2는 현황과약 부문으로 현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문제점과 협동조합의 보완관계,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확산 미흡 원인을 파악
 - 세부과제 3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참여를 위한 가능성 모색을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핵심역량을 분석
 - 세부과제 4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사업 참여 및 지원 방식을 도출한 후 선진국의 지원방식과의 차이를 탐색
- (세부내용 1) 현 사회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협동조합의 보완관계를 파악
 - (현황과약) 제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전달체계인 사업체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 (보완관계) 현 범부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단점을 협동조합기본법과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모델과 능력을 기반으로 보완관계 탐색
⇒사업체 규모 및 종사자 처우, 사업체의 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캐나다 퀘벡 등 선진국들의 현황을 파악
- (세부내용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확산 미흡에 관한 원인을 파악
 - (제도적 측면)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기존 협동조합형 유사목적의 기관들이 협동조합 전환 시, 고려되는 진입장벽을 파악
 - (인과과정 측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 범부처 담당 공무원들에게서 발생하는 인가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

□ (세부내용 3) **현 7대 부문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및 핵심역량을 발굴**

- (비즈니스 모델 및 역량분석) 7대 분야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역량을 사례분석으로 탐색
- (사업군 탐색)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사업에서 협동조합 등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군을 비즈니스모델과 연계하여 분석
- (지원모델 구축)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역량, 그리고 진출 사업군을 중심으로 현 재정지원 사업방식을 재구조화한 지원모델을 구축
 - ⇒(선진국 사례) 선진국의 협동조합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제도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모델 등을 개발

□ (세부내용 4)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 협동조합의 범부처 사회서비스 참여시 진입장벽,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사업 유도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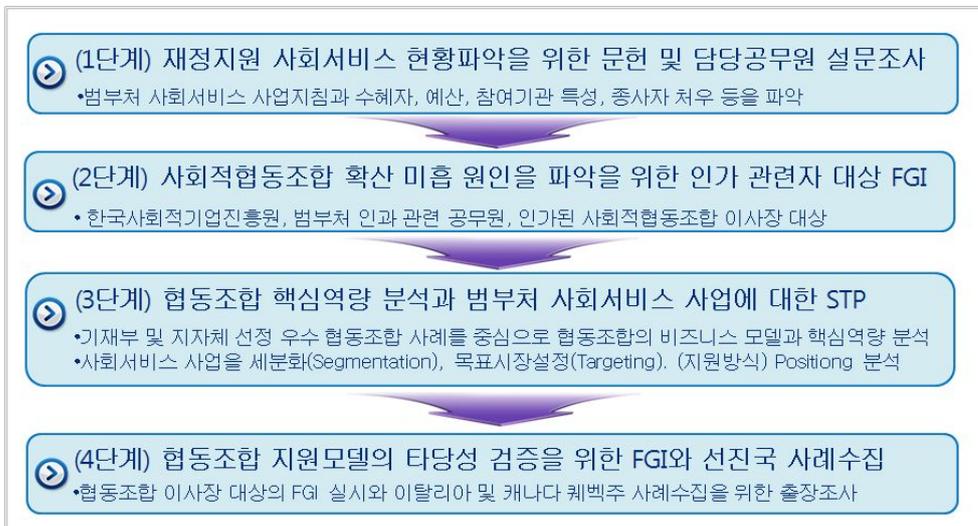
- (양적확대) 직원·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형 유사기관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제도적, 인가과정적 문제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시
- (진입장벽) 협동조합이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참여시 고려되는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
- (사업유도) 협동조합이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과제를 제시

제3절 연구 방법

- 본고에서는 연구목적 달성 및 세부 연구 내용 수집을 위해 총 4단계로 연구 방법론을 구축
 - (1단계) 범부처 사회서비스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문헌조사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문헌조사) 7대 사회서비스 부문(복지시설 포함) 재정지원 사업들의 사업지침을 파악하여 사회서비스 분야별 특징을 분석
 - ⇒ 사업방식과 위탁기관 특성, 평가시스템, 지원방안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
 - (설문조사) 각 사업별 예산 및 수혜자 등 현황과 참여기관 특성 및 참여방식, 관리방식, 종사자 처우 등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 (2단계) 사회적협동조합 확산미흡의 원인 파악을 위해 문헌조사와 범부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담당 공무원 및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의 FGI 실시
 - (문헌조사)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부처 개별법과의 연관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인터뷰 실시
 - (인가과정 담당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업무 관련자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와 범부처 인가담당 공무원 대상의 인터뷰 및 FGI 실시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상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범부처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이사장들을 대상으로 FGI 실시
 - (3단계) 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및 역량분석을 위한 사례분석과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STP 분석
 - (사례분석)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우수 협동조합 사례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부문 진출 약 30여개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역량을 분석

- (STP)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협동조합 진출을 위해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세분화(Segmentation) - 목표시장(Targeting) - 지원모델(Po-sitioning) 분석을 실시
- (5단계)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협동조합 대상의 FGI와 해외 사례 수집을 위한 출장조사 실시
 - (역량 검증) 사례분석에 기반한 협동조합들의 비즈니스 모델 결과검증 및 지원방안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분석에 포함된 협동조합들에 대한 FGI를 실시
 - (선진사례)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지원방식 벤치마킹을 위해 이탈리아는 전문가 원고 위탁을, 캐나다는 출장조사를 실시

[그림 1-2] 연구방법론





제2장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전체 현황

제2절 7대 사회서비스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현 사회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협동조합의 보완관

2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 사업 현황과 문제점 <

제1절 전체 현황

□ (조사개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범부처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일반현황, 사업체관리, 근로자관리 등 총 4대 부문, 24개 문항을 조사

○ (응답현황)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99개 사업 중 통합예산사업 등 제외 후 83개 사업 자료를 수집

<표 2-1>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설문지 취합 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사업	수집 개수	미수집 개수	미수집 사업	구분	전체 사업	수집 개수	미수집 개수	미수집 사업
전체	99	83	16		4.사회참여	14	12	2	
1.돌봄	25	22	3		고용부	1	1	0	
교육부	4	3	1	초등돌봄교실	복지부	5	5	0	
보훈처	1	1	0		하나재단	1	1	0	
농림부	1	1	0		법무부	1	1	0	
복지부	14	12	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보훈처	4	2	2	군인교육훈련바우처 재단인사자리지원
여가부	5	5	0		여가부	2	2	0	
2.상담	25	19	6		5.문화	7	6	1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교육부	1	1	0		문체부	7	6	1	
보훈처	1	0	1	제대군인심리상담	6.학습지원	7	4	3	
여가부	5	3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위험청소년상담	교육부	3	2	1	탈북청소년학생지원
복지부	15	13	2	인공임신중절 자살예방사업	복지부	2	2	0	
법무부	3	2	1	인신보호관	여가부	2	0	2	레인보우스쿨 다문화가정재난어
3.건강	15	15	0		7.시설이용	6	5	1	
교육부	1	1	0		복지부	3	3	0	
문체부	3	3	0		산통부	1	1	0	
복지부	11	11	0		에너지	1	1	0	
					여가부	1		1	폭력피해여성주거

- 주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에 의한 30개 개별사업 추가
 2. 인신보호관, 자살예방사업, 인공임신중절사업, 제대군인심리상담, 자살위험청소년상담,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제대군인사회적일자리지원, 국민문화향유권확대, 레인보우스쿨, 다문화가정자녀언어발달지원 등 총 10개 사업은 통합예산사업 등의 이유로 자료수집 및 분석제외
 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살위험청소년상담), 행복학습지원센터, 폭력피해여성주거, 탈북청소년학생지원 등 총7개 사업은 공무원 설문회신은 안되었으나 사업안내서 확인 후 분석포함

□ (사업개관) 2014년 기준, 7대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은 총 99개이며, 부문별로는 돌봄과 상담부문이 각각 25개로 가장 많음

○ (부처별) 보건복지부가 50개로 가장 많고, 여성가족부 15개, 문화부 10개 순

○ (연령별) 아동청소년사업이 36개로 가장 많고, 전연령 대상 27개, 65세 이상 사업이 15개로 나타남

〈표 2-2〉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부처별 현황

(단위 :개)

구분	소계	부처별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보훈처	법무부	기타
전체	99	50	15	10	9	6	4	5
1. 돌봄부문	25	14	5	-	4	1	-	1
2. 상담부문	25	15	5	-	1	1	3	-
3. 건강관리부문	15	11	-	3	1	-	-	-
4. 사회참여부문	14	5	2	-	-	4	1	2
5. 문화부문	7	-	-	7	-	-	-	-
6. 학습지원 부문	7	2	2	-	3	-	-	-
7. 시설이용부문	6	3	1	-	-	-	-	2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표 2-3〉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연령대별 현황

(단위 :개)

구분	소계	연령별					전 연령
		영유아 (0~5세)	아동청소년 (6~18세)	청년 (20~30대)	중장년 (40~64세)	65세이상	
전체	99	9	36	5	7	15	27
1. 돌봄부문	25	5	11	1	-	4	4
2. 상담부문	25	-	12	2	1	2	8
3. 건강관리부문	15	1	5	-	-	6	3
4. 사회참여부문	14	-	1	2	6	1	4
5. 문화부문	7	1	1	-	-	2	3
6. 학습지원 부문	7	1	5	-	-	-	1
7. 시설이용부문	6	1	1	-	-	-	4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주: 2개 층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연령이 더 높은 쪽으로 카운트 함. 예) 만 18세 미만 사업인 경우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표기 하였음

- (소득기준별) 총 99개 사업 중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48개이며, 그 중 상담 부문이 14개로 가장 많고 돌봄부문 13개, 건강관리부문 11개 순

〈표 2-4〉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

(단위 :개)

구분	소계	소득기준 유무	
		유	무
전체	99	48	51
1. 돌봄부문	25	13	12
2. 상담부문	25	14	11
3. 건강관리부문	15	11	4
4. 사회참여부문	14	3	11
5. 문화부문	7	1	6
6. 학습지원 부문	7	2	5
7. 시설이용부문	6	4	2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 (사업예산 및 수혜자) 2013년 기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총예산은 7조 9,165억 원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약 1천 1백만 명으로 파악
- ⇒ (예산 구성) 총예산 중 돌봄 부문이 6조 7,302억 원으로 약 85.0%를 차지
- ⇒ (수혜자) 전체 수혜자 중 돌봄 부문이 약 395만 명으로 약 35.0%를 차지

〈표 2-5〉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2013년 사업예산 및 수혜자 규모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사업예산	수혜자
전체	7,916,582	11,275,399
1. 돌봄부문	6,730,228	3,951,415
2. 상담부문	266,641	531,311
3. 건강관리부문	195,740	2,478,347
4. 사회참여부문	551,985	1,037,441
5. 문화부문	52,729	2,904,202
6. 학습지원 부문	46,785	357,881
7. 시설이용부문	72,474	14,802

자료: 각 부처별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및 사업지침서 기초

- (사업체 문제점)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체 수는 2013년 기준, 약 101,363개로 추정되나, 총 77개 사업 중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인 경우가 57개 임
- (사업체 수) 부문별로 돌봄부문이 79,864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건강관리부문으로 10,790개임
- (종사자 규모) 평균 10인 미만인 사업이 57개, 10인 이상인 사업이 20개이며 특히 평균 10인 미만인 경우가 많은 사업은 돌봄 부문으로 16개로 파악됨

〈표 2-6〉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별 사업 수

(단위 :개)

구분	총 기관수('13)	사업수 (응답수)	종사자 규모별	
			평균 10인 미만 사업 수	평균 10인 이상 사업 수
전 체	101,363	99(77)	57	20
1. 돌봄부문	79,864	25(21)	16	5
2. 상담부문	6,892	25(18)	15	3
3. 건강관리부문	10,790	15(14)	11	3
4. 사회참여부문	2,896	14(11)	6	5
5. 문화부문	327	7(5)	3	2
6. 학습지원 부문	171	7(3)	2	1
7. 시설이용부문	423	6(5)	4	1

자료: 각 부처별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및 사업지침서 기초

- (기관관리 문제점) 응답한 사업 79개 중 지자체 기관 실사 시행 사업은 53개이며, 13년 기준 문제발생 시 행정조치 경우는 15개 사업에 불과
- (서비스 비용 지급방식) 기관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72개이며,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 만을 지급하는 경우는 23개 사업임
- (기관실사 현황) 지자체가 기관 실사를 담당하는 사업 53개 가운데 상담 부문이 15개, 건강관리부문이 14개임

〈표 2-7〉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체 비용 지급 방식 및 공무원 실사 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사업수	서비스 비용지급 방식		기관 실사		
		기관지급 사업수	인건비만 지급	응답 수	지자체 실사 사업 수	행정조치 有 사업 수
전 체	99	72	23	79	53	15
1. 돌봄부문	25	15	13	21	10	4
2. 상담부문	25	16	1	19	15	1
3. 건강관리부문	15	14	2	14	14	3
4. 사회참여부문	14	11	2	11	5	6
5. 문화부문	7	5	2	6	3	0
6. 학습지원 부문	7	5	1	2	2	0
7. 시설이용부문	6	6	2	6	4	1

자료: 각 부처별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및 사업지침서 기초

주: 행정조치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별 사업은 알 수 없어 표기하지 않음

- (근로자 처우 문제점)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총 71.6만 명으로 추정되나,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 사업은 응답한 81개 중 45개임
- (월평균임금) 월평균 임금 100만 원 미만 사업은 돌봄부문이 14개로 가장 많음
- (종사자수) 7대 법정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사업은 단지 7개에 불과

〈표 2-8〉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근로자 처우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총 근로자 수	종사자 처우		
		전체 사업 수 (응답수)	월 평균 100만원 미만 사업 수	7대 법정근로수당 지급 사업 수
전 체	716,653	99(81)	45	7
1. 돌봄부문	618,366	25(23)	14	2
2. 상담부문	23,224	19(18)	12	1
3. 건강관리부문	23,958	15(15)	10	1
4. 사회참여부문	4,434	14(12)	2	1
5. 문화부문	885	7(6)	1	0
6. 학습지원 부문	44,134	7(3)	3	1
7. 시설이용부문	1,652	6(4)	3	1

자료: 각 부처별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및 사업지침서 기초

제2절 7대 사회서비스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

1.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 (사업개발) 범부처 돌봄 영역 사업은 총 25개로 복지부가 14개, 여가부 등 타 부처가 11개 사업을 시행 중

○ (연령대) 10대 이하에 총 15개 사업이 집중된 반면, 20~40대의 경우 복지부의 가사간병과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부의 장애대학생 도우미 등 3개에 불과

〈표 2-9〉 복지부 대비 타 부처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구분	복지부 (14개)	복지부 외 범부처 (10개)
영유아 0~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인 전후에 있는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장애아 만12세 이하)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교육부) 엄마품은종일 돌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우선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온종일(07시 ~ 22시) 돌봄 서비스 제공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만1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 청소년 6~1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으로 보호·교육·문화·복지연계 등 5대 영역 종합적 서비스 제공 가사간병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요보호이동 그룹돌봄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위해 그룹으로 보호조치된 경우, 아동이 보호 종료될 때까지 보호·양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여가부) 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초등 4학년 ~ 중등 2학년 청소년에게 자기주도학습,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 캠프, 부모교육, 급식 및 건강지원, 귀가지원 등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교) 동행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주요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제공(저소득층 우선 선발)
청년 20~30대 중장년 40~64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장애대학생도우미 장애학생들에게 대학내 교수학습지원 및 이동편의 등의 서비스 제공
노인 65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돌봄서비스 만65세 이상의 취약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보호 서비스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처)고령국가유공자 노후복지지원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중증질환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가정에 보훈섭김이 등 복지인력이 방문하여 가사간병 등 제가복지서비스 제공 (농식품부)취약동기인력지원 65세 이상 부부농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적 가사활동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전체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취약계층 발굴, 위기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지역자원 서비스 발굴연계,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욕구조사 및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자원 연계 의뢰 및 제공여부 지속적 점검 등 실시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지투)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국내 여행서비스 제공, 연1회 1박2일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중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부)여성장애인 생활밀착형지원강화 장애유형별 특화 역량강화교육, 영역별(보건, 생활보장 복지 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문화·체육, 임신·출산·육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등) 지역사회기관 협약 등을 통한 연계기능 강화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 (소득별) 총 25개 사업 중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13개이며, 대부분 저소득 계층에 집중

⇒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부처별 사업은 복지부가 9개이며, 여가부(1개), 교육부(1개), 기타(2개) 순

〈표 2-10〉 소득기준 유무별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구분	소득기준 有		모든 소득 계층	
영유아 0~5세	1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복지부) 4.엄마품은종일 돌봄(교육부) (3~5세)	7.아동통합서비스 (0~12세)(복지부)	2.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3.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5.아이돌봄서비스 중일제 (여가부)	10.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0~12세)(여가부) 12.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1~12세)
아동·청소년 6~18세	6.장애아동가족지원(복지부) 8.방과후 돌봄(복지부) 11.방과후돌봄 서비스통합지원(초4~중2)(여가부)	25.10대방과후돌봄 (복지부_지투)	9.요보호아동그룹홈지원(복지부) 13.초등돌봄교실(초1~6)(교육부)	15.장애인 활동지원 (복지부)
청년 20~30대	-	14.가사간병서비스 (복지부)	16.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
중장년 40~64세	-	-	-	-
노인 65세 이상	17.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19.고령국가유공자 노후복지지원(보훈처) 20.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	18.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
전체	21.통합사례관리사 지원(복지부) 24.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복지부_지투)	-	22.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23.여성장애인 생활밀착형지원강화(여가부)	-
소득기준 존재 시 세부 기준	1 (복지부)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가구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2013년도 4인가구기준 2,368천원) 4 (교육부)엄마품은종일 돌봄 ·법정 저소득층 대상자, 맞벌이 부부의 재직 증명서 제출 등으로 자격 요건 선정 6 (복지부)장애아동가족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4인가구기준 7,104천원) 7 (복지부)아동통합서비스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아동복지법 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8 (복지부)방과후 돌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평균소득가구 70%이하 아동 등 11 (여가부) 방과후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차상위계층(4인가구기준, 1,855천원) 14(복지부)가사간병서비스 ·만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자(4인가구기준 1,795천원) 17(복지부)노인돌봄서비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2013년 4인가구기준 7,104천원) 19(보훈처)고령국가유공자 노후복지지원 ·도시근로자가계 생활실태조사에서 1~12등급으로 나뉜 6등급 이하인자. 4인기준 403.7천원. 20(농식품부)취약농가인력지원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21(복지부)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중 탈빈곤이 가능한 자 등 24(복지부_지투)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25.(복지부_지투)10대방과후돌봄: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 (사업예산 및 수혜자) 2013년 기준,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총예산은 총 6조 7,302억 원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3백951만 명으로 파악

⇒(예산 구성) 전체예산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유아학비 보육지원 부문이 총 5조 2,130억 원으로 77.5%를 차지

⇒(수혜자) 전체 수혜자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유아학비 보육지원 부문은 274만 명으로 69.5%를 차지

〈표 2-11〉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단위: 백만원, 명)

구분	12사업예산(국비)			예산구성	대상자 규모(명)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28,312	29,074	27,289	-국비+지방비	57,744	58,569	58,569
2.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2,391,219	2,598,219	3,329,228	-국비+지방비	1,487,361	1,486,980	1,410,950
3.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1,587,953	2,614,818	3,368,916	-국비+기타	660,000	1,260,000	1,280,000
4.엄마표은종일 돌봄강사(교육부)	8,280	9,120	7,000	-국비+지방비+기타	9,921	15,706	15,860
5.아이돌봄서비스_종일제(여가부)	-	-	-	-국비+지방비	-	3,693	-
6.장애아동가족지원(복지부)	-	1,279	1,608	-국비+지방비	3,259	2,414	-
7.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46,193	57,596	63,186	-국비+지방비	65,724	95,136	49,500
8.방과후돌봄(복지부)	110,926	128,599	131,974	-국비+지방비	108,357	109,066	
9.요보호아동그룹(복지부)	6,900	7,300	7,400	-국비+지방비	2,438	2,481	2,481
10.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여가부)	-	58,370	60,387	-국비+지방비	20,325	18,990	-
11.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	32,562	14,446	-국비+지방비	8,200	8,090	-
12.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여가부)	43,464	70,818	79,174	-국비+지방비	41,599	47,700	-
13.초등돌봄교실(교육부)*	-	452	1,270	-국비+지방비	159,248	159,737	246,120
14.가사간병서비스(복지부)	14,251	18,184	18,184	-국비+지방비	10,353	10,878	10,848
15.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309,878	382,876	428,454	-국비+지방비	50,520	60,435	62,526
16.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3,921	4,285	4,893	-국비	2,494	2,500	2,600
17.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보미(복지부)	-	118,162	143,269	-국비+지방비	31,000	40,000	41,000
18.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	541,210	584,883	-국비	321,936	389,000	440,000
19.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18,772	2,501	4,214	-국비	11,000	12,100	12,100
20.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6,300	7,100	7,600	-국비+지방비+기타	27,251	27,658	10,772
21.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	12,541	-	-국비	-	928	-
22.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24,462	31,394	32,627	-국비+지방비	47,237	63,866	-
23.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여가부)	1,263	1,263	1,289	-국비+지방비	57,381	57,682	-
24.장애·노인돌봄여행(복지부_지투)	-	2,305	-	-국비+지방비	-	17,661	-
25.10대 방과후 돌봄(지투사업)	-	200	-	-국비+지방비	-	145	-

주1. 지역사회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예산구성)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2.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 여성가족부
 3. 초등돌봄교실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교육부, 예산 중 각 지자체비용은 제외
 4.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2014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개요.2014.1. 보건복지부
 5.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는 12.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와 예산 중복으로 0원으로 처리

□ (사업체 현황) 돌봄 부문 사업체는 2013년 기준 약 79,864개로 파악되며, 평균 종사자 규모가 5인 이하인 사업은 총 21개 중 11개에 달함

○ (수행기관 성격) 25개 사업 중 개인사업체 또는 영리회사가 포함된 사업은 7개이며, 경쟁입찰을 포함한 등록제 형식 사업체 선정은 12개

〈표 2-12〉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수('13)	기관 종사자
1. 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개인사업체 65%	-등록제	277	-
2. 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인가제	43,659	5.7명(실적치)
3. 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인가제	17	2명(추정치)
4. 업미품은종일 돌봄강사(교육부)	-사회복지,비영리 75% -정부·지자체·산하기관 25%	-인가제	823	1.2명(실적치)
5.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 95.4%	-자자체 지정	216	2.2명(실적치)
6. 장애이동가족지원(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인가제	18	2명(실적치)
7. 이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11	3.7명(추정치)
8. 방과후돌봄(복지부)	-개인사업체 65.2%	-등록제	4,061	2.3명(실적치)
9. 요보호이동그룹홈보육(복지부)	-개인사업체 30%	-등록제	480	2명(실적치)
10.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경쟁입찰	212	9인(추정치)
11. 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경쟁입찰	200	3명(실적치)
12.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 95.4%	-지자체 지정	216	2.2명(실적치)
13. 초등돌봄교실(교육부)*	-학교 100%	-지정제	5,784	-
14. 가사간병서비스(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90%	-등록제	488	-
15. 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지정제	1,039	42명(추정치)
16. 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등록제	203	15명(추정치)
17.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보미(복지부)	-영리기관 50% -사회복지,비영리기관 50%	-등록제	1,424	8.2명(실적치)
18.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영리기관 79.6%	-등록제	19,480	11.3명(실적치)
19. 교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5	50명(추정치)
20. 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964	1명(추정치)
21. 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	-
22. 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경쟁입찰	200	8.1명(실적치)
23. 여성장애인생활밀착형지원강화(여성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지정제	22	3명(실적치)
24. 장애인 노인돌봄여행서비스(지투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59	7명(실적치)
25. 10대 방과후 돌봄(지투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2	28명(실적치)

주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사업수행기관 등)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2.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 여성가족부
 3. 초등돌봄교실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교육부, 예산 중 각 지자체비용은 제외
 4.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자료 미취합으로 이철선(2013)사회서비스일자리처우개선 및 효율화방안연구 자료 채구성
 5. 여가부의 아동돌봄서비스(시간제)는 12.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와 기관 중복으로 전체 216개로 처리

□ (기관 관리) 기관 실사가 있는 사업 21개 중 지자체에서 실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10개에 불과하며, 서비스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한 경우는 4개에 불과

○ (서비스 비용 지급) 서비스 비용 지급대상이 기관인 경우는 23개 사업 중 16개, 지급방식이 서비스 수가를 포함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23개 사업 중 14개로 파악

〈표 2-13〉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비용지급 대상	지급방식	기관 실사 현황	시정 또는 영업중지 현황
1.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기관	-인건비	-중앙정부 2회/1년	-시정조치(경고, 주의)
2.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기관	-서비스수가	-중앙정부 1회/3년	-
3.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	-	-	-
4.엄마표음종일 돌봄강사(교육부)	-기관+종사자	-인건비	-지자체 2회/1년	-
5.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여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민간위탁	-
6.장애이동가족지원(복지부)	-기관	-서비스수가	-중앙정부 1회/1년	-
7.이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	-
8.방과후돌봄(복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자체 1회/1년	-시정조치(775개) -운영비 감액(26개)
9.요보호이동그룹홈보육(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지자체 2회/1년	-
10.다문화가족정착맞춤양육지원(여가부)	-기관	-서비스수가	-중앙정부 2회/1년	-
11.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자체 1회/1년	-
12.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여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민간위탁	-
13.초등돌봄교실(교육부)	-기관	-인건비	-	-
14.가사간병서비스(복지부)	-기관	-서비스수가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1회/1년	-
15.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운영기관 정기평가(?)	-
16.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종사자	-인건비	-중앙정부 2회/1년	-기타(46)
17.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보미(복지부)	-종사자+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1회/1년 -지자체 1회/1년	-
18.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기관	-서비스수가	-중앙정부 1회/2년	-
19.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1회/1년	-
20.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미지급(?)	-인건비	-중앙정부 2회/1년	-
21.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	-
22.지역정보보건사업(복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자체 1회/1년	-
23.여성장애인생활밀착형지원강화(여성부)	-기관	-인건비	-중앙정부 1회/1년 -지자체 1회/1년	-
24.장애인, 노인돌봄여행서비스(지투사업)	-기관	-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영업중지(10) -해당 사업 퇴출(2) -시정조치(20)
25.10대 방과후 돌봄(지투사업)	-기관	-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영업중지(10) -해당 사업 퇴출(2) -시정조치(20)

주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지급방식)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주2. 다문화가족정착맞춤양육지원, 초등돌봄교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자료 미취함으로 이철선(2013)사회서비스일자리처우개선 및 효율화방안연구 자료 재구성

□ (근로자 관리 현황) 돌봄부문 25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61.8만 명이나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14개 존재함

○ (근로자성 인정) 법정 근로 지급 수당인 7개 수당 지급 여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2개 사업에 불과

〈표 2-14〉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단위: 명, 만원, 시간)

구분	근로자 규모 ('13)	월평균 임금	임금 지급	월평균 근무시간	7대 법정근로 수당 지급 여부
1.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2,808	78	-시급제	129	-연장, 야간, 휴일 수당 無
2.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301,719	131	-월급제	76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퇴직금 無
3.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578	-	-월급제	-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퇴직금 無
4.엄마표온종일 돌봄강사(교육부)	820	80	-월급제	80	-근로자성 인정 안됨
5.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여가부)	12,544	68	-월급제	90	-고용,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無
6.장애이동가족지원(복지부)	1,269	46	-시급제	66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퇴직금 無
7.이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780	170	-월급제	170	-연장, 야간, 휴일 수당 無
8.방과후돌봄(복지부)	9,203	125	-월급제	200	-야간, 휴일, 주휴, 연차 無
9.요보호이동그룹홈보육(복지부)	1,001	150	-월급제	216	-야간, 휴일, 주휴 無
10.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여가부)*	2,803	80	-월급제	64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無
11.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601	165	-월급제	208	-야간, 휴일, 주휴, 연차 無
12.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여가부)	12,544	68	-월급제	90	-고용,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無
13.초등돌봄교실(교육부)*	-	75	-월급제	112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無
14.가시간병서비스(복지부)	3,676	42	-시급제	56	-연장, 야간, 휴일 수당 無
15.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41,672	95	-시급제	130	-연장, 연차 無
16.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2,500	30	-시급제	50	-근로자로 인정 안됨
17.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보미(복지부)	11,809	60	-시급제	88	-연장, 주휴, 연차 無
18.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220,333	79	-시급제	99.6	-기관마다 다름
19.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1,150	120	-월급제	160	-모두 존재
20.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15	-	-월급제	8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퇴직금 無
21.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928	160	-월급제	160	-주휴, 연차 無
22.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1,626	231	-월급제	160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無
23.여성장애인생활밀착형지원강화(여가부)	66	160	-월급제	160	-모두 존재
24.장애인, 노인돌봄여행서비스(지투사업)	408	77	-월급제	47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퇴직금 無
25.10대 방과후 돌봄(지투사업)	57	77	-월급제	47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퇴직금 無

주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분항(평균임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주2.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 초등돌봄교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자료 미취함으로 이철선(2013)사회서비스일자리처우개선 및 효율화방안연구 자료 재구성
 주3.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는 12.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와 종사자 중복으로 전체 12,544명으로 처리

2.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 (사업개관) 범부처 상담부문 사업은 총 25개로 복지부가 15개, 여가부 등 타 부처가 10개로 구성

○ (연령대) 20대 이하에 총 12개 사업이 집중된 반면, 20~30대는 부모학교 등 2개, 65세 이상은 자살 고위험군 건강검진 등 2개에 불과

〈표 2-15〉 복지부 대비 타 부처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구분	연령	복지부(15개)	복지부 외 타부처(10개)
영유아	0세~5세	-	-
이동 청소년	6~18세	<p>2. 아동정서발달지원 -정서순화, 연주회관람, 무상악기제공, 합주 등</p> <p>5. 아동청소년비전형성 -라이프코칭, 진로탐색</p> <p>21. 기타이동정서 -음악실기 및 심리상담</p> <p>22. 정서학습리더십 -리더십 함양 및 비전형성</p> <p>23. 이동체험 -토요휴업일을 활용한 월별체험활동제공</p>	<p>1. 드림스타트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인 산부에게 건강·인지·정서·사회성 등 서비스제공</p> <p>3.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조기개입서비스 놀이, 언어, 인지, 미술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제공</p> <p>4. 인터넷과몰입치유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후 자기주도를 위한 사후 관리, 기본서비스 제공</p> <p>6. (교육부)WEB프로젝트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제공(리더십, 진로탐색, 체험활동, 학습모듈, 부모상담)</p> <p>7. (여가부)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인터넷 레몬교실, 스마트미디어 레몬교실, 방문상담, 전문상담사 활용</p> <p>8. (여가부)자살위험청소년상담 -청소년 자살예방대책, 위기개입대책, 긴급구조대책, 사후개입대책을 마련하여 전문적 상담 실시</p> <p>9. (여가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사회적 보호, 교육, 진로, 의료, 여가 연계지원</p>
청년	20대~30대	<p>12. 부모학교 -부모 및 예비부모의 역할정립, 역할훈련제공, 성격유형검사, 가족공동체프로그램</p>	<p>11.(보훈처) 제대군인심리상담 -(내용)컨설팅, 교육훈련, 행정지원, 구직활동지원 등 취업지원센터의 사업</p>
중장년	40대~64세	<p>24. 근로자정서지원 -노무상담, 재테크상담, 자녀교육상담 등 지원</p>	-
노인	65세 이상	<p>15.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 -65세이상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사례관리, 맞춤형프로그램, 가족교육, 여가활동 실시</p> <p>17. 고령자소의 예방 -저소득 고령자 라이프코칭(타인관계 등)과 재무설계를 제공하여 노년기를 보람 있게 보내도록 지원</p>	-
전체 연령		<p>14. 인공임신중절 예방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운영,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운영</p> <p>15. 자살예방사업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치료, 재활, 자살예방대책 수립, 시행</p> <p>25. 사례관리 -사전사후 사례평가 및 진단, 가족상담 서비스</p>	<p>10. (여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상담사업, 문화사업,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제공</p> <p>13. (여가부)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생애매 피해자 등 수사지원, 신체외상 및 산부인과 진료, 심리치료, 법적지원 등 제공</p> <p>18. (법무부)법률상담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에 상주하여 변호사 자격자를 두어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p> <p>19. (법무부)인신보호관 -정신병원 등에 강제입원 된 사람이 있는지 상시적으로 점검 후 구제</p> <p>20. (법무부)스마일센터 -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의 회복을 돕는 곳으로 심리지원, 사례지원, 네트워크구축</p>

자료: 각 부처 사업지침서

○ (소득별) 총 25개 사업 중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14개이며, 대부분 저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복지부 사업임

⇒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부처별 사업은 여가부가 4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법무부(3개), 복지부(2개), 교육부(1개)

〈표 2-16〉 소득기준 유무별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구분	연령	상담서비스	
		소득기준 有	모든 소득 계층
영유아	0세~5세	-	-
아동·청소년	6~18세	2. 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 5. 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 21. 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 22. 정서, 학습, 리더십(복지부_지투) 23. 아동체협(복지부_지투)	1. 드림스타트(복지부)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 4. 인터넷과물입치유(복지부_지투) 6. WEE프로젝트(교육부) 7. 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가부) 8. 자살위험청소년상담(여가부)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청년	20대~30대	12. 부모학교(복지부_지투)	11. 세대군인심리상담(보훈처)
중·장년	40대~64세	25. 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	-
노인	65세 이상	16.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복지부_지투) 17. 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	-
전체 연령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24. 사례관리(복지부_지투)	1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가부) 14. 인공입신중절예방(복지부) 15. 자살예방사업(복지부) 18. 법률홈닥터(법무부) 19. 인신보호관 20. 스마일센터(법무부)
소득기준 존재 시 세부 기준		1.(복지부)드림스타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한부모가정등(아동복지법37조에따른취약계층아동) 2.(복지부_지투)아동정서발달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용료 월 20만원 내외(본인부담 10~20%), 12개월 3.(복지부_지투)아동청소년심리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용료 월 16만원 (본인부담 10~30%), 12개월 4.(복지부_지투)인터넷 과몰입치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이용료 월 20만원 내외(본인부담 10~20%), 12개월 5.(복지부_지투)아동청소년비전형성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이용료 월 14만원 내외(본인부담 10~20%), 12개월 10.(여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시 우선 선정대상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 등 12.(복지부_지투) 부모학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용료 월 20만원 내외(본인부담 3만원), 2개월 16.(복지부_지투)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 ·기초노령수급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용료 월 16만원 (본인부담1.6만원), 12개월 17.(복지부_지투)고령자소외예방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용료 월 18만원 내외(본인부담 2만원), 6개월 21.(복지부_지투) 기타아동정서: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 (본인부담금 2만원) 22.(복지부_지투) 정서, 학습, 리더십: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 (본인부담금 18천원) 23.(복지부_지투) 아동체협: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 (본인부담금 1만원~42천원) 24.(복지부_지투) 사례관리: 전국가구평균 소득 120% (본인부담금 2만원) 25.(복지부_지투) 근로자정서지원: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 (본인부담금 2~4만원)	

자료: 각 부처 사업지침서

○ (사업예산 및 수혜자) 2013년 기준, 상담부문 사회서비스 총예산은 총 2,666억 원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53만 명으로 파악

⇒(예산 구성) 전체 예산 중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총 583억 원으로 21.8%를 차지

⇒(수혜자) 전체 수혜자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이 18만 명으로 33.9%를 차지

〈표 2-17〉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사업예산(국비)			예산구성	대상자 규모(명)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드림스타트(복지부)	46,193	57,596	63,186	-국비+지방비	65,724	95,136	49,500
2.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	-	14,523	-	-국비+지방비	-	14,206	-
3.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	-	32,262	-	-국비+지방비	-	39,648	-
4.인터넷 과몰입치유(복지부_지투)	-	2,694	-	-국비+지방비	-	2,771	-
5.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	-	15,309	-	-국비+지방비	-	22,353	-
6.WEE 프로젝트(교육부)	0	0	0	-지방비	80,000	80,000	80,000
7.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성부)	200	200	200	-국비	1,011	927	-
9.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	33,600	36,700	-국비+지방비	-	180,000	-
10.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51,803	58,370	60,387	-국비+지방비+기타	8,282	7,957	-
12.부모학교(복지부_지투)	-	1,894	-	-국비+지방비	-	3,434	-
1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부)	9,603	15,104	16,716	-국비+지방비	22,333	27,448	13,091
16.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복지부_지투)	-	2,816	-	-국비+지방비	-	2,911	-
17.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	-	8,233	-	-국비+지방비	-	10,451	-
18.법률상담터(법무부)	502	956	2,247	-국비	-	20,557	-
20.스마일센터(법무부)	2,352	4,391	5,331	-국비	242	464	554
21.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	-	6,289	-	-국비+지방비	-	7,304	-
22.정서, 학습, 리더십(복지부_지투)	-	7,133	-	-국비+지방비	-	8,482	-
23.아동체험(복지부_지투)	-	1,144	-	-국비+지방비	-	3,022	-
24.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	-	161	-	-국비+지방비	-	306	-
25.사례관리(복지부_지투)	-	3,966	-	-국비+지방비	-	3,934	-

주 1.(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4년 자료 미제출로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자료를 참고 하였으며, 자살위험청소년상담사업 예산이 포함됨(2014.1. 여성가족부)

2.(법무부)인신보호관은 사업 미진행, (복지부) 자살예방사업은 돌봄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포함, (복지부) 인공임신 중절사업은 홍보사업, (보훈처)제대군인심리상담은 사회참여지원 부문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에 포함
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예산구성)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 (사업체 현황) 상담부문 사업체는 2013년 기준 약 6,892개로 파악되며, 평균 종사자 규모가 5인 이하인 사업은 총 20개 중 6개에 달함

○ (수행기관 성격) 20개 사업 중 개인사업체 또는 영리회사가 포함된 사업은 12개이며, 경쟁입찰을 포함한 등록제 형식 사업체 선정은 13개

〈표 2-18〉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 수('13)	기관 종사자 (명)
1.드림스타트(복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자체 수행	211	3.7명(실적치)
2.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241	10.6명(실적치)
3.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729	4.4명(실적치)
4.인터넷 과몰입치유(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54	6.1명(실적치)
5.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387	5.8명(실적치)
6.WEE 프로젝트(교육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1	10명(실적치)
7.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성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18	-
9.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경쟁입찰	200	9명(추정치)
10.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11	4.5명(실적치)
12.부모학교(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67	4.2명(실적치)
1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지정제	33	9.8명(실적치)
16.자살위험군건강증진(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56	4.6명(실적치)
17.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740	9.7명(실적치)
18.법률홈닥터(법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7	-
20.스마일센터(법무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인가제	4	15명(실적치)
21.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045	8.4명(실적치)
22.정서, 학습, 리더십(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231	6.9명(실적치)
23.아동체협(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68	5.6명(실적치)
24.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38	4.2명(실적치)
25.사례관리(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431	5.5명(실적치)

주 1.(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료 미제출로 2014년도 청소년사업안내(여성가족부.2014.1) 참고하였으며, 자살위험청소년상담사업 포함됨

2.(법무부)인신보호관은 사업 미진행, (복지부) 자살예방사업은 돌봄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포함, (복지부) 인공임신 중절사업은 홍보사업, (보훈처) 제대군인심리상담은 사회참여지원 부문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에 포함

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사업선정방식)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 (기관 관리) 기관 실사가 있는 사업 18개 중 지자체에서 실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15개이며, 서비스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한 경우는 지투자사업 전체에서 32건이 발생하였을 뿐 타 사업에서는 부재

○ (서비스 비용 지급) 비용지급대상이 종사자만인 경우는 20개 사업 중 2개, 지급방식 중 인건비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1개로 파악

〈표 2-19〉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비용지급 대상	지급방식	기관 실사 현황	시정 또는 영업중지 현황
1.드림스타트(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없음	-
2.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3.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4.인터넷 과몰입치유(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5.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6.WEE 프로젝트(교육부)	-종사자+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1회/1년 -지자체 2회/1년	-
7.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성부)	-종사자+기관	-인건비+운영비	-없음	-
9.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1회/3년 -지자체 1회/1년	-없음
10.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기관	-운영비	-기관평가 1회/3년	-없음
12.부모학교(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1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0.3회/1년 -지자체 2회/1년	-없음
16.자살위험군건강증진(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17.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18.법률상담(법무부)	-종사자	-인건비	-중앙정부 1~2회/1년	-없음
20.스마일센터(법무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1회/1년	-없음
21.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22.정서, 학습, 리더십(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23.아동체험(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24.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25.사례관리(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주 1.(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료 미제출로 2014년도 청소년사업안내(여성가족부.2014.1) 참고하였으며, 자살위험청소년상담사업 포함됨

- 2.(법무부)인신보호관은 사업 미진행, (복지부) 자살예방사업은 돌봄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포함, (복지부) 인공임신 중절사업은 홍보사업, (보훈처)제대군인심리상담은 사회참여지원 부문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에 포함
- 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정 또는 영업중지 현황은 영업중지(10개), 사업퇴출(2개), 시정조치(20개)로 나타남
- 4.지역사회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기관실사현황,지급방식)은 통합데이터로 대체

□ (근로자 관리 현황) 상담부문 19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3만 명이나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12개 존재함

○ (근로자성 인정) 법정 근로 지급 수당인 7개 수당 지급 여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WEE프로젝트 1개 사업뿐임

〈표 2-20〉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근로자 규모 ('13)	월평균 임금	임금 지급	월평균 근무 시간	7대 법정근로 수당 지급 여부
1.드림스타트(복지부)	780	170	-월급제	170	-야간, 휴일, 주휴, 연차 수당 無
2.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	544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3.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	7,771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4.인터넷 과몰입치유(복지부_지투)	334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5.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	2,279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6.WEE 프로젝트(교육부)	5,750	191	-월급제	40	-모두 제공
7.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성부)	31	180	-월급제	40	-야간, 휴일, 주휴, 연차 수당 無
9.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238	180	-월급제	180	-연장,야간,휴일,주휴 수당 無
10.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950	-	-월급제	160	-야간, 휴일, 주휴, 연차, 퇴직금 無
12.부모학교(복지부_지투)	288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1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부)	310	252	-월급제	170	-연장, 야간, 휴일, 주휴수당 無
16.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복지부_지투)	261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17.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	740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18.법률상담터(법무부)	-	-	-	-	-
20.스마일센터(법무부)	35	200	-월급제	208	-주휴, 연차 수당 無
21.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	1,045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22.정서, 학습, 리더십(복지부_지투)	1,231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23.아동체험(복지부_지투)	168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24.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	38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25.사례관리(복지부_지투)	431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주 1.(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료 미제출로 2014년도 청소년사업안내(여성가족부.2014.1) 참고하였으며, 자살위험청소년상담사업 포함됨
 2.(법무부)인신보호관은 사업 미진행, (복지부) 자살예방사업은 돌봄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포함, (복지부) 인공임신 중절사업은 홍보사업,(보훈처)제대군인심리상담은 사회참여지원 부문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에 포함
 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예산구성)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3. 건강관리 서비스

□ (사업개관) 범부처 건강관리 부문 사업은 총 15개로 복지부가 11개, 문체부 등 타 부처가 4개로 구성

○ (연령대) 20대 이하에 총 6개 사업, 65세 이상에 6개가 집중된 반면, 20~64세 이하에서는 부재

〈표 2-21〉 복지부 대비 타 부처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구분	연령	복지부 (11개)	복지부 외 타부처 (4개)
영유아	0세~5세	1. 영유아발달지원 -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증대 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	6~18세	2. (비만)아동관리 - 운동프로그램(운동 처방, 운동지도), 영양교육, 기초검사 등 아동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처방	3. (문체부)스포츠바우처 -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카드에 강좌 한도로 부여됨) 4. (교육부,문체부)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 학교안 생활체육프로그램, 학교밖 생활체육프로그램 진행하여 운영비, 강사수당 보조
청년	20대~30대	-	-
중·장년	40대~64세	-	-
노인	65세 이상	7. 시각장애인안마 - 월 4회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제공 8. 노인맞춤형운동처방 - 건강상태 점검, 수중운동(아쿠아로빅, 수중걷기), 유산소운동(체조, 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10. 정신질환자토달케어 -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사례관리, 맞춤형프로그램, 가족교육, 여가활동 실시 12. 장애인·노인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 - 노인(혈액검사, 댄스스포츠) 장애인(놀이치유, 수중운동), 산모(라마즈교육 요가) 프로그램 제공 13. 치매예방 - 치매예방 한방치료, 뇌기능활성화체조 제공	9. (문체부)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 지역 노인시설 방문 후 생활체육활동 지도, 프로그램 및 대표축제 행사 지원
전체 연령		14. U-Health - 정기적 건강측정, 생활습관개선 영양상담 15. 재활지원 - 개인맞춤형 근력운동 및 유산소운동	11. (문체부)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 보치아, 휠체어 테니스, 수상스키, 탁구, 양궁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 및 사회참여 촉진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 (소득별) 총 15개 사업 중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11개이며, 복지부 사업이 10개, 문체부 사업이 1개로 파악

⇒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부처별 사업은 문체부가 3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복지부가 1개임

〈표 2-22〉 소득기준 유무별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구분	연령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有	모든 소득 계층
영유아	0세~5세	1. 영유아발달지원 (복지부_지투)	5.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6. 언어발달지원(복지부)
아동·청소년	6~18세	3. 스포츠마우처 (문체부)	2. (비만)아동관리(복지부_지투) 4.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문체부)
청년	20대~30대	-	-
중·장년	40대~64세	-	-
노인	65세 이상	7. 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8. 노인맞춤형운동처방(복지부_지투) 10. 정신질환자도탈케어(복지부_지투) 12. 장애인·노인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13. 치매예방(복지부_지투)	9.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전체 연령		14. U-Health(복지부_지투) 15. 재활지원(복지부_지투)	11.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서비스내용		1.(복지부_지투)영유아발달지원 ·(특정)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이용료 월 20만원(본인부담 10~20%), 6개월 3.(문체부)스포츠마우처 ·(대상)만 5~19세 유소년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5.(복지부)발달재활서비스 ·(기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이용료 월 22만원 내외(본인부담 8만원까지) 6.(복지부)언어발달지원 ·(기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용료 월 22만원 내외(본인부담 6만원까지) 7.(복지부_지투)시각장애인안마 ·(기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이용료 월 12.2만원(본인부담 1.4만원), 10개월 8.(복지부_지투)노인맞춤형운동처방 ·(기준)전국가구 평균 소득 120%이하, 이용료 월 12만원 내외(본인부담 1.2만원), 12개월 10.(복지부_지투)정신질환자도탈케어 ·(기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용료 월 16만원 (본인부담1.6만원), 12개월 12.(복지부_지투)장애인노인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 ·(기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이용료 월 19만원 내외(본인부담 1.9만원) 13.(복지부_지투)치매예방: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본인부담 1만원) 14.(복지부_지투)U-Health: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본인부담 5천원) 15.(복지부_지투)재활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본인부담 1만원)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 (사업예산 및 수혜자) 2013년 기준,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총예산은 총 1,957억 원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약 24.8만 명으로 파악

⇒(예산 구성) 전체예산 중 발달재활 사업이 총 578억 원으로 29.5%를 차지

⇒(수혜자) 전체 수혜자 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사업이 89만 명으로 36.1%를 차지

〈표 2-23〉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사업예산(국비)			예산구성	대상자 규모(명)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영유아발달지원(복지부_지투)	-	2,225	-	-국비+지방비	-	3,287	-
2.(비만)아동관리(복지부_지투)	-	3,013	-	-국비+지방비	-	8,022	-
3.스포츠바우처(문체부)	10,584	10,584	10,584	-국비+지방비+기타	30,000	30,000	30,000
4.신나는 주말생활 체육학교 (문체부,교육부)	12,609	22,116	22,116	-국비+지방비	95,780	491,583	405,906
	22,200	22,200	22,200	-국비+지방비	200,000	200,000	200,000
5.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48,111	57,811	60,811	-국비+지방비	35,330	46,979	46,753
6.언어발달지원(복지부)	2,412	1,930	1,930	-국비+지방비	1,103	947	924
7.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	13,936	-	-국비+지방비	-	20,626	-
8.노인맞춤형운동(복지부_지투)	-	6,802	-	-국비+지방비	-	12,300	-
9.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27,464	30,502	30,502	-국비+지방비	890,278	742,756	-
10.정신질환자토탈케어(복지부_지투)	-	4,567	-	-국비+지방비	-	3,308	-
11.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2,380	2,893	2,893	-국비+지방비	657,000	895,000	423,800
12.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복지부_지투)	-	11,132	-	-국비+지방비	-	15,429	-
13.치매예방(복지부_지투)	-	4,226	-	-국비+지방비	-	4,297	-
14.U-Health(복지부-지투)	-	1,183	-	-국비+지방비	-	3,116	-
15.재활지원(복지부_지투)	-	620	-	-국비+지방비	-	697	-

주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예산구성)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주2.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대상자규모는 월별 누적합계인원임

□ (사업체 현황) 건강관리 부문 15개 사업의 사업체는 2013년 기준 약 10,790개로 파악되며, 평균 종사자 규모가 5인 이하인 사업은 총 14개 중 4개임

○ (수행기관 성격) 15개 사업 중 개인사업체 또는 영리회사가 포함된 사업은 11개이며, 등록제 형식의 사업체 선정은 9개

〈표 2-24〉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수('13)	기관 종사자(명)
1. 영유아발달지원(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28	4.2명(실적치)
2.(비만)아동관리(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04	5.5명(실적치)
3.스포츠바우처(문체부)	-개인사업체 90%	-지정제	-	2명(실적치)
4.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문체·교육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29	15명(추정치)
5.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7,873	-
6.언어발달지원(복지부)	-개인사업체 62.3% -사회복지,비영리기관 32.3%	-지정제	1,520	3.4명(실적치)
7.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305	2.7명(실적치)
8.노인맞춤형운동처방(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16	5.5명(실적치)
9.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29	10명(실적치)
10.정신질환자 토달케어(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67	5.3명(실적치)
11.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16	230명(실적치)
12.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12	7.6명(실적치)
13.치매예방(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63	8.5명(실적치)
14.U-Health(복지부-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3	7.3명(실적치)
15.재활지원(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5	7.4명(실적치)

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사업선정방식)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 (기관 관리) 15개 사업 중 지자체에서 실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14개이나, 서비스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한 경우는 복지부 사업이외에는 부재함

○ (서비스 비용 지급) 서비스 비용은 모두 기관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이 서비스 수가를 포함해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경우는 15개 사업 중 2개임

〈표 2-25〉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비용지급 대상	지급방식	기관 실사 현황	시정 또는 영업중지 현황 (개)
1.영유아발달지원(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2.(비만)아동관리(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3.스포츠바우처(문체부)	-기관	-서비스 비용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1회/1년	-無
4.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문체_교육부)	-기관	-서비스 비용	-중앙정부 1회/1년 -지자체 1회/1년	-無
5.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기관	-서비스비용+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1회/1년	-시정조치(411개)
6.언어발달지원(복지부)	-기관	-서비스비용+운영비	-중앙정부 3회/1년 -지자체 3회/1년	-시정조치(90개)
7.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8.노인맞춤형운동처방(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9.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기관	-운영비	-지자체 상시/1년	-無
10.정신질환자도탈케어(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11.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기관	-서비스비용+운영비	-	-無
12.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13.치매예방(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14.U-Health(복지부-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15.재활지원(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주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비용지급,방식,실사,시정현황)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정조치 전체 현황은 2013년 기준 영업정지 10회, 해당사업퇴출 2회, 시정조치 20가 존재

□ (근로자 관리 현황) 건강관리 부문 15개 사업의 근로자 규모는 2.4만 명이며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개 사업 중 10개임

○ (근로자성 인정) 법정 근로 지급 수당인 7개 수당 지급 여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문제부의 어르신 생활지도자 사업 1개 사업뿐임

〈표 2-26〉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단위: 명, 만원, 시간)

구분	근로자 규모	월평균 임금	임금 지급	월평균 근무시간	7대 법정근로 수당 지급 여부
1.영유아발달지원 (복지부_지투)	544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2.(비만)아동관리 (복지부_지투)	574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3.스포츠마우처 (문체부)	3	200	-모름	40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4.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 (문체교육부)	15	24	-	12	-
	11,448	40	-시급제	12.64	-고용, 연장,야간 휴일, 無
5.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5,166	156	-모름	4.4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6.언어발달지원(복지부)	280	-	-모름	-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7.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848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8.노인맞춤형운동처방(복지부_지투)	649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9.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2,230	202	-월급제	160	-모두 제공
10.정신질환자토탈케어(복지부_지투)	370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11.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230	179	-월급제	160	-연장, 휴일, 주휴수당 無
12.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복지부_지투)	858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13.치매예방 (복지부_지투)	536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14.U-Health(복지부_지투)	95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15.재활지원(복지부_지투)	112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월평균임금, 임금지급, 월평균근무시간)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4.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 (사업개관) 범부처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업은 총 14개로 복지부가 5개, 보훈처 등 타 부처가 9개를 실시 중

○ (연령대) 20대~64세 이하에 총 8개 사업이 집중된 반면, 아동청소년과 노인 일자리는 각각 1개에 불과

〈표 2-27〉 복지부 대비 타 부처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구분	연령	복지부 (5개)		복지부 외 타부처 (9개)	
영유아	0세~5세	-		-	
아동·청소년	6~18세	-		1.(여가부)미혼모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 제공, 미혼모자시설 제공	
청년	20대~30대	-	2. 자활근로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 등 5대 전국 표준화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12.(보훈처)제대군인직업교육 훈련바우처 -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공인 외국어 시험과목 등 지원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바우처 지급 14.(보훈처)제대군인사회적 일자리지원 - 적극적 기업협력 활동을 통한 일자리 발굴(MOU 체결)	6.(여가부)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취업상담 운영,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사업 등 취업지원 7.(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상담(1개월), 취업알선(2~4주), 직업훈련(6개월), 집중취업알선(3개월) 9.(보훈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 - 컨설팅, 교육훈련, 행정지원,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경력 전환 및 사회진출 지원 10.(보훈처)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 - 컨설팅, 교육훈련, 행정지원,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경력 전환 및 사회진출 지원
중·장년	40대~64세	-	13 장애인사회참여지원 - 직업생활준비, 자격증취득 등 창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준비	-	-
노인	65세 이상	11. 노인일자리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경비 지원		-	
전체 연령		3. 장애인 일자리 -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하여 운영비, 인건비 지원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지원		5. (통일부)탈북민 원스톱취업지원 - 취업지원센터 직업상담사가 이력서작성, 면접, 클리닉 지원, 심화교육 특강 진행 8.(법무부)출소자 갱생지원 - 직업훈련, 취업알선, 출소자 법률상담, 출소자 자녀 학업지원	

- (소득별) 총 14개 사업 중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3개이며, 기타 11개 사업은 실업이나 미취업 등 직장을 원하는 전 연령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 ⇒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부처별 사업으로는 복지부가 2개이며, 여성가족부가 1개로 파악
- ⇒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부처별 사업으로는 보건처가 4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복지부(3개), 통일부,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가 각 1개임

〈표 2-28〉 소득기준 유무별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구분	연령	사회참여지원 서비스			
		소득기준 有		모든 소득 계층	
영유아	0세~5세	-		-	
아동·청소년	6~18세	1.미혼모 자립지원(여가부)		-	
청년	20대~30대	-	2.자활근로(복지부) 13.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지투)	12.제대군인직업교육 훈련바우처(보건처) 14.제대군인사회적일자리지원(보건처)	6.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가부) 7.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9.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보건처)
중·장년	40대~64세	-		-	10.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보건처)
노인	65세 이상	-		11.노인일자리(복지부)	
전체 연령		-		3.장애인 일자리(복지부) 4.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복지부) 5.탈북민 원스톱취업지원(통일부) 8.출소자 갱생지원(법무부)	
소득기준 존재 시 세부 기준		1.(여가부) 미혼모자립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2.(복지부)자활근로 ·18-64세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13.(복지부_지투) 장애인사회참여지원 ·18-64세의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본인부담금 1~6만원			

자료. 각 부처 사업지침서

- (사업예산 및 수혜자) 2013년 기준, 12개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총예산은 총 5,519억 원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약 104만 명으로 파악
- ⇒(분석기준)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보훈처) 사업에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 사업과 제대군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포함
- ⇒(예산 구성) 전체예산 중 노인일자리사업이 총 2,284억 원으로 41.4%를 차지
- ⇒(수혜자) 전체 수혜자 중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은 32만 명으로 30.7%를 차지

〈표 2-29〉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4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사업예산(국비)			예산구성	대상자 규모(명)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미혼모자립지원(여가부)	5,155	3,749	3,460	-국비+지방비	2,300	2,400	2,500
2.자활근로(복지부)	7,202	22,531	52,865	-국비+지방비+기타	60,000	66,000	60,000
3.장애인 일자리(복지부)	31,087	49,549	60,426	-국비+지방비	10,800	14,500	14,500
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복지부)	16,700	17,200	17,600	-국비	99,071	96,125	49,560
5.탈북민 원스톱취업지원(통일부)	405	765	853	-국비	1,235	1,647	2,000
6.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부)	28,300	38,100	40,900	-국비+지방비	210,000	320,000	-
7.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139,620	169,642	217,085	-국비	143,000	209,000	74,000
8.출소자 갱생지원(법무부)	4,565	4,607	5,145	-국비	4,193	4,535	2,597
9.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전직지원(보훈처)	10,845	11,858	16,407	-국비+지방비+기타	56,201	57,099	23,086
10.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지원(보훈처)	3,730	3,754	3,935	-국비	4,193	4,535	2,597
11.노인일자리(복지부)	67,207	228,484	287,011	-국비+지방비	248,395	261,598	310,000
13.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지투)	-	1,746	-	-국비+지방비	-	1,586	-

주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예산구성)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2. (보훈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사업 현황에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사업과 제대군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포함하여 분석

□ (사업체 현황) 총 12개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업체는 13년 기준 약 2,896개이며, 평균 종사자 규모가 5인 미만인 사업은 1개였음

○ (수행기관 성격) 12개 사업 중 개인사업체 또는 영리회사가 포함된 사업은 3개이며, 경쟁입찰을 포함한 등록제 형식 사업체 선정은 5개로 파악

〈표 2-30〉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 수('13)	기관 종사자 (명)
1.미혼모자립지원(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50% -정부·지자체·산하기관 50%	-등록제	120	5명(실적치)
2.자활근로(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수의계약	258	6명(추정치)
3.장애인일자리(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67%	-지정제	626	-
4.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지정제	192	10명(추정치)
5.탈북민 원스톱취업지원(통일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60% -정부·지자체·산하기관 40%	-지정제	29	2명(추정치)
6.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50% -정부·지자체·산하기관 50%	-지정제	120	13명(실적치)
7.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68%	-경쟁입찰	275	16명(추정치)
8.출소자 갱생지원(법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80% -사회복지,비영리기관 20%	-인가제	8	50(실적치)
9.장기복무 전역 예정군인 전직지원(보훈처)	-개인사업체 90%	-경쟁입찰	2	70명(실적치)
10.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지원(보훈처)	-주식회사 100%	-경쟁입찰	2	70명(실적치)
11.노인일자리(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83.7%	-지정제	1,221	8명(추정치)
13.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43	8.6명(실적치)

주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사업수행기관,선정방식)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2. (보훈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사업 현황에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사업과 제대군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이 포함됨

□ (기관 관리) 기관 실사가 있는 11개 사업 중 지자체에서 실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5개에 불과하며, 서비스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한 경우는 6개 사업임

○ (서비스 비용 지급) 서비스 비용 지급대상이 기관인 경우는 12개 사업 중 11개였으며, 지급방식이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경우는 2개로 파악

〈표 2-31〉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구분	비용지급 대상	지급방식	기관 실사 현황	시정조치 또는 영업증지 현황
1.미혼모자립지원(여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자체 4회/1년	-無
2.자활근로(복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1회/1년 -지자체 1회/1년	-無
3.장애인 일자리(복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1회/1년	-無
4.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복지부)	-중사자+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4.5회/1년	-시정조치(125개)
5.탈북민 원스톱취업지원(통일부)	-기관	-인건비	-	-無
6.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부)	-기관	-인건비	-중앙정부 1회/1년 -지자체 2회/1년	-사업퇴출(3개)
7.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시정조치(35개) -사업퇴출(10개)
8.출소자 갱생지원(법무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1회/1년	-無
9.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전직지원(보훈처)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시정조치(1개)
10.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지원(보훈처)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1회/1년	-無
11.노인일자리(복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1회/1년 -지자체 1회/1년	-시정조치(53개) -사업퇴출(1개)
13.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회/1년	-

주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사항(비용지급, 방식, 실사, 시정현황)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주2. (보훈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사업 현황에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마우처사업과 제대군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이 포함됨

□ (근로자 관리 현황) 사회참여부문 12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천4백 명이며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2개 존재함

- (근로자 규모산정) 장애인 일자리 사업(복지부)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부)의 경우 무응답으로 자료 제출
- (근로자성 인정) 법정 근로 지급 수당인 7개 수당 지급 여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출소자갱생지원 사업 1개 사업뿐임

〈표 2-32〉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단위: 명, 만원, 시간)

구분	근로자 규모 ('13)	월평균 임금	임금 지급	월평균 근무시간	7대 법정근로 수당 지급 여부
1.미혼모자립지원(여가부)	600	200	-월급제	160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無
2.자활근로(복지부)	1,597	200	-월급제	160	-야간,주휴,연차,퇴직금 無
3.장애인 일자리(복지부)	-	-	-월급제	209	-
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복지부)	310	232	-월급제	209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無
5.탈북민 원스톱취업지원(통일부)	16	180	-월급제	200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無
6.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부)	790	158	-월급제	160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無
7.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	170	-월급제	40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無
8.출소자 갱생지원(법무부)	400	180	-월급제	160	-모두 지원
9.장기복무 전역 예정군인 전직지원(보훈처)	70	191	-월급제	176	-주휴수당 無
10.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지원(보훈처)	70	250	-월급제	195	-야간, 주휴수당 無
11.노인일자리(복지부)	209	20	-월급제	20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無
13.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지투)	372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無

주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월평균임금, 임금지급, 월평균근무시간)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2. (보훈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사업 현황에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사업과 제대군인 사회적일 자리 지원사업 현황이 포함됨

5. 문화 부문 사회서비스

□ (사업개관) 범부처 문화예술 부문 사업은 총 7개로 문체부가 모든 사업을 담당 하고 있음

○ (연령대) 5세 미만에 2개, 65세 이상이 2개로 영유아 및 노인 대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연령대의 경우 3개 사업이 추진 중

〈표 2-33〉 복지부 대비 타 부처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구분	연령	복지부	복지부 외 타부처 (7개)
영유아	0세~5세	-	3. (문체부)예술꽃 씨앗학교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운영의지가 높은 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지원
아동·청소년	6~18세	-	2. (문체부)예술강사지원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악, 연극, 무용, 만화, 디자인 등 8개분야 강사를 초·중·고교에 파견
청년	20대~30대	-	-
중·장년	40대~64세	-	-
노인	65세 이상	-	1. (문체부)이야기할머니 -일정한 교육을 마친 후 손자세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 4. (문체부)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문화학교, 동아리활동, 생활문화 전승 등 문화향유 증진
전체 연령		-	5. (문체부)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국·공립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야간개장 및 개관시간 연장으로 시설접근성 강화 6. (문체부)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배우치 -공연, 전시, 영화관람, 국내여행상품, 워터파크,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지원, 문화이용권(가구당 5만원), 여행이용권(가구당 15만원), 스포츠관람이용권(가구당 12만원) 지원 7. (문체부)문화전문인력파견 -문화복지 및 여가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문화복지 및 서비스 기획, 제공하는 사람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 (소득별) 총 7개 사업 중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1개이며, 기타 6개는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치 않음

⇒ 소득기준이 있는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바우처 사업은 공연, 전시, 영화관람, 국내여행상품, 워터파크,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시, 문화이용권(가구당 5만원), 여행이용권(가구당 15만원), 스포츠관람이용권(가구당 12만원)을 지원

〈표 2-34〉 소득기준 유무별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구분	연령	문화 서비스	
		소득기준 有	모든 소득 계층
영유아	0세~5세	-	3. 예술꽃 씨앗학교(문체부)
아동·청소년	6~18세	-	2. 예술강사지원(문체부)
청년	20대~30대	-	-
중·장년	40대~64세	-	-
노인	65세 이상	-	1. 이야기할머니(문체부) 4.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문체부)
전체 연령		6.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바우처(문체부)	5.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문체부) 7. 문화복지사(문체부)
소득기준 존재 시 세부 기준		6.(문체부)문화여행스포츠관람 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거주자, 복지시설단체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 (사업예산 및 수혜자) 2013년 기준,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총예산은 총 527억 원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290만 명으로 파악

⇒ (예산 구성) 전체 예산 중 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 사업이 총 349억 원으로 66.2%를 차지

⇒ (수혜자) 전체 수혜자 중 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 부문은 163만 명으로 56.4%를 차지

〈표 2-35〉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및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사업예산(국비)			예산구성	대상자 규모(명)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이야기할머니(문체부)	2,000	4,730	7,110	-국비	300	917	1,504
2.예술강사지원 (문체부)	4,388	5,500	8,065	-국비	10,193	12,276	12,100
3.예술꽃 씨앗학교 (문체부)	2,500	2,500	3,500	-국비	3,400	3,400	4,000
4.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체부)	3,453	4,053	4,053	-국비	11,804	13,872	12,000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 (문체부)	34,300	34,946	51,791	-국비+지방비+별도기금	1,605,115	1,638,737	1,062,181
7.문화복지사(문체부)	450	1,000	1,200	-국비+지방비	-	1,235,000	1,450,000

주.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는 별도 사업이 아닌 관람시간 연장인 관계로 사업현황에서 제외

□ (사업체 현황) 문화 부문 사업체는 2013년 기준 약 327개로 파악되며, 평균 종사자 규모가 5인 이하인 사업은 총 6개 중 2개임

○ (수행기관 성격) 6개 사업 중 개인사업체 또는 영리회사가 포함된 사업은 없으며, 경쟁 입찰 형식의 사업체 선정이 2개로 파악

〈표 2-36〉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 수('13)	기관 종사자 (명)
1.이야기할머니 (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1	30명(실적치)
2.예술강사지원 (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공모제	1	-
3.예술꽃 씨앗학교 (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경쟁입찰	30	7.5명(추정치)
4.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체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	193	2.5명(추정치)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 (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70% -사회복지법인 30%	-경쟁입찰	17	5명(실적치)
7.문화복지사 (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공모제	85	92명(실적치)

주.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는 별도 사업이 아닌 관람시간 연장인 관계로 사업현황에서 제외

□ (기관 관리) 기관 실사가 있는 사업 6개 중 지자체에서 실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3개가 있으며, 서비스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한 경우는 없음

○ (서비스 비용 지급) 서비스 비용 지급대상이 기관인 경우는 6개 사업 중 4개, 서비스 수가를 포함해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경우는 6개 사업 중 2개로 파악

〈표 2-37〉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구분	비용지급 대상	지급방식	기관 실사 현황	시정조치 또는 영입중지 현황
1.이야기할머니 (문체부)	-종사자	-서비스 수가	-중앙정부 2회/1년	-無
2.예술강사지원 (문체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1회/1년 -지자체 1회/1년	-無
3.예술꽃 씨앗학교 (문체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	-無
4.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체부)	-기관	-서비스 수가	-	-無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 (문체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1.5회/1년 -지자체 상시	-無
7.문화복지사 (문체부)	-종사자, 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자체 1회/1년	-無

주.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는 별도 사업이 아닌 관람시간 연장인 관계로 사업현황에서 제외

□ (근로자 관리 현황) 문화부문 6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885명이나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개에 불과

○ (근로자성 인정) 법정 근로 지급 수당인 7개 수당 지급 여부에서 모두 제공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

〈표 2-38〉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단위: 명, 만원, 시간)

구분	근로자 규모 ('13)	월평균 임금	임금 지급	월평균 근무 시간	7대 법정근로 수당 지급 여부
1.이야기할머니 (문체부)	30	200	-월급제	176	-고용보험 無
2.예술강사지원 (문체부)	373	-	-	-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퇴직금 無
3.예술꽃 씨앗학교(문체부)	307	40	-시급제	10	-고용, 연장, 야간, 주휴, 연차, 퇴직금 無
4.어르신문화프로그램(문체부)	3	150	-월급제	180	-근로자성 인정 안 됨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문체부)	72	150	-월급제	200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無
7.문화복지사(문체부)	100	150	-월급제	176	-주휴, 퇴직금 無

주. (문화부)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는 별도 사업이 아닌 관람시간 연장인 관계로 사업현황에서 제외

6.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 (사업개관) 범부처 학습지원 사업은 총 7개로 복지부가 2개, 교육부 등 타 부처가 5개로 구성

○ (연령대) 10대 이하에 총 6개 사업이 집중된 반면, 20~40대, 노인 대상의 사업은 없으며,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평생학습지원센터 1개임

〈표 2-39〉 복지부 대비 타 부처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구분	복지부(2개)		복지부 외 타부처(5개)	
영유아 0~5세	1. 아동인지서비스 -책 읽어주기, 돌후 활동, 도서지급, 부모대상 독서지도 등 상담제공 후 균형적발달 도모		-	4. (여가부)다문화가정자녀언어 발달지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언어평가, 부모상담 및 교육, 역량강화교육(언어발달, 촉진학과)
아동·청소년 6~18세		2.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서비스, 학습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3. (교육부)다문화예비학교 -일반학교에 재학중이나 언어적, 문화적차이로 학교부적응경험하는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 문화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교육중도탈락을 방지	5. (여가부)레인보우스쿨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적응 지원프로그램(레인보우스쿨)로 한국어교육, 문화이해, 진로 지원 운영 6. (교육부)탈북청소년 학생지원 -대안 교육시설로, 학교수업 후 수업 진행, 위탁운영지원 방식
청년 20~30대	-	-	-	-
중·장년 40~64세	-	-	-	-
노인 65세이상	-	-	-	-
전체연령	-	-	7. (교육부)행복학습지원센터 -평생학습기관으로부터 원거리 주민들에게 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형성	-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 (소득별) 총 7개 사업 중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2개이며, 대부분 저소득 계층에 집중

⇒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부처별 사업은 복지부가 2개이며, 다른 부처의 사업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함

〈표 2-40〉 소득기준 유무별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구분	소득기준 有 (2개)		모든 소득 계층 (5개)	
영유아 0~5세	1. 아동인지서비스 (복지부_지투)	2.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복지부_지투)	-	4. 다문화가정자녀언어 발달지원 (여가부) 5. 레인보우스쿨 (여가부)
아동· 청소년 6~18세	-		3.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부)	6. 탈북청소년 학생지원 (교육부)
청년 20~30대	-	-	-	-
중·장년 40~64세	-	-	-	-
노인 65세 이상	-	-	-	-
전체 연령	-	-	7. 행복학습지원센터(교육부)	-
소득기준 존재 시 세부 기준	1.(복지부_지투)아동인지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용료: 월 2.5만원, 10개월 2.(복지부_지투)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용료 월 12만원 내외(본인부담 1.2만원), 12개월			

○ (사업예산 및 수혜자) 2013년 기준, 학습지원부문 사회서비스 총예산은 총 467억 원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약 36만 명으로 파악

⇒ (예산 구성) 전체예산 중 아동인지서비스 지투사업이 총 388억 원으로 82.9% 를 차지

⇒ (수혜자) 전체 수혜자 중 아동인지서비스 지투사업의 이용대상이 7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41〉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사업예산(국비)			예산구성	대상자 규모(명)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아동인지서비스(복지부_지투)	-	38,819	-	-국비+지방비	-	258,933	-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복지부_지투)	-	1,870	-	-국비+지방비	-	2,426	-
3.다문화 예비학교(교육부)	-	-	-	-지방비	-	-	-
6.탈북청소년 학생지원(교육부)	-	4,200	-	-국비+지방비	-	2022	-
7.행복학습지원센터(교육부)	-	1,896	-	-국비	-	94,500	-

주 1. (교육부)행복학습지원센터과 탈북청소년 학생지원 사업은 미제출로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참고, 다문화예비학교사업은 지자체예산 사업으로 국비예산이 없음

2. (여가부) 다문화가정자녀언어 발달지원, 레인보우스쿨 사업은 상담부문의 다문화지원센터 소속 사업으로 분석 제외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 (사업체 현황) 학습지원 부문 4개 사업의 사업체는 2013년 기준 약 171개이며, 평균 종사자 규모가 5인 이하인 사업은 총 3개 중 2개임

○ (수행기관 성격) 5개 사업 중 시·도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3개이며, 경쟁입찰을 포함한 등록제 형식 사업체 선정은 3개로 파악

〈표 2-42〉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수('13)	기관종사자(명)
1.아동인지서비스(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9	-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26	11.0명(추정치)
3.다문화 예비학교(교육부)	-학교다문화교육위탁기관 100%	-경쟁입찰	52	-
6.탈북청소년 학생지원(교육부)	-학교 지역연계기관 100%	-지정제	-	1명(추정치)
7.행복학습지원센터(교육부)	-학교 지역연계기관 100%	-지정제	84	1명(추정치)

주 1. (교육부)행복학습지원센터 사업과 탈북청소년 학생지원 사업은 미제출로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참고,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사업은 지자체예산 사업으로 국비예산이 없음
 2. (여가부) 다문화가정자녀언어 발달지원, 레인보우스쿨 사업은 상담부문의 다문화지원센터 소속 사업으로 분석 제외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 (기관 관리) 실사가 있는 사업 중 지자체가 실시하는 경우는 2개이며, 서비스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한 경우는 복지부 지투사업에 한정

○ (서비스 비용 지급) 비용 지급대상이 기관인 경우는 5개 사업 모두이며, 지급방식이 서비스 수가 등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경우는 5개 사업 중 1개로 파악

〈표 2-43〉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구분	비용지급 대상	지급방식	기관 실사 현황	시정 또는 영업 중지 현황 (개)
1.아동인지서비스(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 중앙정부 2회/1년 - 지자체 4 회/1년	-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복지부_지투)	-기관	-인건비+운영비	- 중앙정부 2회/1년 - 지자체 4 회/1년	-
3.다문화 예비학교(교육부)	-기관	-서비스+운영비	-	-
6.탈북청소년 학생지원(교육부)	-기관	-서비스비용	-	-
7.행복학습지원센터(교육부)	-기관	-운영비	-	-

주 1. (교육부)행복학습지원센터 사업과 탈북청소년 학생지원 사업은 미제출로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참고
 2. (여가부) 다문화가정자녀언어 발달지원, 레인보우스쿨 사업은 상담부문의 다문화지원센터 소속사업으로 분석 제외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4. 복지부 전체 30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13년 기준 영업중지(10), 해당 사업 퇴출(2), 시정조치(20)이 존재

□ (근로자 관리 현황) 학습지원 부문 5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4만 명이
나 대부분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

○ (근로자성 인정) 법정 근로 지급 수당인 7개 수당 지급 여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학교직원인 탈북청소년 학생지원 사업 1개 사업에 불과

〈표 2-44〉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단위: 명, 만원, 시간)

구분	근로자 규모 (‘13)	월평균 임금	임금 지급	월평균 근무 시간	7대 법정근로 수당 지급 여부
1.아동인지서비스 (복지부_지투사업)	41,743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복지부_지투사업)	285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3.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부)	-	-	-월급제	-	-파악하지않음
6.탈북청소년 학생지원 (교육부)	2,022	17	-월급제	8	-모두 제공
7.행복학습지원센터(교육부)	84	-	-월급제	180	-

- 주 1. (교육부)행복학습지원센터 사업과 탈북청소년 학생지원 사업은 미제출로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
용계획개요 참고
2. (여가부) 다문화가정자녀언어 발달지원, 레인보우스쿨 사업은 상담부문의 다문화지원센터 소속사업으로 분석 제외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7.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 (사업개관) 범부처 시설이용 부문 사업은 총 6개로 복지부가 3개, 여가부 등 타 부처가 3개로 구성

○ (연령대) 10대 이하에 2개 사업이 있으며, 전체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4개 존재

〈표 2-45〉 복지부 대비 타 부처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구분	복지부(3개)	복지부 외 타부처(3개)
영유아 0~5세	1. 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 장난감 등을 대여해 주며 양육코칭서비스 제공하여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도모함	2.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맞춤형 휠체어 및 자세 유지 도구 렌탈, 점검 및 보수 서비스 제공
아동· 청소년 6~18세	-	-
청년 20~30대	-	-
중·장년 40~64세	-	-
노인 65세 이상	-	-
전체 연령	6. 청소방역_지투사업 - 청소, 방역, 세탁, 소득 주거안전 서비스	3. (여가부)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 수사지원, 신체외상치료, 심리치료, 법적지원 등 제공 4. (산자부)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지원 5. (산자부)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물품가스, 기름, 연탄보일러지원.

자료: 각 부처별 사업지침서

○ (소득별) 총 6개 사업 중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4개이며, 대부분 저소득 계층에 집중

⇒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부처별 사업은 산자부가 2개이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특별히 없음

〈표 2-46〉 소득기준 유무별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구분	소득기준 有 (4개)	모든 소득 계층 (2개)	
영유아 0~5세	1. 저소득가정 장남감대여(복지부_지투)	-	2.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
이동·청소년 6~18세	-	-	-
청년 20~30대	-	-	-
중·장년 40~64세	-	-	-
노인 65세 이상	-	-	-
전체 연령	4.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산자부) 5.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산자부) 6. 청소방역서비스(복지부_지투)	3.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여가부)	
소득기준 존재시 세부기준	1.(복지부_지투)저소득가정 장남감대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용료 월 3만원(본인부담 5천원), 12개월 4.(산자부)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 ·사회복지 시설(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5.(산자부)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6.(복지부_지투)청소방역서비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계층		

○ (사업예산 및 수혜자) 2013년 기준, 시설이용부문 사회서비스 총예산은 총 724억 원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1.4만 명으로 파악

⇒ (예산 구성) 전체 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총 411억 원으로 56.7%를 차지

⇒ (수혜자) 전체 수혜자 중 저소득층 장남감대여 사업은 약 7천명으로 53.0%를 차지

〈표 2-47〉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등 사업개관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사업예산(국비)			예산구성	대상자 규모(명)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저소득가정 장남감대여 (복지부_지투사업)	-	2,967	-	-국비+지방비	-	7,847	-
2.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	2,229	-	-국비+지방비	-	2,658	-
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11,691	12,293	13,550	-국비+지방비 +기타예산	-	-	-
4.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자부)	23,070	9,659	6,212	-국비+지방비 +기타예산	-	-	-
5.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29,600	41,100	-	-국비	29,628	-	-
6.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	4,226	-	-국비+지방비	-	4,297	-

주 1.(여가부)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미제출로,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참고
2.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

로 대체

□ (사업체 현황) 시설이용 부문 사업체는 2013년 기준 약 423개로 파악되며, 평균 종사자 규모가 5인 이하인 사업은 총 6개 중 3개에 달함

○ (수행기관 성격) 6개 사업 중 개인사업체 또는 영리회사가 포함된 사업은 3개이며, 경쟁입찰을 포함한 등록제 형식 사업체 선정은 4개

〈표 2-48〉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 수('13)	기관 종사자 (명)
1.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복지부_지투자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07	4.1
2.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자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51	3.6
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비영리기관 100%	-지정제	33	15(추정치)
4.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자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65%	-경쟁입찰	229	2명(추정치)
5.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1	-
6.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자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2	8.0

주 1.(여가부)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미제출로,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참고
 2.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사업수행기관,선정방식)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 (기관 관리) 기관 실사가 있는 사업 6개 중 지자체에서 실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4개며, 서비스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한 경우는 1개에 불과

○ (시정조치)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제외 시 타부처 3개 사업 중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산자부의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1개임

○ (서비스 비용 지급) 비용 지급대상이 기관인 경우는 6개 사업 중 6개 모두이며, 지급방식이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경우는 6개 중 2개로 파악

〈표 2-49〉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체 관리 현황

구분	비용지급 대상	지급방식	기관 실사 현황	시정 또는 영업증지 현황 (개)
1.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복지부_지투사업)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2.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자체 1 회/1년	-
4.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자부)	-기관	-서비스비용	-실태조사	-시정조치(66)
5.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기관	-서비스비용	-	-
6.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기관	-인건비+운영비	-중앙정부 2회/1년 -지자체 4 회/1년	-

주 1.(여가부)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미제출로,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참고
 2.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비용지급,방식,실사,시정현황)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3.복지부 전체 30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13년 기준 영업증지(10), 해당 사업 퇴출(2), 시정조치(20)이 존재

□ (근로자 관리 현황) 시설이용 부문 6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6천 명이 나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개 존재함

○ (근로자성 인정) 법정 근로 지급 수당인 7개 수당 지급 여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1개임

〈표 2-50〉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근로자 관리 현황

(단위: 명, 만원, 시간)

구분	근로자 규모('13)	월평균 임금	임금 지급	월평균 근무 시간	7대 법정근로 수당 지급 여부
1.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복지부_지투사업)	436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2.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185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495	210	-월급제	176	-모두제공
4.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	-	-	-	-
5.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	-	-	-
6.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536	77	-월급제	47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 無

주 1. (여가부)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미제출로,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참고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월평균임금, 임금지급, 월평균근무시간)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제3절 현 사회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협동조합의 보완관계

- (문제점) 현 사회서비스 산업의 문제점은 사업체의 소규모와 이에 따른 근로자의 낮은 처우,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관리미흡 등 3개 부문으로 요약
 - (사업체) 82개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 중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인 경우가 57개(69.5%)에 달함
 - (근로자 처우)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도 총 82개 사업 중 45개로 52.8%에 달하며, 7대 법정 근로수당을 모두 제공하는 사업은 7개에 불과
 - (사업체관리) 조사된 78개 사업 중 지자체 실사 시행사업은 54개이며, 2013년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업은 41개 사업임

- (사회적협동조합 정의)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말함
 - (설립근거) 농협 등 개별법이 아닌 2011년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협동조합임
 - (사업비중) 주 사업 중 비영리부분이 40%이상, 영리부분은 60%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영리사업을 통해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인형태
 - (이윤배당)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이윤발생시 개인배당이 금지되며, 청산시에도 잔여재산이 국고, 협회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
 - (설립과정)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만으로 설립되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
 - (적립금 한도) 영리법인의 경우 잉여금의 10%이상만 협동조합에 적립해도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 30%이상 적립이 의무

〈표 2-51〉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사 업	■ 금융·보험업 금지 외 제한 분야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다만 조합원 대상 소액 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을 재정리

□ (보완관계 1: 규모화)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설립 요건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컨소시엄 등 연대 사업으로 어느 정도 규모화가 가능

- (국내외 비교)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규모는 7.1명인데 반해 이탈리아는 22.8명, 프랑스는 24.3명, 스웨덴은 17.7명으로 파악
- (설립조건) 설립 시 조합원 규모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이나 개인사업체와 달리 협동조합은 한국의 경우 5명, 이탈리아는 9명 등으로 설정

〈표 2-52〉 주요국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 비교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규모
한국(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체)	101,372	716,748	7.1
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	13,938	317,339	22.8
프랑스(사회적경제)	58,814	1,430,969	24.3
영국(사회적기업)	70,000	723,200	10.3
스웨덴(사회적협동조합)	3,455	61,375	17.7

주: 한국 자료는 본고의 공무원 조사에 근거, 이탈리아는 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aial Enterprise(2008), 프랑스는 Insee-Clap(Connaissance Locale de L'Appareil Productif(2011) 자료중 공공행정·교육·보건·사회복지 부문에 소속적 사회적경제기관 및 종사자 수, 영국은 BMG Research(201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ds, Cabinet Office자료 중 고용이 존재하는 사회적기업만을, 스웨덴은 스웨덴 협동조합 생산자연합회 소속 협동조합 중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관련 5개 부문의 협동조합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

○ (자원봉사자) 비영리 법인 성격으로 인해 직원의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협동조합의 일시적 근로자로 참여가 가능

⇒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가입 등을 법률적으로 의무화

○ (연대 사업) 영리기업 대비 규모가 작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탈리아 등 각국 정부는 정부조달사업에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촉진

□ (보완관계 2: 근로자 처우) 이윤발생 시, 개인 배당 등의 금지로 직원 근로조건 개선에 우선 투자하고, 연합회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처우를 개선

○ (국내외 임금 비교)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의 사회적협동조합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반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82.6~94.0%에 이르나 한국은 63.8% 수준에 불과

⇒ 사회적협동조합은 개인 이윤배당이 금지되어 있어 법정적립금 적립이후 잔여 잉여금을 근로자 처우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함

○ (단체협약) 개별 사회적협동조합들은 노조를 설립하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연합회 차원에서 매년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 추진이 가능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년 청소부에서 CEO에 이르기까지 10개 직군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체협약을 추진

〈표 2-53〉 주요국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임금과 일반경제 종사자의 임금 비교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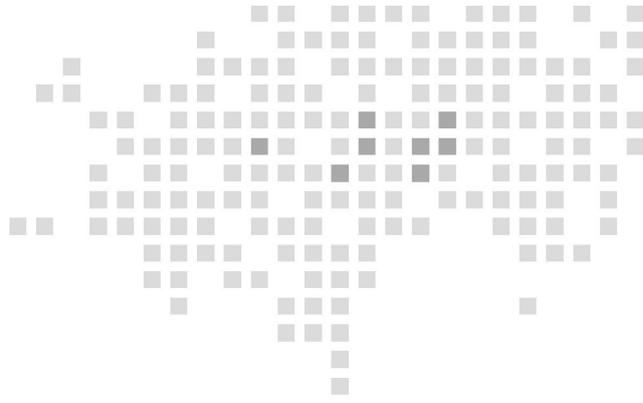
구분	평균임금	비교대상군	대상군 대비
한국(돌봄사회서비스업)	136만원	213만원	63.8%
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	1,710유로	1,936유로	88.3%
프랑스(사회적경제)	1,668유로	1,739유로	94.0%
스웨덴(사회적협동조합)	24,625크로네	29,800크로네	82.6%

주: 한국자료는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분석자가 사회서비스 특수 분류에 의해 분석한 자료임, 이탈리아는 2009년 사회적협동조합 단체협약상의 10개 직무군 중 임금지급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산업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과 비교한 자료임, 프랑스는 2006년 기준 프랑스 북부 노르빠드칼레 지방의 사회적경제기관 대비 비사회적경제 기관 대비 월 평균 급여(세후 급여)비교 자료임, 스웨덴은 스웨덴협동조합고용위원회가 파악한 비영리단체, 유치원 등 4개 세부업종의 사회적협동조합 종사자 평균임금과 전산업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비교한 자료임

- (보완관계 3: 사업체 관리) 협동조합들의 연대조직인 협동조합연합회로 하여금 지역내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대행이 가능
 - (해외사례)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등 관리권을 지역 내 협동조합 연합회에 이관
 - ⇒ 중앙부처는 협동조합 등 정부정책에 대한 기획을, 지자체는 설립신고 등 행정 업무를 담당
 - ⇒ 반면에 협동조합연합회는 회계 등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취소 등을 지자체 및 중앙 정부에 보고하는 시스템
 - (자정작용) 지역에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 협동조합들에 대한 사업연대 및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체들의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
 -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년 청소부에서 CEO에 이르기까지 10개 직군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체협약을 추진

〈표 2-54〉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구분	정부	협동조합 연합회
프랑스	-(중앙정부) 경제재무부 산하 차관급인 사회연대경제 위임 장관이 사회연대국을 관할 ·(역할) 사회적기업 및 지역개발 정책 포함 -(감독조직) 사회연대국 산하 협동조합고등평의회 ·(위탁)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인 CG SCOP에게 감사와 5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위탁 -(지자체) 지방법원이 등록 및 법률문제를 담당	-(관리) 정부와 연계하여 조사감독관을 통해 2년 주기의 실태조사와 수시 방문감사를 시행 ·(감사) 22개 지역연합체로 구성,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인 CG SCOP이 감독조사관을 고용, 감사 담당 ·(감독조사관) 경제, 재무, 경영 전문가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으로써 고등평의회 심사를 거침
이탈리아	-(중앙정부) 경제개발부내 국제업무부, 지역개발 경제부 2개 부처가 정책을 담당 ·(기금관리) 협동조합 이익 중 3% 기반 ·(정책) 조세감면, 사회서비스 우선권 부여 등 ·(행정) 등록, 2년 주기 실태조사 기획 담당 ·(감독) 연합회 미가입 협동조합 지원 및 감독, 연합회 소속 협동조합은 연합회가 감독 수행 ·(파산) 정부가 법정관리인 선임권을 보유, 2년간 재무재표 미제출 협동조합은 권리박탈 -(지자체) 지방상공회의소에서 등록서비스를 담당	-(관리) 협동조합 관리 및 등록 위탁, 실태조사를 연합회에 위탁 ·(감독권) 연합회에 협동조합관리 권한부여 ·(실태조사) 중앙정부에서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실시 ·(감사)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 1년에 1번, 일반협동조합은 2년에 1번 정기 감사를 실시 ·(자료수집) 개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연차보고서 수집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의 확산 미흡 원인

제1절 개관

제2절 협동조합기본법의 제도적 측면

제3절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 측면

제4절 협동조합들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 진입장벽

3

사회적협동조합의 확산 < 미흡 원인 <

제1절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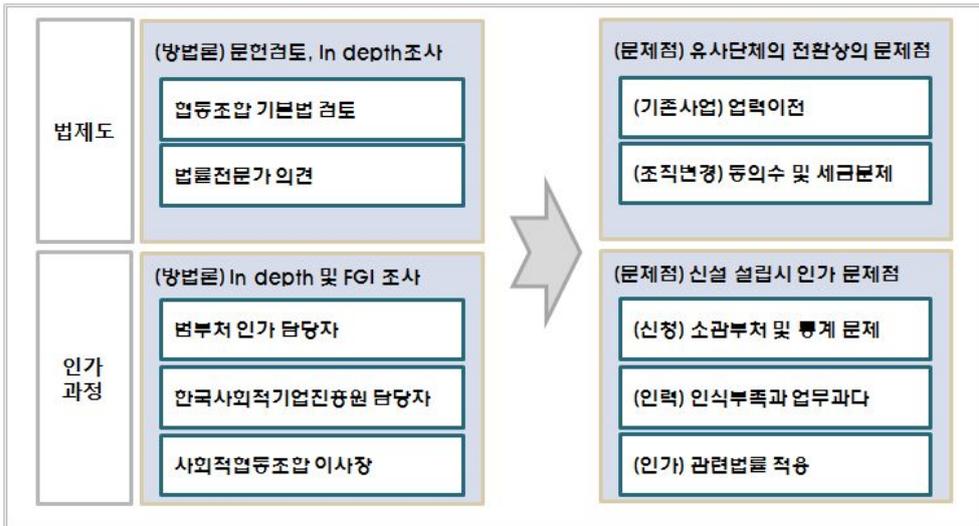
- (현황)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1년만인 2014년 1월 말 기준, 총 3,54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122개로 전체의 3.4%에 불과
- (인가) 범부처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율은 총 155개 신청에 122개 허가로 약 78.7%의 인가율을 보임
- (유형) 총 협동조합 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719개(20.1%), 직원협동조합이 255개(7.1%)로 약 974개의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가능성이 有
- (분석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과과정상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 협동조합 인가현황(2014.1기준) (단위: 명, %)		[표 3-1] 부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현황(2014.1기준) (단위: 명,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청</th> <th>인가</th> <th>%</th> <th>구분</th> <th>신청</th> <th>인가</th> <th>%</th> </tr> </thead> <tbody> <tr> <td>기획재정부</td> <td>23</td> <td>22</td> <td>95.7</td> <td>보건복지부</td> <td>27</td> <td>14</td> <td>51.9</td> </tr> <tr> <td>교육부</td> <td>26</td> <td>20</td> <td>76.9</td> <td>환경부</td> <td>3</td> <td>3</td> <td>100.0</td> </tr> <tr> <td>미래창조과학부</td> <td>1</td> <td>0</td> <td>0.0</td> <td>고용노동부</td> <td>34</td> <td>28</td> <td>82.4</td> </tr> <tr> <td>외교부</td> <td>2</td> <td>2</td> <td>100.0</td> <td>여성가족부</td> <td>5</td> <td>5</td> <td>100.0</td> </tr> <tr> <td>안전행정부</td> <td>3</td> <td>2</td> <td>66.7</td> <td>국토교통부</td> <td>3</td> <td>1</td> <td>33.3</td> </tr> <tr> <td>문화체육관광부</td> <td>7</td> <td>6</td> <td>85.7</td> <td>해양수산부</td> <td>1</td> <td>1</td> <td>100.0</td> </tr> <tr> <td>농림축산식품부</td> <td>8</td> <td>7</td> <td>87.5</td> <td>중소기업청</td> <td>3</td> <td>3</td> <td>100.0</td> </tr> <tr> <td>산업통상자원부</td> <td>5</td> <td>4</td> <td>80.0</td> <td>산림청</td> <td>4</td> <td>4</td> <td>100.0</td> </tr> </tbody> </table>				구분	신청	인가	%	구분	신청	인가	%	기획재정부	23	22	95.7	보건복지부	27	14	51.9	교육부	26	20	76.9	환경부	3	3	100.0	미래창조과학부	1	0	0.0	고용노동부	34	28	82.4	외교부	2	2	100.0	여성가족부	5	5	100.0	안전행정부	3	2	66.7	국토교통부	3	1	33.3	문화체육관광부	7	6	85.7	해양수산부	1	1	100.0	농림축산식품부	8	7	87.5	중소기업청	3	3	100.0	산업통상자원부	5	4	80.0	산림청	4	4	100.0
구분	신청	인가	%	구분	신청	인가	%																																																																						
기획재정부	23	22	95.7	보건복지부	27	14	51.9																																																																						
교육부	26	20	76.9	환경부	3	3	100.0																																																																						
미래창조과학부	1	0	0.0	고용노동부	34	28	82.4																																																																						
외교부	2	2	100.0	여성가족부	5	5	100.0																																																																						
안전행정부	3	2	66.7	국토교통부	3	1	33.3																																																																						
문화체육관광부	7	6	85.7	해양수산부	1	1	100.0																																																																						
농림축산식품부	8	7	87.5	중소기업청	3	3	100.0																																																																						
산업통상자원부	5	4	80.0	산림청	4	4	100.0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 (분석방법)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상에 포함되는 법제도적 측면과 범부처 인가과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

- (법제도)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가 인터뷰와 기존문헌 검토를 병행
 - ⇒ 법제도의 경우 유사법인 및 단체가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업력이전과 세금문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
- (인가과정)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업무담당자 인터뷰 후 범부처 인가담당 공무원 대상의 FGI를 실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담당자를 통해 인가과정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 ⇒ (범부처 담당자 FGI) 총 17개 부처 중 미래부, 고용부, 복지부, 문체부는 참석, 교육부, 해수부, 법무부는 서면으로 문제점을 제출
 - ⇒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협동조합으로의 인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사업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

[그림 3-2] 사회적협동조합 확산 미흡 문제점 파악을 위한 방법론



제2절 협동조합기본법의 제도적 측면

- (업력이전) 기존 협동조합형 유사목적 기관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업력이전이 기재부 업무지침으로만 되어 있어 법적 강제력이 취약
- (협동조합 부칙 2조) 유사목적의 기관들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본법 발효이후 2년 안에 구성원의 2/3 동의 시 전환을 허용한다는 내용
 - ⇒(업력이전) 전환에 필요한 유사목적의 협동조합형 기관들이 기존 사업유지와 관련된 업력이전에 관한 내용이 기본법 상에 누락
 - ⇒(정부재정사업) 상당수 전환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정부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업력이전 내용이 누락

〈표 3-2〉 기존 사업자의 협동조합 전환에 관한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내용

부칙 제2조 협동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p>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 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 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부터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부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p> <p>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및 제115조 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p>

자료: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 기본법

- (기재부 업무지침) 기재부의 협동조합 업무지침(p163~164) 상에 업력이전 내용이 존재하지만, 타 부처 인가업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낮음
- ⇒ (업무지침)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관련 동일법인격 부여, 권리의무관계, 인허가 승계에 관한 내용이 수록
- ⇒ (법적구속력) 업무지침이 행정지침인 만큼 법적 강제력이 취약하여 인허가 과정에 참여한 각부처 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업력이전 여부가 결정
- ⇒ (인가권한) 기재부가 가지고 있으나, 각 부처에게 권한을 위임한(협동조합기본법 116조) 관계로 기재부의 업무지침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
- ⇒ (문제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원하는 협동조합형 유사목적기관들은 각부처의 사업지침에 따라 전환이 어려운 상황

〈표 3-3〉 기존 사업자의 업력이전에 관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내용

구분	내용
동일법인격	- 법 부칙 제2조에 의해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므로 기존 조직과 신설 협동조합 법인은 동일한 법적 주체로 인정
권리의무관계	- 양자 사이에 권리의무를 이전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로 간주 ○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설립전후 동일한 법인격으로 간주 ○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의 각종 계약관계 등 기본적인 법률관계상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협동조합 권리의무로 간주
인허가 승계	- 동일법인으로 간주하므로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얻은 인허가 업력(業歷) 등의 법률적 효과는 그대로 존속함 ○ 다만, 협동조합등은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상호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신규설립 등기일자로 등기되므로 사업상 업력을 입증해야할 경우 기존 법인의 말소등기 내역(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 세무서 폐업사실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

자료: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 업무지침

□ (세금문제) 전환시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법 관련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으로 인한 세금문제가 진입장벽으로 존재

○ (조직변경) 협동조합형 유사목적의 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시 청산소득과 관련된 법인세법 78조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

⇒(법 개정) 법인세 법 78조의 법인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조항에 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

○ (배당소득) 청산 시, 출자금을 액면가치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해 기존 주주·사원·출자자에게 부여하는 의제배당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

⇒(법 개정) 소득세 법 17조 2항의 의제배당 제외 대상에 협동조합 전환의 경우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요청

〈표 3-4〉 기존 사업자의 업력이전에 관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내용

구분	내용
법인세법 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외국인이 조직 변경하는 경우에만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의 과세특례가 존재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 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료: 기획재정부·함께나눔재단, 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 및 복지개선방안 연구,p283~285.

□ (대상과 조건)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전환대상과 구성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 (전환대상) 기존 영리법인 중 개인사업체,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무한책임회사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

⇒ (문제점) 노무·회계법인 등 합자회사 형태의 전문법인들 전환이 어려움

○ (구성조건) 주식회사 등 유한책임회사와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전원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문제점) 향후 대형회사 및 기관들의 협동조합 전환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

〈표 3-5〉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일반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0조 2항 법인 등의 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 등 이라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 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 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5조 2항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의 변경) ① 이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및 법인 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 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 등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 장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자료: 기획재정부(2014),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제3절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 측면

- (개관) 법무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담당 공무원에게 FGI 및 서면 자료 요청 결과, 인가 신청 시, 소관부처 지정 등 5대 차원에서 문제점을 파악
- (자료) 총 17개 부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14년 6월 13일, 6월 20일) 간담회를 실시, 4개 부처(미래부, 고용부, 복지부, 문체부)가 참석하였고 3개 부처(교육부, 법무부, 해수부)는 질의문항을 서면제출함
- (질문)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에 기반하여 소관부처 선정기준 등 총 5개 영역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

[그림 3-3]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	[그림 3-4] FGI 관련 주요 질문
<p style="text-align: center;">설립인가신청서제출 (신청기관 → 소관부처)</p>	<p style="text-align: center;">- 소관부처 선정기준</p>
↓	↓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적검토지원요청(접수후1주일이내) (소관부처 → 진흥원)</p>	<p style="text-align: center;">- 관련부처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의견 차이 발생 사례 - 서류반려 시, 사후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형식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진흥원, 민간지원기관)</p>	
↓	↓
<p style="text-align: center;">검토보고서등송부(15일이내회신) (진흥원 → 각 소관부처)</p>	<p style="text-align: center;">- 인가불허에 관한 주요 원인 - 기재부와 관련부처 지침충돌 시, 해결방안 - 법무처 인가담당자의 업무량 -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지식</p>
<p style="text-align: center;">설립인가여부결정 (각 소관부처)</p>	
↓	↓
<p style="text-align: center;">설립인가(60일이내) (각 소관 부처)</p>	<p style="text-align: center;">- 인가과정에서의 주요 불만점 - 인가의 지자체 위임 또는 법무처 위임 철회에 대한 의견</p>
<p style="text-align: center;">설립인가서교부 (각 소관부처)</p>	
↓	↓
<p style="text-align: center;">설립인가통보 (각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p>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 (소관부처 지정) 주 사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담당자는 주무 부처를 구분하기 어려움

- (주 사업 기준) 총 사업비중 중 40%이상의 공익사업 비중에 대한 측정변수(매출액 등)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음
 - ⇒ (업무진행)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업계획서의 주 사업 내용을 해석
- (결과) 인가요청 사회적협동조합과 유관될 것으로 보이는 타 부처 담당자에게 인가업무를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
 - ⇒ (분쟁) 의료관광의 경우, 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복지일자리사업의 경우, 복지부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업무이관 요청
 - ⇒ (업무량 과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경우, 신청 후 인가보고 일정 60일 규정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인가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청

〈표 3-6〉 사회적협동조합 소속부처 지정과 관련된 범부처 인가담당자의 의견

구분	내용
고용부	- 사업계획서상 사업 내용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관할이 나누어져야 하므로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져야 '사업을 통한 공익달성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짐
교육부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부처에 제출하나, 소관사업 해석의 이견으로 신청 접수 제한
문체부	- 사업내용 중 신청자에게 어떤 사업을 가장 우선시 하는지 묻고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함(예)의료관광협동조합인 경우 '의료'가 더 중점 된다고 하여 복지부로 이관하였음
미래부	- 사업계획서 상 매출을 기준으로 주사업 비중을 고려하여 소관부처를 파악함
복지부	- 부처간 이견이 있고 기재부에서도 판단이 안될 때, 사업계획서에 따른 주사업 비중을 고려하여 소관부처를 협의하게 됨.
법무부	- 협동조합의 단순한 명칭보다는 사업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준설정
해수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 시 소관부처 선정방법과 유사함

□ (통계적 누락) 접수 시, 서류미흡과 소관부처 선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건수 통계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인가율이 높아지는 통계적 오류가 발생

○ (오류) 기재부에서 발표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율은 78.7%이지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접수되어 처리된 인가율은 45.5%로 약 33.2%p격차 존재

〈표 3-7〉 사회적협동조합 접수 후 인가율

구분	총합	고용	교육	국토	금융	기재	농림	문체	미래	복지	산림	산통	안행	여가	외교	중기	해수	환경
신청	246	42	36	3	1	29	13	14	2	63	4	6	7	7	2	6	2	9
인가	112	27	16	1	0	22	7	6	0	13	2	4	2	4	1	3	1	3
인가율(%)	46	64	44	33	0	76	54	43	0	21	50	67	29	57	50	50	50	33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누락이유) 소관부처 선정지연과 기관의 신뢰성 부족, 그리고 서류 미흡 등의 이유로 사회적협동조합 신청건수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다수

〈표 3-8〉 사회적협동조합 통계누락과 관련된 범부처 인가담당자의 의견

구분	내용
고용부	- 접수 후 60일 이전 회신을 하며, 최장 18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 업무가 처리되는 기간이 늘어나, 회신기간을 30일 정도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 추정 의견을 가지고 주 사업기준을 나눠야 하는 위험이 따라 접수 신고를 매우 신중히 처리함
문체부	-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보완요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조치를 하며, 서류보완을 완료하여 재신청하도록 안내
미래부	- 반려 건은 1번 있었으며, 업무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타 부처로 넘기게 됨
복지부	- 복지부의 비영리법인 인가 시, 2주안에 처리가 되며, 그 심의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진입장벽도 높아야 한다고 봄
법무부	- 법무부 소관이라기 보다는 타 부처에 더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하는 경우가 있음
해수부	- 신청건수가 적어 반려된 경우는 없음

□ (지식부족) 범부처 업무 담당자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다수이며, 민원업무 과다로 불만이 축적

- (지식수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업무가 부 업무인 경우가 많으며, 사업관련 부서에게 전달하는 경우, 협동조합 지식이 더욱 부족한 것으로 파악
 - ⇒ (순환보직)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인가관련 담당자의 협동조합 관련 교육과 관련자료 부재가 협동조합 인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 ⇒ (전달부서) 복지부와 교육부의 경우, 인가신청 시, 관련 사업부서에게 자료를 송부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고 관련부서에 대한 협동조합교육 등은 부재
- (민원과다) 고용부, 미래부 등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요청이 많은 부처의 경우, 다수의 민원전화로 인해 업무과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 ⇒ 초기 인가업무에서는 담당 인력 1인만으로 가능했지만 근래에 들어 인가건수 및 신청 등이 증가해 업무량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

〈표 3-9〉 사회적협동조합 개념과 관련된 범부처 인가담당자의 의견

구분	내용
고용부	-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타부처의 경우 상황이 다름 - 인가건수 증가 및 타부처 업무이관 등으로 인해 1인으로서는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움
교육부	- 교육 부문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에 관한 민원전화가 많아 주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
문체부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용 자료가 부족하며 영상자료도 없음
미래부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업무를 부처내 타 부서에서 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음
복지부	- 순환보직등의 이유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신청시 사업관련 부서에게 이관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 - 관련사업 부서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자료 부족과, 주 관심사가 아닌 상황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
법무부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신청건수가 미미하며, 민원이 많지 않아 이해도가 떨어짐
해수부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신청건수가 미미하며, 민원이 많지 않아 이해도가 떨어짐

□ (인가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인가보다는 각 부처 관련법의 사업지침을 우선시 하여 인가업무를 처리

○ (우선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 신법 및 기본법 우선에 대한 조항보다는 각 부처 관련 사업법과 관련된 사업지침을 우선 적용

⇒ 인가담당자들이 타 부처 관련 법률 적용보다는 조직문화적 관점에서 자부처 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함

○ (지침내용) 부처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지침에 사회적협동조합 조항이 부재한 경우, 사업지침 변경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는 적음

⇒ 각 부처가 협동조합 인가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관리권한이 부재하여, 사고발생 감소를 위해 최대한 엄격하게 인가허무를 처리

〈표 3-10〉 부처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기준 충돌 시, 대응방안에 대한 인가담당자 의견

구분	내용
고용부	- 소관부처 선정시 일자리 관련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사업을 인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 고용노동부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의 최후보수라는 인식하에 업무를 담당하는 중
교육부	- 기존 사업에 대한 개별법과 업무지침이 존재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업무지침과 충돌 시 부처의 사업 관련법을 우선시함 · 교육부 방과후 학교 관련 운영자를 위탁 공모 시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였던 교육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을 위탁하게 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신청이 있다하더라도 사업권을 받지 못함
문체부	- 기존사업에 대한 업무지침을 우선시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의 업무지침을 변경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임
미래부	- 정부 R&D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기관은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학교연구실이나 출연연구원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는 지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음 (공공조달 참여기준과 다름) · 사업지침이 논란시 될 경우 부처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음
복지부	- 기존의 공동육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 새롭게 생성(전환)되는 협동조합도 사업의 형태를 맞춰야 함
법무부	- 신청 및 인가건수가(1건) 미미하여 파악하기 어려움
해수부	- 신청 및 인가건수가(1건) 미미하여 파악하기 어려움

□ (인가주체) 중앙정부 내 타 부처 인가위탁 및 권리위임보다는 기재부에서 직접 담당하거나, 중앙부처 산하 지방기관에서 인가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선호

○ (일원화) 업무과다와 인가기준의 충돌, 관리 부재를 고려하여 현 인가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선호

⇒ 단, 인가 시 각 부처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각 부처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협조를 타진하는 방안을 제시

○ (지방이전) 사회적협동조합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자치제 보다는 중앙부처 관련 지방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선호

⇒ 지자체 인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 적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에서의 업무담당이 긍정적이라고 판단

〈표 3-1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주체 변경에 관한 범부처 인가담당자 의견

구분	내용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인가를 맡게 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개입되어 공익을 우선시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중앙부처(세종시)로 와야 접수가 가능하며 반려 후 재신청이나 담당부처가 바뀔 경우 여러 번 오가야 하는 부담이 존재 - 중앙부처의 지방산하기관에 업무를 이양하여 효율화하는 방안을 고려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였을 경우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인가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음 -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인가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인가권을 넘길 경우 관리 문제가 발생함 - 교육부의 경우, 지방교육청에서 인가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를 중앙부처 담당자보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 - 중앙정부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인가업무를 담당 할 수 있으나, 추후 전체 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미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인가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미래부 사업특성상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맞춤화가 어려움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인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나, 단, 의견협조를 각 부처에 요청 할 수 있음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건수가 적어 인가권의 단일부처화에 대한 의견은 없음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건수가 적어 인가권의 단일부처화에 대한 의견은 없음

제4절 협동조합들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 진입장벽

□ (개관) 인가 제도측면과 인가과정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역 협동조합들의 의견 파악을 위하여 5개 지역에서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14년 8월 8일~19일까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제주에서 실시

○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이외 7대 부문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23개사의 이사장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실시

○ (내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인가과정 또는 인가포기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파악

⇒ 이외 협동조합 설립시 정부지원 수령 내용과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공요인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5장에 기술

〈표 3-1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간담회 개관

지역	일시	참여 협동조합
서울 경기(5개)	2014.8.18.(신나는조합)	·(돌봄_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돌봄_서대문부모협동조합) ·(상담_홀더맘사회적협동조합) ·(상담_영림중학교) ·(문화_자바르메 사회적협동조합)
대전 충남(3개)	2014.8.5.(풀뿌리사람들)	·(사회참여_연리지 사회적협동조합) ·(문화_나무시어터) ·(문화_우리놀이협동조합)
광주 전북(5개)	2014.8.7.(광주 NGO센터)	·(건강_스포츠제이협동조합) ·(사회참여_협동조합 온리) ·(사회참여_협동조합 가온) ·(사회참여_더불어락협동조합) ·(학습_배움평생교육강사 협동조합)
대구 경북(5개)	2014.8.19.(커뮤니티와 경제)	·(돌봄_협동조합동지) ·(상담_토닥토닥협동조합) ·(사회참여_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사랑나눔센터) ·(사회참여_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설_대구경북단체급식협동조합)
제주(5개)	2014.8.8.(사회적기업경영연구소)	·(돌봄_더불어협동조합) ·(문화_장례협동조합) ·(문화_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학습_씨울협동조합) ·(시설_폐가살리기협동조합)

□ (인가과정상의 장벽) 인가절차의 복잡함과, 사업특성 그리고 홍보미흡으로 인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설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지 않은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파악
- (행정절차의 어려움) 타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인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설립이 용이한 일반협동조합으로 설립된 경우가 대다수
- (사업특성) 협동조합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고, 30%의 높은 법정적립금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는데 부담으로 작용
- (홍보미흡)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미흡으로 인해 사업체의 법인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불가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

〈표 3-13〉 협동조합 운영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상의 어려움

구분	내용
행정절차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_대구_협동조합등지)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려고 했으나 설립절차가 어려움 - (학습_제주_씨울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작하려했으나 절차가 어려움 - (학습_광주_배움평생교육강사 협동조합) 취약계층 교육등 사회환원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고자 했으나,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일반협동조합으로 허가 받음 - (사회참여_대전_연리지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아닌 고용부로 지원하게 되었음
사업 경쟁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_대구_토닥토닥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으로 일반협동조합형태가 적당하다고 판단 - (건강_전주_스포츠제이협동조합) 성장을 어느 정도 한 후에 전환 가능성을 타진 - (사회참여_전주_협동조합 온리) 30%의 잉여금을 적립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함 - (문화_대전_나무시어터) 잉여금적립의 부담이 큼 - (문화_천안_우리놀이협동조합) 수익창출이 어려워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려움 - (문화_제주_장례협동조합) 사업홍보 등 사업 확대를 위해 고려하지 못함 - (문화_천안_우리놀이협동조합) 사업운영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고려 - (사회참여_광주_더불어라협동조합) 카페사업, 두부제작, 죽집 운영 등 영리사업 비중이 높음 - (사회참여_전주_협동조합 가온) 잉여금 적립비율이 상이하여 초기 성장에 어려울 것이라 판단
사례 및 홍보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_서울_서대문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 형태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음 - (돌봄_대구_협동조합등지) 마을기업지원 사업 종료 시점인 2년 뒤 전환 가능

□ (인가 및 운영상의 장벽)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 미흡과 초기시설투자 확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 어려움을 제시

- (행정도움 부족)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서비스 사업시, 공무원들의 지식부족과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 문제점으로 제시
- (초기시설투자) 사업 운영을 위해 초기 시설 확보가 요구되나 비싼 임대료 등 운영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됨
- (공공조달시장 제한) 사업운영을 위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시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타 관련 법률에 의해 진입이 어려움

<표 3-14> 협동조합 운영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 및 사업운상의 어려움

구분	내용
행정 도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_서울_서대문부도협동조합) 사업체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공무원이 없음 - (상단_서울_홀더맘사회적협동조합) 민원처리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구마련이 필요 - (문화_대전_우리놀이협동조합) 부서간 공무원의 칸막이 행정으로 협동조합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며, 사업추진이 어려움 - (문화_대전_나무시어터) 지원재단의 과도한 행정 서류 요청으로 인력낭비가 있음
초기시설투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_대전_나무시어터)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재단 사업에 참여하였지만, 공간유지비용 및 거리 등이 제약이 많아 이용하지 않음 - (돌봄_서울_서대문부도협동조합) 지역 내 값비싼 임대료에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좋은 선생님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음 - (학습_광주_배움평생교육강사 협동조합) 장기시설임대 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이 꾸준히 작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단_서울_영림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청 및 교육부 담당자의 설득이 가장 어려움 - (건강_전주_스포츠제이협동조합) 시립체육시설 이용제한이 있어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수영, 아쿠아로빅 등)을 운영하지 못함 - (사회참여_대전_연리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7가지 법률에 위배 된다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하지 못함 - (사회참여_대구_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지자체와 단절되어 판로확보가 어려우며 대기업과의 경쟁력이 떨어짐 - (사회참여_대전_연리지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참여기회에 대한 우선권이 없거나 시장확보가 어려움 - (사회참여_대구_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사랑나눔센터) 공공기관에서의 계약조건이 비합리적 설계임(입찰자격조건 3년 이상 운영) - (시설_대구_대구경북단체급식협동조합) 최저낙찰제로 재료 납품을 하다 보니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선택할 수 없음 - (사회참여_전주_협동조합 가온) 홍보의 어려움과 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이라는 시장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제4장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 제1절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을 위한 방법론
- 제2절 사회서비스 7대 기능별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 제3절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특징

4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 핵심역량 <

제1절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을 위한 방법론

- (목적) 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협동조합 참여가능성 모색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발전단계와 핵심역량을 분석
 - (조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단순한 참여 지원방식은 협동조합이 보유한 독특한 경쟁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
 - (방향) 현재 사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역량 분석을 통해 이를 강화시키는 지원방식 모색이 필요

- (1단계: 전략 포지셔닝 파악) 협동조합이 현재 어떤 경영전략과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제품·시장 Grid 확장 Model로 분석
 - (개관) 제품·시장 Grid 확장 Model은 H. Igor Ansoff가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성장기회 요인을 탐색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모델임
 - (제품) 기업이 수익을 창출 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미 출시되어 시장에 나온 기존제품과 향후 개발이 가능한 신제품으로 구분
 - (시장) 기업의 목표시장이 되는 수익 창출 시장을 기존시장과 외국시장을 포함한 신(新)시장으로 구분
 - (경영전략 발전단계) 제품·시장 Grid 확장 Model 하에 기업은 시장침투, 시장확대, 제품개발, 다각화 등 4개 유형의 경영전략 추진이 가능
 - (핵심역량) 시장침투의 경우 비용우위, 시장 확대는 유관시장 탐색, 제품개발은 니치제품 개발, 다각화는 M&A나 사업연대가 필요

[그림 4-1] 제품시장 Grid Extension Model과 지원방식

구분	기존시장	신시장
기존 제품	- 시장 침투형 ·(역량) 비용우위를 통한 침투 ·(예) 시설비, 운영비 절감 ·(지원방식) 인건비, 시설부지 등 시장진입 형 지원	- 시장 확대형 ·(역량) 유사시장 탐색 ·(예) 직간접 유통망 확보 ·(지원방식) 사업소개 및 자격조건 완화
신제품	- 제품 개발형 ·(역량) R&D 기반 전문성 ·(예) 틈새제품, 패키지 제품 ·(지원방식) 성과포괄형 지원방식	- 다각화 형 ·(역량) 타 업종 M&A 및 사업연대 ·(예) 종합서비스 상품 ·(지원방식) 컨소시엄 사업참여, 연대조직 지원

□ (2단계: 핵심역량 분석) 제품·시장 Grid 확장 Model 하에서 핵심역량 도출을 위해 정부지원 여부·목표시장·인프라 조달을 고려한 분석표 설정

○ (전제) 한국의 협동조합은 설립 초기 단계이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중심 중소기업으로 전제

⇒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취약계층 또는 지역시민 기반 하에 설립된다는 점에서 자본력이 부족

○ (고려변수) 제품·시장 Grid 확장 모델 상의 핵심역량 도출을 위해 정부지원, 목표시장, 자원 조달의 2×2×2 Matrix 분석표를 설정

⇒ (정부지원) 서비스 시장 도입 시 비용우위 확보전략으로 조합 설립시 정부지원 유무를 파악

⇒ (목표시장) 저소득 취약계층(①아동 및 청소년 ②여성 ③노인 ④장애인 ⑤실업자 ⑥이주민 ⑦기타) 대비 일반국민(① 조합원 ②지역시민 ③ 일반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리드 모델의 시장구분과 연계

⇒ (인력조달) 근로자를 그리드 모델의 제품개발과 비용우위를 요인으로 취약계층 또는 조합원을 포함한 일반국민으로 구분

○ (핵심역량) 정부지원, 목표시장, 인력조달의 근거하에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핵심역량을 원가우위와 차별화 또는 병행으로 도출

[그림 4-2]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도출을 위한 2×2×2 분석표

정부지원		정부지원 有				정부지원 無			
목표시점		취약계층		일반국민		취약계층		일반국민	
인력조달		취약계층	일반국민	취약계층	일반국민	취약계층	일반국민	취약계층	일반국민
핵심역량	원가								
	시장확대								
	서비스개발								

□ (3단계: 협동조합 사례 분석) 협동조합 핵심역량 분석표 기반 하에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협동조합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

○ (대상) 기획재정부(92개)와 미래부(8개), 서울시(7개) 협동조합 우수사례 총 107개에서 사회서비스에 참여 중인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24개를 분석

<표 4-1> 협동조합 사례 분석 대상

번호	이름	조합원	출자금(천원)	근로자	연 매출액 (천원)
1	도우누리	117	10,150	140	1,510,952
2	가온	5	50,000	1	100,000
3	연리지	150	35,530	8	(월) 1,500
4	자바르테	33	20,230	9	1,150,000
5	서대문부모협동조합	31	38,000	7	(월) 16,000
6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800	630,000	68	700,000
7	영립중 사회적협동조합	32	3,200	2	(월) 8,000
8	협동조합 온리	10	18,100	5	(월) 8,000
9	협동조합 등지	45	46,700	2	(월) 5,110
10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163	75,000	1	-
11	빛뜰협동조합	10	7,000	5	-
12	토닥토닥협동조합	5	5,000	7	250,000
13	협동조합 스포츠제이	5	30,000	3	100,000
14	잉콕 영어교육협동조합	40	4,000	3	100,000
15	드림인터내셔널 협동조합	10	360	10	5,990
16	체육도장업 협동조합	12	24,700	12	110,500
17	더불어락 협동조합	26	15,000	18	110,000
18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12	5,050	12	140,000
19	배움 평생교육강사 협동조합	7	7,000	4	12,000
20	수과학교육놀이	18			
21	아름다운수학교실	8	22,930	5	80,000
22	마을닷살림협동조합	34			
23	모두들	20	50,000	1	
24	너머서			1	0

제2절 사회서비스 7대 기능별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1. 돌봄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단계와 핵심역량

□ (경영전략) 정부의 인건비 중심 지원 하에 설립된 협동조합들은 시장확대 전략을, 시민기반 설립 협동조합들은 제품 개발 전략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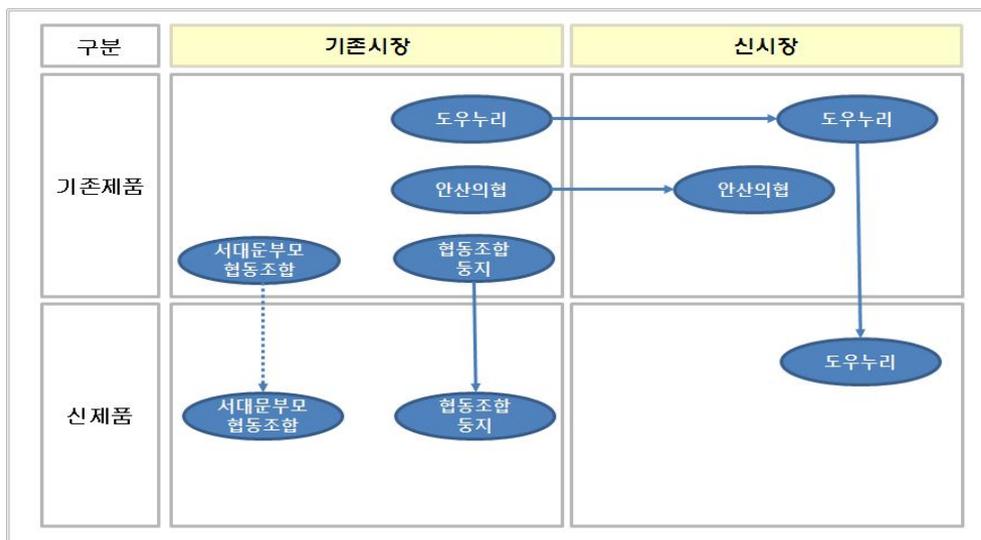
○ (분석대상)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유무에 따라 참여 협동조합은 도우누리와 안산의협, 그리고 미참여 조합은 서대문부모협동조합과 동지선정

○ (시장확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와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기능 관련 신시장 확대를 추진

⇒(도우누리) 재가돌봄인 바우처 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시장 확대 후 서울시 요양병원 위탁 등 돌봄시설 시장으로 다각화 추진

⇒(안산의료복지) 기존 병의원 운영 등 지역의료시장에서 사회적일자리 지원을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진입

[그림 4-3] 돌봄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 (제품개발) 지역시민들의 모금 및 지원 등 시설비 지원을 받은 서대문부모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등지의 경우, 제품개발 전략을 추진

⇒(서대문부모협동조합) 초기 시설장 마련을 위해 지역네트워크에 의한 모금과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이외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시설 공개 사용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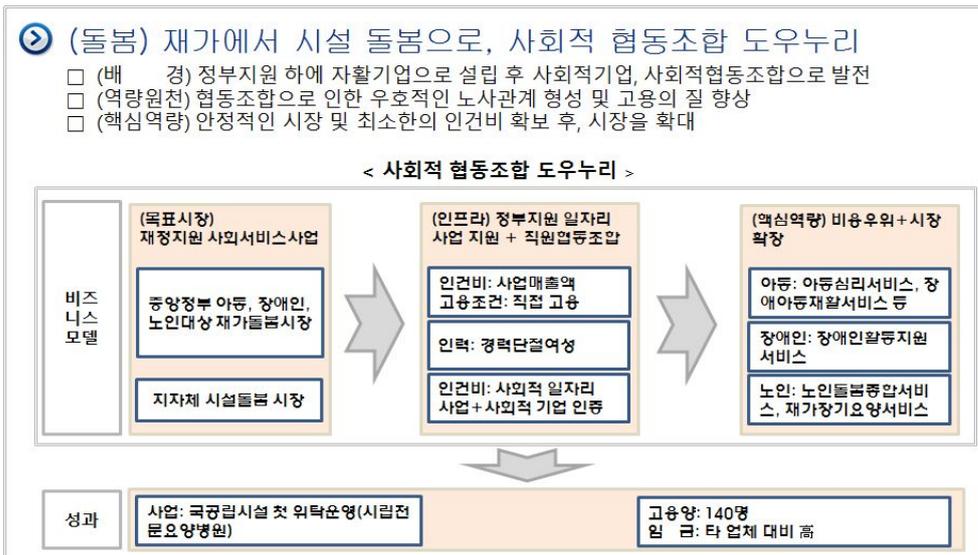
⇒(협동조합 등지) 지역시민들의 지원으로 시설장을 마련한 등지는 어린이집 이외 학부모 대상의 심리 상담교육 및 문화교육 사업을 실시

□ (시장확대형의 핵심역량) 비용우위 하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 또는 기존사업 영역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

○ (도우누리)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모델로 인한 이윤절감 등을 기반으로 타 기업 대비 비용우위를 달성

⇒(전문인력 육성) 설립 시 전문 간병인 5명이 설립자로서 참여이후 전문 간병 능력을 기반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재가돌봄시장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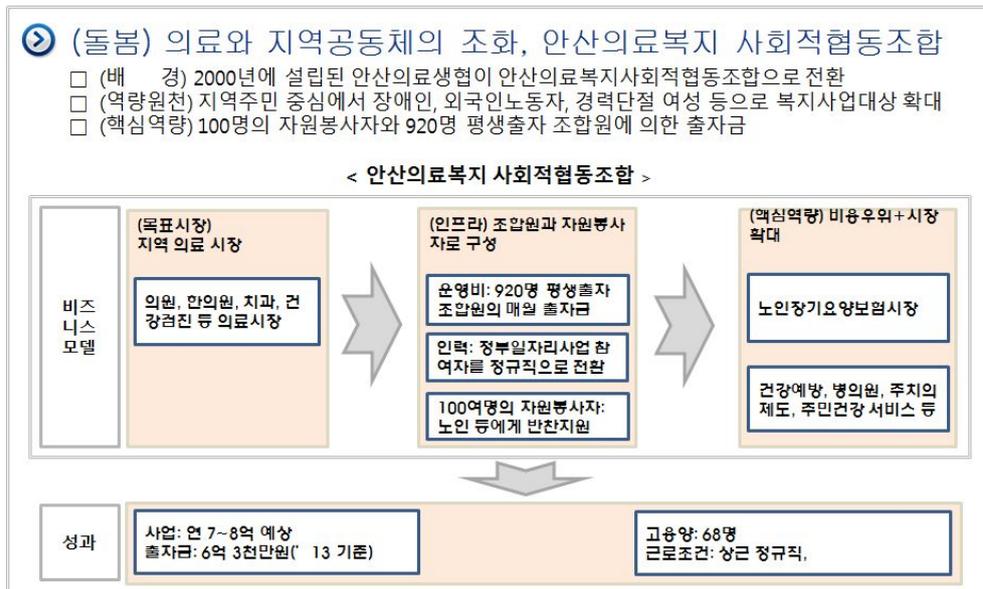
[그림 4-4] 돌봄 부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안산의협) 의료생협을 통한 사업매출 및 조합원 회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근로자의 인건비 절감으로 비용우위 확보

⇒ (사업의 연계성) 950명의 평생출자 조합원과 기존 의료생협 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추진

[그림 4-5] 돌봄 부문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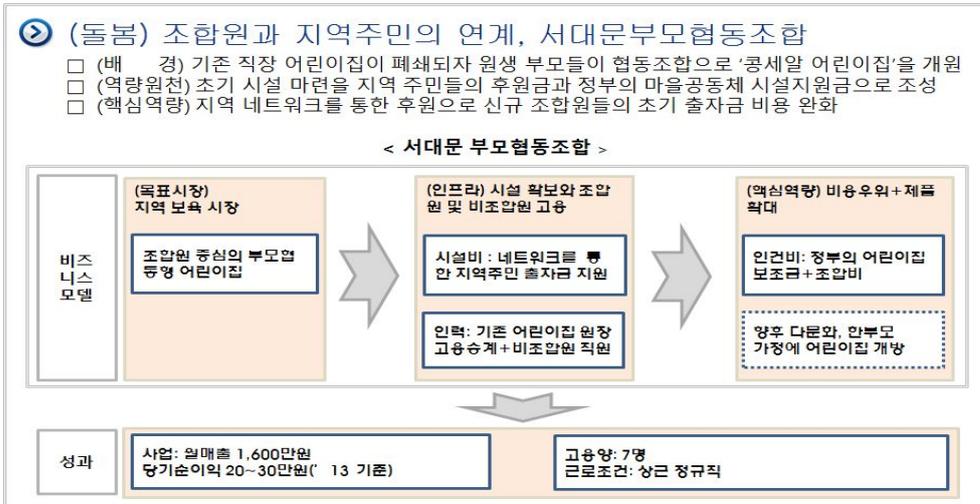
□ (제품개발형의 핵심역량) 시설장 확보 시,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모금 등을 통해 비용우위의 확보 후 조합원의 참여로 제품개발을 추진

○ (서대문부모협동조합) 어린이 집 설립 시,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시민들의 모금 지원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지원금으로 비용우위를 달성

⇒ (정부 재정지원 사업)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한 정부의 교사 인건비 지원 및 교구 지원비로 운영비 마련

⇒ (조합원 참여) 원장을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학부모와 공동으로 교육과목 선정하고, 시설을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에게 공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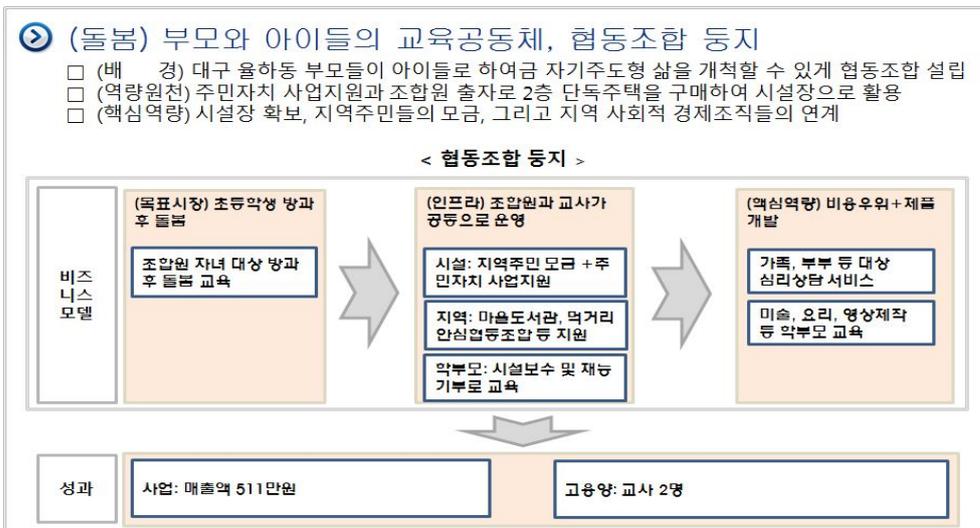
[그림 4-6] 돌봄 부문 서대문부모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협동조합 동지) 아이들의 참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주민자치 사업 지원금, 부모의 재능기부로 비용우위를 확보

⇒ (조합원 재능기부) 조합원 학부모가 시설유지 및 보수, 그리고 지역 학부모 대상의 심리상담 서비스와 문화교육을 실시

[그림 4-7] 돌봄 부문 협동조합 동지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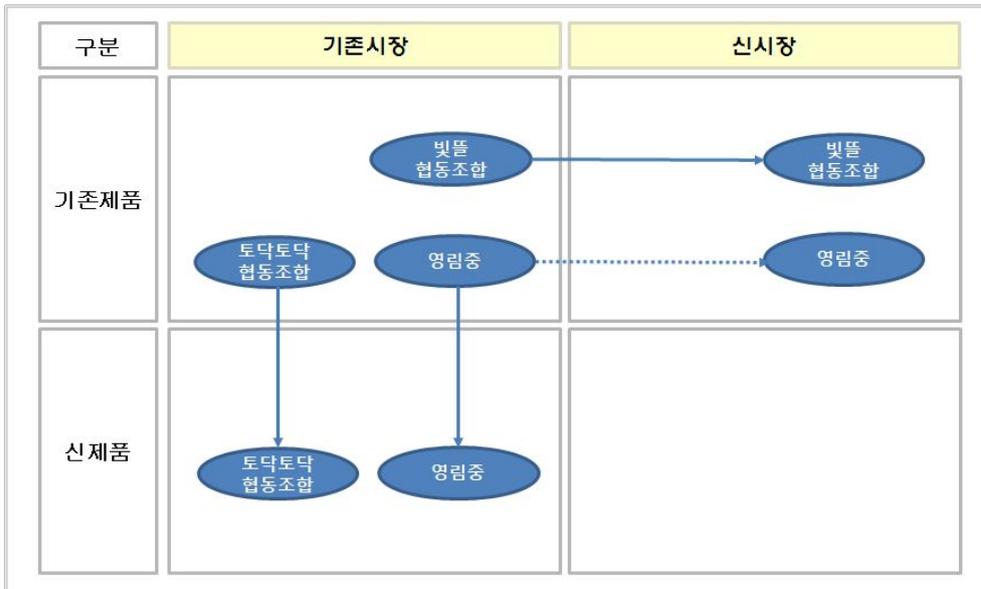


2. 상담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단계와 핵심역량

□ (경영전략) 이종사업 유무에 따라 시장확대 또는 제품개발의 차별화된 방향으로 성장 중

- (분석대상) 이종사업 병행 협동조합은 토닥토닥협동조합과 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종사업이 없는 협동조합은 빛뜰협동조합을 선정
 - (시장확대) 정부 재정지원 상담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빛뜰협동조합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심리 봉사를 추진
 - (제품개발) 카페를 운영하는 바리스타들이 상담 사업에 진출하고자 토닥토닥협동조합을 설립 후, 상담사를 고용하여 심리상담 전문 카페로 전환
- ⇒(영림중) 학부모들이 학교매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학생들에게 비전형성 관련 특별수업을 교육부 인가 하에 실시, 향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먹거리 제공 사업을 고려 중

[그림 4-8] 상담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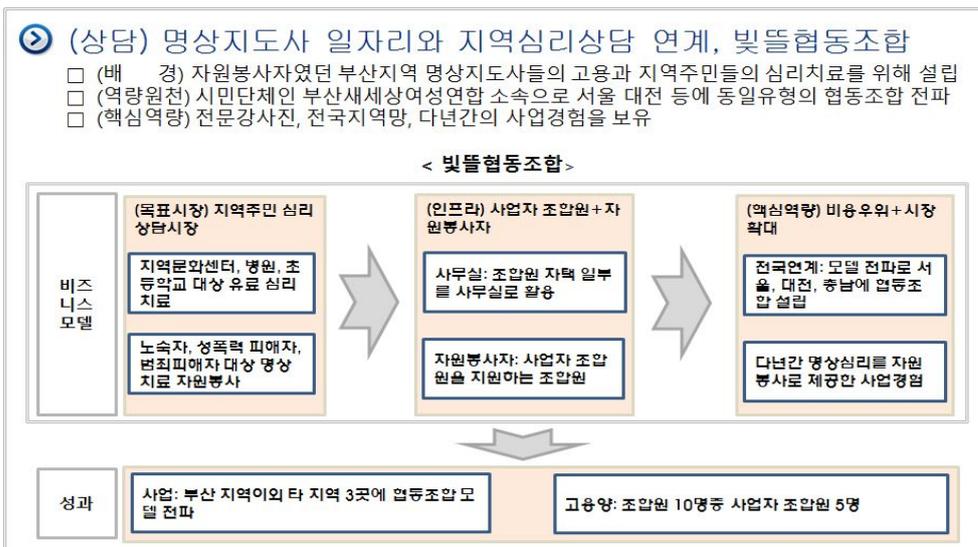


□ (시장확대형의 핵심역량) 상담심리 사업자의 결합으로 비용우위를 확보 후, 지역봉사와 협동조합 모델 전국전파 사업을 실시

○ (빛뜰협동조합) 사업자 조합원의 주택일부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과전 심리상담 사업에서 비용우위를 확보

⇒(고용확보) 지역심리 사업에 명상지도사 일자리를 연계하여 타지역으로 협동조합 모델을 전파

[그림 4-9] 상담 부문 빛뜰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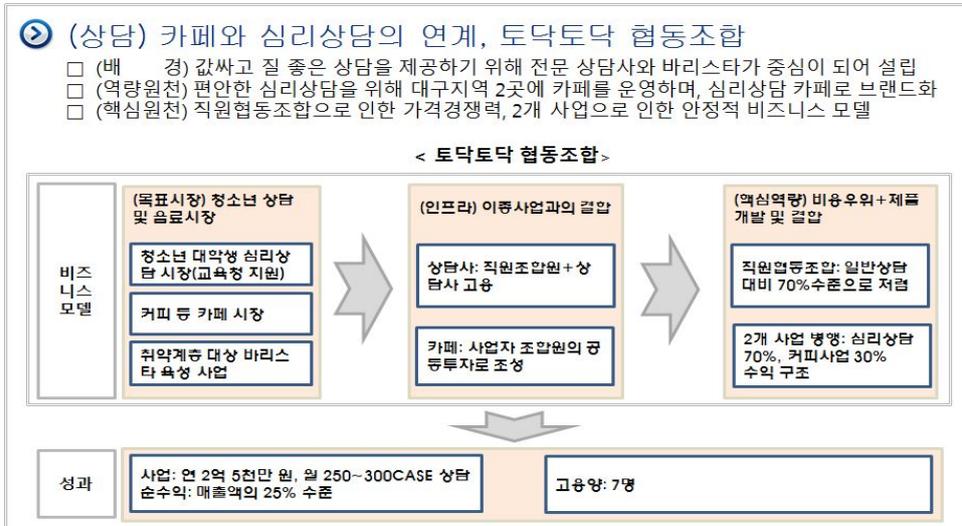
□ (제품개발형의 핵심역량) 거점시설 확보와 협동조합으로 인한 비용우위 확보 후, 청소년 대상의 정부지원 심리 사업에 진출

○ (토닥토닥협동조합) 청년중심의 바리스타들이 투자하여 직업협동조합 형태의 카페를 2곳에 개장하고, 전문상담사를 고용하여 심리상담 카페로 브랜드화

⇒(제품개발) 지역교육청의 방과후 수업인 청소년 심리상담 사업에 진출하여 커피판매와 심리상담의 매출 비중 3:7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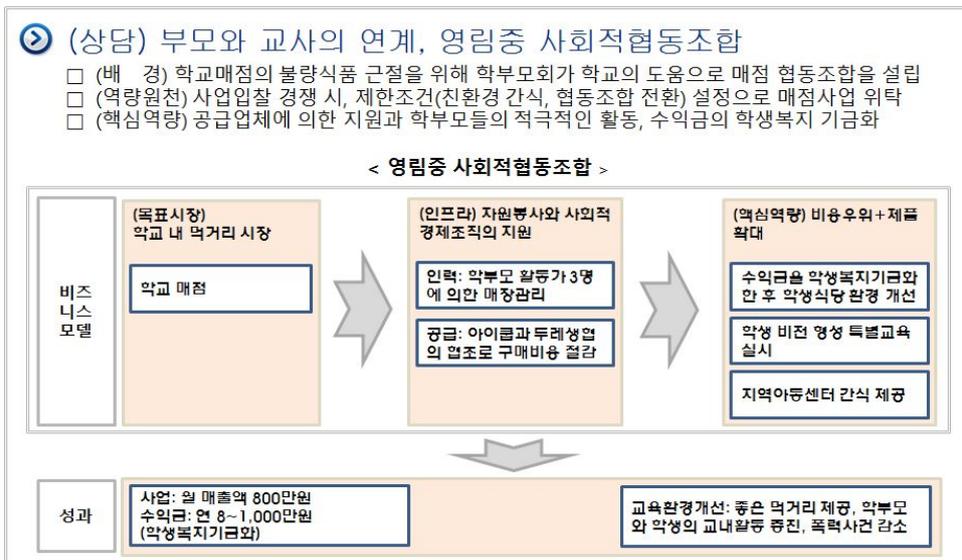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바리스타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

[그림 4-10] 상담 부문 토닥토닥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영립중 협동조합)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조합 결성 후,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 포기, 생협 등 타 협동조합의 지원으로 비용우위를 확보
- ⇒ (제품개발) 협동조합 원리 등 학생 대상 비전형성 관련 특별수업과 매점 수익금으로 조성한 복지기금으로 학생식당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그림 4-11] 상담 부문 영립중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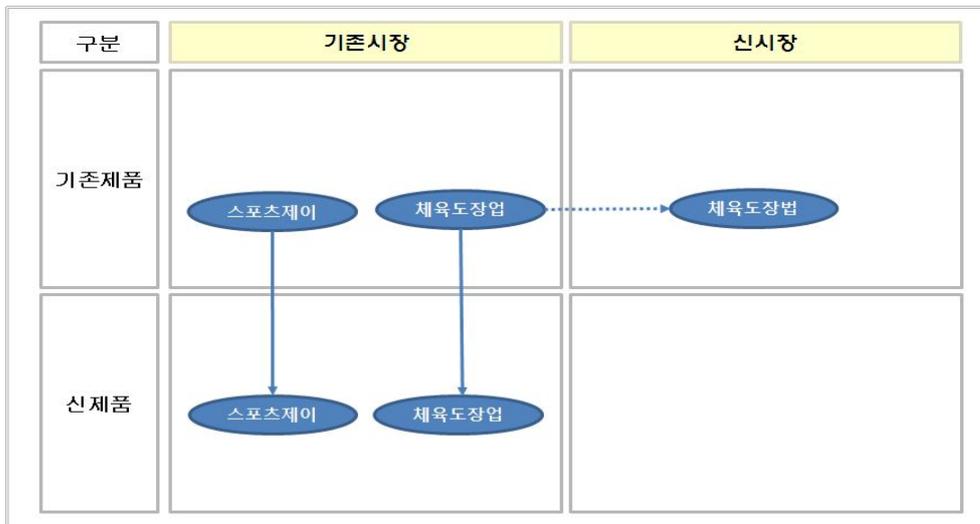


3. 건강관리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단계와 핵심역량

□ (경영전략) 시민기반 협동조합은 제품개발 후 시장확대를 고려

- (분석대상) 제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 협동조합 부재로 시민기반 협동조합 스포츠 제이와 체육도장업 협동조합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 (스포츠제이) 축구 아르바이트 강사들이 직원협동조합을 구성,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축구관련 용품 판매를 부가적으로 실시
 - (체육도장업 협동조합) 태권도 학원들이 사업자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체험교육과 건강예방센터 사업을 실시
- ⇒ (시장확대 고려) 건강예방 사업 및 국토순례, 태권도 등 스포츠 사업을 고려하여 향후 정부재정 청소년 스포츠 관련 사회서비스 사업에 진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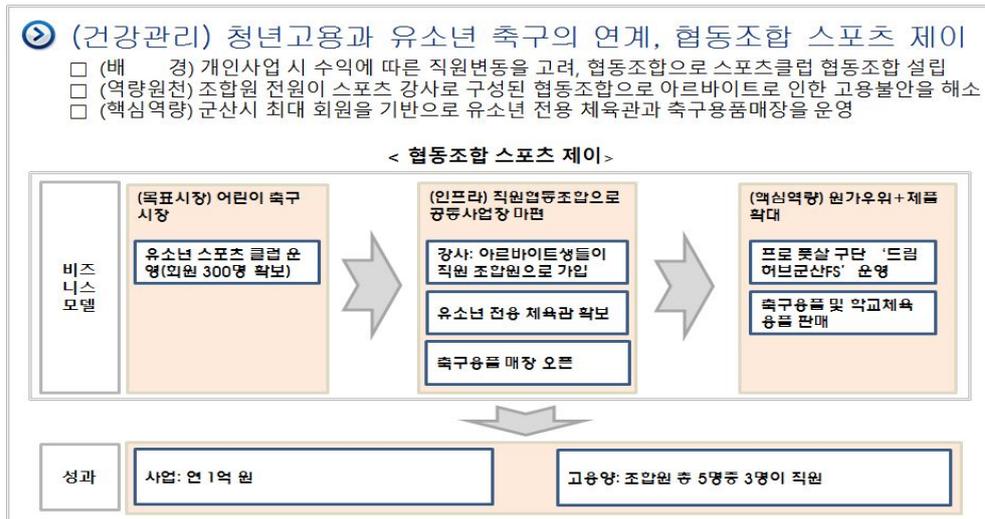
[그림 4-12] 건강관리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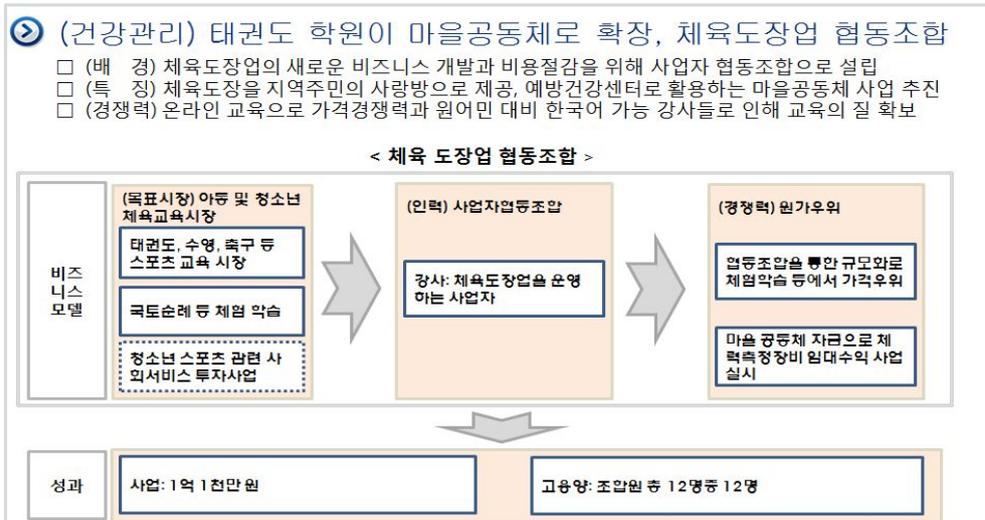
- (제품개발형의 핵심역량) 협동조합 모델을 이용하여 비용우위를 확보 후, 부가제품 관련 시설 마련을 통한 제품개발을 추진

- (스포츠 제이 협동조합)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원협동조합으로 구성 후 공동투자자로 축구 및 학교 체육 용품 매장을 마련
- (체육도장업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을 통한 기존자산 활용과 마을공동체 자금 지원을 통해 체력측정 장비 구매 후, 예방건강사업을 실시

[그림 4-13] 건강관리 부문 스포츠 제이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그림 4-14] 건강관리 부문 체육도장업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4. 사회참여지원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단계와 핵심역량

□ (경영전략)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의존도가 높은 협동조합은 시장확대를, 의존도가 낮은 협동조합들은 제품개발 전략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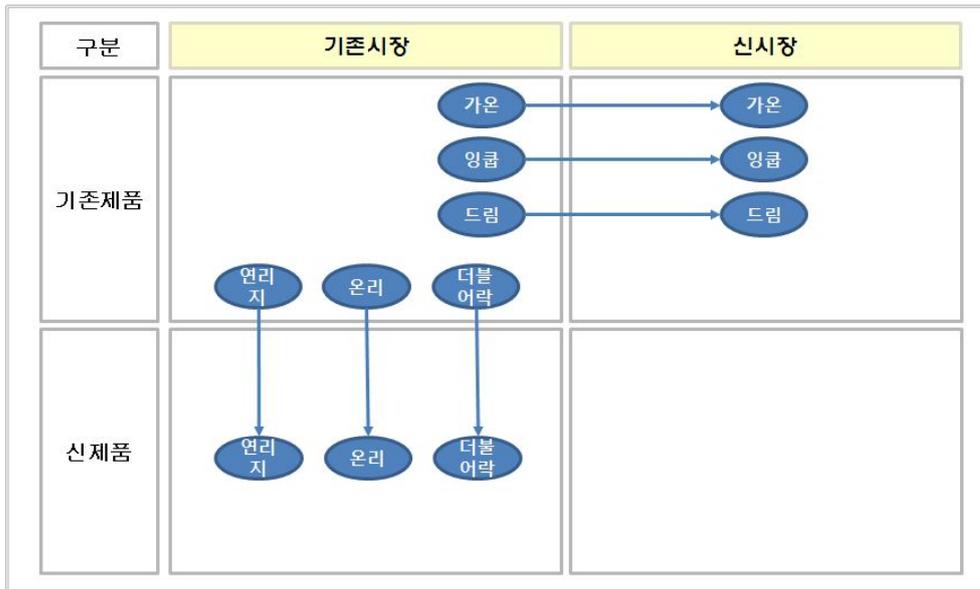
○ (분석대상) 재정지원 사회서비스사업 의존도가 높은 협동조합은 주거복지협동조합 가온, 잉클 영어교육협동조합, 드림인터내셔널 협동조합을 선정

⇒ 의존도가 낮은 협동조합으로는 연리지 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온리, 더블어락 협동조합을 선정

○ (시장확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들은 기존 서비스 기반 하에 지역상권, 취약계층, 소외지역 등으로 신시장 확대를 추진

⇒ 가온은 인근 도시지역으로, 잉클은 지역아동센터로, 드림인터내셔널은 산간벽지 등 소외지역으로 시장을 확대

[그림 4-15] 사회참여지원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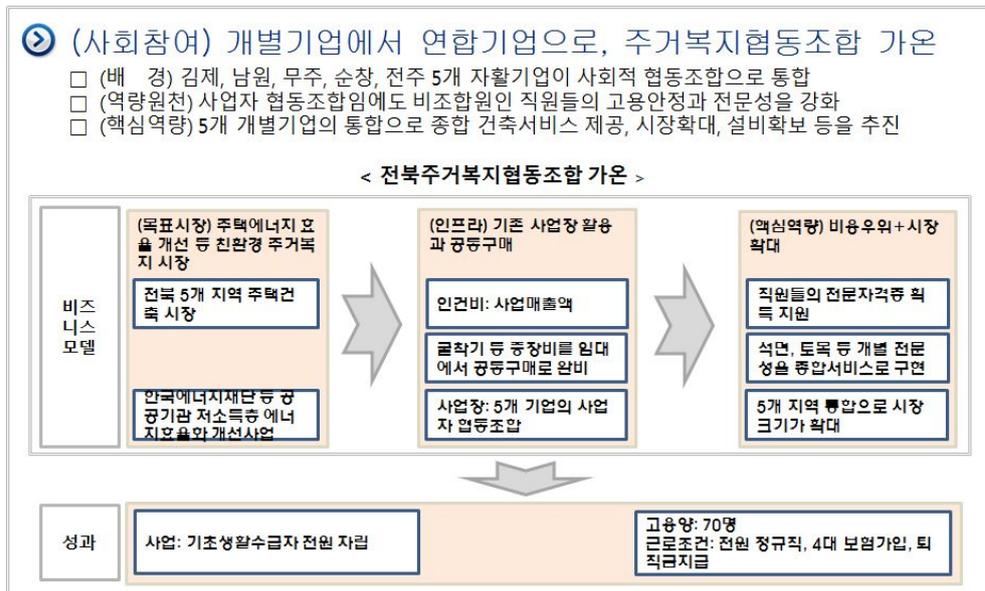


- (제품개발) 시민 자발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들은 영리사업 중심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부가하는 제품개발을 추진
 - ⇒ 연리지는 세차사업에 장애인을, 온리는 한지사업에 노인일자리, 더불어락은 식료품사업에 노인일 자리를 연동

□ (시장확대형의 핵심역량) 기존 조합원의 전문기술을 기반으로 비용우위를 확보 후, 접근성이 가능한 방법을 고려하여 신시장으로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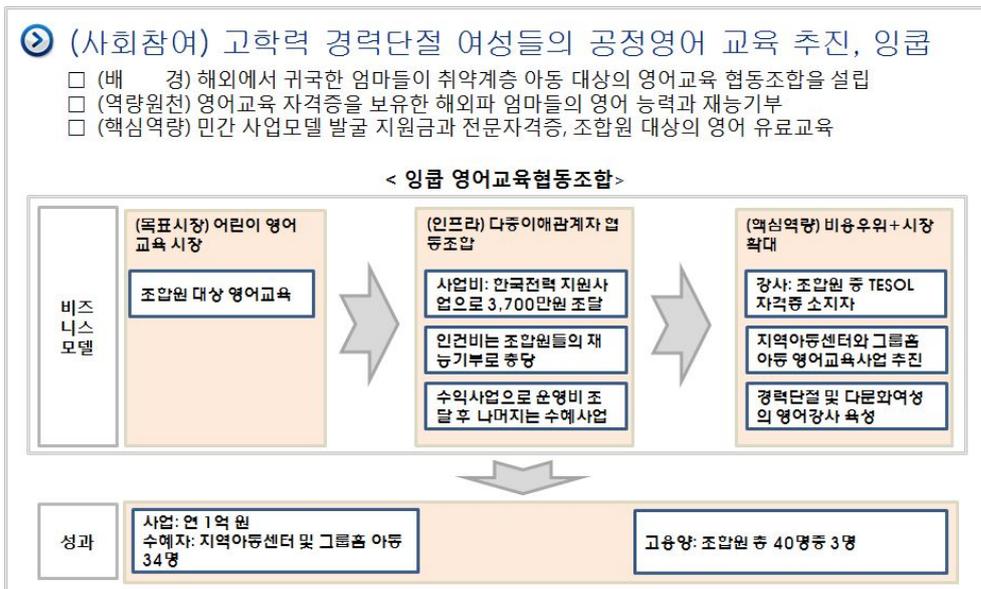
- (주거복지협동조합 가온) 5개 자활기업이 사업자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설비 등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우위 확보 후, 일부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 ⇒ (고용창출) 비조합원인 일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전문자격증 획득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과 자립을 지원

[그림 4-16] 사회참여지원 부문 주거복지협동조합 가온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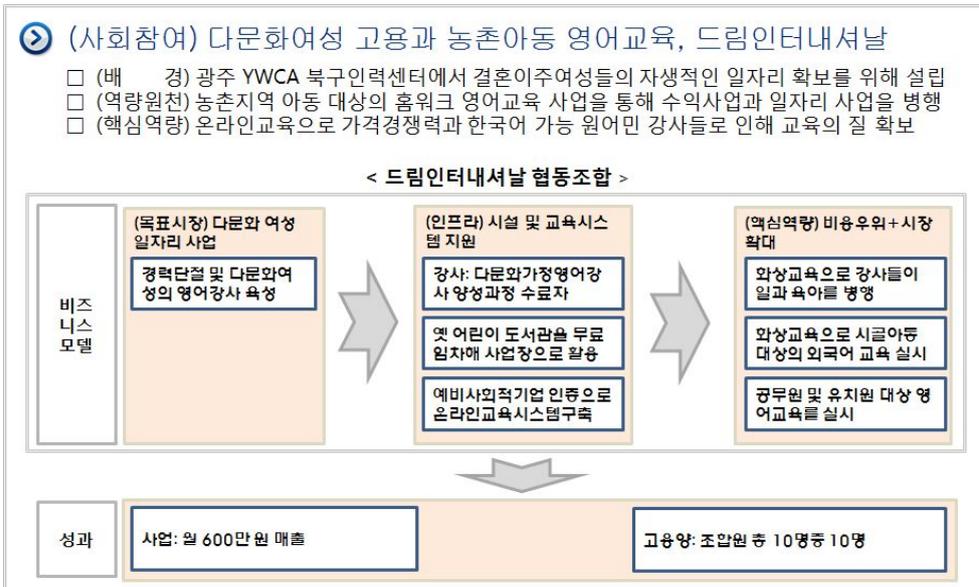
- (잉클 영어교육협동조합) 해외파 엄마들의 재능기부와 한국전력 협동조합모델 발굴 지원금을 기반으로 비용우위를 확보 후,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교육을 추진
 - ⇒(수익창출) 조합원 대상 자녀에 대하여 반값 영어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운영비를 조성한 후,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사업에 사용
 - ⇒(고용창출) Tesol 자격증을 가진 조합원이 재능기부로 경력단절 여성 및 다문화여성 등 비조합원 대상의 영어강사 육성 사업을 추진

[그림 4-17] 사회참여지원 부문 잉클 영어교육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드림 인터내셔널 협동조합) 결혼 이주 여성들을 영어강사로 육성 후, 지자체 및 지역 지원으로 사업 인프라를 확보하고, 온·오프라인 영어교육으로 수입을 확보
 - ⇒(수익창출) 광주시 예비 사업적기업 인증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시스템을 구축 후 농촌 등 소외지역 아동과 공무원 및 유치원 영어교육 사업을 실시
 - ⇒(고용창출) 다문화가정 영어강사 육성사업을 마친 10명이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

[그림 4-18] 사회참여지원 부문 드림인터내셔널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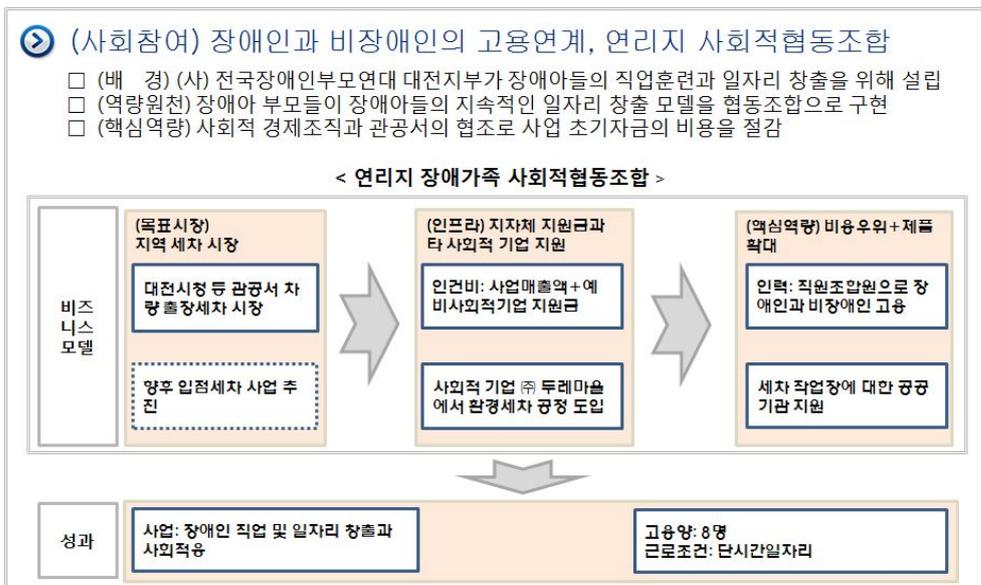


□ (제품개발형의 핵심역량) 일자리 창출 대상이 적응하기 쉬운 환경관련 영리 사업 균을 선정한 후,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연계

○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들의 자립 들봄을 고려, 환경세차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

⇒(고용창출) 시설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팀으로 조성하여 관공서 등의 주차공간 일부를 사업장으로 활용해 고용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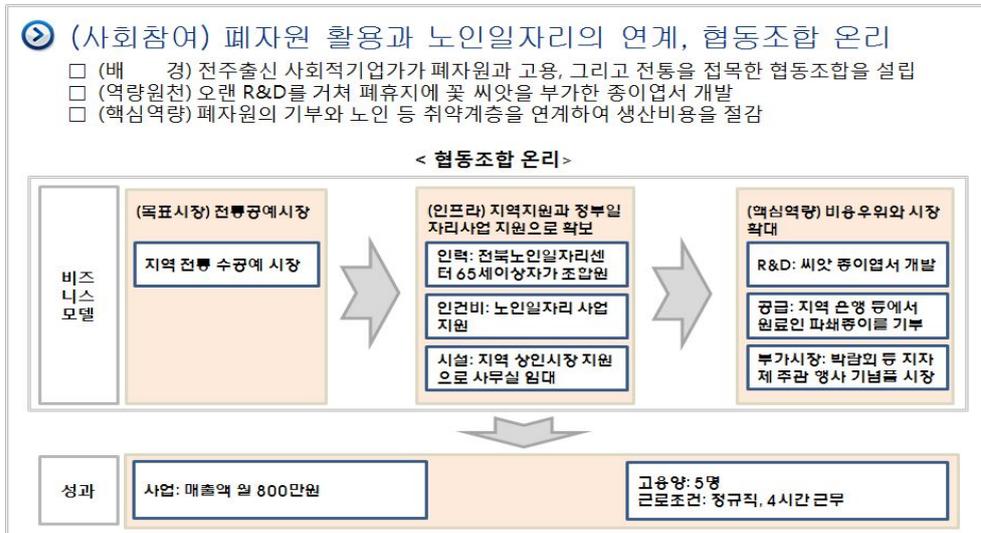
[그림 4-19] 사회참여지원 부문 연리지 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협동조합 온리) 파쇄휴지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R&D로 씨앗 엽서 개발 후, 지역 상가 및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비용우위를 확보하면서 지역 전통수공예 시장에서 지자체 기념품 시장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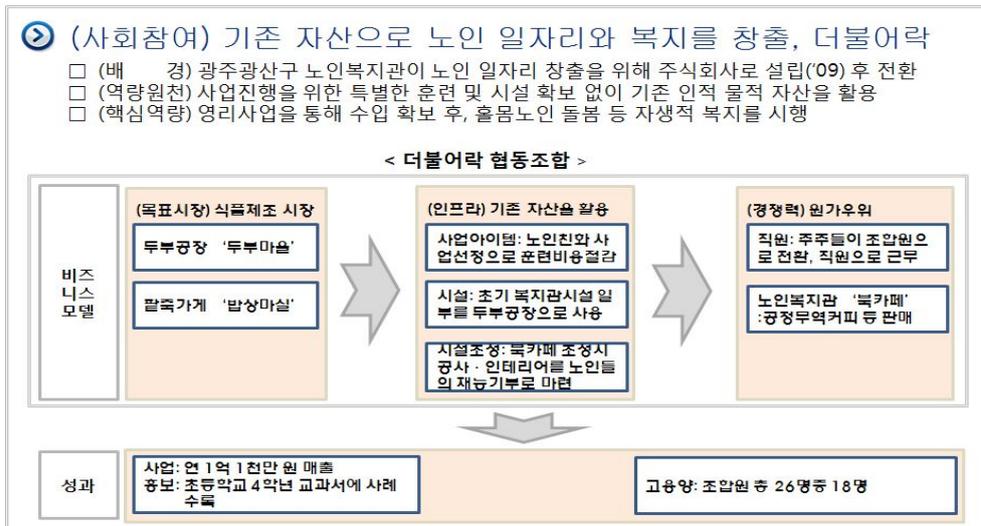
⇒(고용창출) 장인정신이 필요한 전통 수공예 인력으로 지역 노인일자리 센터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조합원으로 영입하여 고용을 창출

[그림 4-20] 사회참여지원 부문 협동조합 온리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더불어락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 친화적 식품제조업 선정과 기존 복지관 이용으로 비용우위를 확보 후, 북 카페·독거노인 돌봄 등 실시
⇒(고용창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대신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복지 사업을 실시

[그림 4-21] 사회참여지원 부문 더불어락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5. 문화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단계와 핵심역량

□ (경영전략) 공연체험형 협동조합은 관련 전문가 연계를 통해 시장확대를, 지식전달형 협동조합은 부가제품을 개발

○ (분석대상) 공연체험형 협동조합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테와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을, 지식전달형으로는 배움 평생교육강사 협동조합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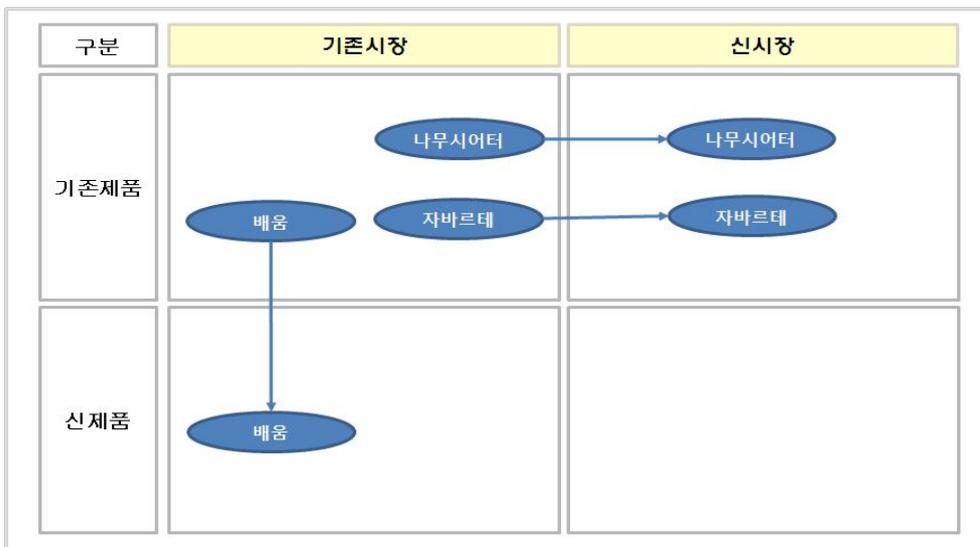
○ (시장확대) 문화 부문 소외지역, 또는 취약계층 대상 연극공연에서 지역 축제 시장 등으로 시장을 확대

⇒ 자바르테는 지자체 문화축제시장으로, 나무시어터는 더불어 초등학교 문화학교 시장에 진출

○ (제품개발) 협동조합 운영업무를 조합원이 부가적으로 담당하여 비용우위를 확보 후, 기존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상품을 개발

⇒ 배움 평생교육강사협동조합은 인문학 강의를 기반으로 관련 인문학과 관련교재판매와 체험사업 등을 통해 부가 수익사업을 추진

[그림 4-22] 문화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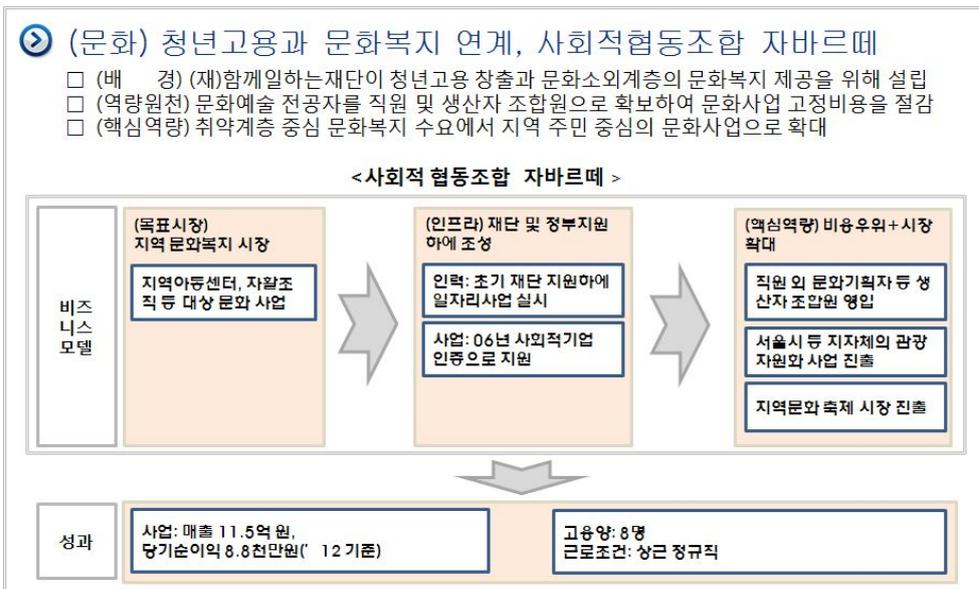


□ (시장확대형의 핵심역량) 연극공연 이외 문화사업 기획 등 관련 전문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시장을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페) 지역아동센터, 자활조직 등 취약계층 대상의 문화제공 일자리 사업 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기획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지역 문화축제시장에 진출

⇒(비용우위) 초기 민간재단 지원사업으로 문화부문 일자리 확보 후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사업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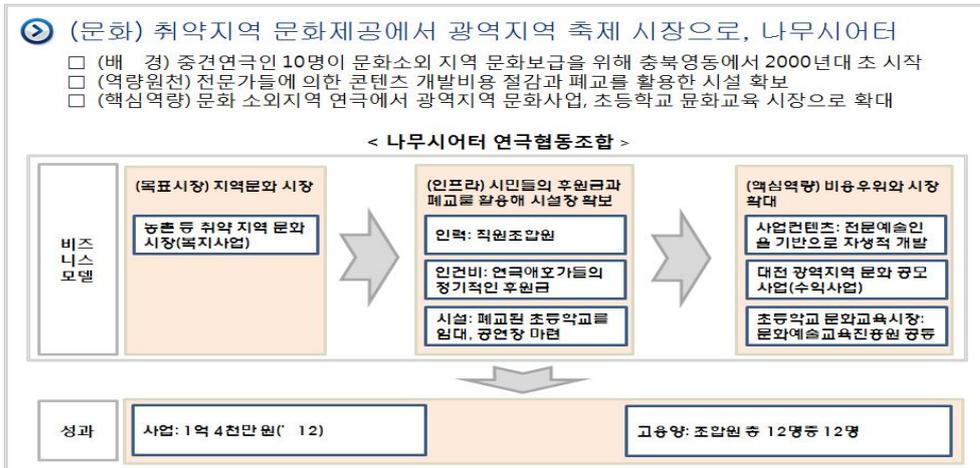
[그림 4-23] 문화 부문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페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나무시어터) 중견연극인 10명이 충북영동 지역의 연극 공동체를 설립 후, 지역 문화 봉사사업을 시작하고, 조명·미술 전문가들이 연계되면서 대전지역 축제행사 공연 및 기획, 초등학교 토요문화학교 사업 등으로 시장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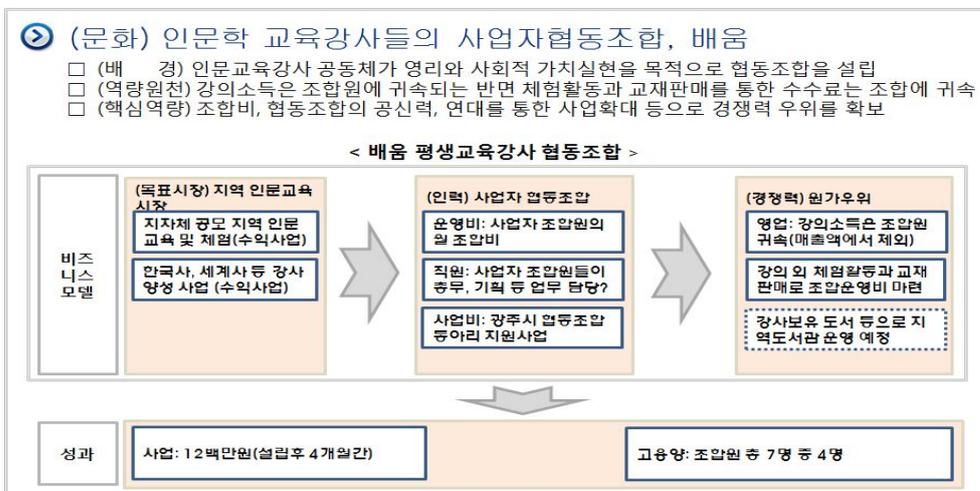
⇒(비용우위) 사업초기 폐교를 이용한 사업장 확보, 연극애호가들의 후원금 및 후원회에 기반한 프로젝트 펀딩 등으로 비용우위를 확보

[그림 4-24] 문화 부문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제품개발형의 핵심역량) 협동조합 운영업무를 조합원이 부가적으로 담당하여 비용우위를 확보 후, 기존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상품을 개발
- (배움 평생교육강사 협동조합) 인문학 강의사업 외 역사문화 체험활동, 교재판매, 강사육성 사업 등 관련 상품 개발로 매출을 확보
- ⇒ (비용우위) 조합원들의 세부업무 담당과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비를 마련

[그림 4-25] 문화 부문 배움 평생교육강사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6. 학습지원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단계와 핵심역량

□ (경영전략) 강사연계형 협동조합은 조합원 협력을 통한 신규상품 개발을, 시설형 협동조합은 자원을 연계한 비용절감을 통해 시장 확대 추구

○ (분석대상) 강사연계형 협동조합으로는 수과학교육놀이 협동조합과 아름다운 수학교실 협동조합을, 시설형 협동조합은 다문화 너머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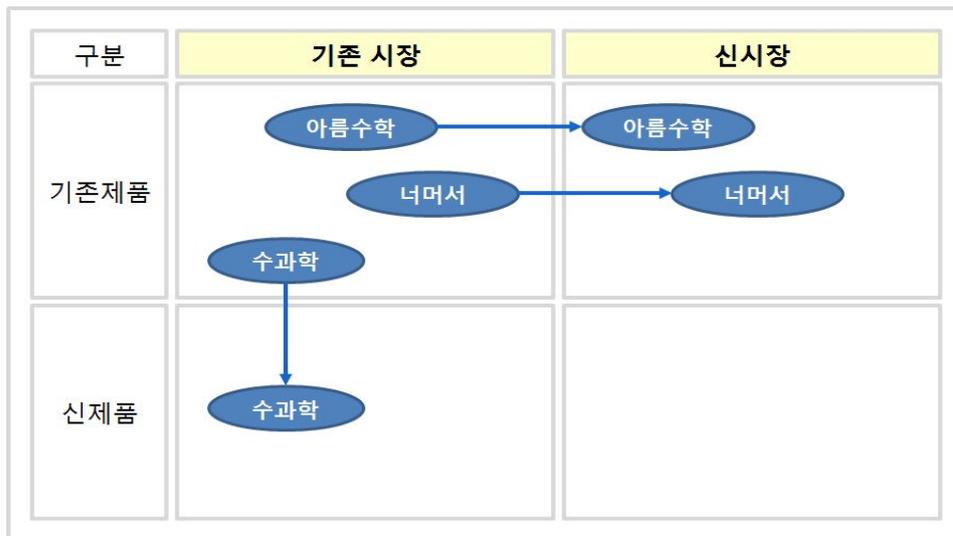
○ (시장확대) 아름다운수학교실 협동조합은 근거지 공간에서 조합원을 확대하여 2호점, 3호점을 기획하는 등 공간적 시장확대를 도모

⇒ 다문화 너머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거주 후원자조합원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 계획

○ (제품개발) 수과학교육놀이 협동조합은 다양한 과학지식 기반을 갖는 조합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학-교육놀이 상품을 개발

⇒ 이공계열 경력단절여성 중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육 이수자를 조합원의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R&D 추진

[그림 4-26] 학습지원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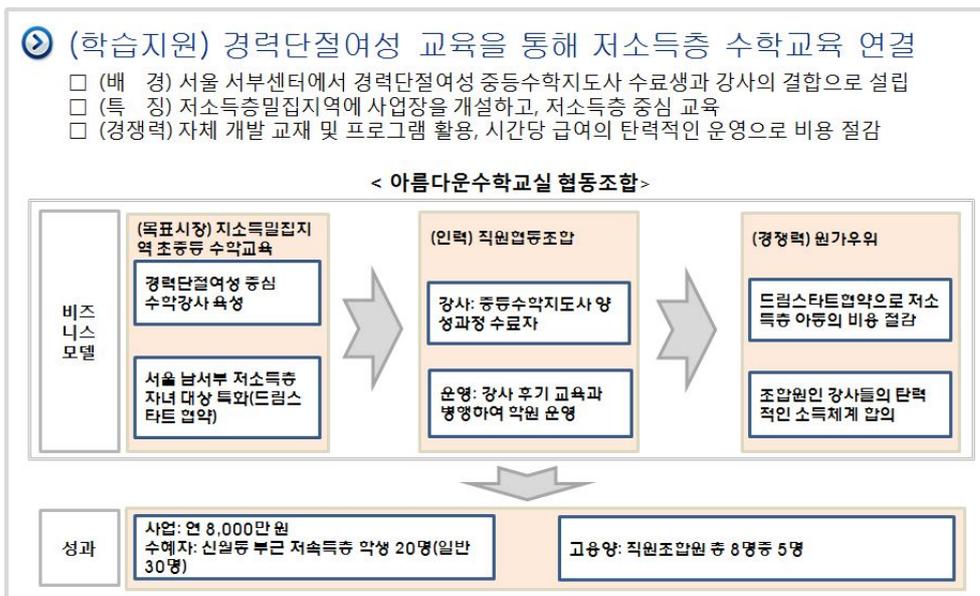


□ (시장확대형의 핵심역량) 지역 거주 조합원을 기반으로 공간적 확대를 지향

○ (아름다운수학교실 협동조합) 서울 서부여성발전센터 중등 수학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경력단절여성들이 과정지도 강사의 주도로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수학교실을 개설

⇒(비용우위) 강사들이 중등 수학지도사 수료자로서 현장 적용 교육으로 상정하고 초기 낮은 강사료를 자발적으로 합의

[그림 4-27] 학습지원 부문 협동조합 아름다운수학교실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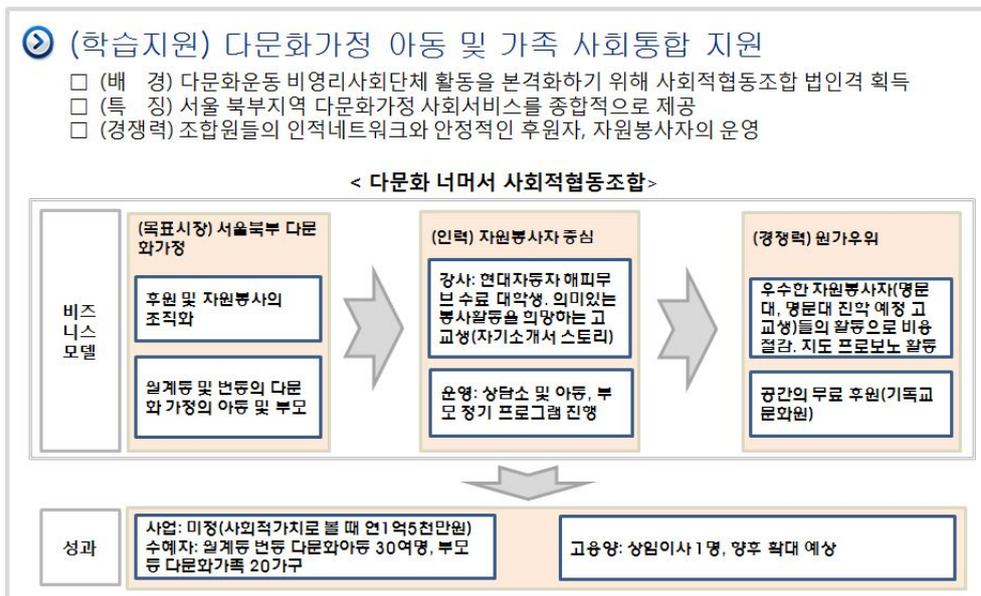


○ 학부모들이 소비자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서 지역 별로 그룹핑하여 점차 공간적 시장을 확대할 계획임.

⇒(역량강화)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강사로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치동 수학학원장 출신인 이사장과 강사들의 협력으로 교재를 직접 공동으로 개발. 특히 초등학생은 체험형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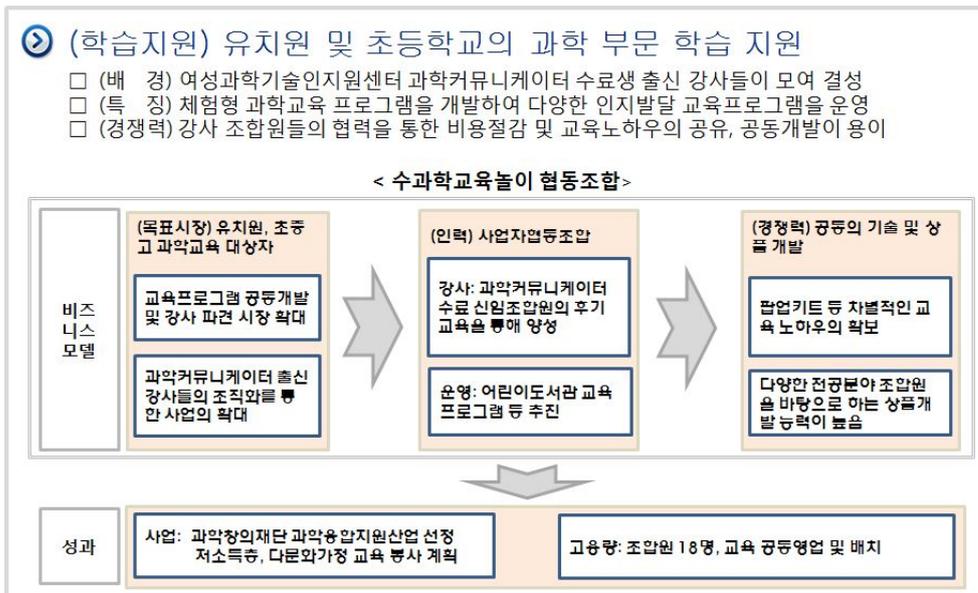
- (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 너머서) 어린이도서관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비영리사회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학습지원 상담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
 - ⇒ (비용우위) 다양한 자원봉사와 후원자들을 조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월평균 300~400만원의 후원금과 분야별 전문가 및 고교생, 대학생 등의 다양한 자원봉사자 풀의 활동을 조직하고 있음
- 2014년 3월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였으며,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매출과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역량강화) 자원봉사 고등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참여 방법을 높이고 있음. 조합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그림 4-28] 학습지원 부문 협동조합 다문화 너머서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제품개발형의 핵심역량) 협동조합 운영업무를 조합원이 부가적으로 담당하여 비용우위를 확보 후, 기존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상품을 개발
 - (수과학교육놀이)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육 수요자들의 협동을 통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 파견을 주로 진행
 - ⇒ (비용우위) 과학융합지원 사업 선정을 통해 제품 개발 비용(3D입체로 구현하는 과학 팝업 프로그램 Kit 개발)을 조달하고,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5개 도서관에 개설되는 등 영업비용을 절감
 - 초기 STEAM 수학, 스토리텔링 놀이수학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지원을 통해 팝업과학교실의 제품을 개발 한 후 다양한 과학분야 전문 인력을 가진 조합원의 지식을 바탕으로 “유치원 과학교실”, “요리과학교실”, 어린이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과학교실” 등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개발하여 조합원 베이스의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림 4-29] 학습지원 부문 수과학교육놀이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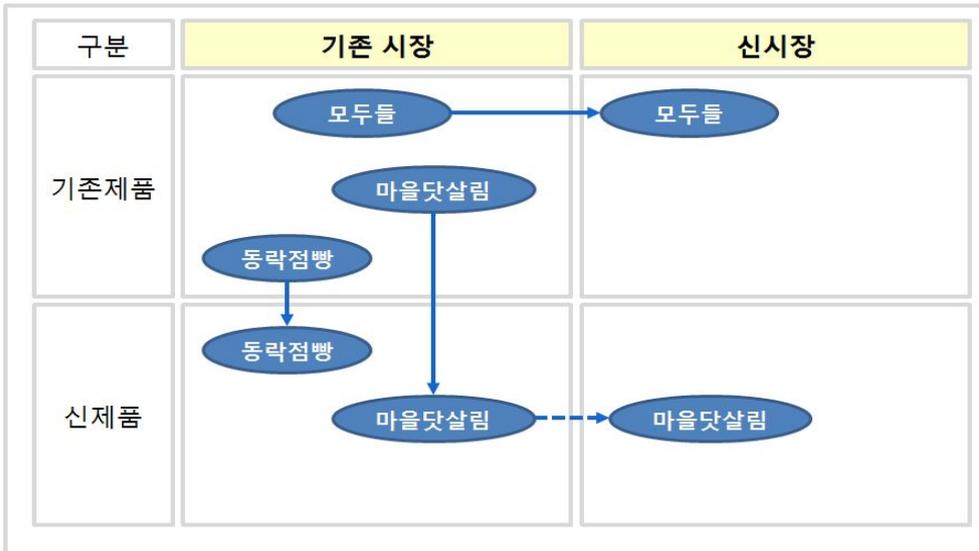


7. 시설이용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단계와 핵심역량

□ (경영전략) 시설이용 부문은 협동조합에서는 초기 경영 수준인데, 초기자본금 확보가 어렵고, 시설이용 사회서비스의 정책 종류가 소수이기 때문임. 임대형 협동조합과 외부지원 협동조합으로 구분하여 설명

- (분석대상) 임대형 협동조합으로는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을, 다기능 지원협동조합으로는 동락점빵과 마을닷살림을 선정함.
 - (시장확대) 모두들 협동조합은 근거지 공간에서 조합원을 확대하여 2호점, 3호점을 기획하는 등 공간적 시장확대를 도모
 - (제품개발) 동락점빵과 마을닷살림은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시설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려함.
- ⇒ 동락점빵은 농어촌 지역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복합체를 구성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림 4-30] 시설이용 부문 협동조합의 경영전략 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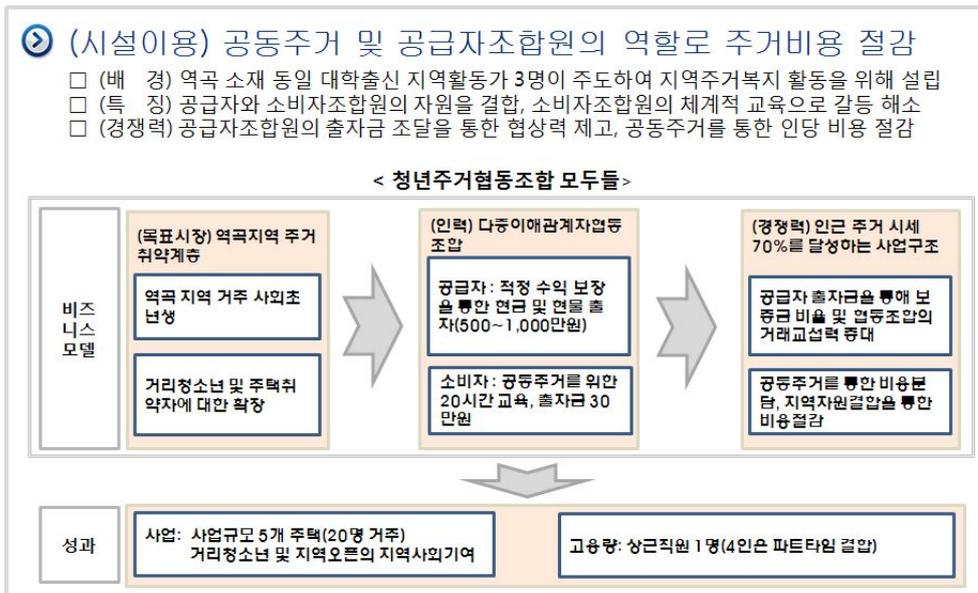


□ (시장확대형의 핵심역량) 초기 타겟에 대한 사업구조를 정비하면서 지역 내 다른 대상에게로 내부적인 시장확대 추진

○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 역곡 지역 부근의 사회초년생 공동주거에서 시작하여 청소년, 마을주민의 열린공간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수학교실을 개설

⇒(비용우위) 소비자조합원의 교육을 통해 공동주거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급자조합원의 비용을 조달, 보증금 비중을 높여 주거비 절감

[그림 4-31] 시설이용 부문 협동조합 모두들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공급자조합원의 확대를 통한 사업량 강화를 목표로 함 (1차 목표 10채)

⇒(역량강화) 공동주거조합원을 위한 조합원 교육 20시간 진행으로 공동주거에 따른 갈등 완화

⇒거리청소년 주거권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조합원 유형 확대 및 바람직한 공동주거 모델을 정립하는 등 시장 확대 연구개발 추진

□ (제품개발형의 핵심역량) 지역주민 기반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주민형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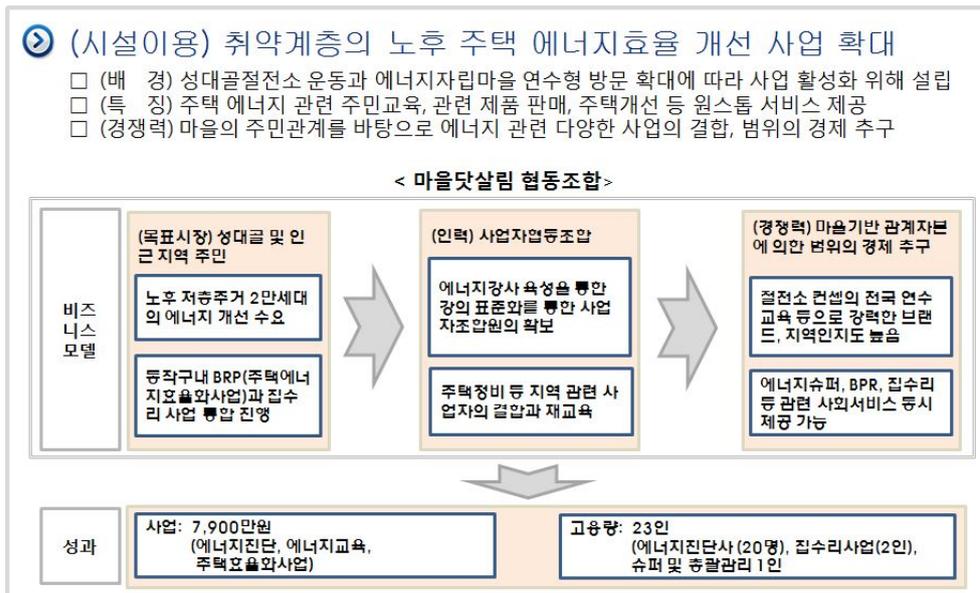
○ (마을닷살림) 서울 동작구 성대마을에서 성대골 절전소 운동을 시작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연수와 에너지슈퍼, 인근 학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BPR),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으로 확장

⇒(비용우위) 에너지절전 운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대상의 BPR, 집수리 사업을 진행, 영업 홍보비의 절감과 향후 마을공동이용 시설 입주를 통해 사무실 운영비 절감이 예상

○ 지역내 주택개보수 사업자를 사업자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에너지 관련 종합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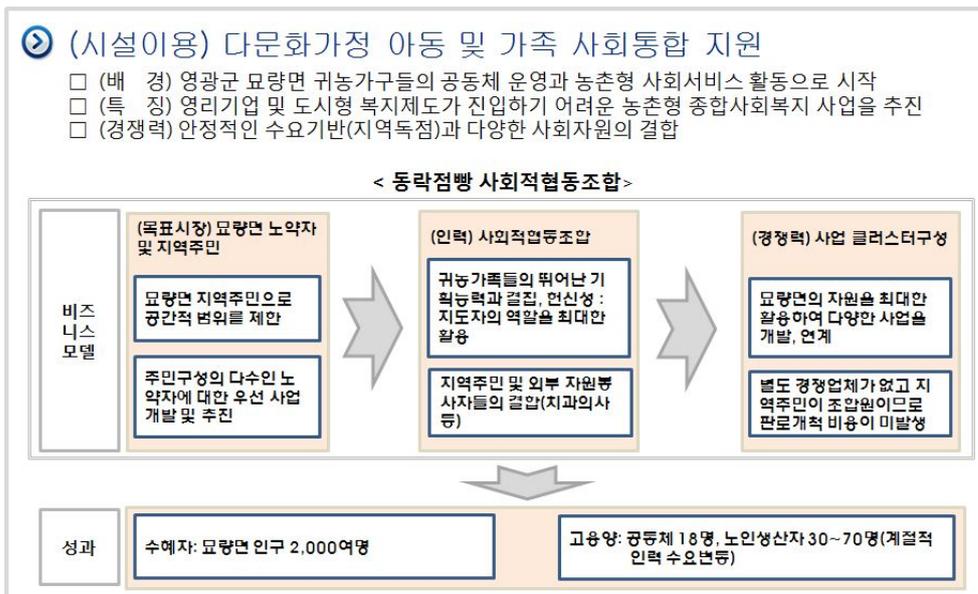
⇒(역량강화) 에너지 절약 강사 20명의 경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에너지슈퍼와 함께 에너지 교육 교보재 개발, 에너지진단 및 집수리에 에너지슈퍼가 공급하는 자재활용 등

[그림 4-32] 시설이용 부문 협동조합 마을닷살림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 (동락점빵) 동락점빵은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공동체의 한 사업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리 설립한 형태로서, 여민동락공동체는 협동조합복합체 발전 전략을 통해 농촌형 종합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지향하고 있음. 묘량면 귀농가족들의 활동이 점차 지역으로 파급된 사례임.
- ⇒ (상품개발) 원격지 농촌은 시장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영리기업의 시장이 진입하기 어려운 소외 시장이므로, 상품 자체의 혁신성보다 낙후지역에 도입될 수 있는 공급프로세스의 전환에 관심을 주고 있음.
- 동락점빵은 지역내 노인층을 위해 무점포 생활물자 순회 공급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며, 시설이용은 농촌 마을단위 마을회관을 복지서비스 제공 장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지역수요 대응) 2008년 묘량면 어르신 126명에 대한 방문면접 및 상담 실시로 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 준공하고 농촌재가노인복지사업 실시, 2010년 자립경제를 위한 행복노인일자리 사업단 발족 등 사업다각화를 실시

[그림 4-33] 시설이용 부문 동락점빵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분석과 성과



제3절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특징

□ (유형 분류) 역량 분석에 포함된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들을 정부지원형 협동조합과 민간자발형 협동조합으로 분류

⇒ (정부지원형)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의해 인큐베이팅된 협동조합들로 7개로 파악

⇒ (민간자발형) 17개 협동조합들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로 일부 협동조합에서는 마을기업 사업 등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들이 존재

〈표 4-2〉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설립유형	협동조합명	서비스 분야	창업지원 사항
정부지원형	수과학교육놀이	학습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교육
정부지원형	도우누리	돌봄	- 자활기업 지원
정부지원형	협동조합가온	사회참여	- 자활기업 지원
정부지원형	드림인터네셔널	사회참여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정부지원형	자바르페	문화	- 사회적일자리 지원
정부지원형	아름다운 수학교실	학습지원	- 경력단절 여성지원, 드림스타트
정부지원형	다문화 넘어서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민간자발형	배움	문화	- 광주시 협동조합 동아리 지원사업
민간자발형	서대문부모협동조합	돌봄	- 마을공동체 지원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동지	돌봄	- 주민자치지원금
민간자발형	연리지협동조합	사회참여	- 장애인고용촉진금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온리	사회참여	-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자발형	더불어락협동조합	사회참여	-
민간자발형	토닥토닥협동조합	상담	-
민간자발형	영림중 매점 협동조합	상담	- 학교매점 위탁
민간자발형	스포츠 제이	건강관리	-
민간자발형	체육도장업	건강관리	- 마을공동체 지원
민간자발형	마을닷살림	시설지원	-
민간자발형	동락점빵	시설지원	-
민간자발형	안산의협	돌봄	- 사회적일자리 지원
민간자발형	빛뜰협동조합	상담	-
민간자발형	잉쿱	사회참여	-
민간자발형	나무시어터	문화	-
민간자발형	청년주거협동조합	시설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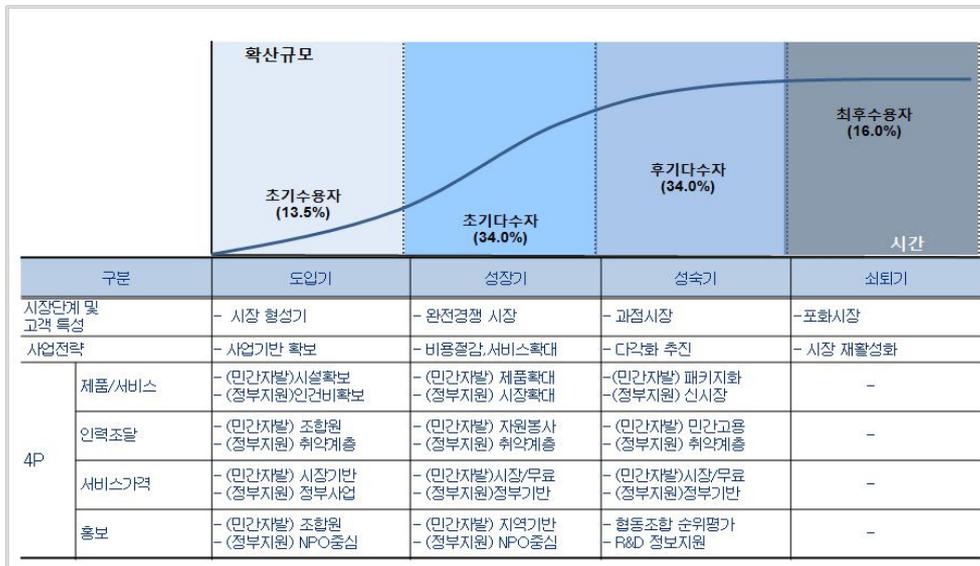
- (주요 고객) 정부지원형의 경우 취약계층이 주요고객이나 민간자발형의 경우, 조합원 또는 지역주민 등 취약계층 이외 국민들을 주요고객으로 설정
- (정부지원형)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주력함으로써 주요 고객이 방과후 아동이나 농어촌 아동, 노인 돌봄 등 취약계층이 중심
 - ⇒ 협동조합가온이나 자바르테의 경우, 재정지원 사회서비스에서 탈피, 지역 일반시장에 진출한 경우도 존재
- (민간지원형) 부모, 강사, 청년 등이 지역 내 필요한 보육, 돌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형과 차별
- (조합원) 정부지원형은 정부재정지원 하에 성장한 만큼 취약계층 중심이나 민간자발형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력조달에 있어서도 차별적

〈표 4-3〉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주력시장

설립유형	협동조합명	서비스 분야	주력시장
정부지원형	수과학교육놀이	학습지원	정부재정지원 방과후 아동돌봄 시장
정부지원형	도우누리	돌봄	정부재정지원 노인돌봄시장
정부지원형	협동조합가온	사회참여	지역 주택시장
정부지원형	드림인터네셔널	사회참여	농어촌 어린이 교육시장
정부지원형	자바르테	문화	지역 문화시장
정부지원형	아름다운 수학교실	학습지원	지역 아동 학습지원 시장
정부지원형	다문화 넘어서	학습지원	지역 다문화 가정
민간자발형	배움	문화	지역 인문학시장
민간자발형	서대문부모협동조합	돌봄	지역 보육시장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동지	돌봄	지역 보육시장
민간자발형	연리지협동조합	사회참여	지역 세차시장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온리	사회참여	지역 전통 문화시장
민간자발형	더불어락협동조합	사회참여	지역 먹거리 시장
민간자발형	토닥토닥협동조합	상담	지역 상담시장
민간자발형	영립중 매점 협동조합	상담	학교 매점시장
민간자발형	스포츠 제이	건강관리	지역 건강관리 시장
민간자발형	체육도장업	건강관리	지역 건강관리 시장
민간자발형	마을닷살림	시설지원	지역 에너지 시장
민간자발형	동락점빵	시설지원	복지서비스 시장
민간자발형	안산의협	돌봄	지역 노인돌봄시장
민간자발형	빛뜰협동조합	상담	지역 상담시장
민간자발형	잉글	사회참여	지역 취약계층 영어교육시장
민간자발형	나무시어터	문화	지역 문화시장
민간자발형	청년주거협동조합	시설지원	지역 주거시장

- (성장단계)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들은 차별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도입기 -성장기-성숙기-쇠퇴기 등 성장단계에서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기업성장단계)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성장단계 및 전략을 혁신의 확산 모델(Innovation of Diffusion)에 적용하면 크게 4단계로 요약됨
 - ⇒(도입기) 기업은 신제품을 기반으로 혁신자(전문가 그룹을 대상)와 오피니언 리더 대상의 제품 사용과 평가에 주력함으로써 시장에 진입
 - ⇒(성장기) 시장선점을 위해 일반대중 중 초기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품 수정, 대량 유통 단계 등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을 선점
 - ⇒(성숙기) 시장을 선점한 소수 기업들 이외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진 후 소수 대기업만이 생존
 - ⇒(쇠퇴기) 시장 수요가 포화상태에 놓여 시장을 지배하게 된 일부 기업들은 기존 제품 유지 또는 부가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

[그림 4-34]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들의 성장단계와 특성



□ (추진전략) 정부지원형의 경우 시장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반면에 민간자발형은 부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

○ (정부지원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의해 인큐베이팅 된 후 기본서비스를 기반으로 유사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진입하는 전략 추진이 다수

⇒ 재가돌봄에서 시설돌봄으로, 특정 지역 주택시장에서 근교지역 시장으로, 강사육성에서 취약계층 시장으로 확대하는 형태를 취함

○ (민간자발형) 지역주민 중심의 기본 서비스에 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가적인 제품을 개발해 제공하는 형태를 취함

⇒ 인문학 강의에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어린이집에서 부모심리상담을, 두부공장이외에 북카페 운영 등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형태를 취함

〈표 4-4〉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설립유형	협동조합명	분야	성장 전략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정부지원형	수과학교육놀이	학습지원	제품개발	수과학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부지원형	도우누리	돌봄	시장확대	재가돌봄	시립요양원 위탁 운영
정부지원형	협동조합 가온	사회참여	시장확대	주택수리	5개 지역시장으로 확대
정부지원형	드림인터네셔널	사회참여	시장확대	강사육성	농어촌 아동교육시장 진출
정부지원형	자바르페	문화	시장확대	연극공연	지역축제시장 진출
정부지원형	아름다운 수학교실	학습지원	시장확대	수학교육	저소득 아동 수학교육
정부지원형	다문화 넘어서	학습지원	시장확대	도서관운영	다문화 가정 멘토사업
민간자발형	배움	문화	제품개발	인문학강의	지역도서관 운영
민간자발형	서대문부모협동조합	돌봄	제품개발	어린이집	다문화가정 등 시설공개등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등지	돌봄	제품개발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심리교육 등
민간자발형	연리지협동조합	사회참여	제품개발	장애아돌봄	세차시장 진출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온리	사회참여	제품개발	전통공예	폐지활용 수제품 열서개발
민간자발형	더불어락협동조합	사회참여	제품개발	두부제조	죽가게, 북카페 운영
민간자발형	토닥토닥협동조합	상담	제품개발	카페운영	심리상담 시장 진출
민간자발형	영림중 매점협동조합	상담	제품개발	학교매점	지역아동센터에 간식공급
민간자발형	스포츠 제이	건강관리	제품개발	축구클럽	용품매장 운영
민간자발형	체육도장업	건강관리	제품개발	태권도	예방건강사업 실시
민간자발형	마을닷살림	시설지원	제품개발	에너지사업	에너지강사 육성사업 실시
민간자발형	동락점빵	시설지원	제품개발	무점포 유통	지역대상 사회서비스 실시
민간자발형	안산의협	돌봄	시장확대	의료	장기요양 등 재가돌봄
민간자발형	빛뜰협동조합	상담	시장확대	심리지료	노숙자 등으로 대상 확대
민간자발형	잉글	사회참여	시장확대	영어교육	지역아동센터 교육 참여
민간자발형	나무시어터	문화	시장확대	연극공연	초등학교 교육시장 진출
민간자발형	청년주거협동조합	시설지원	시장확대	공동주거	청소년 주거 등으로 확대

□ (도입기 성공요인) 정부지원형의 경우 일자리 지원사업에 의한 인건비 절감이, 민간발형의 경우, 시설장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지원이 핵심요인

○ (정부지원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의한 취약계층 대상의 인큐베이팅과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비용우위 및 사업리스크를 감소

⇒ 자활기업,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제공 등을 통해 참여 인력의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확보

○ (민간자발형) 사업장 마련 시 지역 주민과 조합원,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파악

⇒ 지역 주민에 의한 모금,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사업장 이용, 마을공동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시설장 확보

〈표 4-5〉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도입기 성공요인과 투자분야

설립유형	협동조합명	분야	성장 전략	성공요인	투자 분야
정부지원형	수과학교육놀이	학습지원	제품개발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지원	자격증 교육
정부지원형	도우누리	돌봄	시장확대	안정적인 재가돌봄 시장	인건비 확보
정부지원형	협동조합 가온	사회참여	시장확대	기존 사업장 활용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형	드림인터네셔널	사회참여	시장확대	영어강사진 육성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형	자바르메	문화	시장확대	일자리사업으로 계단지원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형	아름다운 수학교실	학습지원	시장확대	서부여성발전센터 지원	자격증 교육
정부지원형	다문화 넘어서	학습지원	시장확대	사회서비스 NPO 지원	인건비
민간자발형	배움	문화	제품개발	지자체 협동조합 지원자금	교재개발비
민간자발형	서대문부모협동조합	돌봄	제품개발	공동체기금으로 시설장 확보	시설 확보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등지	돌봄	제품개발	공동체기금으로 시설장 확보	시설 확보
민간자발형	연리시협동조합	사회참여	제품개발	사회적기업에서 세차장비 확보	설비 확보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온리	사회참여	제품개발	상인지원으로 시설장 확보	노인일자리지원
민간자발형	더불어락협동조합	사회참여	제품개발	복지관의 시설임대	노인일자리지원
민간자발형	토닥토닥협동조합	상담	제품개발	조합원 출자로 시설장 확보	-
민간자발형	영림중매점협동조합	상담	제품개발	학교장지원으로사업권확보	시설확보
민간자발형	스포츠 제이	건강관리	제품개발	전문 강사진	-
민간자발형	체육도장업	건강관리	제품개발	기존 사업장 활용	시설 확보
민간자발형	마을닷살림	시설지원	제품개발	지역에너지사업	-
민간자발형	동락점빵	시설지원	제품개발	지역공동체 운동	-
민간자발형	안산의협	돌봄	시장확대	안정적 조합시장	인건비
민간자발형	빛뜰협동조합	상담	시장확대	조합원 주택으로 시설장확보	-
민간자발형	잉클	사회참여	시장확대	전문강사진	-
민간자발형	나무시어터	문화	시장확대	폐교임대	-
민간자발형	청년주거협동조합	시설지원	시장확대	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원결합	-

□ (성장기 성공요인) 정부지원형의 경우 주력사업 분야기반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민간자발형의 경우, 자본들의 연계가 경쟁력의 원천임

○ (정부지원형) 사회서비스 위탁 및 공공조달시장의 진출로 시장확대 등의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경향이 다수

○ (민간자발형) 지역주민과 적경제 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 비용우위를 점하는 경우와 공공조달시장의 참여를 통해 사업확대를 추구하는 경우가 공존

⇒ 아름다운수학교실, 협동조합온리, 더불어락협동조합, 체육도장업협동조합, 나무시어터, 자바르페 등은 정부 공공조달사업에 참가하여 경쟁력을 확보

〈표 4-6〉 24개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성장기 성공요인과 투자분야

설립유형	협동조합명	분야	성장 전략	성공요인
정부지원형	수과학교육놀이	학습지원	제품개발	과학융합지원사업자선정으로 교재개발
정부지원형	도우누리	돌봄	시장확대	법인격 획득으로 인한 시립요양원위탁
정부지원형	협동조합 가온	사회참여	시장확대	협동조합 결성으로 인한 중장비 임대
정부지원형	드림인터네셔널	사회참여	시장확대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자금 지원
정부지원형	자바르페	문화	시장확대	서울시 관광자원 사업 등 지원
정부지원형	아름다운 수학교실	학습지원	시장확대	드림스타트협약으로 아동교육시장진출
정부지원형	다문화 넘어서	학습지원	시장확대	다양한 자원봉사자와 후원금
민간자발형	배움	문화	제품개발	직원 조합원으로 비용분담
민간자발형	서대문부모협동조합	돌봄	제품개발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의 연계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등지	돌봄	제품개발	지역지원금+사회적경제조직 연계
민간자발형	연리협동조합	사회참여	제품개발	관공서의 출장세차 사업장 지원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온리	사회참여	제품개발	지자체 기념품 시장 진출
민간자발형	더불어락협동조합	사회참여	제품개발	복지관 및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지원
민간자발형	토닥토닥협동조합	상담	제품개발	시설기반의 이중합중 사업 추진
민간자발형	영림중 매점협동조합	상담	제품개발	생협 등 지원과 학교의 매점사업 부여
민간자발형	스포츠 제이	건강관리	제품개발	협동조합 결성으로 용품매장 확보
민간자발형	체육도장업	건강관리	제품개발	마을기업지원금으로 건강예방센터운영
민간자발형	마을닷살림	시설지원	제품개발	주택에너지사업자로 선정
민간자발형	동락점빵	시설지원	제품개발	마을회관과 의사봉사등 사회자원 결합
민간자발형	안산의협	돌봄	시장확대	자원봉사자 평생조합원을 통한 비용우위
민간자발형	빛뜰협동조합	상담	시장확대	전문 강사진들에 의한 사업위험 감소
민간자발형	잉클	사회참여	시장확대	공기업의 민간사업 모델 지원금
민간자발형	나무시어터	문화	시장확대	대전 광역지역 문화공모사업 등 지원
민간자발형	청년주거협동조합	시설지원	시장확대	공급자의 현금/현물출자로 비용절감

□ (유형별 성공모델) 정부지원형 모델은 정부사업의 인큐베이팅에 의한 사회서비스 시장 진출 및 확대가, 민간자발형 모델은 시설확보 후 자본의 연계가 협동조합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파악

- (정부지원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사업의 영향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부여정책이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
 - ⇒(대상)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에 의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으로 분사하는 경향이 나타남
 - ⇒(장점) 기존에 사회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습득된 인력의 서비스 전문성을 기반으로 유사시장에 진출하는 형태가 다수
 - ⇒(단점)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등 제품개발이 매우 부족하며,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화가 어려울 것으로 파악
 - ⇒(지원방안) 기존에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사회서비스 시장의 진출보장이나 지자체내 공공조달시장의 참여방안이 필요
- (민간자발형) 지역주민 또는 조합원 중심으로 설립되어 초기 시설확보가 사업진출의 1차 장애물이며, 신시장 개척이 2차 문제점으로 파악
 - ⇒(대상) 정부지원형과 달리 지역주민들에 의한 복지수요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모금이나 지원하에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경향이 나타남
 - ⇒(장점) 표준화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위탁업체와 달리 시장화가 가능한 이종합중형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장화에 성공
 - ⇒(단점)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시설장 확보를 위해 마을기업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다수 이용
 - ⇒(지원방안) 시설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은 시설장 변경 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으로 등장하는 만큼, 지원제도의 변화가 요구되며, 신사회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부여하는 지원방식이 필요



제5장

협동조합의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진출가능성 모색

- 제1절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 제2절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 제3절 건강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 제4절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 제5절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 제6절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 제7절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5

협동조합의 범부처 < 사회서비스 사업 진출가능성 < 연구

제1절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1.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특성

□ (특징) 복지부 중심으로 사업예산이 크고 서비스 표준화가 이루어진 사업들이 다수이나, 협동조합이 진출 시 경쟁심화와 진입조건의 장벽이 존재

○ (부처) 돌봄부문 사회서비스는 총 24개 사업이며 보건복지부 사업이 15개로 다수이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개로 서비스 표준화 정도는 높은 편임

○ (개방성) 인가조건 측면에서 사업진입이 용이한 사업과 어려운 사업이 각각 12개로 동일함

⇒ 시장진입이 용이한 경우, 사업체가 과다공급 된 경향이 높고, 시장진입이 어려운 경우 사업체로써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존재

○ (시장규모) 소득기준이 있는 사업이 총 25개 중 13개로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장규모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잠재요인이 존재

□ (1인당 연간 사업예산) 2순위 사업군의 연간 사업예산이 약 1.5천억 원 많으나, 1인당 연간 사업예산액에서는 1순위 사업군이 1인당 70만원이 더 많음

○ (분석기준) 수혜자 1인당 사업 예산 배정액 규모가 큰 사업은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진출할 여지가 큼

⇒ 1순위 사업군은 2백만 원 이상, 2순위 사업군은 1백만 원 이상~ 2백만 원 미만, 3순위 사업군은 1백만원 미만으로 구분

○ (분석결과) 1순위 사업군에는 보건복지부 4개, 여성가족부 2개, 2순위 사업군에는 보건복지부 6개, 여성가족부 1개가 포함

- (1순위 사업군) 장애인활동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 다문화가족정착 및 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요보호아동그룹홈, 유아학비·보육료지원이 포함
- (2순위 사업군) 영유아보육료지원, 장애대학생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10대방과후돌봄, 방과후돌봄의 7개 사업임

〈표 5-1〉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1순위	소계	3,214,088	1,389,996	2,312,300
	15. 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382,876	60,435	6,335,335
	11. 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32,562	8,090	4,024,969
	10.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여가부)	58,370	18,990	3,073,723
	17. 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118,162	40,000	2,954,050
	9. 요보호아동그룹(복지부)	7,300	2,481	2,942,362
2순위	3. 유아학비·보육료지원(복지부)	2,614,818	1,260,000	2,075,252
	소계	3,361,515	2,049,962	1,639,794
	2. 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2,598,219	1,486,980	1,747,313
	16. 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4,285	2,500	1,714,000
	14. 가사간병서비스(복지부)	18,184	10,878	1,671,631
	5.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12.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포함)*	70,818	51,393	1,377,970
	18.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541,210	389,000	1,391,285
	25. 10대방과후돌봄(지투사업)	200	145	1,379,310
3순위	8. 방과후돌봄(복지부)	128,599	109,066	1,179,093
	소계	142,084	510,529	278,307
	7.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57,596	95,136	605,407
	4. 엄마품은종일돌봄강사(교육부)	9,120	15,706	580,670
	6. 장애아동가족지원(복지부)	1,279	2,414	529,826
	1. 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29,074	58,569	496,406
	22. 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31,394	63,866	491,560
	20. 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7,100	27,658	256,707
	19. 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2,501	12,100	206,694
	24. 장애인, 노인돌봄여행서비스	2,305	17,661	130,514
	23. 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여가부)	1,263	57,682	21,896
	13. 초등돌봄교실(교육부)*	452	159,737	2,830
기타	21. 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12,541	-	-

자료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예산구성)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2.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 여성가족부
 3. 초등돌봄교실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 교육부
 4.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데이터는 2014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개요. 2014.1. 보건복지부
 주1.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 사업개관에는 5. 아이돌봄서비스와 12.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업예산이 동일항목으로 합산함
 2.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예산은 사업 성격상 사례관리사 928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사업예산이며, 사업수혜자 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힘

□ (정책 추진 정도) 1인당 예산과 수혜자 규모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이 타 부처와 격차가 커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수혜자 1인당 연간 예산 배정액은 약 167만원이며,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의 수혜자 1인당 연간 예산액은 약 119만원임
- 교육부의 수혜자 1인당 연간 예산액은 약 208만원으로 가장 크지만 장애대학생도우미(171만원)와 유아학비 보육료지원(207만원)간의 편차가 큼

〈표 5-2〉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소관부처별 수혜자 1인당 예산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복지부	소계 ¹⁾	3,916,398	2,336,631	1,676,087
	1.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29,074	58,569	496,406
	2.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2,598,219	1,486,980	1,747,313
	6.장애아동가족지원(복지부)	1,279	2,414	529,826
	7.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57,596	95,136	605,407
	8.방과후돌봄(복지부)	128,599	109,066	1,179,093
	9.요보호아동그룹(복지부)	7,300	2,481	2,942,362
	14.가사간병서비스(복지부)	18,184	10,878	1,671,631
	15.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382,876	60,435	6,335,335
	17.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118,162	40,000	2,954,050
	18.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541,210	389,000	1,391,285
	21.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	-	-
	22.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31,394	63,866	491,560
	24.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지투사업)	2,305	17,661	130,514
	25.10대방과후돌봄(복지부_지투)	200	145	1,379,310
여가부	소계	163,013	136,155	1,197,260
	5.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_시간제포함)	70,818	51,393	1,377,970
	10.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여가부)*	58,370	18,990	3,073,723
	11.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32,562	8,090	4,024,969
교육부	23.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여가부)	1,263	57,682	21,896
	소계	2,628,675	1,437,943	1,828,080
	3.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2,614,818	1,260,000	2,075,252
	4.엄마품은종일돌봄강사(교육부)	9,120	15,706	580,670
	13.초등돌봄교실(교육부)*	452	159,737	2,830
농림부	16.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4,285	2,500	1,714,000
	20.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7,100	27,658	256,707
보훈처	19.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2,501	12,100	206,694

자료1.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 여성가족부
 2. 초등돌봄교실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교육부
 3. 노인돌봄, 노인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개요.2014.1.보건복지부
 주1.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 사업개관에는 5.아이돌봄서비스와 12.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업예산이 동일항목으로 합산함
 2.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예산은 사업 성격상 사례관리사 928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사업예산이며, 사업수혜자 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비스 표준화) 전체 24개 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개에 불과함
 으로 돌봄 부문의 경우, 서비스 표준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
 가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지침 등이 지자체의 기준에 준하여 정
 해지기 때문에 서비스 표준화가 낮은 사업군에 해당

○ 총 24개 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 10
 대 방과후돌봄사업 2개로 파악

〈표 5-3〉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소계 ¹⁾	6,715,182	3,932,681	1,707,533	
일반사업	1.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29,074	58,569	496,406
	2.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2,598,219	1,486,980	1,747,313
	3.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2,614,818	1,260,000	2,075,252
	4.엄마품은중일돌봄강사(교육부)	9,120	15,706	580,670
	5.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_시간제포함)	70,818	51,393	1,377,970
	6.장애아동가족지원(복지부)	1,279	2,414	529,826
	7.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57,596	95,136	605,407
	8.방과후돌봄(복지부)	128,599	109,066	1,179,093
	9.요보호아동그룹(복지부)	7,300	2,481	2,942,362
	10.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여가부)*	58,370	18,990	3,073,723
	11.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32,562	8,090	4,024,969
	13.초등돌봄교실(교육부)*	452	159,737	2,830
	14.가사간병서비스(복지부)	18,184	10,878	1,671,631
	15.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382,876	60,435	6,335,335
	16.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4,285	2,500	1,714,000
	17.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118,162	40,000	2,954,050
	18.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541,210	389,000	1,391,285
	19.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2,501	12,100	206,694
	20.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7,100	27,658	256,707
	21.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	-	-
	22.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31,394	63,866	491,560
	23.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여가부)	1,263	57,682	21,896
	지역사회 서비스투 자사업	소계	2,505	17,806
	24.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지투사업)	2,305	17,661	130,514
	25.10대방과후돌봄(지투사업)	200	145	1,379,310

자료1.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 여성가족부
 2. 초등돌봄교실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교육부
 3. 노인돌봄, 노인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개요.2014.1.보건복지부
 주1.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개관에는 시간제와 종일제를 구분하였 사업예산이 동일항목으로 합산함
 2.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예산은 사업 성격상 사례관리사 928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사업예산이며, 사업수혜자 규
 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소득기준 여부) 1인당 연간 예산액에서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이 소득기준이 있는 사업보다 평균 약 70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

○ 돌봄부문에서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은 전체 24개 사업 중 11개로 총 사업예산 6조 3,110억 원, 1인당 연간 예산은 177만 원임

○ 한편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은 전체 24개 사업 중 13개로 총사업 예산 4,066억 원, 1인당 연간 예산은 102만 원임

〈표 5-4〉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의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 연간 예산(원)
소득기준 무	소계	6,311,005	3,553,064	1,776,215
	2.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2,598,219	1,486,980	1,747,313
	3.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2,614,818	1,260,000	2,075,252
	5.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_시간제포함)	70,818	51,393	1,377,970
	9.요보호아동그룹(복지부)	7,300	2,481	2,942,362
	10.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여가부)*	58,370	18,990	3,073,723
	13.초등돌봄교실(교육부)*	452	159,737	2,830
	15.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382,876	60,435	6,335,335
	16.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4,285	2,500	1,714,000
	18.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541,210	389,000	1,391,285
	22.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31,394	63,866	491,560
	23.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여가부)	1,263	57,682	21,896
	소득기준 유	소계 ²⁾	406,682	397,423
1.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29,074	58,569	496,406
4.임마품온종일돌봄강사(교육부)		9,120	15,706	580,670
6.장애아동가족지원(복지부)		1,279	2,414	529,826
7.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57,596	95,136	605,407
8.방과후돌봄(복지부)		128,599	109,066	1,179,093
11.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32,562	8,090	4,024,969
14.가사간병서비스(복지부)		18,184	10,878	1,671,631
17.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118,162	40,000	2,954,050
19.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2,501	12,100	206,694
20.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7,100	27,658	256,707
21.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	-	-
24.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지투사업)		2,305	17,661	130,514
25.10대방과후돌봄(지투사업)	200	145	1,379,310	

자료1.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 여성가족부

2. 초등돌봄교실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교육부

3. 노인돌봄, 노인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개요.2014.1.보건복지부

주1. 소득기준 유무는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격에 제한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구분함. 이용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이용비용 부담금에 대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경우는 소득기준이 없는 것으로 분류

2.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개관에는 시간제와 종일제를 구분하였 사업예산이 동일항목으로 합산함

3.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예산은 사업 성격상 사례관리사 928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사업예산이며, 사업수혜자 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참여가능성) 1인당 사업 예산이 140만 원 이상인 사업들의 경우 인가제 및 허가제 등 개방성이 낮은 사업군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

○ (분류 기준) 돌봄부문의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식은 크게 인가방식과 등록제 및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분됨

⇒ 인가제나 허가제는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는 반면 등록제나 경쟁입찰은 새로운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단 등록제 또는 경쟁 입찰의 경우, 경쟁입찰 자격기준이 복지법인이나 비영리기관 등으로 제한된다면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개방성 高) 24개 사업 중 개방성이 높은 사업은 총 12개 사업이며, 이 중 9개 사업은 등록제로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1인당 사업예산이 100만원 이상인 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402만원), 보호아동돌봄(294만원), 가사간병서비스(167만원), 장애대학생도우미(171만원),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보미(294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137만원) 등이 포함됨

⇒ 그러나 등록제로 개방성이 높은 사업은 개인사업체 등 모든 사업체가 참여가 가능해 경쟁정도가 매우 높은 사업군이라는 점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개방성 低) 사업수행기관을 인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12개이며, 이중 인가제는 4개, 지정제는 8개로 파악

⇒ 이중 1인당 사업예산이 높은 영유아보육료지원(147만 원),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207만 원),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및 시간제(137만원), 장애인활동지원(633만원) 등이 포함됨

⇒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자체 지정사업이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전체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도 있음

⇒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평가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으로 우선 인

가 또는 지정되도록 지원한다면 참여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표 5-5〉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수 ('13)	1인당 연간예산(원)	
개방성 고	1.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개인사업체 65%	-등록제	277	496,406
	8.방과후돌봄(복지부)	-개인사업체 65.2%	-등록제	4,061	1,179,093
	9.요보호아동그룹홈보육(복지부)	-개인사업체 30%	-등록제	480	2,942,362
	10.다문화가족정착및재양육지원(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경쟁입찰	212	3,073,723
	11.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경쟁입찰	200	4,024,969
	14.가사간병서비스(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 90%	-등록제	488	1,671,631
	16.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등록제	203	1,714,000
	17.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비(복지부)	-영리기관 50% -사회복지,비영리 50%	-등록제	1,424	2,954,050
	18.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영리기관 79.6%	-등록제	19,480	1,391,285
	22.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경쟁입찰	200	491,560
	24.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지투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59	130,514
	25.10대 방과후 돌봄(지투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2	1,379,310
개방성 저	2.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인가제	43,659	1,747,313
	3.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인가제	17	2,075,252
	4.엄마표온종일 돌봄강사(교육부)	-사회복지,비영리 75% -정부·지자체산하기관 25%	-인가제	823	580,670
	6.장애아동가족지원(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인가제	18	529,826
	7.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11	605,407
	5.아이돌봄서비스영아중일제시간제(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 95.4% -지자체 직접운영 4.6%	-자체자정	216	1,377,970
	13.초등돌봄교실(교육부)*	-학교 100%	-지정제	5,784	2,830
	15.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지정제	1,039	6,335,335
	19.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5	206,694
	20.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964	256,707
	21.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
23.여성장애인생활밀착형지원강화(여성부)	-사회복지,비영리 100%	-지정제	22	21,896	

자료1.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 여성가족부

2. 초등돌봄교실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1.교육부

3.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사 데이터는 2014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개요.2014.1.보건복지부

주1.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 사업개관에는 5.아이돌봄서비스와 12.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업예산이 동일항목으로 합산함

2.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예산은 사업 성격상 사례관리사 928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사업예산이며, 사업수혜자 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계에서 제외함

2. 협동조합 역량 극대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

□ (목표사업 분석) 총 24개 돌봄 사업 중 개방적-표준화사업은 10개, 제한적-표준화 사업은 12개, 개방적-비표준화 사업은 2개로 분류

○ (분석기준) 앞서 분석된 사회서비스 사업의 참여가능성 정도와 사회서비스의 표준화 정도를 고려, 돌봄서비스 사업부문을 개방적-표준화사업, 개방적-비표준화사업, 제한적-표준화사업, 제한적-비표준화 사업, 4개군으로 분류

○ (분석결과) 제한적-표준화 사업군의 사업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수혜자 1인당 연간 예산 배정액이 178만원으로 가장 많음

⇒ 개방적-표준화사업군의 경우, 제한적-표준화 사업군보다 총 예산규모는 매우 적으나, 수혜자 규모가 적어 1인당 예산 배정액은 상대적으로 큼

[그림 5-1]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구분		참여가능성 정도	
		개방적(등록제·경쟁입찰)	제한적(허가제·인가제)
서비스 표준화 정도	표준화 (일반 서비스)	- 개방적-표준화 사업 1. 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8. 방과후돌봄(복지부) 9. 요보호아동그룹(복지부) 10. 다문화가족정착맞양육지원(여가부)* 11. 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14. 가사간병서비스(복지부) 16. 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17. 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18.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22. 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 제한적-표준화 사업 (12개) 2. 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3. 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4. 업무품온종일돌봄강사 5/12.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시간제(여가부) 6. 장애아동가족지원(복지부) 7.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13. 초등돌봄교실(교육부)* 15. 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19. 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20. 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21. 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23. 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여가부)
	비표준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2개) 24. 장애인, 노인돌봄여행서비스 25. 10대방과후돌봄(지투사업)	- 제한적-비표준화 사업 (0개)

〈표 5-6〉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명, 원)

구분	사업수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원)
개방적 - 표준화	10	969,140	703,440	1,377,715
개방적 - 비표준화	2	2,505	17,806	140,682
제한적 - 표준화*	12	5,746,042	3,229,241	1,779,378

* 개방적-표준화 사업군에 해당되는 사업중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예산은 사업 성격상 사례관리사 928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사업예산이며, 사업수혜자 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계에서 제외함

□ (개방적-표준화 사업) 총 10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이 7개로 가장 많으며, 여성가족부 2개, 교육부 1개로 파악

○ (예산규모) 노인장기요양보험, 방과후돌봄, 노인돌봄서비스 등 예산규모가 큰 사업으로 파악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체수가 약 2만개에 이르며, 영리기관 비율도 79.6%이고, 방과후 돌봄도 개인사업자 비율이 65.2%로 매우 높음

⇒ 진출가능성은 높으나, 수요대비 서비스 공급기관이 많아,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권 부여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경쟁우위를 접하기 어려움

○ (사업대상 및 내용) 인구 및 미래 사회 변화 전망을 고려 시, 개방적-표준화 사업군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돌봄의 수요 증가, 소득양극화로 인한 요보호 아동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아동청소년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 증가가 예상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임으로 정부의 복지예산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시장확대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존재

⇒ 특히, 소득기준이 없는 3개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이 요보호아동, 장애대학생, 다문화가족 등으로 일정정도 제한적 특성을 가진 집단

○ (시장참여시 고려사항) 경쟁업체와 과다공급과 예산 제한으로 인한 시장확대의 불확실성을 고려시 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공급기관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배정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표 5-7〉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1.산모·신생아도우미(복지부)	산모신생아	-출산전후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	29,074
8.방과후돌봄(복지부)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보호·교육·문화·복지·지역사회 연계 등 5대 영역 종합적 서비스 제공	128,599
9.요보호아동그룹(복지부) (소득기준무)	아동청소년	-보호대상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위해 그룹홈으로 보호조치 된 경우, 아동이 보호 종료될 때까지 보호·양육함	7,300
10.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여가부) (소득기준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58,370
11.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여가부)	초등 4학년 ~ 중등 2학년 청소년	-저소득층 초등 4학년 ~ 중등 2학년 청소년에게 자기주도학습,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 캠프, 부모교육, 급식 및 건강지원, 귀가지원 등	32,562
14.가사간병서비스(복지부)	저소득취약계층대상, 64세 이하전체연령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18,184
16.장애대학생도우미(교육부) (소득기준무)	장애대학생	-장애학생들에게 대학내 교수학습지원 및 이동편의 등의 서비스 제공	4,285
17.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65세이상 취약 독거노인	-만65세 이상의 취약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 노인 보호서비스지원	118,162
18.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제공	541,210
22.지역정신보건사업(복지부)	전체연령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중독관리	31,394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 10대 방과후돌봄 사업 2개이며, 모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구성

- (예산규모) 총예산 규모는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사업이 큰 반면, 1인당 연간 예산 배정액은 10대 방과후돌봄사업(약137만원)이 13만원 더 많음
- (사업 대상 및 내용) 2개 사업 모두 표준화 정도는 미흡하나 향후 시장확대가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됨
 - ⇒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의 경우 노인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 휴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10대 방과후 돌봄사업도 야간시간대 방과후 돌봄 제공이라는 틈새사업으로 신규 수요창출이 예측됨
- (시장참여시 고려사항) 표준화정도가 낮기 때문에 R&D역량이 높은 사업체나 창의적 기획아이템을 발굴하는 경우 경쟁우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표 5-8〉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24.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지투사업)	장애인, 노인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국내여행 서비스 제공, 연1회 1박2일	2,305
25.10대방과후돌봄(지투사업)	0~13세 아동	-0~13세 아동의 재가방문형의 야간보육서비스 및 학교지원	200

□ (제한적-표준화 사업) 총 12개 사업 중 보건복지부가 6개로 가장 많고, 교육부 2개, 여성가족부 2개, 농림부와 보건처가 각각 1개임

○ (예산규모) 규모가 큰 사업은 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이며, 2개 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는 보편적 서비스임

⇒ 단, 협동조합이 서비스 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체로써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사업 대상 및 내용) 영유아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사업이 다수이며, 이들 세대에 대한 돌봄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 및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음

⇒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맞벌이 증가로 인해 시설보육의 보완재로써 재가보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

※ 저소득층 이용자가 우선 대상임으로, 자부담 이용희망자의 수요를 충족해 주지 못해 향후 시장 확대와 사업 수익 증대가 기대되는 영역임¹⁾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소득기준이 없는 무상돌봄 사업이지만 개별학교 단위의 운영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부실과 돌봄교실 강사의 낮은 처우, 돌봄교실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발생

※ 각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지원되어 본고에서 정확한 예산규모가 파악되지 못했지만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돌봄 사업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

1) 아이돌보미는 민간고용서비스업체들이 연계하는 베이비시터와 유사함.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이용자이외에 전액자부담이용자들은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하기도 함. 따라서, 아이돌보미서비스 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시장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민간베이비시터업체와의 경쟁도 고려해야할 것임. 이 경우 아이돌보미에 대한 질적 관리 등 인력관리에 공신력 등이 경쟁력으로 강조될 수 있을 것임

〈표 5-9〉 돌봄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2.영유아보육료지원(복지부) (소득기준부)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장애아 만12세 이하)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	2,598,219
3.유아학비·보육료지원(교육부) (소득기준부)	만3~5세유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2,614,818
4.엄마품은종일돌봄강사(교육부)	유아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모와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해 온종일(아침6시30분,저녁10시) 돌봄제공 (저소득층 무료이용)	9,120
5/12.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시간제(여가부) (소득기준부)	(영아종일제) 영아(시간제)초등학생이하아동	- (영아종일제)시설 보육이 어려운 만0세(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 유식, 위생·안전 관리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교) 동행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70,818
6.장애아동가족지원(복지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지원	1,279
7.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복지부)	0~12세 아동	-0~12세 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게 건강, 인지, 정서·사회성 등의 서비스 제공	57,596
13.초등돌봄교실(교육부)* (소득기준부)	초등학교 저학년생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주요대상으로 방과후부터 부모귀가시까지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제공(저소득층 우선 선발)	452
15.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소득기준부)	장애인	-장애인에 대해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을 바우처로 제공	382,876
19.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보훈처)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중증질환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중증질환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의 가정에 보훈섭감이 등 복지인력이 방문하여 가사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501
20.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65세 이상 부부농가 등 취약계층	-65세 이상 부부농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적 가사활동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7,100
21.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전체연령	-취약계층 발굴, 위기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지역자원 서비스 발굴·연계,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욕구조사 및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자원 연계 의뢰 및 제공여부 지속적 점검 등 실시	12,541
23.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여가부) (소득기준부)	여성장애인	-장애유형별 특화 역량강화교육, 영역별(보건, 생활보장, 복지시설 및 지역 사회서비스, 문화·체육, 임신·출산·육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등) 지역사회 기관 협약 등을 통한 연계기능 강화	1,263

□ (목표사업 선정) 1차적으로 시장확대형 협동조합은 개방적-표준화 사업을, 제품개발형 협동조합은 제한적-표준화 사업군을 공략

○ (목표선정 방향)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이 영리성을 추구한다는 가정 하에 수익차원에서 1인당 예산 배정액을, 투입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 투입을 고려

○ (시장 확대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지원 하에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많고,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경험이 있어 사업 확대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음

⇒ (목표시장 선정) 1차적으로 시장 규모와 매출의 가능성이 높은 개방적 표준화 시장으로 사업 확대 후, 개방적-표준화 사업군으로 다각화를 추진

⇒ 예를 들어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처럼 노인돌봄사업 등 특정의 개방적-표준화시장에서 역량을 구축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서비스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시립요양원 위탁 등 제한적-표준화된 시장으로 사업을 다각화

○ (제품개발형) 민간자발형 협동조합들이 많은 만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제한적-표준화 사업을 중심으로 시설장 마련 후 시설을 활용한 부가상품 등을 개발

⇒ (목표시장 선정) 1차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진입 후 매출확보가 다소 안정된 제한적-표준화 사업군에 진입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

⇒ 예를 들어 보육시설 협동조합의 경우 시설을 활용해 지역의 정신건강증진보건사업의 일부분인 지역사회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사업의 초기 진단 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

[그림 5-2] 돌봄 부문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순위 결정과 기회비용 절감

구분		협동조합 유형	
		시장확대형(정부지원형)	제품개발형(민간자발형)
예산 규모	1순위	- 개방적-표준화 사업군 ·전문인력 확보로 신시장 진입비용이 低 ·재정지원 사업경험으로 사업실패가능성이 低	-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조합원 등 사회자본으로 시설장 확보로 사업기반 조성이 용이 ·사업진출 시, 일부 안정적인 매출기반 확보가 가능해 재무적 위험이 감소
	2순위	-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다사업경험으로 해당부문 종합서비스가 가능 ·적립금 축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사업 입찰 자격이 가능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 ·조합원등의 아이디어로 독자 서비스 개발 비용이 절감 ·주 고객대상의 부가상품 개발이 용이해 영업비용이 절감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설정

□ (지원방향)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출생신분에 따른 역량이 차별적인
바, 시장침투를 위한 1차 지원과, 시장확대 또는 제품개발을 위한 2차 지원으
로 구분하여 설정

□ (1차 지원방향) 정부지원형은 전문인력의 육성을, 민간자발형은 시설확보와
인간조건의 완비 등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축

○ (시장확대형)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 정부지원형으로 성장한 만큼 1차적으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 등 사업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구축

⇒(인건비)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중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사회참여지원 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 인건비 확보가 필요

⇒(행정경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참가 시, 중간지원센터의 밀착된 창
업 컨설팅 지원이 요구

⇒(사업참여) 개방적-표준화된 사업진출 시, 영리사업 등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사회서비스 위탁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가 필요

○ (제품개발형) 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 욕구와 조합원 등의 사회자본 투자로 인
해 민간자발형으로 조성된 만큼 시설확보와 인력조달, 제한적-표준화된 시장
진입을 위한 관계법 등 개정에 대한 정책추진이 요구됨

⇒(시설확보)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마을
공동체 기금, 소상공인 협력화 사업, 지자체 지원금 등의 지원을 유도

⇒(인력조달) 중간지원센터에서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달하거나 기존 조
합원을 직원으로 고용시 필요한 자격증 등에 관한 지원이 요구

※ 인력조달 비용절감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자원봉사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도 고려

⇒(사업참여)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진출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제한된 사업
체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사회서비스 관련법의 개정이 필수적임

- ※ 제품개발형은 지역중심형 자발적 협동조합이 많으므로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군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예: 영유아 및 유아학비, 장애인활동지원 등)
- (공통 지원) 사회서비스 참여 희망 협동조합들이 각 1순위 사업 진출 시, 필요 사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의 정보업무능력의 보완이 요구
- (2차 지원방향) 시장확대형의 경우, 2순위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에, 제품개발형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이 필요
 - (시장확대형) 정부지원형 중심의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시장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중 제한적-표준화 사업의 정보제공에 집중
 - ⇒ 정부지원 중심의 시장확대형의 협동조합들은 개방적-표준화된 시장에 친숙한 만큼 제한적-표준화시장에 대한 사업진출이 어려움이 존재
 - ⇒ (중간지원기관) 중앙부처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정보획득과 사업진출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요구됨
 - ※ 사업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장확대형 협동조합들이 확보한 전문인력들의 역량발휘를 위하여 서비스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작성이 필요
 - (제품개발형) 민간지원형 중심의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제품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연계에 집중
 - ⇒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 조성권과 사업권이 지역 광역 자치단체로 이관됨
 - ⇒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자발형 협동조합들이 부가제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임
 - ⇒ 광역 중간지원기관에서는 지자체가 추진예정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민간자발형 협동조합들의 사업연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함
 - ※ 기존사업이 돌봄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되는 부가상품이 돌봄부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사례 고려 시, 시설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예: 어린이집→부모상담심리교육)

⇒ 한편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사회서비스 R&D 사업예산을 민간자발형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시범화하는 사업을 고려해볼만 함

※ 민간자발형 협동조합이 개발한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지역단위의 서비스를 타 지역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으로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기반 협동조합들의 연대 추진사업도 고려

〈표 5-10〉 돌봄 부문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시장 모색을 위한 지원방향

구분	지원 단계	진화 단계	협동조합		
			목표사업	핵심역량	지원 방향(대안)
시장 확대형	1차 지원	시장 침투	- 개방적-표준화	- 인건비 확보	- 예비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연계
				- 인력 교육	- 전문교육 및 훈련 제공
	시장 확대	- 개방적-표준화	- 사업체 인가	- 창업 및 인가 컨설팅	
			- 사업 참여	- 사회서비스 위탁사업 우선권 부여	
2차 지원	다각화	- 제한적-표준화	- 사업정보 연계	- 경영 컨설팅	
제품 개발형	1차 지원	시장 침투	- 제한적-표준화	- 시설장 확보	- 지자체 사회서비스사업 정보제공
				- 인력확보	- 지자체 사업가이드라인 구축
				- 사업체 인가	- 마을기업, 소상공인협력화사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방안 연계
	2차 지원	제품 개발 및 다각화	- 개방적-비표준화	- 서비스 개발	- 전문인력 연계 및 가이드 제공
				- 서비스 사업화	- 지자체 및 기부금 단체 지원
				- 사업규모 확대	- 자원봉사기관으로 지정
				- 관련사업 개별법 인가조건 개정	- 중앙부처 사회서비스 R&D 지원사업과 연계
				- 사회적책임조달제도 도입	- 지자체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 창업 및 인가 컨설팅	- 경영컨설팅
					- 컨소시엄 사업 허용

□ (지원방안 도입 시 고려요인) 협동조합의 범부처 사회서비스 시장 참여로 인해 근로자 처우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돌봄서비스 가격이 정부에 의해 낮게 통제되는 만큼 사업 매출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인해 종사자의 임금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제2절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1.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특성

□ (개관) 복지부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개방성은 높으나, 타 부처 사업과의 수혜자 및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어 개별사업 예산은 적음

○ (부처) 총 25개로 복지부가 15개, 여가부 등 타 부처가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개 사업만이 실행되고 있음

⇒ 2014년 현재 (1) 법무부의 인신보호관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2) 자살위험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은 여가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통합되었고, (3) 인공임신 중절사업(복지부)은 홍보사업 중심이며, (4) 자살예방사업(복지부)은 돌봄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포함됨 (5) 제대군인심리상담(보훈처)은 사회참여지원 부문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에 포함되어 분석에서 제외

○ (특징)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형태로 시작된 경우가 많아 대부분 등록제 형태를 취함

⇒ 그러나 복지부를 제외한 타부처의 상담관련 서비스 사업들은 지정제 혹은 인가제의 형태를 띠고 있어 시장진입에 제한이 있음

□ (1인당 연간 사업예산) 1·2순위 사업군이 4개로 적은 반면, 3순위 사업군이 16개로 격차가 발생

○ (1순위 사업군) 스마일센터 사업(법무부)의 1인당 연간 예산액이 94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지부)

⇒ 법무부의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2010. 5)을 근거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사회복귀를 위해 설립된 보호시설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4개시에 개설되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의 피해자와 가족 및 지역사회 심리지원 및 네트워크를 구축

⇒ 신규 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고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수(상담횟수로 집계되고 있음)가 한정적이므로 현재 1인당 연간 예산액의 규모가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됨.

○ (2·3순위 사업군) 18개 사업들 중 6개 사업군을 제외한 12개 사업군이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WEE 프로젝트(교육부) 전액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성해 중앙정부 예산은 0원

〈표 5-11〉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1순위	소계	62,761	8421	7,452,915
	20.스마일센터(법무부)	4,391	464	9,463,362
	10.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58,370	7,957	7,335,679
2순위	소계	18,489	18,140	1,019,239
	2.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	14,523	14,206	1,022,315
	25.사례관리(복지부_지투)	3,966	3,934	1,008,134
3순위	소계	185,391	419,068	442,389
	4.인터넷과몰입치유(복지부_지투)	2,694	2,771	972,212
	16.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복지부_지투)	2,816	2,911	967,365
	21.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	6,289	7,304	861,035
	22.정서, 학습, 리더십(복지부_지투)	7,133	8,482	840,957
	3.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	32,262	39,648	813,711
	17.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	8,233	10,451	787,772
	5.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	15,309	22,353	684,875
	1.드림스타트(복지부)	57,596	95,136	605,407
	12.부모학교(복지부_지투)	1,894	3,434	551,543
	1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부)	15,104	27,448	550,277
	24.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	161	306	526,144
	23.아동체협(복지부_지투)	1,144	3,022	378,557
	7.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성부)	200	927	215,750
	9.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33,600	180,000	186,667
	18.법률홈닥터(법무부)	956	20,557**	46,505
기타	6.WEE프로젝트(교육부)	0	80,000	0

주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는 2014년 자료 미제출로 사업안내 참고

2. 법률홈닥터(법무부)의 대상자 규모는 상담횟수로 카운트되므로 대상자규모는 상담실적임.

3. 8.자살위험청소년 상담(여가부)은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 중 하나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살펴봄. 14. 인공임신 중절사업(복지부)은 홍보사업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11. 인신보호관 사업(법무부)은 현재 미진행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15. 자살예방사업(복지부)은 돌봄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19. 세대군인심리상담(보훈처)은 사회참여지원 부문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 (정책추진 정도)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투자사업)이 다수로 나타나
정책추진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속가능성이 예상됨

○ 전체 총 사업의 60%(12개 사업)를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7개 사업은 범부처, 1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진행

⇒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작성권이 복지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되거나 사업관리 및 예산조정권은 복지부 권한으로 유지될 예정

〈표 5-12〉 부처별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의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규모 (명)	1인당 예산 (원)
복지부	소계	154,020	213,958	719,861
	1.드림스타트(복지부)	57,596	95,136	605,407
	2.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자)	14,523	14,206	1,022,315
	3.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자)	32,262	39,648	813,711
	4.인터넷과몰입치유(복지부_지투자)	2,694	2,771	972,212
	5.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자)	15,309	22,353	684,875
	12부모학교(복지부_지투자)	1,894	3,434	551,543
	16.자살위험군건강증진(복지부_지투자)	2,816	2,911	967,365
	17.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자)	8,233	10,451	787,772
	21.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자)	6,289	7,304	861,035
	22.정서,학습,리더십(복지부_지투자)	7,133	8,482	840,957
	23.아동체험(복지부_지투자)	1,144	3,022	378,557
	24.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자)	161	306	526,144
	25.사례관리(복지부_지투자)	3,966	3,934	1,008,134
	여가부	소계	107,274	216,332
7.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가부)		200	927	215,750
9.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33,600	180,000	186,667
10.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58,370	7,957	7,335,679
법무부	소계	5,347	21,021	254,365
	18.법률홈닥터(법무부)*	956	20,557	46,505
	20.스마일센터(법무부)	4,391	464	9,463,362
교육부	소계	0	80,000	0
	6.WEE프로젝트(교육부)	0	80,000	0

주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는 2014년 자료 미제출로 사업안내 참고
 2. 법률홈닥터(법무부)의 대상자 규모는 상담횟수로 카운트되므로 대상자규모는 상담실적임.
 3. 8.자살위험청소년 상담(여가부)은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 중 하나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살펴봄. 14. 인공 임신 중절사업(복지부)은 홍보사업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11. 인신보호관 사업(법무부)은 현재 미진행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15. 자살예방사업(복지부)은 돌봄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19. 세대균인심리상담(보건처)은 사회참여지원 부문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 (서비스 표준화) 대부분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형태로 이루어져 서비스 표준화 정도는 낮으나, 1인당 사업예산은 타부처 사업의 1.5배에 달함

○ (지투사업 규모) 12개 사업의 사업예산은 960억 원이며 수혜자 규모는 12만 명, 1인당 예산은 81만원

○ (일반사업 규모) 복지부 외의 범부처 사업의 총 예산은 1,700억으로 수혜자 규모는 33만 명, 1인당 예산은 51.2만원임

〈표 5-13〉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규모 (명)	1인당 예산 (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소계	96,424	118,822	811,500
	2.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	14,523	14,206	1,022,315
	3.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	32,262	39,648	813,711
	4.인터넷과몰입치유(복지부_지투)	2,694	2,771	972,212
	5.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	15,309	22,353	684,875
	12부모학교(복지부_지투)	1,894	3,434	551,543
	16.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복지부_지투)	2,816	2,911	967,365
	17.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	8,233	10,451	787,772
	21.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	6,289	7,304	861,035
	22.정서, 학습, 리더십(복지부_지투)	7,133	8,482	840,957
	23.아동체험(복지부_지투)	1,144	3,022	378,557
	24.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	161	306	526,144
	25.사례관리(복지부_지투)	3,966	3,934	1,008,134
일반 사업	소계*	170,217	332,489	511,948
	7.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가부)	200	927	215,750
	9.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33,600	180,000	186,667
	10.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58,370	7,957	7,335,679
	1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가부)	15,104	27,448	550,277
	18.법률상담(법무부)*	956	20,557	46,505
	20.스마일센터(법무부)	4,391	464	9,463,362
	6.WEE프로젝트(교육부)	0	80,000	0
1.드림스타트(복지부)	57,596	95,136	605,407	

주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는 2014년 자료 미제출로 사업안내 참고
 2. 법률상담(법무부)의 대상자 규모는 상담횟수로 카운트되므로 대상자규모는 상담실적임.
 3. 8. 자살위험청소년 상담(여가부)은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 중 하나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살펴봄. 14. 인공임신 중절사업(복지부)은 홍보사업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11. 인신보호관 사업(법무부)은 현재 미진행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15. 자살예방사업(복지부)은 돌봄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19. 제대군인심리상담(보훈처)은 사회참여지원 부문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4. 일반사업의 소계산정에서 정부예산이 없는 교육부의 Wee프로젝트는 제외

□ (소득기준 여부) 1인당 사업예산에서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의 경우가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약 70만 원 정도 큰 것으로 파악

- 총 20개의 상담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중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14개이며, 이들 사업은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복지부 사업임
-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담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은 6개로 여가부 사업이 3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법무부(2개), 교육부(1개)순 임.

〈표 5-14〉 소득기준 유무별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단위: 백만 원,명, 원)

구분		사업예산	수혜자규모(명)	1인당 연간예산(원)
소득기준 유	소계	212,390	221,915	957,078
	1.트립스타트(복지부)	57,596	95,136	605,407
	2.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	14,523	14,206	1,022,315
	3.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	32,262	39,648	813,711
	4.인터넷과몰입치유(복지부_지투)	2,694	2,771	972,212
	5.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	15,309	22,353	684,875
	10.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58,370	7957	7,335,679
	12.부모학교(복지부_지투사업)	1,894	3,434	551,543
	16.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복지부_지투)	2,816	2,911	967,365
	17.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	8,233	10,451	787,772
	21.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	6,289	7,304	861,035
	22.정서,학습,리더십(복지부_지투)	7,133	8,482	840,957
	23.아동체험(복지부_지투)	1,144	3,022	378,557
	24.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	161	306	526,144
	25.사례관리(복지부_지투)	3,966	3,934	1,008,134
소득기준 무	소계	54,251	229,396	236,495
	6.WEE프로젝트(교육부)	0	80,000	0
	7.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가부)	200	927	215,750
	9.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33,600	180,000	186,667
	1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가부)	15,104	27,448	550,277
	18.법률홈닥터(법무부)	956	20,557	46,505
20.스마일센터(법무부)	4,391	464	9,463,362	

주1. 8. 자살위험청소년 상담(여가부)은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 중 하나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살펴봄. 14. 인공임신 중절사업(복지부)은 홍보사업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11. 인신보호관 사업(법무부)은 현재 미진행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15. 자살예방사업(복지부)은 돌봄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19. 제대군인 심리상담(보훈처)은 사회참여지원 부문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2. 소득기준유무의 소계산정에서 정부예산이 없는 교육부의 Wee프로젝트는 제외

□ (참여가능성) 복지부 사업은 대부분 개방성이 높는데 반해 타부처 사업들은 지자체 산하기관 및 비영리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어 개방성이 낮음

○ 총 20개 사업 중 12개의 사업은 지투자사업이고, 1개 사업은 경쟁입찰, 이외에 7개 사업은 지정제 혹은 인가제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자 선정에서 등록제형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 사업제 등 시장진입이 유리한 상황임

〈표 5-15〉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의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개, 원)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 수 ('13)	1인당예산 (원)	
개방성 高	2.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241	1,022,315
	3.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729	813,711
	4.인터넷 과몰입치유(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54	972,212
	5.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387	684,875
	9.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경쟁입찰	200	186,667
	12.부모학교(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67	551,543
	16.자살위험군건강증진(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56	967,365
	17.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740	787,772
	21.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045	861,035
	22.정서, 학습, 리더십(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231	840,957
	23.아동체협(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68	378,557
	24.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38	526,144
	25.사례관리(복지부_지투자)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431	1,008,134
개방성 低	6.WEE 프로젝트(교육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1	0
	7.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18	215,750
	10.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11	7,335,679
	1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지정제	33	550,277
	18.법률상담(법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7	46,505
	20.스마일센터(법무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인가제	4	9,463,362
1.드림스타트(복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11	605,407	

주 1.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4년 자료 미제출로 사업안내 참고
 2. 8. 자살위험청소년 상담(여가부)은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 중 하나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살펴봄. 14. 인공임신 중절사업(복지부)은 홍보사업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11. 인신보호관 사업(법무부)은 현재 미진행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15. 자살예방사업(복지부)은 돌봄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19. 제대군인심리상담(보훈처)은 사회참여지원 부문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분야별 사업의 공통문항(선정방식)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데이터로 대체

2. 협동조합 역량 극대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

□ (목표사업분석) 총 20개 사업 중 개방적-표준화사업은 1개, 제한적-표준화 사업은 7개, 개방적-표준화 사업은 12개로 분류

○ (분석결과) 타부처 사업 중심인 제한적-표준화 사업의 1인당 사업예산 규모가 약 8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사업을 제외 시, 개방적-비표준화사업의 1인당 예산액이 81만원으로 가장 높음

[그림 5-3]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구분		참여가능성 정도	
		개방적(등록제·경쟁입찰)	제한적(허가제·인가제)
서비스 표준화 정도	표준화 (일반 서비스)	- 개방적-표준화 사업(1개)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자살위험청소년 상담포함	- 제한적-표준화 사업(7개) 20. 스마일센터(법무부) 6. WEE프로젝트(교육부) 7. 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가부)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1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가부) 18. 법률홈닥터(법무부) 1. 드림스타트(복지부)
	비표준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12개) 2. 아동정서발달지원(복지부_지투사업)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복지부_지투사업) 4. 인터넷과몰입치유(복지부_지투사업) 5. 아동청소년비전형성(복지부_지투사업) 12. 부모학교(복지부_지투사업) 16. 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복지부_지투사업) 17. 고령자소외예방(복지부_지투사업) 21. 기타아동정서(복지부_지투) 22. 정서, 학습, 리더십(복지부_지투) 23. 아동체험(복지부_지투) 24. 근로자정서지원(복지부_지투) 25. 사례관리(복지부_지투)	- 제한적-비표준화 사업(0개)

<표 5-16>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명, 원)

구분	사업수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 연간예산(원)
개방적 - 비표준화	12	96,424	118,822	811,500
제한적 - 표준화	7	136,617	152,489	895,914
개방적 - 표준화	1	33,600	180,000	186,667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총12개 사업 모두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포함됨

⇒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진 협동조합의 신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제공기관의 R&D 노력 및 제공기관 간 연계로 부가 매출을 창출할 기회가 높음.

⇒ 특히, 상담 서비스는 전문가의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R&D 개발 및 서비스 간 협력 혹은 연계가 경쟁요소임

〈표 5-17〉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2.아동정서발달지원 (복지부_지투자사업)	만 8~13세 아동,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절단점 이상인 아동	-정서순화, 연주회관람, 무상악기제공, 합주 등	14,523
3.아동청소년심리지원 (복지부_지투자사업)	만 18세 이하 범위 내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의사소견서, 전문상담교사 추천)	-아동조기개입서비스 놀이, 언어, 인지, 미술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제공	32,262
4.인터넷과몰입치유 (복지부_지투자사업)	만 18세 아동, 청소년,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 아동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후 자기주도를 위한 사후관리, 기본서비스 제공	2,694
5.아동청소년비전형성 (복지부_지투자사업)	만 7~15세 아동, 청소년	-라이프코칭, 진로탐색	15,309
12.부모학교 (복지부_지투자사업)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예비부모	-부모 및 예비부모의 역할정립, 역할훈련제공, 성격유형검사, 가족공동체프로그램	1,894
16.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 (복지부_지투자사업)	만65세 이상 중 노인자살위험 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정신과 입원자 제외)	-65세이상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사례관리, 맞춤형프로그램, 가족교육, 여가활동 실시	2,816
17.고령자소외예방 (복지부_지투자사업)	65세 노인 또는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라이프코칭(타인관계 등)과 재무 설계를 제공하여 노년기를 보람 있게 보내도록 지원	8,233
21.기타아동정서 (복지부_지투자)	만 7~18세이하 학교부적응, 정서행동적문제, 문화소외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음악실기 및 심리상담	6,289
22.정서,학습,리더십 (복지부_지투자)	만 15세 미만 취약가정아동, 위기대상아동	-리더십 함양 및 비전형성	7,133
23.아동체험 (복지부_지투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토요일 아동 혼자 보내는 가정	-토요일휴업일을 활용한 월별체험활동제공	1,144
24.근로자정서지원 (복지부_지투자)	만 18세이상 60세미만,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가정	-노무상담, 재테크상담, 자녀교육상담 등 지원	161
25.사례관리 (복지부_지투자)	모든 연령대상, 의사소통단절가정, 가족문제해소소가정 등	-사전사후 사례평가 및 진단, 가족상담서비스	3,966

○ (제한적-표준화 시장) 복지부의 드림스타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여가부가 3개, 법무부가 2개, 교육부가 1개 사업을 추진

⇒ 대부분 각 부처의 산하기관 및 비영리기관들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시설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

〈표 5-18〉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6.WEE프로젝트*(교육부)	만 7~15세 아동, 청소년(학교부적응, 학습부진학생), 일반학생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제공(리더십 진로탐색 체험활동, 학습코칭 부모상담)	-
7.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여가부)	인터넷중독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성인무직자 등 가정방문상담 운영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인터넷레코실 스마트 미디어 레코실 방문상담 전문상담사 활용	200
10.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혼가족 포함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상담사업 문화사업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제공	58,370
1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부)	형법,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등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성폭력피해자 등 수사지원 산재위상및신부인파 진료, 심리치료, 법적지원 등 제공	15,104
18.법률홈닥터(법무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생활문제를 선별	-사건구조사방자단체 사회복지관에 상주하여 변호사 자격자를 두어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956
20.스마일센터(법무부)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의 피해자와 가족 및 지역사회	-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의 회복을 돕는 곳으로 상담지원 사례지원 네트워크구축	4,391
1.드림스타트(복지부)	저소득계층0~12세이하아동및가족,임산부	-저소득아동및가족 임산부에게 건강안정정서사회성 등 서비스제공	57,596

주. wee프로젝트는 지자체 예산으로 예산정보 미수집

○ (개방적-표준화 사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및 자살위험청소년상담 서비스 1개로 파악

⇒ 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나 100%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이므로 개방성이 높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표 5-19〉 상담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9.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살위험청소년상담포함(여가부)	해당지역 청소년 및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 청소년자살 발생 후 주변 청소년들에게 개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자살위험청소년상담포함	186,667

□ (목표시장 선정) 1차적으로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 후, 2차적으로 제한적-비표준화 사업군을 공략

- (협동조합 역량) 상담부문의 제품개발형 협동조합들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의 조정시간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강사(파트타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
- (1순위 시장) 제품개발형의 경우, 시설장을 마련 후 새로운 독자서비스 개발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로 부가상품 등을 개발, 개방적-비표준화 시장으로 진출
 - ⇒ (목표시장 선정) 지역중심 사업이 많은 만큼 서비스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사업군에 대한 R&D를 추진
 - ⇒ (역량강화) 특정 서비스 이외에 유사 대상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하여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능력을 강화
- (2순위 시장)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의 사업경험과 전문 인력의 확충, R&D 능력의 확보 후, 제한적-비표준화 시장을 공략하는 시장확대형으로 전환
 - ⇒ (목표시장 선정) 범부처 산하기관외의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들이 점유하고 있는 제한적-비표준화 시장을 목표로 시장에 접근
 - ⇒ (역량강화) R&D 능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구색으로 기존의 상담부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과의 차별화를 추구

[그림 5-4] 상담 부문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순위 결정

구분		협동조합 유형
		제품개발형(민간 자발형)
예산 규모	1순위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므로 신시장 진입 비용 低 ·독자서비스 개발로 R&D가 자유로움
	2순위	-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부처별 제공기관 설립이 난립되어 있어 인력수준 등 미흡 ·해당사업군의 예산규모, 1인당 예산규모가 높아 진출시 지속가능성 확보가 용이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 설정

□ (시장환경 고려) 소규모의 사업예산과 타부처 사업에 대한 낮은 접근성, 개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

- (소규모의 사업예산) 총 예산 규모와 인력 그리고 제공기관의 수 등 외형적으로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세부사업 수 증가로 제공기관 수익창출력은 감소 상황
 - ⇒ 복지부 및 각 부처의 상담부문 서비스사업은 대상이 중복되나 예산구성은 별도로 이루어져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은 소규모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제공기관들은 영업이익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서비스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 (타부처 사업에 대한 낮은 접근성)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개방적이나 타 부처 사업은 진입장벽이 존재
 - ⇒ 타 부처 7개 사업의 경우, 산하단체 및 시설장을 마련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사업조건이 설정되어 신생 협동조합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
 - ⇒ 복지부 지투자사업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공자 선정방식이 지정제 형태로 진행되었고, 사업 초기에 비영리 법인들이 선점함
 - ⇒ 즉, 일부기관에 한해 보호된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상담부문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매출확보의 기회가 상실
- (종합서비스의 부재) 상담부분 인력의 경우, 전문성이 높은 직종인 만큼 상담사들의 개별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되어 종합서비스가 미흡한 상황
 - ⇒ 상담서비스는 석사 이상의 상담가나 치료사와 같은 특정분야 서비스 제공으로 팀 접근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 상담가 및 치료사들은 전일제의 성격보다 파트타임 형태로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종합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 상담부분 협동조합 형성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상담실, 치료실)마련 등 초기투자 비용이 높은 편임

- (지원방향) 1차적으로 사업의 패키지화를 통한 사업예산의 규모화와 시설마련 지원을, 그리고 2차적으로 시장접근성 강화에 초점
- (1차 지원) 지역 내 상담부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안착을 위해, 인가, 사업방식조정, 사업권 우선부여, R&D지원, 시설확보를 위한 간접지원을 추진
 - (인가과정) 지역의 프리랜서 전문가 집단인 만큼 사업체 구성에 관한 행정 및 설립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바 중간지원기관의 창업컨설팅이 필요
 - (사업방식) 개별 상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기능별로 패키지화된 사업으로 구성하여 사업 예산의 규모화를 추구
 - ⇒ 기존의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추진된 사업과 포괄성과형 방식으로 지급된 방식의 사업이 결합 시, 비용을 일괄적으로 포괄성과방식으로 지급
 - (사업권 부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상담부문 영리사업체임을 고려 시, 상담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사업우선권을 부여
 - ⇒ 공익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상담부문 사각지대 해소와 여성 고용창출 및 고용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우선권을 부여
 - (R&D 지원) 지역기반의 사회서비스 R&D 강화를 위해 상담서비스 영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R&D 사업을 지원
 - (시설확보) 사업비용을 바우처 방식이 아닌 포괄성과방식으로 지급해 협동조합의 사업체 마련을 위한 비용투자를 간접적으로 지원
 - ⇒ 영리중심의 상담부문 협동조합은 주민중심의 지역 공동체 만들기 사업 조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청년창업지원정책 등을 이용
 - ⇒ 단, 공익적인 사회서비스 기관에 한해 지자체의 공간(임대료 지원) 및 인테리어 지원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기관에 포함(예, 성북구 모델의 활용)

- (2차 지원) 제한적-비표준화된 사업 진입을 위해 타부처 지정조건에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과 복지부 및 타부처 사업의 통합 예산운영을 추진
- (제도개선) 타부처 상담부문 사업의 사업자로써 협동조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또는 사업지침의 변경을 추진
- (예산통합) 타부처사업과 복지부의 사업 중 수혜자와 서비스내용이 중복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성은 각부처가 담당하되 사업운영방식은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상담부문 서비스 업체를 육성하도록 지원

〈표 5-20〉 상담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부문과 도구

구분	지원 방향	진화 단계	협동조합			
			목표사업	지원 부문	지원 도구	
민간 자발 설립형	1차 지원	시장침투	- 개방적-비표준화	- 사업체 인가	- 창업 및 인가 컨설팅	
				- 사업방식	- 유사 지투사업의 패키지화 추진 - 포괄성과지원방식의 적용 - 연대방식의 사업방식 허용	
		제품개발		- 사업권 부여	-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 R&D 지원	- 사회서비스 R&D 지원	
	2차 지원	시장확대 및 다각화		- 제한적-표준화	- 시설 확보	- 포괄성과형 비용지원방식의 간접지원 - 영리 협동조합은 청년창업지원 정책 등 이용 -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사회적경제지원제도 이용
					- 사업권 부여	- 관련법 개정 또는 부처간 협의로 협동조합을 포함
			- 사업방식	- 수혜자 및 서비스 중복사업의 예산 통합을 추진		

제3절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1.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사업 특성

□ (특징) 타 부처 사업에 비해 복지부 사업들은 1인당 사업 예산은 큰 반면에 총 예산 규모는 작은 등 부처 사업에 차별성이 존재

○ (대상) 아동, 노인,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신체·정서·인지·정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임

⇒ 사업초기 주로 아동·노인의 비만관리 등 신체적 건강에만 초점을 두었다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서·인지 발달 지원서비스 등으로 확대

○ (부처) 총 15개 사업 중 11개 사업(약 73%)이 복지부에서 주관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이 문체부(교육부)에 속함

⇒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복지부 사업의 경우, 1인당 사업예산이 소득기준이 없는 타부처에 비해 10배에 달하나 사업예산은 타 부처 사업의 약 82% 수준

○ (제공방식) 건강부문 서비스에 대한 공공재원은 서비스 이용자 바우처 방식으로 복지부 사업의 90% 이상이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임

○ (기관선정 방식) 총 15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지정제이며, 9개 사업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음

○ (진입 시 문제점) 소규모 기관이 갖는 한계(홍보력의 부족, 전문자원 부족 등)로 인해 초기 진입을 위한 이용자 확보가 어려움

⇒ 특히 소득기준이 있는 사업인 경우 기존 서비스 공급기관이 이용자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아 진입 시, 적정수의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1인당 연간 예산액)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3개에 불과하며, 100만원 미만 사업은 12개로 파악

○ (1·2순위 사업군) 언어발달지원(복지부), 정신질환자토탈케어(복지부), 발달장애 서비스(복지부) 등이 포함됨

⇒언어발달이나 발달재활서비스는 지정제이고, 정해진 전문성의 조건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초기 진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3순위 사업군) 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등 문체부 사업의 경우 1인당 사업 예산이 10만원 미만임

⇒예방서비스로 치매예방서비스나 운동처방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등록제로 실행되고 상대적으로 1인당 연간예산도 높은 편이라서 협동조합 방식의 서비스 내용으로 적합성이 있다고 봄

〈표 5-21〉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1인당 연간예산 (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사업명		사업예산 (백만원,국비)	수혜자규모 (명)	1인당연간예산 (원,국비)
1순위	소계	1,930	947	2,038,015
	언어발달지원서비스(복지부)	1,930	947	2,038,015
2순위	소계	62,378	50,287	1,240,440
	정신질환자토탈케어(복지부_지투)	4,567	3,308	1,380,593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57,811	46,979	1,230,571
3순위	소계	131,432	2,427,113	54,152
	치매예방서비스(복지부_지투)	4,226	4,297	983,477
	재활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620	697	889,527
	장애인노인등건강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11,132	15,429	721,498
	영유아발달지원(복지부_지투)	2,225	3,287	676,909
	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13,936	20,626	675,652
	노인맞춤형운동처방(복지부_지투)	6,802	12,300	553,008
	유 헬스(복지부_지투)	1,183	3,116	379,653
	비만아동관리(복지부_지투)	3,013	8,022	375,592
	스포츠 바우처(문체부)	10,584	30,000	352,800
	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문체부)	44,316	691,583	64,079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30,502	742,756	41,06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2,893	895,000	3,232

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이용자는 월별 누적인원의 합산으로 계산됨

□ (정책 추진 정도) 총 15개 사업 중 복지부가 11개, 문체부가 4개로 파악되며 복지수요 증가 측면에서 취약계층 복지부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복지부 소관 사업의 1인당 평균 사업 예산액은 약 90만원인 반면에 문체부 소관 사업의 1인당 평균 사업 예산액은 약 3.7만원으로 격차가 매우 큼
- 문체부 사업은 아동청소년 대상 체육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에 국민의 건강기반을 높이기 위한 체육지도사 양성을 지원 사업 총 882억 원 정도를 투자
- 복지부의 경우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비기준으로 1,074억 원 정도로 문체부에 비해 1.2배 정도임

〈표 5-22〉 주관 부처별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분류 (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주관부서	사업명	사업예산 (백만원,국비)	수혜자 규모 (명)	1인당연간예산 (원,국비)
문체부	소계	88,295	2,359,339	37,423
	스포츠 바우처(문체부)	10,584	30,000	352,800
	어른신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30,502	742,756	41,06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2,893	895,000	3,232
	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문체부) (교육부도 포함)	44,316	691,583	64,079
복지부	소계	107,445	119,008	902,838
	언어발달지원서비스(복지부)	1,930	947	2038,015
	정신질환자토탈케어(복지부_지투)	4,567	3,308	1380,593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57,811	46,979	1230,571
	치매예방서비스(복지부_지투)	4,226	4,297	983,477
	재활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620	697	889,527
	장애인노인등건강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11,132	15,429	721,498
	영유아발달지원(복지부_지투)	2,225	3,287	676,909
	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13,936	20,626	675,652
	노인맞춤형운동처방(복지부_지투)	6,802	12,300	553,008
	유 헬스(복지부_지투)	1,183	3,116	379,653
	비만아동관리(복지부_지투)	3,013	8,022	375,592

주. 어른신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이용자는 월별 누적인원의 합산으로 계산됨

□ (서비스 표준화) 일반사업은 복지부(2개), 문체부(4개)를 포함 총 6개이며, 지역별 편차가 전제되는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9개임

○ 일반사업의 수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비해 적지만, 사업예산 규모에서는 약 3배 이상 많음.

⇒ 그러나 1인당 연간 예산액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비해 거의 10배 정도 높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이나 대상자 선정기준, 비용지원 규모, 서비스 품질관리 방식 등에서 지역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2013년부터 포괄보조방식의 재정지원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품질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

〈표 5-23〉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구분	사업명	사업예산 (백만원,국비)	수혜자 규모 (명)	1인당 연간예산 (원,국비)
일반사업 (6개)	소계	148,036	2,407,265	61,495
	스포츠 바우처(문체부)	10,584	30,000	352,80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30,502	742,756	41,06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2,893	895,000	3,232
	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문체부)	44,316	691,583	64,079
	언어발달지원서비스(복지부)	1,930	947	2,038,015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9개)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57,811	46,979	1,230,571
	소계	47,704	71,082	671,112
	정신질환자토달케어(복지부_지투)	4,567	3,308	1380,593
	치매예방서비스(복지부_지투)	4,226	4,297	983,477
	재활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620	697	889,527
	장애인노인등건강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11,132	15,429	721,498
	영유아발달지원(복지부_지투)	2,225	3,287	676,909
	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13,936	20,626	675,652
	노인맞춤형운동처방(복지부_지투)	6,802	12,300	553,008
유 헬스(복지부_지투)	1,183	3,116	379,653	
비만아동관리(복지부_지투)	3,013	8,022	375,592	

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이용자는 월별 누적인원의 합산으로 계산됨

□ (소득기준 여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4개이며, 나머지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적용

○ 소득기준 비적용 서비스 사업예산은 국비기준 807억 원 정도인데 비해, 소득기준 적용 서비스는 1,150억 원 정도로 1.4배 정도 많은 편

⇒ 소득기준 비적용 서비스의 경우 수혜자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1인당 사업 예산은 소득기준 적용 서비스가 약 23배에 달함.

○ 소득기준 적용 서비스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해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일반 복지사업의 대상자보다 보편성이 확대된 것임

⇒ 전국평균 소득의 120% 정도로 소득기준이 다소 높게 적용되나 건강관리 필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점에서 향후 소득기준은 점차 완화될 전망

〈표 5-24〉 소득기준 여부에 따른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분류 (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구분	사업명	사업예산 (백만원,국비)	수혜자 규모 (명)	1인당 연간예산 (원,국비)
소득기준 무 (4개)	소계	80,724	2,337,361	34,536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30,502	742,756	41,06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2,893	895,000	3,232
	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문체부)	44,316	691,583	64,079
	비만아동관리(복지부_지투)	3,013	8,022	375,592
소득기준 유 (11개)	소계	115,016	140,986	815,797
	스포츠 바우처(복지부_지투)	10,584	30,000	352,800
	언어발달지원서비스(복지부)	1,930	947	2,038,015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57,811	46,979	1,230,571
	정신질환자도탈케어(복지부_지투)	4,567	3,308	1,380,593
	치매예방서비스(복지부_지투)	4226	4,297	983,477
	재활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620	697	889,527
	장애인노인등건강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11,132	15,429	721,498
	영유아발달지원(복지부_지투)	2,225	3,287	676,909
	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13,936	20,626	675,652
	노인맞춤형운동처방(복지부_지투)	6,802	12,300	553,008
유 헬스(복지부_지투)	1,183	3,116	379,653	

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이용자는 월별 누적인원의 합산으로 계산됨

□ (참여가능성) 총 15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등록제 방식인 반면 6개 서비스는 기관 지정제로 사업체를 선정

○ 기관 선정방식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인지 유무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경우는 등록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제로 선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행기관 중 개인사업체 비율은 약 56%로 반수가 넘으며, 이는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소규모 사업체의 진입이 크게 증가한 결과

⇒ 반면 지정제로 운영되는 서비스는 대체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대규모 비영리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특성을 가짐

〈표 5-25〉 기관 선정방식에 따른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분류 (2013년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수	1인당예산(원)
개방성고 (9개)	비만아동관리(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04	375,592
	정신질환자도탈케어(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67	1,380,593
	치매예방서비스(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63	983,477
	재활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5	889,527
	장애인노인등건강취약계층운동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12	721,498
	영유아발달지원(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28	676,909
	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305	675,652
	노인맞춤형운동처방(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16	553,008
	유 헬스(복지부_지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3	379,653
개방성저 (6개)	어른신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29	41,06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16	3,232
	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229	64,079
	스포츠 바우처(문체부)	-개인사업체 90%	지정제	-	352,800
	언어발달지원서비스(복지부)	-개인사업체 62.3%	지정제	1,520	2,038,015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7,873	1,230,571

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이용자는 월별 누적인원의 합산으로 계산됨

2. 협동조합 역량 극대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

□ (전체 분석 결과) 총 15개 사업 중 개방적-비표준적 사업이 9개로 가장 많고, 제한적-표준적 사업이 6개로 총 2개 사업 군으로 재분류

○ (분석결과) 개방적-비표준적 사업에 비해 제한적-표준화 사업의 예산규모가 3배정도 많고 수혜자 규모가 훨씬 큼

⇒ 1인당 연간예산은 개방적-비표준적 사업이 10배 가까이 많음

[그림 5-5]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구분		진입가능성 정도	
		개방적(등록방식)	제한적(지정방식)
서비스 표준화 정도	표준화	-	제한적-표준화 사업(6개) 어른신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문체부) 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문체부) 스포츠 바우처(문체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비표준화	개방적-비표준화사업(9개) 비만아동관리(복지부_지투) 정신질환자토달케어(복지부_지투) 치매예방서비스(복지부_지투) 재활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장애인노인등건강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영유아발달지원(복지부_지투) 시각장애인안마(복지부_지투) 노인맞춤형운동처방(복지부_지투) 유 헬스(복지부_지투)	-

<표 5-26> 시장진입가능성과 표준화 여부에 따른 구분 (2013년 기준)

구분	사업수 (개)	사업예산 (국비기준, 백만원)	수혜자규모 (명)	1인당연간예산 (원)
개방적- 비표준화	9	47,704	71,082	671,112
제한적 -표준화	6	148,036	2,407,265	61,495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복지부가 운영중인 서비스 투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 (예산규모) 국비기준 사업예산은 470억 원 규모로 전체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의 약 24%에 해당
- (사업 대상) 대체로 일정 연령이상의 노인이나 아동(영유아)과 장애인으로 비만아동관리서비스를 제외하면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주대상이며 지원방식은 바우처 방식의 이용자 지원방식임

〈표 5-27〉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 (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국비)
비만아동관리서비스(복지부_지투)	5~12세 비만아동	-운동처방, 운동지도, 영양교육 등	3,013
정신질환자토달케어(복지부_지투)	65세 이상 정신질환위험군	-사례관리, 가족교육, 여가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등	4,567
치매예방서비스(복지부_지투)	60세 이상	-한방예방치료, 뇌기능활성화 체조 등	4,226
재활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6세 이상 장애인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620
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65세 이상, 장애인, 산모 등	-놀이치유, 라마즈교육, 댄스스포츠 등	11,132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6세 이하	-운동, 언어, 인지, 정서 발달중재 서비스 등	2,225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복지부_지투)	60세 이상, 장애인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13,936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65세 이상	-수중운동, 유산소 운동 등	6,802
유헬스 서비스(복지부_지투)	20세 이상	-건강측정, 생활습관개선지도, 영양운동프로그램 등	1,183

□ (제한적-표준화 시장) 총 6개 사업 중 문체부(교육부 포함)가 4개, 복지부가 2개임

- (예산규모) 국비기준으로 1,480억 원 정도로 전체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의 약 76%에 해당함

⇒ 사업수로는 개방적-비표준적 서비스보다 적지만, 예산규모는 3배 이상임

- (사업 대상) 예산의 약 50%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방식임
- ⇒ 복지부 사업 중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문체부의 스포츠 바우처는 예방적 성격의 서비스로 아동과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이 적용됨

〈표 5-28〉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적 사업 현황 (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국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문체부)	지도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생활체육지도	30,502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문체부)	지도대상: 장애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	2,893
신나는주말체육학교 (문체부, 교육부)	초중고등학생	-학교 안팎에서 생활체육지도	44,316
스포츠바우처 (문체부)	5~19세, 수급자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0,584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복지부)	10세미만, 비등록장애인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1,930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18세미만, 등록장애인	-언어, 청능, 미술, 음악, 감각 발달지원서비스, 부모상담 서비스 등	57,811

□ (목표시장 선정) 1차적으로 제한적-표준화 시장을 공략 후,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방적-비표준화 시장에 2차적으로 진입

- (목표선정 방향) 건강부문 사회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시장상황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의 특성이 기회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 (시장상황)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은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 중심이라서 의료관련 전문성이 필요
- ⇒ 1인당 사업 예산에서는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이 높으나 총예산규모에서는 집단프로그램 방식으로 인해 제한적-표준화 사업군이 큼
- ⇒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중 건강관리 서비스를 갖춘 협동조합이 다수 출현할 경우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에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 (협동조합 역량) 현 건강부문 협동조합은 민간 스포츠 강사들로 구성된 직원 또

- 는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시장확대보다는 부가상품 중심의 제품개발형을 추구
- ⇒ 서비스 특성상 체육활동 강사들로 구성되어 치료 등 의료관련 전문지식을 갖
추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
- ⇒ 축구 등 기존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활동에 기타 체육활동을 부가
하거나, 용품판매와 같은 부가상품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1차 목표시장 설정) 의료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개방적-비표준화 사업보다는 제
한적-표준화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
- ⇒ 비록 지정체로 운영되고 있으나 스포츠 바우처,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
개인사업체 비중이 62.3%~90%를 차지해 지정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문제부의 어르신생활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신나는주말생활체육학교
의 경우, 민간에서 축적된 경험과 R&D 능력이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
- (2차 목표시장 설정) 제한적-표준화 시장의 진출이후, 의료관련 전문성에 대한
역량을 확보 후 개방적-비표준화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 ⇒ 제한적-표준화 시장의 안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 후, 시장확대전략으로
개방적-비표준화 시장으로 진출
- ⇒ 예방적 성격이 높은 아동 대상 정서·인지 발달지원서비스와 노인 치매예방서
비스, 정신건강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그림 5-6] 건강관리 부문 사회서비스에 대한 협동조합의 시장진입 시 고려사항

구분	협동조합 유형(민간자발형)
1차 사업군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장점) 총 예산규모가 크고 집단서비스방식으로 기존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 단점)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력 등 초기시장 진입비용이 높을 수 있음
2차 사업군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 장점) 1인당 예산규모가 커 부가가치 창출과 서비스 신개발이 용이 단점) 소득기준이 엄격해 수요확대가능성이 낮고, 의료관련 전문성 보유비용이 큼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 설정

□ (지원방안 도입시 고려요인) 건강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원방향을 구축

- (공공재원 집행의 효과성·효율성 증진과 고용증대) 개인사업체(일반 영리기관)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보다 협동조합 방식이 더 효과적 있음을 고려
- (양질의 근로조건 제공) 근로조건 측면에서 협동조합 자체가 갖는 일반적인 장점 외에도, 특히 건강이나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저임금, 비정규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도구로서 협동조합의 유용성을 고려
- (서비스 만족도 증가) 건강관리 부문은 대인적 휴먼서비스로서의 특성이 매우 강한 만큼 지역사회의 지원망을 동원하여 예방과 관리의 연계를 극대화
⇒ 특히 건강관리 부문의 휴먼서비스가 갖는 공동생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이 서비스 수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품질은 즉각적 욕구대응성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높아 지역사회 내 관계망 형성과 확대, 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등을 통한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강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
⇒ 기존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방식이 관료적 속성을 갖는 독립기구에 의한 방식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품질관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
⇒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가능케 하는 품질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며, 특히 이용자의 참여적 방식을 반영한 적극적인 품질지표가 필요

□ (지원방향) 1차적으로 제한적-표준화 시장의 진입과 사업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그리고 2차적으로 개방적-비표준화 시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역량 지원에 초점

□ (1차 지원) 문체부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위한 사업정보 제공, 제도개선, 시설확보 등에 주력

- (사업정보 제공) 범부처 건강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업정보와 지정요건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간자발형 협동조합에게 전달하는 사업지원서비스 필요
 - ⇒ 건강부문 협동조합의 경우 민간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부처 건강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
 - (사업참여) 문체부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의 지정업체로써 민간자발형 협동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 및 관련법개정 등이 필요
 - ⇒ 공공재원의 효과성, 양질의 근로조건, 서비스 만족도 증가 등의 사회적 공익가치 창출을 근간으로 사회적책임조달제도의 적용을 추진
 - ⇒ 공무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도 필요
 - (시설확보)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매출확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지자체의 체육시설 등 사업운영을 위한 시설의 장기임대 등을 추진
 - ⇒ 소상공인협력화사업, 청년창업지원 정책 등 체육관련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금 등을 활용
 - (인력조달) 건강관리 부문의 전문인력 및 사업체 전문인력 조달을 위해 고용부의 워크넷 등 인력알선 컨설팅과 연계
 - ⇒ 청년 및 체대 졸업생의 고용증대 사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고용증대 능력을 극대화
- (2차 지원)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진입을 위한 사업자 우선권 부여와 사회서비스 R&D 및 전문 인력 연계,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품질지표 도입에 주력
- (사업정보 제공) 개방적-비표준화 사업들에 대한 정보와 사업운영시 필요요건들에 대한 경영컨설팅 실시
 - (우선권 부여) 영리사업자 대비 늦은 진입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위탁사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R&D 지원) 지역기반의 치료관련 사회서비스 R&D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

스 R&D 지원사업과 전문인력의 알선서비스를 제공

⇒ 소규모 협동조합의 한계를 넘기 위해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R&D 지원 사업을 도입

○ (품질지표 도입) 협동조합형 기반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기반의 사회서비스 품질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선정자 결정 시 활용

〈표 5-29〉 건강관리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부문과 도구

구분	지원 방향	진화 단계	협동조합		
			목표사업	지원 부문	지원 도구
민간 자발 설립형	1차 지원	시장침투	- 제한적-표준화	- 사업체 인가	- 창업 및 인가 컨설팅
				- 사업정보 제공	- 사업지원 경영컨설팅
		시장확대		- 사업참여	- 문체부 지정 사업체로 포함시키는 관련법 또는 사업지침 변경 -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도 실시
				- 시설 확보	- 영리협동조합은 청년창업지원 정책 등 이용 -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사회적 경제지원제도 이용
				- 인력조달	- 고용부 워크넷 사업 연계
	2차 지원	제품개발 및 다각화	- 개방적-비표준화	- 사업정보 제공	- 사업지원 경영컨설팅
				- 사업권 부여	- 사회적책임조달제도 도입
				- 사업방식	- 포괄적 성과방식 실질적 도입
				- R&D 지원	- 사회서비스 R&D 지원 - 연대사업 개발을 지원
				- 품질지표	- 지역기반 밀착형 품질지표 도입

제4절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1. 사회참여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특성

□ (특징) 사업체 선정방식이 제한적인 사업들이 다수이고, 복지부 외 타부처 사업이 많아 정책추진 시 연계 필요성이 높음

○ (대상)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 여성, 군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일자리 취업과 지원 성격이 강함

⇒ 특정의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15개 중 3개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측면의 사업이 다수를 차지

○ (부처) 총 14개 사업 중 복지부가 5개이며, 보훈처가 4개, 여가부가 2개, 고용부·법무부·통일부가 각각 1개씩임

⇒ 복지부 주관 사업은 자활 근로,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으로 구성

※ 본고에서는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훈련 바우처 사업과 재대 군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 사업에 포함해 분석

○ (개방성)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진입이 용이한 사업이 총 14개 중 5개이며, 나머지 9개 사업의 경우 지정제 형식의 조건이 부가

○ (진입시 문제점) 사업 대상자와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사업군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

⇒ 현재 출현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을 고려 할 때, 자활근로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협동조합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예상

⇒ 그러나 미혼모 자립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대군인, 탈북자, 출소자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성격상 협동조합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1인당 사업 예산) 총 12개 사업 중 1인당 연간 사업 예산액 1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4개이며 그 중 200만 원 이상 사업은 복지부 사업으로 파악
 - (1순위 사업 군) 장애인 대상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342만원임
 - (2순위 사업 군) 여가부의 미혼모 자립지원 사업이 156만원, 장애인사회참여 지원 사업이 1인당 110만원, 출소자 갱생지원 사업이 102만 원 등의 순임
 - (3순위 사업 군)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보훈처의 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 지원, 고용부의 취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1인당 사업 예산군이 약 80만 원대임
 - ⇒ 탈북민원스톱취업지원사업 1인당 사업예산액은 약 46만 원대 이하로 3순위 사업 하에서도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표 5-30〉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백만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1순위	소계	49,549	14,500	3,417,172
	3.장애인일자리(복지부)	49,549	14,500	3,417,172
2순위	소계	10,102	8,521	1,185,542
	1.미혼모자립지원(여가부)	3,749	2,400	1,562,083
	14.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지투)	1,746	1,586	1,100,883
	10.출소자갱생지원(법무부)	4,607	4,535	1,015,877
3순위	소계	492,334	1,016,004	484,579
	13.노인일자리(복지부)	228,484	261,598	873,416
	12.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지원(보훈처)	3,754	4,535	827,784
	8.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169,642	209,000	811,684
	6.탈북민원스톱취업지원(통일부)	765	1,647	464,481
	2.자활근로(복지부)	22,531	66,000	341,379
	11.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전직지원(보훈처)	11,858	57,099	207,674
	5.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복지부)	17,200	96,125	178,934
7.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여성부)	38,100	320,000	119,063	

주. (보훈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사업 현황에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사업과 제대군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포함하여 분석

□ (정책추진 정도) 총 12개 사업 중 복지부 사업이 5개인 반면 타 부처 사업이 7개로 정책추진 측면에서 돌봄 등 타 사업부문에 비해 약함

○ (복지부) 전체 사업 12개 중 5개에 불과하나, 사업대상자 수나 사업예산 규모에서 타 부처의 사업에 비해 크고, 정책의 추진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 복지부사업의 1인당 사업예산은 72.6만원으로 높은 편임

○ (타 부처) 고용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업대상자의 수나 사업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 1인당 사업예산에서 법무부가 101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용부(81만원), 보훈처(25만원), 통일부(46만원), 여가부(13만원)순임

〈표 5-31〉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소관부처별 수혜자 1인당 예산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복지부 (5개)	소계	319,510	439,809	726,474
	3.장애인일자리(복지부)	49,549	14,500	3,417,172
	14.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지투)	1,746	1,586	1,100,883
	13.노인일자리(복지부)	228,484	261,598	873,416
	2.자활근로(복지부)	22,531	66,000	341,379
	5.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복지부)	17,200	96,125	178,934
여가부 (2개)	소계	41,849	322,400	129,805
	1.미혼모자립지원(여가부)	3,749	2,400	1,562,083
	7.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여가부)	38,100	320,000	119,063
보훈처 (2개)	소계	15,612	61,634	253,302
	12.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지원(보훈처)	3,754	4,535	827,784
	11.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전직지원(보훈처)	11,858	57,099	207,674
법무부 (1개)	소계	4,607	4,535	1,015,877
	10.출소자갱생지원(법무부)	4,607	4,535	1,015,877
고용부 (1개)	소계	169,642	209,000	811,684
	8.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169,642	209,000	811,684
통일부 (1개)	소계	765	1,647	464,481
	6.탈북민원스톱취업지원(통일부)	765	1,647	464,481

주. (보훈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사업 현황에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사업과 제대군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포함하여 분석

□ (서비스 표준화) 비 표준화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총 14개 사업 중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사업 1개여서 표준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사업) 11개 일반사업의 1인당 평균 예산액은 약 53만원이나 예산규모가 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제외 시 약 41만원 수준으로 하락

⇒ 표준화된 사업의 경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 및 교육 훈련에 집중하고 있어 사회서비스 R&D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는 것으로 추정

〈표 5-32〉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일반사업 (11개)	소계	550,239	1,037,439	530,382
	3. 장애인일자리(복지부)	49,549	14,500	3,417,172
	13. 노인일자리(복지부)	228,484	261,598	873,416
	2. 자활근로(복지부)	22,531	66,000	341,379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복지부)	17,200	96,125	178,934
	1. 미혼모자립지원(여가부)	3,749	2,400	1,562,083
	7.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여가부)	38,100	320,000	119,063
	12. 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지원(보훈처)	3,754	4,535	827,784
	11.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전직지원(보훈처)	11,858	57,099	207,674
	10. 출소자갱생지원(법무부)	4,607	4,535	1,015,877
	8.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169,642	209,000	811,684
	6. 탈북민원스텝취업지원(통일부)	765	1,647	464,481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개)	소계	1,746	1,586	1,100,883
	14. 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지투)	1,746	1,586	1,100,883

주. (보훈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사업 현황에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사업과 제대군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포함하여 분석

□ (소득기준) 총 12개 사업 중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3개이며, 기타 9개 사업은 실업이나 미취업 등 직장을 원하는 전 연령 계층에 집중

- (소득기준 無)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부처별 사업으로는 복지부가 3개로 가장 많으며, 보훈처가 2개, 통일부,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가 각 1개임
- (소득기준 有)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자활근로 등 복지부가 2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가부는 미혼모자립지원 사업을 담당
- (1인당 연간 예산액)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군의 1인당 연간 예산액은 약 41만 원으로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군(약 54만원) 보다 낮음

〈표 5-33〉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의 소득기준별 서비스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소득기준 부 (9개)	소계	523,959	969,039	540,699
	3.장애인일자리(복지부)	49,549	14,500	3,417,172
	13.노인일자리(복지부)	228,484	261,598	873,416
	5.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복지부)	17,200	96,125	178,934
	7.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여가부)	38,100	320,000	119,063
	12.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지원(보훈처)	3,754	4,535	827,784
	11.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전직지원(보훈처)	11,858	57,099	207,674
	10.출소자갱생지원(법무부)	4,607	4,535	1,015,877
	8.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169,642	209,000	811,684
6.탈북민원스톱취업지원(통일부)	765	1,647	464,481	
소득기준 유 (3개)	소계	28,026	68,402	409,724
	1.미혼모자립지원(여가부)	3,749	2,400	1,562,083
	14.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지투)	1,746	1,586	1,100,883
	2.자활근로(복지부)	22,531	66,000	341,379

주. (보훈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사업 현황에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사업과 제대군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포함하여 분석

□ (참여가능성) 총12개 사업 중 등록제 중심의 개방성이 높은 사업은 5개인 반면, 7개는 지정제로 협동조합의 참여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개방성 高 사업군) 보훈처 사업이 2개, 복지부·고용부·여가부가 각각 1개로 타 부처 주도 사업이 다수

⇒ 등록제의 경우 미혼모 자립지원(여가부), 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복지부) 등 2개이며, 경쟁입찰은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보훈처), 전역예정군인 취업활동지원(보훈처) 등 3개 있음

○ (개방성 低 사업군) 복지부 사업이 4개로 가장 많으며, 법무부·통일부·여가부 사업이 각각 1개로 파악

⇒ 복지부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정제로 운영

〈표 5-34〉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의 사업체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 수(13)	1인당예산 (원)
개방성 고	1.미혼모자립지원(여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50% -정부·지자체·산하기관 50%	-등록제	120	1,562,083
	14.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기투)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43	1,100,883
	8.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68%	-경쟁 입찰	275	811,684
	11.장기복무 전역 예정군인 전직지원 (보훈처) -개인사업체 90%	-경쟁 입찰	2	207,674
	12.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지원(보훈처) -주식회사 100%	-경쟁 입찰	2	827,784
개방성 저	10.출소자 갱생지원(법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80% -사회복지,비영리기관 20%	-인가제	8	1,015,877
	3.장애인 일자리(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67%	-지정제	626	3,417,172
	5.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지정제	192	178,934
	6.탈북민 원스톱취업지원(통일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60% -정부·지자체·산하기관 40%	-지정제	29	464,481
	7.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50% -정부·지자체·산하기관 50%	-지정제	120	119,063
	13.노인일자리(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83.7%	-지정제	1,221	873,416
	2.자활근로(복지부)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수의계약	258	341,379

주. (보훈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사업 현황에 보훈처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사업과 제대군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포함하여 분석

2. 협동조합 역량 극대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

- (목표사업 분석) 총 12개 사회참여 지원 사회서비스사업은 개방적-표준화 사업이 4개, 제한적 표준화 사업이 9개, 개방적-비표준화 사업이 1개로 분류
- (분석기준) 협동조합의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의 진입을 고려, 앞서 분석된 참여가능성과 서비스 표준화정도를 고려하여 분석
- (분석결과) 제한적-표준화 사업군이 사업예산에서 가장 크나 1인당 사업예산액에서는 약 47.2만 원으로 가장 낮음

[그림 5-7]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구분		참여가능성 정도	
		개방적(등록제·경쟁입찰)	제한적(허가제·인가제)
서비스 표준화 정도	표준화 (일반 서비스)	- 개방적-표준화 사업(4개) 1.미혼모자립지원(여가부) 8.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11.장기복무 전역 예정군인전직지원 (보훈처) 12.전역예정군인취업활동지원 (보훈처)	- 제한적-표준화 사업(7개) 2.자활근로(복지부) 3.장애인 일자리(복지부) 5.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복지부) 6.탈북민 원스톱취업지원 (통일부) 7.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부) 10.출소자 갱생지원(법무부) 13.노인일자리(복지부)
	비표준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1개) 14.장애인사회참여지원(복지부_지투)	- 제한적-비표준화 사업(0개)

〈표 5-35〉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명, 원)

구분	사업수	사업예산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
개방적 - 표준화	4	189,003	273,034	692,232
개방적 - 비표준화	1	1,746	1,586	1,100,883
제한적 - 표준화	7	361,236	764,405	472,571

□ (개방적-표준화 시장) 총 4개 사업 중 보훈처가 2개, 고용부와 여가부가 각각 1개이며, 고용부의 사업 예산이 가장 큼

- (개관) 총 예산 규모는 1,890억 원이며, 수혜자 수는 27.3만 명으로 1인당 연간예산액은 85.2만 원임
- (비중) 전체 사회참여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예산 5,519억 원의 약 34.0%를 차지하나, 수혜자 비중에서는 전체 104만 명 중 26.3%만을 담당
- (사업) 고용노동부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예산이 1,696억 원으로 기타 3개 사업에 비해 매우 큼

〈표 5-36〉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1.미혼모 자립지원 (여가부)	최저생계비 150%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 제공, 미혼모자시설 제공	3,749
8.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청년층 만 18~34세, 중장년층 만 35~64세,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 영세자영업자	-취업상담(1개월), 취업알선(2~4주), 직업훈련(6개월), 집중취업알선(3개월)	169,642
11. 장기복무 전역 예정군인 전직지원(보훈처)	장교 및 준·부사관으로 5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컨설팅, 교육훈련, 행정지원,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경력전환 및 사회진출 지원	11,858
12. 전역예정군인 취업화동 지원(보훈처)	장교 및 준·부사관으로 5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컨설팅, 교육훈련, 행정지원,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경력전환 및 사회진출 지원	3,754

□ (제한적-표준화 시장) 총 7개 사업 중 복지부 사업이 4개로 가장 많고, 통일부·법무부·여성부가 각각 1개임

- (개관) 사업예산 규모는 3,612억 원, 수혜자는 76.4만 명, 1인당 사업예산액은 91.5만원임
- (비중) 전체 사회참여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예산의 약 65.4%, 수혜자 비중에서도 73.6%을 담당하여 분류된 3개 사업군 중 가장 큼

-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2,28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등 복지부 예산이 7개 사업 총예산 3,612억 원의 87.9%(3,177억 원)를 차지함

〈표 5-37〉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2.자활근로 (복지부)	18-64세의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 등 5대전국표준화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22,531
3.장애인 일자리 (복지부)	미취업 장애인,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내용)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하여 운영비, 인건비 지원	49,549
5.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복지부)	다양한 장애특성에 기반한 중증장애인	-(내용)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지원	17,200
6.탈북민 원스톱취업 지원 (통일부)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주민	-(내용)취업지원센터 직업상담사가 이력서작성, 면접 클리닉 지원, 심화교육 특강 진행	765
7.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여성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내용)취업상담 운영,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등 취업지원	38,100
10.출소자 갱생지원 (법무부)	출소자 및 가족	-(내용)직업훈련, 취업알선, 출소자 법률상담, 출소자 자녀 학업지원	4,607
13.노인일자리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내용)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경비 지원	228,484

□ (개방적-비표준화 시장) 총 1개 사업으로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인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사업뿐임

- (개관) 총 예산은 1,746억 원이지만 수혜자가 1,586명에 지나지 않아 1인당 사업예산액이 110만 원으로 가장 높음
- (비중) 전체 사회참여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예산의 약 0.3%, 수혜자 비중에서도 0.2%만을 담당하는 등 매우 작은 사업으로 파악

〈표 5-38〉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14.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 (복지부-지투)	18-64세의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의 중증경증장애인	-직업생활준비,자격증취득 등 창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준비	1,746

□ (목표시장 선정) 1차적으로 제한적-표준화 시장을 공략하여 사업체 기반을 확보 후, 2차적으로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시장을 차별화하여 공략.

○ (시장 우선순위) 표준화 사업이 비표준화된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고 예산도 큼으로 초기 시장 진입은 비교적 표준화 정도가 높고 경쟁이 덜한 부문에 진출 후 2차 시장 진입은 출신 사업별로 진출

○ (시장확대형) 제한적-표준화 사업에 참가하여 주 사업을 위한 인력양성 및 인건비조달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

⇒(협동조합 역량) 시장확대형 협동조합은 주로 정부지원으로 자립한 자활기업, 경력단절 및 이주민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음

⇒(제한적-표준화시장) 협동조합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및 인건비를 조달하고, 육성된 사업별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체 규모화를 추구

⇒(개방적-표준화시장) 인력 육성 및 사업의 인프라 확보 후, 사업연대를 통해 미혼모, 실업자,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알선 사업 등에 참가

○ (제품개발형) 제한적-표준화 시장에 참가해 인건비 확보 등 이외에 사업 시설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확보

⇒(협동조합 역량) 노인대상의 더불어락 협동조합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업지원을, 장애인 대상의 연리지협동조합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지원을 받음

⇒(제한적-표준화시장) 협동조합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및 인건비를 조달하고, 육성된 사업별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체 규모화를 추구

⇒(개방적-비표준화시장) 장애인 협동조합의 경우 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체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가

※ 제품개발형의 경우, 특정 조합원별(노인, 장애인) 대상의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R&D 능력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개발

[그림 5-8] 사회참여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 순위 결정

구분		협동조합 유형	
		시장확대형(정부지원형)	제품개발형(민간 자발형)
예산 규모	1순위	-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사업별 출신들의 연합으로 규모화 ·인건비 조달로 비용우위 확보 ·협동조합 인력의 전문화를 추구 ·중간지원기관으로 전문성 강화	-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사업별지원으로 초기인프라 확보 ·협동조합 인력의 전문화를 추구 ·인건비 조달로 비용우위 확보
	2순위	- 개방적-표준화 사업군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참가 ·일자리 알선기관으로 참가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 ·장애인 대상 인큐베이팅 등 사업 추진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 설정

- (지원방안 도입시 고려요인)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방안의 구체화, 기업체로써의 시각, 그리고 사회 자본의 연계를 고려
 - (관계법령) 사회적경제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기초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 및 통합화 하는 방안이 필요
 - (사업체) 일자리의 자발적 창출 등 공익성과 더불어 협동조합도 명백히 경제조직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각인시키는 관점이 필요
 - (사회자본) 민간 기부금이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와 자본과 협동조합이 연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구축
- (지원방식 방향 설정) 제한적-표준화 시장의 안착을 위해 1차적으로 사업체도의 개선에 주력하고 2차적으로 협동조합별 유형에 따라 차별적 지원 추진
- (1차 지원방향) 사회참여 지원 위탁사업체 지정, 시설임대, 기존 사업체들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유도, 협동조합을 참여업체로 연계 추진
 - (시설임대) 사회참여 지원 중심의 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임으로 사업을 위한 시설장 확보가 매우 어려움으로 정부의 공유 부동산 장기 임대를 추진

- (우선권 부여) 민간자발형, 정부지원형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제한적-표준화 사업을 통해 인건비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우선권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구매시장의 우선권 부여를 기반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를 추진
- (기존 사업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을 고려하여 자활기업 등 기존 사회참여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들의 법인형태를 협동조합으로 전환도록 유도
- (협동조합과의 연계) 정부지원형과 민간유발형 협동조합과 기존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참가한 사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 상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 마련

□ (2차 지원방향) 2차사업군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유형별로 사업정보 제공, 사업 확대를 위한 사회자본 연계 등을 추진

- (사업정보 제공) 정부지원형에게는 개방적-표준화 사업군의 정보를, 민간자발형에게는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의 정보를 중간지원기관이 담당
 ⇒ 중간지원기관의 경우, 타 사업군 정보이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동반
- (사회자본연계) 지역 사회의 기부금 및 기업의 CSR 공헌자금 등을 협동조합들이 타 사업군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또는 R&D 자금으로 활용

〈표 5-39〉 사회참여지원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도구

지원 단계	유형	진화 단계	협동조합		
			목표사업	핵심역량	지원 방향(대안)
1차 지원	정부 지원형 · 민간 자발형	시장 침투	- 제한적-표준화	- 인건비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사회적일자리 사업 연계
				- 시설확보	-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 사업체 인가	- 개별법상 인가허용
				- 기존사업체 전환	-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 기존사업체와 협동조합 연대	- 중간지원기관 전환컨설팅
2차 지원	정부 지원형	시장 확대 · 다각화	- 개방적-표준화	- 사업정보제공	- 중간지원기관 경영컨설팅
				- 신사업 기반 확보	- 기업CSR 등 사회자본연계
	민간자 발형	제품 개발 · 다각화	- 개방적-비표준화	- 사업정보제공	- 중간지원기관 전문인력 연계
				- R&D 능력 강화	- 중간지원기관 경영컨설팅
					- 기업CSR 등 사회자본연계

제5절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1.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특성

- (특징) 소득기준이 없고 표준화된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하나 문체부 산하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복지부의 정책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개관) 총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예산은 총 527억 원이고, 전체 수혜자는 약 3백만 명으로 추정됨
 - (특징) 서비스표준화 수준은 낮고,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이 5개, 개방성이 낮아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낮음
- (1인당 연간 사업예산) 200만 원 이상의 1순위 사업군은 1개인 반면, 1인당 연간 예산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업이 다수를 차지
 - (1순위 사업군) 아동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할머니(5백만 원) 사업이 존재
 - (2순위 사업군) 100만 원 이하 사업에 예술꽃씨앗학교(문체부), 예술강사지원(문체부), 지방문화원어르신 문화프로그램(문체부) 사업 등 5개 사업이 존재
 - ⇒ 문화복지사 사업의 예산은 기관 운영비로 제공하는 형태로 기관 이용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음

〈표 5-40〉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1순위	소계	4,730	917	5,158,124
	1.이야기할머니(문체부)	4,730	917	5,158,124
2순위	소계	47,999	2,903,285	16,532
	3.예술꽃씨앗학교(문체부)	2,500	3,400	735,294
	2.예술강사지원(문체부)	5,500	12,276	448,029
	4.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문체부)	4,053	13,872	292,171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마우처(문체부)	34,946	1,638,737	21,325
	7.문화복지사(문체부)	1,000	1,235,000	810

주. (문화부) 5.국민문화 향유권 확대는 별도 사업이 아닌 관람시간 연장인 관계로 사업현황에서 제외

□ (정책 추진 정도) 총 6개 사업 모두 문체부 주관사업 이므로 협동조합 참여시 부처간 연계가 요구됨

- (1인당 예산 배정액) 총 6개 사업의 1인당 예산 배정액은 평균 1.8만 원 수준이며, 타 사회서비스 부문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
- (담당부처) 문화 예술 분야 사업으로 문체부의 정책 추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처 간 정책연계가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

〈표 5-41〉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소관부처별 사업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 예산(원)
문체부	소계	52,729	2,904,202	18,156
	1.이야기할머니(문체부)	4,730	917	5,158,124
	3.예술꽃씨앗학교(문체부)	2,500	3,400	735,294
	2.예술강사지원(문체부)	5,500	12,276	448,029
	4.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문체부)	4,053	13,872	292,171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문체부)	34,946	1,638,737	21,325
	7.문화복지사(문체부)	1,000	1,235,000	810

주. (문화부) 5.국민문화 향유권 확대는 별도 사업이 아닌 관람시간 연장인 관계로 사업현황에서 제외

□ (서비스 표준화) 전체 사업 중 비표준화 성격이 강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없는 일반사업 중심임

- (지원방식) 예술강사지원, 예술꽃씨앗학교, 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 문화복지사 등 4개 사업의 인건비는 기관 제공방식으로 집행

〈표 5-42〉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구분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원)
일반사업	소계	52,729	2,904,202	18,156
	1.이야기할머니(문체부)	4,730	917	5,158,124
	3.예술꽃씨앗학교(문체부)	2,500	3,400	735,294
	2.예술강사지원(문체부)	5,500	12,276	448,029
	4.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문체부)	4,053	13,872	292,171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문체부)	34,946	1,638,737	21,325
	7.문화복지사(문체부)	1,000	1,235,000	810

주. (문화부) 5.국민문화 향유권 확대는 별도 사업이 아닌 관람시간 연장인 관계로 사업현황에서 제외

□ (소득기준 여부) 총 6개 사업 중 1개 사업에 한해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기타 5개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 사업임

○ (소득기준 有)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바우처 사업 1개이며 사업예산 규모는 349억 원, 1인당 연간예산은 국비기준으로 21,325원으로 파악

○ (소득기준 無) 이야기할머니 사업으로 1인당 사업예산이 높지만, 이를 제외시 1인당 사업예산액은 10,322원으로 소득기준 有의 절반수준임

〈표 5-43〉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의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예산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원)
소득기준 유	소계	34,946	1,638,737	21,325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문체부)	34,946	1,638,737	21,325
소득기준 무	소계	17,783	1,265,465	14,502
	1.이야기할머니(문체부)	4,730	917	5,158,124
	3.예술꽃씨앗학교(문체부)	2,500	3,400	735,294
	2.예술강사지원(문체부)	5,500	12,276	448,029
	4.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문체부)	4,053	13,872	292,171
7.문화복지사(문체부)	1,000	1,235,000	810	

주. (문화부) 5.국민문화 향유권 확대는 별도 사업이 아닌 관람시간 연장인 관계로 사업현황에서 제외

□ (참여가능성) 총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경쟁입찰제이나 사업체 특성상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많아 개방성이 전반적으로 낮음

○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외에 비영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문화여행 스포츠관람바우처 사업과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2개임

〈표 5-44〉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의 사업선정방식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수('13)	1인당예산(원)	
개방성 고	3.예술꽃 씨앗학교 (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경쟁입찰	30	735,294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	-정부·지자체·산하기관 70% -사회복지법인 30%	-경쟁입찰	17	21,325
	2.예술강사지원 (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공모제	1	448,029
	7.문화복지사 (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공모제	85	810
개방성 저	1.이야기할머니 (문체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1	5,158,124
	4.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회복지,비영리기관 100%	-지정제	193	292,171

주. (문화부) 5.국민문화 향유권 확대는 별도 사업이 아닌 관람시간 연장인 관계로 사업현황에서 제외

2. 협동조합 역량 극대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

□ (목표사업 분석) 총 6개 문화예술부문 사업 중 개방적-표준화사업은 4개, 제한적-표준화사업은 2개로 분류

○ (분석기준) 사업체로써 사회서비스 사업의 참여가능성 정도와 사회서비스의 표준화 정도를 고려

○ (분석결과) 개방적-표준화 사업이 제한적-표준화 사업보다 수혜자 규모와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

⇒ 제한적-표준화 사업군의 경우 이야기할머니 사업(515만원)과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29만원)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

[그림 5-8]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구분		참여가능성 정도	
		개방적(등록제·경쟁입찰)	제한적(허가제·인가제)
서비스 표준화 정도	표준화 (일반 서비스)	- 개방적-표준화 사업(4개) 3.예술꽃 씨앗학교 (문체부)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마우처 2.예술강사지원 (문체부) 7.문화복지사 (문체부)	- 제한적-표준화 사업(2개) 1.이야기할머니 (문체부) 4.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비표준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0개)	- 제한적-비표준화 사업(0개)

<표 5-45>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구분	사업수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원)
개방적 - 표준화	4	43,946	2,889,413	15,209
제한적 - 표준화	2	8,783	14,789	593,887

□ (개방적-표준화 시장) 총 4개 사업 중 예산이 적은 문화복지사 사업을 제외시
초중고생 등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

- (개관) 총 예산은 439억 원이지만 수혜자가 288만명으로 1인당 사업예산액은 1.5만 원으로 파악
- (비중) 전체 문화예술부문 사업예산의 약 83.3%, 수혜자 비중의 99.5%만을 담당하는 등 시장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

〈표 5-46〉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2.예술강사지원(문체부)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악, 연극, 무용, 만화, 디자인 등 8개분야 강사를 초중고교에 파견	5,500
3.예술꽃씨앗학교(문체부)	영유아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운영의지가 높은 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지원	2,500
6.문화,여행,스포츠관람마우처(문체부)	전체연령	-공연, 전시, 영화관람, 국내여행상품, 워터파크,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지원, 문화이용권(가구당 5만원), 여행이용권(가구당 15만원), 스포츠관람이용권(가구당 12만원)지원	34,946
7.문화복지사(문체부)	전체연령	-문화복지 및 여가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문화복지 및 서비스 기획, 제공하는 사람	1,000

□ (제한적-표준화 시장) 총2개 사업이며, 모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개관) 총 예산은 총 87억 8천만 원이며, 1인당 연간예산액은 이야기할머니사업은 5백만 원,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30만 원으로 파악
- (비중) 전체 문화예술부문 사업예산의 약 16.7%, 수혜자 비중의 0.5%만을 담당하는 등 틈새시장의 성격이 강함

〈표 5-47〉 문화예술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백만원)
1.이야기할머니(문체부)	노인	-일정한 교육을 마친 후 손자세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	4,730
4.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문체부)	노인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문화학교, 동아리활동, 생활문화 전승 등 문화향유 증진	4,053

□ (목표시장 선정) 1차로 시장확대형은 제한적-표준화시장을, 제품개발형은 개방적-표준화사업에 진입 후, 2차로 지역 축제시장 등 제한적-비표준화 사업을 발굴하여 진출

- (목표선정 방향) 수익창출을 통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단위의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사업목표를 고려시 대상별 시장으로 선정하여 공략
 - ⇒ 사업군이 개방적-제한적으로 구분되었지만 실제로 문화예술분야 사업군은 정부 및 지자체 소유 산하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제한적 시장에 가까움
 - ⇒ 개방적-표준화시장은 주로 청소년 및 아동 대상의 공연을 중심으로, 제한적-표준화 시장은 주로 노인 대상의 사업으로 구성됨
 - ⇒ 사례분석에서 파악된 정부지원형의 자빠르떼의 경우, 주로 노인대상의 지역 문화시장을, 민간자발형의 나무시어터는 청소년 대상의 공연시장을 공략
- (시장 확대형) 노인대상의 제한적-표준화 사업에 진출과 더불어 지역문화축제 시장 등 제한적-비표준화 시장을 개발하여 공략
 - ⇒ 노인대상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문화축제시장의 확보가 관건으로 대두
- (제품개발형) 청소년 대상의 개방적-표준화시장에 진출 후,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청소년 대상 문화 축제 사업을 공략
 - ⇒ 시장확대형의 시장진입 문제이외에 청소년 공연 중심 사업임으로 시설장 확보가 관건

[그림 5-9] 문화예술 부문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 순위 결정

구분		협동조합 유형	
		시장확대형(정부지원형)	제품개발형(민간 자발형)
예산 규모	1순위	-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 노인 중심의 사업확장	- 개방적-표준화 사업군 · 공연시설 중심으로 청소년 등에 집중
	2순위	- 제한적-비표준화 사업군 · 지자체 문화축제 시장을 공략 · 정부지원형은 노인중심 축제시장을, 제품개발형은 청소년 축제시장을 공략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 설정

□ (지원방식 방향) 주요시장이 산하기관 등 제한적 시장임을 고려할 때, 시장참여와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시설임대 및 정보제공에 주력

○ (고려요인) 6개 문체부 시장의 문화예술분야 사업이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어 협동조합들의 진입이 상당히 어려움

⇒ 문화예술협동조합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문화축제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

□ (1차 지원방향) 문체부 사업 정보제공, 참여를 위한 우선권 부여, 노인대상의 프로그램개발 지원에 집중

○ (정보제공) 문체부 사업에 대한 정보부재로 현 협동조합들은 사업진출을 고려하지 못하는 바 중간지원단체의 사업정보 제공서비스가 필요

⇒ 정부지원형에게는 제한적-표준화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민간자발형에게는 개방적-표준화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간지원조직이 담당

○ (우선권 부여)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책임조달제도를 기반으로 문체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지역문화축제시장 참여도 역시 예술협동조합들이 참여 및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 관련 조항을 개선

○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R&D를 사회서비스 R&D 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기업 CSR자금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 고려

⇒ 정부지원형에게는 노인특화 문화 프로그램을, 민간자발형에게는 청소년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촉진

○ (시설 확보) 청소년 대상의 공연문화가 중심인 민간자발형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소유의 공연장을 장기저리임대 해주는 방안이 필요

□ (2차 지원방향) 지자체 중심의 문화축제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 정보제공, 참여를 위한 우선권 부여 등에 주력

- (정보제공)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지역 문화시장은 협동조합들에게 중요한 수익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군이나 정보가 부재
 ⇒ 정부지원형에게는 지자체 노인대상 문화축제시장 정보를, 민간자발형에게는 지역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에 대한 정보도 수집
- (우선권 부여) 중앙부처 문화예술 사업 이외에 지자체의 지역문화축제시장 참여에서도 예술협동조합들이 참여 및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 관련 조항을 개선

〈표 5-48〉 문화예술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방향 설정

지원 단계	진화 단계	협동조합		
		목표사업	핵심역량	지원 방향(대안)
1차 지원	시장침투	문체부 문화예술 사업	- 사업정보 제공	- 중간지원단체의 경영컨설팅
			- 우선권 부여	- 사회적책임조달제도 도입 - 개별법상 인가허용
			- 프로그램 개발	- 사회서비스 R&D 사업 지원 - 기업CSR 등 사회자본연계
			- 시설확보	- 사회적책임조달제도 도입
2차 지원	시장확대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지역축제시장	- 사업정보제공	- 중간지원기관 경영컨설팅
			- 우선권 부여	- 사회적책임조달제도 도입 - 지자체 조례 개정

제6절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1.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특성

□ (개관) 총 5개 사업 중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이 2개, 탈북청소년 등 특정 대상의 사업이 3개로 일반인 참여가 어려운 사업군으로 파악

○ (개관) 총예산이 467억 원이며, 이용자는 36만 7천명으로 7대 사회서비스 부문 중 상대적으로 예산과 이용자가 적음

○ (진입 시 문제점) 특정 대상 중심의 사업구성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주력 시장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보조시장으로의 접근이 필요

□ (1인당 사업예산) 총 5개 사업 중 200만원 이상의 1순위 사업은 1개인 반면에 100만원 미만 사업은 3개로 다수

○ (1순위 사업군)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교육부의 탈북청소년학생지원 사업의 1인당 사업예산을 약 208만원으로 파악

○ (2순위 사업군)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다문화 예비학교 사업 등 4개이나 복지부의 아동인지사업 예산은 388억 원으로 5개 사업 중 가장 많음

〈표 5-49〉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원)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1순위	소계	4,200	2,022	2,077,151
	6.탈북청소년학생지원 (교육부)	4,200	2,022	2,077,151
2순위	소계	42,585	355,859	119,668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복지부_지투사업)	1,870	2,426	770,816
	1.아동인지서비스 (복지부_지투사업)	38,819	258,933	149,919
	7.행복학습지원센터 (교육부)	1,896	94,500	20,063
	3.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부)	-	-	-

주. 다문화예비학교는 지방비로만 구성되어있음

□ (정책추진 정도) 총 5개 사업 중 보건복지부는 2개인 반면 교육부는 3개로 정책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교육부) 1인당 평균 예산 규모는 6.3만 원이나 탈북청소년학생지원사업과 기타 사업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2개 사업 중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과 아동인지서비스간의 격차가 약 60만원으로 나타남

〈표 5-50〉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소관부처별 사업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 예산(원)
교육부	소계	6,096	96,522	63,157
	6.탈북청소년학생지원 (교육부)	4,200	2022	2,077,151
	7.행복학습지원센터 (교육부)	1,896	94,500	20,063
	3.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부)	-	-	-
복지부	소계	40,689	261,359	155,682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복지부_지투사업)	1,870	2,426	770,816
	1.아동인지서비스 (복지부_지투사업)	38,819	258,933	149,919

주. 다문화예비학교는 지방비로만 구성되어있음

□ (서비스 표준화) 복지부의 2개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반면, 교육부의 3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표준화 수준이 높은 편임

- 총 5개 사업 중 인건비 지향의 서비스 수가 방식 보다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포괄성과 지원 가능성이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개임

〈표 5-51〉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구분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원)
일반사업	소계	6,096	96,522	63,157
	6.탈북청소년학생지원 (교육부)	4,200	2022	2,077,151
	7.행복학습지원센터 (교육부)	1,896	94,500	20,063
	3.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부)	-	-	-
지투사업	소계	40,689	261,359	155,682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복지부_지투사업)	1,870	2,426	770,816
	1.아동인지서비스 (복지부_지투사업)	38,819	258,933	149,919

주. 다문화예비학교는 지방비로만 구성되어있음

□ (소득기준 여부) 교육부의 3개 사업은 소득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탈북청소년 등 특정계층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 참여가 거의 어려움

○ (교육부) 탈북청소년학생지원과 다문화 예비학교 사업은 탈북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정요인을 사업대상으로 둠

○ (복지부)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과 아동인지서비스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표 5-52〉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의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 (원)
소득기준 유	소계	40,689	261,359	155,682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복지부_지투사업)	1,870	2,426	770,816
	1.아동인지서비스(복지부_지투사업)	38,819	258,933	149,919
소득기준 무	소계	6,096	96,522	63,157
	6.탈북청소년학생지원(교육부)	4,200	2022	2,077,151
	7.행복학습지원센터(교육부)	1,896	94,500	20,063
	3.다문화 예비학교(교육부)	-	-	-

□ (참여가능성) 총 5개 사업 중 교육부의 3개 사업은 학교 및 지역연계기관 등의 참여가 100%임으로 참여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 다문화예비학교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이나 사업자들이 학교 및 대안교육위탁기관이 100%에 가까워 실질적인 개방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표 5-53〉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의 사업선정방식 현황 (2013년 기준)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기관수 ('13)	1인당 예산(원)
개방성 고	1.아동인지서비스(복지부_지투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9	149,919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복지부_지투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26	770,816
개방성 저	3.다문화 예비학교(교육부)	-학교 대안교육위탁기관 100%	-경쟁입찰	52	-
	6.탈북청소년 학생지원(교육부)	-학교, 지역연계기관 100%	-지정제	-	2,077,151
	7.행복학습지원센터(교육부)	-학교, 지역연계기관 100%	-지정제	84	20,063

2. 협동조합 역량 극대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

□ (목표사업 분석) 총 5개 사업 중 개방적-비표준화사업은 2개, 제한적-표준화 사업은 3개로 분류

○ (분석결과) 사업 총예산 규모에서는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이 406억원으로 크고, 1인당 사업예산도 약 16만원으로 큰 것으로 파악

[그림 5-10]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구분		참여가능성 정도	
		개방적(등록제·경쟁입찰)	제한적(허가제·인가제)
서비스 표준화 정도	표준화 (일반 서비스)	- 개방적-표준화 사업(0개)	- 제한적-표준화 사업(3개) 3.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부) 6.탈북청소년 학생지원 (교육부) 7.행복학습지원센터 (교육부)
	비표준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2개) 1.아동인지서비스 (복지부_지투자사업)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복지부_지투자사업)	- 제한적-비표준화 사업(0개)

<표 5-54>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구분	사업수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원)
개방적 - 비표준화	2	40,689	261,359	155,682
제한적 - 표준화	3	6,096	96,522	63,157

□ (개방적-비표준화 시장) 5개 사업 총 예산의 87.0%, 수혜자의 73.0% 를 차지

○ (특징) 2개 사업 모두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구성

○ (예산규모) 2개 사업 총 예산 406억 원 중 95%가 아동인지서비스(388억 원)에 배정

〈표 5-55〉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백만원)
1.아동인지서비스 (복지부_지투사업)	영유아	-책 읽어주기, 돌후활동, 도서지급, 부모대상 독서지도 등 상담제공 후 균형적발달 도모	38,819
2.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복지부_지투사업)	유아아동청소년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서비스, 학 습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1,870

□ (제한적-표준화 시장) 3개 사업이 총 5개 사업예산의 13%, 수혜자의 27%를 담당

- (특징) 3개 사업 모두 교육부 사업으로 다문화아동, 탈북청소년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 (예산규모) 1인당 사업예산은 탈북청소년 학생지원 사업이 2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행복학습지원센터 예산은 2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표 5-56〉 학습지원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백만원)
3.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부)	아동청소년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학생이 정 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사전교육을 받음	-
6.탈북청소년 학생지원 (교육부)	아동청소년	-대안 교육시설로, 학교수업 후 수업 진 행, 위탁운영지원방식	4,200
7.행복학습지원센터 (교육부)	전계층	-평생학습기관으로부터 원거리 주민들 에게 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 지역공 동체 형성	1,896

□ (목표시장 선정) 1차적으로 개방적-비표준화 사업을, 2차적으로 제한적-표준화 사업 균을 공략

- (목표선정 방향) 지역에서 설립되는 학습지원 협동조합의 특성과 사업예산 등 시장성을 고려
- (협동조합 역량) 사례분석 결과, 학습지원 협동조합의 경우,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부지원형의 협동조합이 다수
⇒ 아름다운 수학교실은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여성강사육성사업, 다문화넘어서는 다문화아동지원비영리센터, 수과학놀이는 과학융합지원사업에서 출발

- (1차시장 진입) 사업예산과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아동인지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
- (2차시장 진입) 1차시장을 통한 매출확보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후, 부가가치 확대사업군으로 제한적-표준화시장에 진출
- ⇒ (협동조합 역량) 아동인지서비스 및 다문화가정아동발전지원 사업을 통한 사업경험 및 R&D 능력을 기반으로 탈북청소년, 다문화 예비학교 사업에 진출

[그림 5-11] 학습지원 부문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 순위 결정

구분		협동조합 유형(정부지원형-시장확대형)
예산 규모	1순위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설립된 정부지원형 협동조합들의 경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사업의 경험이 존재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서비스 R&D 능력을 활용해 경쟁력 확보 ·학습지원시장 중 예산규모 및 진출가능성이 수월한 시장을 공략하여 사업체로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2순위	-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을 Cash-Cow로 제한적-표준화 사업군을 고부가가치 사업군으로 설정하여 진입 ·탈북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아동 등 대상의 수학교육 및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형 멘토를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추구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 설정

- (지원방식 방향) 주력시장이 취약계층 및 특정계층 중심임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 설립특성과, 시장참여, 협동조합간 사업연대에 주력
- (고려요인) 5개 학습지원 사업 중 2개는 소득기준이, 기타 3개 사업은 탈북청소년 등 특정계층 중심임으로 영리사업이 비교적 어려움
- ⇒ 이를 반영하듯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상당수가 정부지원하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강사로 육성해 취약아동들에게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들로 파악됨

□ (1차 지원방향) 자활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 경력단절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 및 창업컨설팅에 주력

○ (창업컨설팅) 사회참여지원 사업의 참여한 사업체들 중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의 주 사업분야를 학습지원과 연계하는 정책추구

⇒ (예비 사회적기업 등) 경력단절여성들이 협동조합으로 사업체를 구성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등의 우선순위 부여를 통해 설립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및 인건비등을 지원

○ (우선권 부여) 사회참여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학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복지부 사업 참가시 우선권을 부여

○ (시설 확보) 서비스 제공방식이 집합교육 중심임을 고려할 때, 지역별 거점시설을 지자체의 건물 등 공유부동산을 장기임대하는 방안이 필요

○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회서비스 R&D 사업 선정자 지정을 통한 지원이나 기업 CSR자금 등과 연계하는 방안 고려

⇒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선정시 개인 경력사항을 사업자 선정배점기준에 포함

□ (2차 지원방향) 교육부 사업 참여 및 협동조합의 시장 확대를 위한 협동조합간 사업연대를 추진

○ (교육부 사업참여) 학교사업 위탁자로서 참여를 위해 부처간 협의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의무배당제를 도입

○ (사업연대) 교육부 사업의 경우 아동이외의 청소년 사업이 중심인바, 학습지원서비스 간의 연계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 학습지원이라는 서비스 성격은 유사하나 복지부의 경우 영유아 대상 사업인 반면, 교육부는 청소년 대상 성격이 강함

〈표 5-57〉 학습지원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방향 설정

지원 단계	진화 단계	협동조합		
		목표사업	핵심역량	지원 방향(대안)
1차 지원	시장침투	개방적-비표준화	- 협동조합 육성	- 사회참여지원 사업과의 연계 - 중간지원단체의 창업컨설팅
			- 우선권 부여	-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 프로그램 개발	- 사회서비스 R&D 사업 지원 - 기업CSR 등 사회자본연계
			- 시설확보	-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 지자체 공휴 부동산 지원
2차 지원	시장확대·다각화	제한적-표준화	- 사업참여	-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 지자체 조례 개정
			- 사업연대여	- 중간지원기관 경영컨설팅

제7절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1.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특성

□ (특징) 총 6개 사업 중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이 4개,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이 2개로 사실상 시장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 (개관) 총 6개 중 보건복지부가 3개, 산업통상자원부가 2개, 여성가족부가 1개임

○ (시장화) 소득기준이 존재하거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부가상품들 등에 대한 추가 구매의사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

□ (1인당 연간 사업예산) 1백만 원 이상 사업이 부재하며, 총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의 1인당 예산액은 약 87.8만원인 것으로 파악됨

○ (분석기준) 6개 사업 중 1인당 사업예산액 산정이 가능한 사업만을 분석

○ (1순위 사업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청소방역사업, 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사업이 해당

〈표 5-58〉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수혜자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 규모(명)	1인당연간 예산(원)
1순위	소계	39,022	44,430	878,280
	5.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29,600	29,628	999,055
	6.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4,226	4,297	983,477
	1.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복지부_지투사업)	2,967	7,847	838,600
	2.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2,229	2,658	378,106
2순위	소계	21,952	-	-
	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12,293	-	-
	4.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자부)	9,659	-	-

주. 저소득층에너지효율사업은 2012년 예산 및 규모 적용, 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시설장 대상사업으로 수혜 인원을 알 수 없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자료제출 거부

□ (정책추진 정도) 1인당 사업예산이 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 2개 존재하는 등 정책연계가 필요한 사업이 총 6개 중 3개임

○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1인당 연간예산 배정액은 약 1백만 원으로 파악됨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3개사업의 총예산은 148억 원이며, 1인당 예산액은 약 63만원 수준임

〈표 5-59〉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부처별 사업 1인당 사업예산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 예산(원)
산자부	소계	39,259	29,628	999,055*
	5.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29,600	29,628	999,055
	4.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자부)	9,659	-	-
복지부	소계	9,422	14,802	636,535
	6.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4,226	4,297	983,477
	1.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복지부_지투사업)	2,967	7,847	838,600
	2.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2,229	2,658	378,106
여가부	소계	12,293	-	-
	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12,293	-	-

주. 복지시설 시제생에너지보급사업의 수혜자규모자료부재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1인당 예산액으로 대체, 저소득층에너지효율사업은 2012년 예산 및 규모 적용, 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시설장 대상사업으로 수혜 인원을 알 수 없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자료제출 거부

□ (서비스 표준화) 6개 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3개로 파악

〈표 5-60〉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구분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원)
일반사업	소계	51,552	29,628	999,055*
	5.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29,600	29,628	999,055
	4.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자부)	9,659	-	-
	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12,293	-	-
지투사업	소계	9,422	14,802	636,535
	6.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4,226	4,297	983,477
	1.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복지부_지투사업)	2,967	7,847	838,600
	2.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2,229	2,658	378,106

주1. 복지시설 시제생에너지보급사업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의 수혜자규모 자료부재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1인당 예산액으로 대체,
 2. 저소득층에너지효율사업은 2012년 예산 및 규모 적용, 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시설장 대상사업으로 수혜 인원을 알 수 없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자료제출 거부

□ (소득기준 여부) 총 6개 사업 중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은 2개이나 폭력피해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으로 구성

○ (소득기준 有) 저소득층에너지효율 사업 등 4개로, 총 사업예산은 약 464억 원임

○ (소득기준 無) 총 2개이며, 사업예산은 145억 원으로 파악

〈표 5-61〉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의 소득기준 유무별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 (원)
소득기준 유	소계*	46,452	41,772	880,805
	6.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4,226	4,297	983,477
	1.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복지부_지투사업)	2,967	7,847	838,600
	5.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29,600	29,628	999,055
	4.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자부)	9,659	-	-
소득기준 무	소계*	14,552	2,658	378,106
	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12,293	-	-
	2.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2,229	2,658	378,106

주1. 소득기준 유의 소계는 4개 사업 중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제외한 3개사업의 1인당 사업예산액을 적용
 2. 소득기준 무의 소계는 2개 사업 중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을 제외하고 산출
 3. 소득기준 유의 경우 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예산과 1인당 연간예산을 산정, 소득기준 무의 경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예산과 1인당 연간예산을 산정

□ (참여가능성) 복지부 소관 사업의 경우, 등록제 방식으로 개방성이 높으나, 타부처 사업의 경우 지정제 등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

○ (개방성 低) 여가부는 지정제, 산자부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경쟁입찰이나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65%를 차지해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5-62〉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의 사업선정방식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식	기관수 ('13)	1인당 예산(원)
개방성 고	1.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복지부_지투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107	838,600
	2.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51	378,106
	6.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개인사업체 56%	-등록제	2	983,477
개방성 저	4.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자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65%	-경쟁입찰	229	-
	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비영리기관 100%	-지정제	33	-
	5.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정부·지자체·산하기관 100%	-지정제	1	999,055

2. 협동조합 역량 극대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

□ (목표사업 분석) 총 6개 사업을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 3개,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3개로 분류

○ (분석결과) 사업예산과 1인당 연간예산 배정액에서 제한적-표준화 사업군이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보다 큰 것으로 파악

[그림 5-12]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구분		참여가능성 정도	
		개방적(등록제·경쟁입찰)	제한적(허가제·인가제)
서비스 표준화 정도	표준화 (일반 서비스)	- 개방적-표준화 사업(0개)	- 제한적-표준화 사업(3개) 3.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4.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자부) 5.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비표준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3개) 1. 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복지부) 2. 장애인보조기기렌탈(복지부) 6. 청소방역(복지부)	- 제한적-비표준화 사업(0개)

<표 5-63>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세분화 매트릭스 분석 결과(2013년 기준)

구분	사업수	사업예산(백만원)	수혜자규모(명)	1인당연간예산(원)
개방적 - 비표준화	3	9,422	14,802	636,535
제한적 - 표준화	3	51,552	29,628	999,055

주.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1인당 연간 배정액 산정시, 저소득 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만을 대상으로 산정

□ (개방적-비표준화 시장) 총 6개 사업 총예산의 15.4%, 이용자의 33.3% 만을 차지하고 있어 제한적-표준화시장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음

○ (개관) 모두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사업과 청소방역사업은 소득기준이 존재하며, 장애인보조기기렌탈사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예산규모) 청소방역사업이 42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1인당 예산규모도 98만원으로 가장 높음

〈표 5-64〉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개방적-비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1.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복지부_지투사업)	영유아	- 장난감 등을 대여해 주며 양육코칭서비스 제공하여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도모함	2,967
2.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영유아동청소년	- 맞춤형 휠체어 및 자세유지 도구 렌탈, 점검 및 보수 서비스 제공	2,229
6.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전체연령	-청소,방역,세탁,소독 주거안전 서비스	4,226

□ (제한적-표준화 시장) 총 3개 사업으로 폭력여성,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

○ (부처) 여성가족부사업 1개, 산업통상자원부사업 2개로 타부처 중심 사업임

○ (예산규모)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411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1인당 예산규모도 99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1기관 당 지원예산이 33백만 원이며, 2013년 기준 292개 시설에 설치비용을 지원

○ (사업대상 및 내용) 폭력피해여성,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특정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장화의 한계가 존재

〈표 5-65〉 시설이용 부문 사회서비스 제한적-표준화 사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원)
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여가부)	여성 전체 연령	- 수사지원, 신체외상치료, 심리치료, 법적지원 등 제공	12,293
4.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산자부)	전체연령	-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지원	9,659
5.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산자부)	전체연령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물품(가스, 기름, 연탄보일러)지원.	41,100

□ (목표시장 선정) 1차적으로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진출 후, 개방적-비표준화 사업으로 제품개발을 추진

- (목표선정군 방향) 시설기반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의 설립특징과 시장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
- (1차시장 진출) 마을공동체 사업을 기반으로 산자부등 타 사업에 진입하여 매출기반을 확보
 - ⇒(협동조합유형) 시설기반 협동조합의 경우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발형 협동조합들이 주거 및 에너지효율화 개선 사업에 진출
 - ⇒(예산규모)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자원통상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
- (2차시장 진출)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사업에 복지 등 부가제품을 사업을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구현
 - ⇒(협동조합 특성)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은 마을공동체 형성 후 주거, 수학교실, 지역복지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제품개발형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다수
 - ⇒지역단위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비영리 성격의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가능

[그림 5-13] 시설이용 부문 협동조합의 시장 우선 순위 결정

구분		협동조합 유형: 민간자발형-제품개발형
예산 규모	1순위	- 제한적-표준화 사업군 ·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거,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전개
	2순위	- 개방적-비표준화 사업군 ·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내 복지시설 구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을 추진 ·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회서비스 R&D에 대한 맞춤형이 가능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 설정

□ (지원방식 방향)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설기반 형성 사업에 대한 참여 후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에 주력

- (고려요인) 6개 학습지원 사업 중 4개는 소득기준이, 기타 2개 사업은 폭력여성이나 장애인 등 특정계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내 출현하고 있는 시설기반 협동조합들은 취약지역내 주거 및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임

□ (1차 지원방향)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설기반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는 협동조합 설립 및 창업컨설팅에 주력

- (창업컨설팅)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의 마을기업 사업 시, 법인격과 주사업 방향을 협동조합 형태와 시설이용 부문 사업과 연계하는 정책을 추구

⇒ (마을기업) 취약지역의 경우,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들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구축하도록 지원

- (사업연계) 산업자원통상부의 시설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사업체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부처협의 등이 필요

⇒ 한국전력 등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등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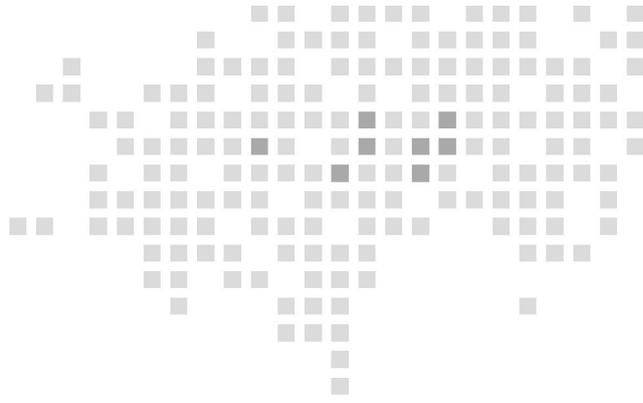
□ (2차 지원방향) 시설이용 부문 마을공동체 형성 후, 지역 내 맞춤형 복지사업 개발을 위한 복지부 사업 참여 및 R&D 기반사업과 연계를 추진

- (사업 참여)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참여시 시설이용부문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 우선권을 추진

-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회복지 R&D 사업 선정자 지정 등 지원방안을 연계

〈표 5-66〉 시설이용 부문 협동조합의 지원 방향 설정

지원 단계	진화 단계	협동조합		
		목표사업	핵심역량	지원 방향(대안)
1차 지원	시장침투	제한적-표준화 사업	- 협동조합 육성	-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연계 - 중간지원단체의 창업컨설팅
			- 우선권 부여	-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 사업연계	- 정부사업이외 한전 등 에너지사업 공기관과의 연계 추진
2차 지원	시장확대·다각화	개방적-비표준화	- 사업참여	-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 지자체 조례 개정
			- 프로그램 개발	- 사회서비스 R&D 사업 지원 - 기업CSR 등 사회자본연계



제6장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참여를 위한 추진 과제

제1절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Framework

제2절 기업 생명주기별 세부 지원방안

6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 참여를 위한 추진 과제 <

제1절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Framework

□ (Framework 구축방향)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 의지, 협동조합의 출현배경 및 역량, 협동조합의 생명주기 등을 고려

○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 의지)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중앙정부 주도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을 고려 시,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관여도가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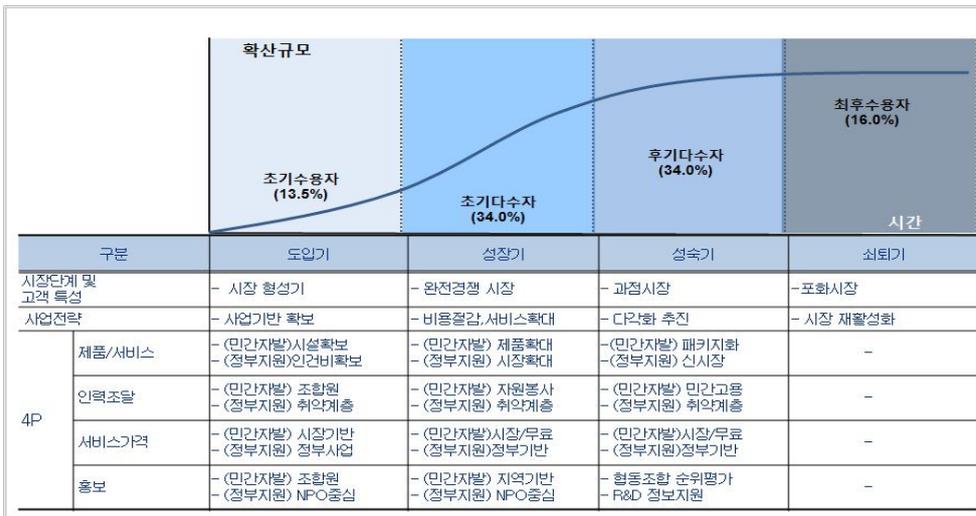
⇒ 본고에서는 민간자발형의 이탈리아 정책을 참고하되 국가주도형의 캐나다 협동조합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구축

〈표 6-1〉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 육성정책 비교

구분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
특징	- 민간자발형 육성정책	- 국가주도형 육성정책
배경	- 근로자 중심 복지제도 구축으로 고령자와 아동, 여성 및 이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 ·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20.4%이며, 80세 인구비중도 5.8%(OECD, 2011) · 아동의 유치원 이용률이 11.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가정보육이 일반화된 국가 · 근로자 중심의 소득비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실직 시, 근로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1980년대 세계경제불황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 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노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 1983년 노조가 정부와 협의후, 스스로 대규모 기금을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협동조합 등에 투자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 · 1996년 정부가 시민지도자들과 함께 퀘벡의 경제·사회미래에 관한 정상회담 개최 후 협의체를 상설기관화 하여 사회적경제 대표기관으로 상티에를 출범
주력정책	-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 등 최소한의 관리 정책에 집중	- 협동조합과 NGO에게 사회서비스 위탁 시 비용의 30~40%를 절감하는데 장안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
현황	- 2008년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13,938개, 이중 보건 및 교육을 담당하는 A유형이 59.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현인 B형이 32.8%, A+B형은 4.3%, 그리고 컨소시엄은 3.9%로 구성 · 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 및 교육을 담당하는 A형 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나 영리 추구의 기업적 성격이 강함	- 공동체 7,000개, 협동조합 3,300개, 데이케어센터 1,000개, 존재하며, 고용 25,000명, 매출 연간 17조원 등 퀘벡주 GRDP의 약 8%를 차지 · 일반기업과 협동조합간의 10년 후 생존율에서 협동조합은 44.3%, 일반기업은 19.5%로 지속가능성에서 협동조합이 약 2배 이상의 우위

- (협동조합 배경) 현재 한국에 출현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은 정부지원형과 민간자발형으로 설립배경이 차별적인바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이 필요
 - ⇒ (정부지원형) 고용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복귀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 사업체 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
 - ⇒ (민간자발형) 안행부 및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을 받아 지역내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는 협동조합들이 다수 출현
- (기업생명주기)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들의 설립 후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 등 성장단계에 따라 사업전략들이 차별적인 바, 이를 고려
 - ⇒ (정부지원형) 인력이 취약계층에 대한 특정한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된 만큼 부가적인 교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사업전략을 추진
 - ⇒ (민간자발형) 전문가와 사회적기업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조합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 제품개발형 전략을 추진

[그림 6-1]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들의 성장단계와 특성



□ (단계별 지원정책)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설립이전-도입기-성장기-성숙기의 4단계 맞춤형 지원 Framework를 구축

- (설립이전)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설립 및 전환, 인과과 정상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양적 확대를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데 주력
- (도입기)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들이 사업체로써 기반확보를 위해 사업자금 융통,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참여,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등에 주력
- (성장기) 협동조합들이 사업체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들의 역량에 부합하는 제1순위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과의 매칭을 유도
- (성숙기) 매출기반 확보 후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들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제2순위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진출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

〈표 6-2〉 사회서비스 참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생명 주기별 지원방안

구분	설립이전	도입기 (시장침투)	성장기 (시장 또는 제품개발)	성숙기 (다각화)
지원 방향	-진입장벽 완화	-사업기반 확보	-매출기반 구축	-부가가치 확대
공통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체계 통합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법 개정 -사회적협동조합인센티 브 제도 마련 및 홍보	-공공조달시장 및 사회서 비스 위탁 우선권 부여 -시설장기 임대 -비영리금융인프라 구축 -중간지원조직 체계개편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 업 정보제공 등 경영권 설팅 -자원봉사기관으로 지정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사 업연대 컨설팅 -각 사업 전문가 연계
정부 지원형	-사회참여지원 사업체들 을 협동조합으로 연계	-협동조합 전환 컨설팅	-(돌봄)개방적-표준화 10개 사업 -(사회참여지원) 제한적- 표준화 7개 사업 -(학습지원)개방적-비표 준화 2개 사업	-(돌봄)제한적-표준화 12개 사업 -(사회참여지원) 개방적- 표준화 4개 사업 -(학습지원) 제한적-표준 화 3개 사업
민간 자발형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 제조직 사업체들을 협 동조합으로 유도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 한 지자체 연계	-(돌봄)제한적-표준화 12개 사업 -(상담)제한적-비표준화 12개 사업 -(건강)제한적-표준화 6개 사업 -(문화)개방적-표준화 4개 사업 -(시설이용) 제한적-표준 화 3개 사업	-(돌봄)개방적-비표준화 2개 사업 -(상담)제한적-표준화 7개 사업 -(건강)개방적-비표준화 9개 사업 -(문화)제한적-비표준화 시장 개발 -(시설이용)개방적-비표 준화 3개 사업

제2절 기업 생명주기별 세부 지원방안

1. 사회적협동조합 양적확대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

- (지원 방향) 사회적협동조합의 양적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 인가체계 수정, 인가기준 우선순위 부여, 인센티브제도 마련, 기존 정부재정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에 주력
- (기본법 개정) 현행 업무지침으로 되어 있는 업력이전 사항과 개인사업체,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전환 시, 구성원의 전원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의 관련내용을 개정
 - (관련법 개정 또는 국세심판원 의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 방지를 위해 법인세법 78조와 소득세법 17조 2항의 의제 배당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
 - ⇒ 법 개정이 어려울 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의뢰하여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따른 세금부과 문제 해결을 추진
- (인가체계 수정) 각 부처에 산재에 있는 현 범부처 인가체계를 기재부로 통합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인가업무를 대행
 - 사회적협동조합의 각 부처 인가체계로 인해 소관부처 선정, 통계적 누락, 인가 담당자의 지식부족, 인가기준의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
 - ⇒ 단,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인가과정을 대행 시, 타 부처사업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타부처와 협상을 진행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 (인가기준 우선순위 부여)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범위설정을 통해 타 부처 인가기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
 -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 8개 개별법에 의한 기본법임으로 타부처 사회서비스 사업관련법에 대한 우선권이 부재함으로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

-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포함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인가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

□ (인센티브제도 마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 및 설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시 현재의 인센티브제도는 비영리법인으로의 법인격 부여, 기부금 단체 지정 등이 존재하고 홍보도 부족한 상황
-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무배당을 조건으로 법인세 또는 투자금에 대한 세금감면을 인센티브로 제공

〈표 6-3〉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이탈리아	- (운영수익) 회계년도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97%까지 면세 부여, 미분배된 수익금은 해산 시까지 협동조합의 발전자금으로 보존(A·B형 모두) ·(세금감면) 배당금 총액이 원자재비 및 자회사 관련비용을 제외한 총금액의 50% 이상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배당금은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B형만)
캐나다 퀘벡	- 협동조합투자계획(Cooperative Investment Plan)에 의한 세금감면(투자금의 125%) - 소득세 환불제도(Deferred Tax Rebate) 시행: 협동조합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들의 세금이 면제, 배당 받을 경우만 소득세 부과

□ (기존 정부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정부지원형의 경우, 기존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체를, 민간자발형의 경우,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컨설팅을 강화

- 정부지원형 협동조합들의 경우, 범부처 사회참여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가 존재하며, 민간자발형의 경우 마을기업 등의 사업을 지원받아 협동조합으로 설립한 경우가 다수 파악
- 사회적협동조합의 양적확대를 위해 중간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기존 사업체들의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을 강화

2. 사회적협동조합 초기안착을 위한 사업인프라 지원

- (지원 방향)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가능성 확대를 위해 인가체계 수정 및 세금 관련 문제 해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에 주력
- (공공구매시장 우선권 부여) 공공조달시장 및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위탁사업 우선권을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부여
 - (공공구매시장) 중산층 대상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기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우선권을 부여
 - ⇒ (공공조달시장)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을 통해 학교매점·급식, 공공기관 세차시장 등 공공조달시장의 우선권을 부여
 - ⇒ (사회서비스 위탁시장) 개인사업체 과다로 인한 고용의 질 하락 등 문제점 보완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조기 안착을 위해 사업 우선권을 부여
 - (해외사례) 이탈리아의 경우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사업에 한해, 캐나다의 경우 지역 사회서비스 위탁사업자에 한해 사회적협동조합과 NPO에게만 사업우선권 부여정책을 추진
 - ⇒ (캐나다 퀘벡)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까다로운 인증과 철저한 실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수 관리로 실질적 독점권을 부여
 - ※ 대도시의 경우, 영리사업자의 시장참여가 허용되어 우선권 부여가 어려우나, 농촌 등 변두리 지역의 경우 시장 부여가 가능
 - ⇒ (이탈리아) 사회·보건·교육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 조달 시 공공기관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내용 및 특별한 직업, 회복 프로그램을 계약에 적용(사회적협동조합법 제5조 4항)
 - ※ 경쟁입찰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비율에 따라 평가 점수를 계산하며 이외, 가격, 질, 기술가치, 기능성 및 심미성, 에너지 소비량 등 환경관련 원자재, 이용 및 관리비용, 수익성, 사후관리 등으로 평가

〈표 6-4〉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구매시장 우선권 부여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이탈리아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대상의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공공조달시장과 사회서비스 위탁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 ·공원관리, 공공시설의 정원 관리, 양로원/유아원/유치원의 위탁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공공시설(관공서, 병원, 도서관, 박물관, 학교)의 청소 분야(‘경제상 유익한 입찰조항(법률 83조항)’에 근거)
캐나다 퀘벡	- 정부재정지원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사업체 자격조건으로 협동조합과 NGO만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설정해 시장 우선권을 부여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시, 정부가 각 지역에 NPO 또는 협동조합수를 결정 단,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써 인증이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서비스 품질을 확보

○ (국내사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사례 중에서도 공공조달시장 참여로 사업기반을 마련한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

⇒ 정부지원형이 아닌 민간자발형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표 6-5〉 협동조합들의 정부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협동조합	주요 사회서비스 내용
- (상담_서울_영림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 학교장 및 행정실 지원으로 매점운영이 가능
- (상담_서울_홀더맘사회적협동조합)	- 바우처사업으로 취약계층 상담서비스를 진행함
- (건강_전주_스포츠제이협동조합)	- 스포츠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문화_천안_우리놀이협동조합)	- 기존 전통놀이 창작활동을 해 왔으며, 전통문화 관리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잡혀있음
- (사회참여_전주_협동조합 온리)	- 전주한옥마을 청년몰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판로개방이 있었으며 흥대 등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

□ (시설장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휴 부동산의 저리 장기임대 등 자산이전 정책을 추진

○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시설장 마련을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 이외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자체 등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 자금지원에 의한 시설장 마련은 향후 부동산 임대가격 상승이나 지원자금 반환 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

〈표 6-6〉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 사업의 사업장 지원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공유지 우선 임대) 자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마을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행부) 최대 1억 원 한도, 원금상환조건부(5년이내), (월세형태 가능) -(서울시) 씨앗기(약 6개월 준비교육)를 이수한 단체에게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 1억 원 이내, 5년 내 상환).

〈표 6-7〉 시설장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들이 지원 받은 상황(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협동조합	주요 지원 내용
-(돌봄_서울_서대문부도협동조합)	- 서울시 마을기업사업으로 1억원 지원 받음
-(돌봄_서울_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 성동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원받음
-(돌봄_대구_협동조합동지)	- 동구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로 공간을 마련함
-(돌봄_서울_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 도시관리공단의 공간을 낮은 금액으로 임대받아 사용
-(상담_대구_토닥토닥협동조합)	- 기업공모전 참가로 시설투자 및 장비를 지원받음
-(사회참여_대구_사회적협동조합동행)	- LH공사 마을형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아 시작함
-(사회참여_전주_협동조합 가운)	- 소상공인협업화사업지원으로 1억원 지원
-(문화_대전_나무시어터)	- 교외의 공간(폐교)을 7년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문화_제주_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지원을 받음
-(학습_광주_배움평생교육강사 협동조합)	- 지자체 공간임대 지원
-(학습_광주_배움평생교육강사 협동조합)	- 초기 지자체 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으로 시설임대 지원

○ (해외사례) 이탈리아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협동조합과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를 장기간 무상임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나 기부 및 상속 등 자산이전 시 세금을 면제

〈표 6-8〉 이탈리아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자산이전 세금면제 조항

<p>제3조(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의 이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도, 시, 군 등의 지역 관할청과 공공복지 활동, 연구, 교육 및 기타의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공 기관 및 법적으로 인정된 재단과 협회 등의 기관에 이로운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기관들은 다르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공공 기관, 재단 혹은 협회로의 자산 이전은 동항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되었을 경우에만 면세 대상이 된다. 3. 제2항의 경우, 자산을 받는 기관은 자산의 상속 및 기부가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5일 안에 받은 자산이나 재산, 혹은 이에 대한 매도 혹은 이양으로 인해 발생된 이익금의 유입이 유언자 혹은 기부자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상기 사항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증명받은 날을 기준으로 법적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4. 해외 공공 기관과 해외소지의 재단 및 협회에 대하여는 국가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본 조항이 준용된다. - 4%의 요율 적용 대상 재화와 용역에 관해서는 제정 1972. 10. 26 대통령령 제633호 제2부에(부가가치세 관련 규정 및 제도) 명시된 표 A를 참조한다.

□ (비영리 금융인프라 지원) 수익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속가능한 비영리 금융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

○ (정부재정지원) 비영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영리추구형의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단발성의 정부지원자금을 의존하게 되거나,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

⇒ 이러한 경향은 사업체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착

〈표 6-9〉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인건비 및 전문인력지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최저임금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 50~90%까지 참여 연차별 차등적용, 최대 5년 지원 -(사업개발비지원)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 원 이내이며 사업참여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 금액 3억 -(금융지원) 미소금융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4대 보험지원)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인원 제한 없이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전원 지원(단,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 제외)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98,000원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금용자)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용자 지원,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지원 -(인건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급여)지원, 주차·월차 수당, 실비 지원 가능, 단, 대상자의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 포함)의 1년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 금액의 100%, 1년 초과~2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 금액의 50% 지원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의 초기 3개월은 100%, 이후 3개월은 50% 지원
농촌 공동체회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운영비 지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용을 최대 2년간 지원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프로그램 개발·홍보비용 등) ·지원금액: 개소 당 최대 5,000만원(국고 2,500만원, 지방비 1,250, 자부담 1,250) ·단,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은 제외되나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시도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최대 120만원/월인)에 한해 각각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마을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조 또는 용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 하며, 마을공동체기업 교육, 의제설정비/조사지원비(최대 100만원) 지원

〈표 6-10〉 인건비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들이 지원받은 상황(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협동조합	주요 지원 내용
- (사회참여_대전_연리지 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3인에 대한 임금 지원을 받음
- (사회참여_광주_더불어락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인건비 지원받음
- (문화_서울_자바르떼 사회적협동조합)	- 2007년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지원

○ (해외사례)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개발과 시설확
 보, 인건비 조달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매칭펀드 형태의 기금 마련 후 전문 비
 영리 금융기관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자금을 지원

⇒(이탈리아) 정부와 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CFI가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들에게 자금을 저리로 지원

⇒(캐나다 퀘벡) 정부와 노조, 민간기금 등 다양한 비영리 기금을 조성하여 초
 기 사업개발, 시드머니 조성, 규모화를 위한 사업 확대 등 단계적으로 지원

〈표 6-11〉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 주의 비영리 금융체계 및 지원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이탈리아	- (자금용자) 정부산하 금융투자기관 CFI가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시설비 등을 최장 10년 이내 저리로 용자 ·(CFI) 1986년 경제개발부와 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설립한 금융기관으로 최소 9인 이상 생산자·직원·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 ·(지원형태) 회원으로 소속된 협동조합에 대해 자본투자 및 채무증권의 조합을 통해 최장 10년 저리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 ·(시설비 지원)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구입 시 채무증권으로 조합 총자산의 15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물품가격의 100%까지 지원(3년 만기) ·(재원) 개별협동조합의 수익 3%로 조성된 발전기금(CoopFond)으로 조성하고 지역연맹과 윤리은행, CFI와 같은 정부산하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지원
캐나다 퀘벡	- (정부) 규모별 자금조달방식 마련해 소규모, 중간규모, 대규모 별로 지원 차별화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지원금은 퀘벡 투자공사에서 조성 ·CQCM은 연맹에서 축적한 발전기금을 신생협동조합에게 지원 - (지역개발센터) 120개 기관들이 사회적기업육성 펀드(FLI)를 조성후 자금을 지원 - (퀘벡사회투자네트워크(RISQ)) 최대 10년 이내 무보증 소액대출이 가능 ·사업개발 시, 1,000~5,000달러까지 용자방식으로 지원 ·창업준비 사업팀 중심으로 최고 10만 달러의 시드머니를 보증 및 상환의무 유예 ·합병 등 자본화 지원금으로 2만~5만 달러를 최장 10년 저금리 장기투자자로 지원 - (샹티에신탁(Fiducie)) 최소 10년 이상 장기 차입성 인내자본 조달 ·15년 동안 원금상환 의무가 면제, 이자비용만 지불하는 장기자본 조달이 가능 ·조달금액은 최소 5만 달러에서 최고 1.5백만 달러이며, 고정금리 적용 ·운영자금(Patient Capital Operations)과 부동산자금(Real Patient Capital)로 구성 - (퀘벡 연대기금(QFL), 사회적기업육성펀드(FDEES)로 부터 자금 지원이 가능 - CDECs의 지역투자기금(LIF)으로부터 창업자금 조달이 가능

□ (중간지원체계 재구조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개발 등의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중간지원기관 조직의 체계를 구축

- (재정지원 컨설팅 사업과의 연계) 현재 17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이외에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컨설팅 조직들과 연대 추진
- ⇒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17개 중간지원기관으로는 수적으로 매우 부족
- ⇒ (정부지원형 협동조합) 기존의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 대상으로 협동조합 전환 컨설팅 사업을 추진

〈표 6-12〉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 사업의 경영컨설팅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영컨설팅)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 300만원~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진흥원에서 비용지원 -(판로개척) 공동판매장 조성, 공공기관우선구매, 모바일웹 개발, TV홈쇼핑 방송편성지원, 사회적기업박람회 등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대국민 인지도 및 인식제고 -(사업개발비지원)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 원 이내이며 사업참여 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 금액 3억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창업지원)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 지원, 매출적립금 지원시 고가설비(1천만원 이상),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명의로 관리하며, 자활기업 지원기간 종료 후 자활기업 일부 부담을 통해 명의를 자활기업으로 전환 가능

- ⇒ (민간자발형 협동조합) 협동조합들의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와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표 6-13〉 민간자발형 협동조합들의 성공요인(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협동조합	주요 지원 내용
-(돌봄_서울_서대문부모협동조합)	-서대문지역의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체가 없었음
-(돌봄_대구_협동조합 동지)	-기존 사교육을 거부하는 부모들의 뜻이 잘 맞았음
-(돌봄_서울_나무외열매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아동에 대한 품앗이 돌봄으로 시작, 장애부모의 필요를 채움
-(상담_서울_영림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학생들의 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비위생적이었음
-(상담_대구_토닥토닥협동조합)	-카페사업으로 상담소 출입이 용이해 중장년층 남성들의 이용이 빈번함
-(사회참여_대전_연리지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이라는 사업아이템이 참신함

- (해외사례)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한 반면, 캐나다 퀘벡주는 협동조합연합회 외에 주정부 지원 하에 협동조합개발기구, 지역개발센터 등이 존재하고 NPO 중심으로 지역경제개발기구 등이 존재
- ⇒ (이탈리아) Leagcoop, Confcooperative, AGCI 등 전국단위 협동조합 연합회외에 전국 44개 콘소시엄 1,350개 협동조합이 포함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CGM(Consortio Nazionale della Cooperazione Sociale Gino Matarelli)이 1987년에 설립
- ⇒ (캐나다 퀘벡) 일시적인 설립중심의 지원에서 사업 안착화를 위해 전문성있고 장기간(최소 3년)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육성

〈표 6-14〉 이탈리아와 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적협동조합에 컨설팅 지원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등록) 지방 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루어지나 전문 설립컨설팅은 Legacoop, Confucoop, AGCI와 같은 조합연맹이나 중간지원 단체에 의해 진행 - (컨설팅) 각 지역연맹이 개별협동조합 설립 시 상권분석, 자금조달, 회계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연대사업 등을 추진 ·(지역연맹) 각 지역연맹 안에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담당 팀이 존재
캐나다 퀘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협동조합 정책과가 지원하는 11개 지역협동조합개발기구(RDC)가 존재 ·(예산) 주정부 협동조합 개발국의 지원금으로 사업운영비를 지원(개당 30만 불 지원) ·(대상) 이용자, 직원, 지원 단체 중심의 연대협동조합 중심으로 3년간 지원 ·(컨설팅) 애플란스, 보육,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 개발을 위해 시장개발, 직원교육, 회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후 교육 - 주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지역개발센터(CLD)가 120개 운영 ·(역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타당성 등 창업컨설팅 지원 - CQCM 산하에 12개 섹터별 연맹이 존재 ·(역할) 각 지역 내 필요한 사회서비스 관련 협동조합들의 사업을 지원 ·(육성) 에너지, 장래, 건강, 노동자 섹터 중심으로 지역협동조합 연맹이 지원 ·(세부분야) 낙농, 농업, 임업, 주택, 데자르텐, 식품, 통신, 지역개발, 홈케어 및 건강, 노동자, 구급, 장래, 학교 협동조합의 연합회가 소속 - 사회적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퀘벡내 사회적경제의 발전 계획 등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상하는 상티에를 구축 - NPO 중심의 지역경제개발회사(CEDCs)이 11개 존재 ·(역할) 지역 내 사회단체, 노동조합, 기업 등이 참여한 시민자발조직으로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원서비스, 고용훈련 등을 담당

3.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매출기반 구축

□ (지원방향) 매출기반 확보를 위한 제품개발 또는 시장확대를 시도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에게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경영컨설팅 지원과 자원봉사 기관으로 유도 등을 추진

□ (주력사업 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 전개) 개별협동조합들의 역량과 주력사업 분야와 관련된 범부처 재정지원사회서비스 사업의 참여를 촉진

○ (협동조합 역량) 사례분석 결과 협동조합의 출생배경에 따라 정부지원형 및 민간자발형의 인력구성과 주력 사업분야에 차별성이 존재

⇒ (정부지원형) 취약계층의 사회적 복귀가 목적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가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

⇒ (민간자발형) 전문성을 갖춘 지역주민, 또는 개인 프리랜서, 사회적기업가 등이 지역내 중산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 (주력분야) <표 6-15>에 제시된 사업 중 정부지원형의 경우, 돌봄·사회참여·학습지원 부문, 민간자발형의 경우, 돌봄·건강관리·상담·문화예술·시설이용 부문에서 사업 성공성이 높은 사업군들로 사업참여를 유도

○ (경영컨설팅) 중간지원조직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작성, 협동조합의 역량과 주 사업분야에 따라 경영컨설팅을 전개

⇒ (사업 가이드라인) 99개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별사업에 대한 개관과 참여방법, 주 예산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제품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

⇒ (정보센터 구축) 역량부족으로 개별 중간지원조직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특정 사업체를 중앙정보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 (개별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사업추진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위해 중앙정보센터와 개별 중간지원조직간에 상시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

〈표 6-15〉 협동조합 역량과 사회서비스 유형별 결합에 의한 1순위 주력 사회서비스 사업
(단위: 백만원)

유형	사회서비스문	1차 목표시장	사업명	사업예산('13)
정부 지원형	돌봄	개방적-표준화 10개	-산모·신생아도우미 (복지부) -방과후돌봄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 (복지부) -다문화가족정착및양육지원 (여가부) -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 (여가부) -가사간병서비스 (복지부) -장애대학생도우미 (교육부) -노인돌봄서비스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부) -지역정신보건사업 (복지부)	969,140
	사회참여	제한적-표준화 7개	-자활근로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복지부) -탈북민 윈스톱취업지원 (통일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부) -출소자 갱생지원 (법무부) -노인일자리 (복지부)	361,236
	학습지원	개방적-비표준화 2개	-아동인지서비스 (복지부_지투사업)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복지부_지투사업)	40,689
민간 자발형	돌봄	제한적-표준화 12개	-영유아보육료지원 (복지부) -유아학비·보육료지원 (복지부) -엄마품온종일돌봄강사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영아중일제시간제 (여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복지부)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복지부)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 (농림부) -취약농가인력지원 (농림부) -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부) -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 (여가부)	5,758,583
	상담	개방적-비표준화 12개	-아동정서발달지원 (복지부_지투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복지부_지투사업) -인터넷과몰입치유 (복지부_지투사업) -아동청소년비전형성 (복지부_지투사업) -부모학교 (복지부_지투사업) -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 (복지부_지투사업) -고령자소외예방 (복지부_지투사업) -기타아동정서 (복지부_지투사업) -정서, 학습, 리더십 (복지부_지투사업) -아동체험 (복지부_지투사업) -근로자정서지원 (복지부_지투사업) -사례관리 (복지부_지투사업)	96,424
	건강지원	제한적-표준화 6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문체부) -신나는주말체육학교 (문체부, 교육부)	148,036

유형	사회서비스문	1차 목표시장	사업명	사업예산('13)
			-스포츠마우처 (문체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문화·예술	개방적-표준화 4개	-예술강사지원 (문체부) -예술꽃씨앗학교 (문체부) -문화,여행,스포츠관람마우처 (문체부) -문화복지사 (문체부)	43,946
	시설이용	제한적-표준화 3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가부)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자부)	63,052

- (협동조합의 기존사업연계) 신사업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한 경영컨설팅 지원 시, 도입기에 협동조합들이 채택한 주력 사업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
- ⇒ (국내 사례)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경우, 설립 전 사업경험이나 기반, 운영방법이 성공의 중요요인으로 대두

〈표 6-16〉 신생 협동조합들의 기존사업 지식 (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협동조합	주요 지원 내용
-(건강_전주_스포츠제이협동조합)	-지역의 스포츠센터 역할로 10년 이상 운영하여 운영노하우를 갖춤
-(사회참여_광주_더불어락협동조합)	-협동조합설립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카페운영 경험이 있음
-(사회참여_대구_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사랑나눔센터)	-일요한글 수업 등 이주민여성들을 교육할 수 있는 주변 학습자원 활용
-(사회참여_대구_사회적 동행)	-기존 아름다운가게 운영으로 시설기반 및 운영노하우가 있었음
-(문화_제주_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감귤 유통사업으로 우수 제품 확보를 위한 자원이 풍부
-(문화_대전_나무시어터)	-설립 전부터 운영시스템이 협동조합과 유사(수익배분)하여 큰 갈등 없이 설립
-(학습_제주_씨울협동조합)	-기존 학원사업으로 홍보를 할 수 있었음

□ (자원봉사 지정 기관으로 유도) 신사업 확대 시 필요한 인력조달을 위해 협동조합들을 자원봉사 지정기관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

- (자원봉사자)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업 확대에 따라 인력조달 비용이 큰 장애물로 등장
- ⇒ (이탈리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봉사 시 사고발생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의무화

〈표 6-17〉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대상

구분	내용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및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인정하지 않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자료: 1365자원봉사 시스템 관리자 교육교재(2013).안행정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4. 사회적협동조합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다각화 지원

- (지원방향) 매출기반을 확보한 사회적협동조합들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부가사업진출 유도과 전문가 연계 등 사업연대를 지원
- (부가사업 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 전개)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2차 사업군에 대한 경영컨설팅 실시
- (협동조합 역량) 1차 제품 및 시장확대를 통해 매출기반을 확보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2차 신사업군에 대한 진출이 필요
- ⇒ (중간지원조직) 범부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사업 및 지자체 사업 중 협동조합의 역량과 1인당 예산배정액 등을 고려한 사업군에 대한 정보제공

〈표 6-18〉 협동조합 역량과 사회서비스 유형별 결합에 의한 2순위 주력 사회서비스 사업 (단위: 백만 원)

유형	사회서비스	2차 목표시장	사업명	사업예산('13)
정부 지원형	돌봄	제한적-표준화 12개	-영유아보육료지원 (복지부) -유아학비·보육료지원 (복지부) -엄마품온종일돌봄강사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시간제 (여가부)	5,758,583

유형	사회서비스	2차 목표시장	사업명	사업예산('13)
민간 자발형			-장애아동가족지원 (복지부)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복지부)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고령국가유공자노후복지지원 (농림부) -취약농가인력지원 (농림부) -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부) -여성장애인밀착형지원강화 (여가부)	
	사회참여지원	개방적-표준화 4개	-미혼모 자립지원 (여가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부) -장기복무 전역 예정군인 전직지원 (보훈처) -전역예정군인 취업화동지원 (보훈처)	189,003
	학습지원	제한적-표준화 3개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부) -탈북청소년 학생지원 (교육부) -행복학습지원센터 (교육부)	6,096
	돌봄	개방적-비표준화 2개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지투사업) -10대 방과후돌봄(지투사업)	2,505
	상담	제한적-표준화 7개	-WEE프로젝트 (교육부) -청소년인터넷중독극복 (여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여성부) -법률홈닥터 (법무부) -스마일센터 (법무부) -드림스타트 (복지부)	136,617
	건강지원	개방적-비표준화 9개	-비만이동관리서비스(복지부_지투) -정신질환자토달케어(복지부_지투) -치매예방서비스(복지부_지투) -재활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복지부_지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복지부_지투)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복지부_지투) -유헤스 서비스(복지부_지투)	47,704
문화·예술	제한적-표준화 2개	-이야기할머니(문체부)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문체부)	8,783	
시설이용	개방적-비표준화 3개	-저소득가정 장난감대여 (복지부_지투사업)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복지부_지투사업) -청소방역 (복지부_지투사업)	9,422	

□ (사업연대) 기존사업과의 관련성 부족을 고려하여 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 간 연대와 진출분야 전문가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 (국내사례) 민간자발형 협동조합들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시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우가 다수 존재

⇒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인재확보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절감

○ (해외사례)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협동조합 들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음

〈표 6-19〉 신생협동조합들의 인력조달 현황(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결과)

협동조합	주요 지원 내용
-(돌봄_서울_서대문부모협동조합)	- 다양한 조합원들의 구성으로 필요한 인력을 조달할 수 있었음
-(상담_대구_토닥토닥협동조합)	- 조합원을 상담, 베이커리, 커피제조 등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구성
-(문화_제주_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 마케팅전문가 등 전문인력조성에 힘써 협동조합에 대해 특화된 컨설팅이 가능했음

참고문헌 <

- 강희원, 이광택, 장홍근, 고희면, 정태길, 변철환, 김용진(2013). 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 및 복지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함께나눔재단.
- 고용노동부(2013).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4). 일과가정의 행복한 균형만들기 2014년 생애주기별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 안내서. 고용노동부.
- 교육부(2014). 새 학년 상담주간 운영 계획. 교육부.
- 교육부(2014).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교육부.
- 교육부(2014).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교육부.
- 국가보훈처(2014). 2014년 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처.
- 국민생활체육진흥회(2013).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사업 운영 지침. 국민생활체육진흥회.
-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 업무지침.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 기본법 합동교육.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2014). 취약농가인력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맹영임(2013).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스포츠바우처 사업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소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도 문화기반국 예산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201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활동지침(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학진흥원(2014).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학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작은학교, 예술꽃 피우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법무부(2014).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법무부.
- 법무부 위탁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2012). 스마일센터 사업보고서. 법무부 위탁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보건복지부(2014). 201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개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서울시(2013).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 . 서울특별시.
- 안전행정부(2013). 1365자원봉사 시스템 관리자 교육교재. 안전행정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여성가족부(2014). 2014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14). 201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여성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2014). 2014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이철선, 권소일(2013).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III: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201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재단(2010). 힘내세요! 정부가 에너지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복지사업. 지식경제부·한국에너지재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14). 2014년도 사업계획_출소자갱생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운영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장애인개발원(201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 EURICSE(2008). *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 Insee-Clap(2011). *Connaissance Locale de L'Appareil Productif*.
BMG Research(201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ds, Cabinet Office*.
Aldo Soldi(2012). *Il Fondo Mutualistico di Legacoop. Coopfond*.
CFI(2013). *CFI_Informa. legacoop*.

보도자료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보도자료(2014). 2014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선정. 2014. 6. 12.
무지개청소년센터 보도자료(2014).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2014. 3. 1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4). 문체부, 2014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2014. 2. 1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2). 정부의 '문화복지사'양성이 처음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2. 1. 12.
법무부 보도자료(2013).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2013. 11. 1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사회 초기적응 도와드려요. 2013. 3. 15.

웹사이트

- <http://www.bancaetica.it>
<http://www.cfi.it>
<http://www.codiceappalti.it>
<http://www.coopfond.it>
<http://www.mo.camcom.it>

부 록 <

1. 범부처 사회서비스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현황에 관한 담당공무원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6)

※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조 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가능성 모색 및 방안연구'와 관련된 각 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 현황자료를 기초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6월 23(월)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설문 응답자의 프로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업 명과 부처,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업명	담당부처	담당자 및 연락처
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TEL:)

1. 다음은 귀하가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예산 및 수혜자 관련 질문입니다.

질 문	현 황
1.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비기준 사업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① 2012년 도 ()천원 ② 2013년 도 ()천원 ③ 2014년 도 ()천원
2. 2014년도 사업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① 국비만으로 구성 ② 국비에 지방비를 포함하여 구성 ③ 국비에 지방비, 그리고 기타 예산을 포함하여 구성
3. 귀하가 담당하시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주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① 영유아 ② 아동·청소년 ③ 노인 ④ 장애인 ⑤ 여성 ⑥ 다문화가정 ⑦ 탈북자 ⑧ 군인 ⑨ 실업자 ⑩ 일반인 ⑪ 기타 ()
4. 주 수혜자에 대한 세부 자격기준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없다.(일반 국민 모두 해당) ② 가구 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 소득 ③ 장애인 등급 ④ 연령 ⑤ 장애인 등급 ⑥ 외국인 ⑦ 기타 ()
5. 귀 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수혜자의 연도별 규모는 몇 명 정도 인가요?	① 2012년 도 ()명 ② 2013년 도 ()명 ③ 2014년 현재 ()명

2. 다음은 귀하가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운영방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현황
1. 귀하가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나요? * 총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 주세요.	① 개인사업체()% ② 주식회사()% ③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기관()% ④ 정부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⑤ 협동조합()%
2. 귀하가 담당하시는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은 어떤 방식을 통해 선정되나요?	① 등록제 ② 인가제 ③ 경쟁 입찰 ④ 수의계약 등 전속 위탁 ⑤ 기타()
3. 귀하가 담당하시는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의 연도별 개수는 얼마나 되나요?	① 2012년 도 ()개 ② 2013년 도 ()개 ③ 2014년 현재 ()개
4. 귀하가 담당하시는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기관들의 평균 종사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실적치) 평균 명 ② (추정치) 평균 명 * 파악 가능한 수치를 적어주세요
5. 서비스 기관에게 사회서비스 집행에 따른 비용은 누구에게 지불하시나요?	①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② 기관에게 지급 ③ 둘 다 지급
5.1 (종사자 지급만)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서비스수가와 인건비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시나요?	① 서비스 수가방식(바우처 포함) ② 인건비 지불방식
5.2 (기관 지급) 기관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서비스 비용과 운영비 지원 중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고 계신가요?	① 서비스 비용만 지급 ② 운영비만 지급 ③ 둘 다 지급
6. 귀 부처에서는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서비스 비용 외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① 없다 ② 종사자 교육비용 지원 ③ 건물 등 시설지원 ④ 기타()
7. 혹시 귀 부처에서는 수행기관에 대한 서비스품질을 어떻게 감독하고 계신가요?(모두 응답)	① 관리가 없다. ② 공무원의 기관 실사 ③ 이용자 만족도 조사 ④ 기타()
7.1(실사수행 부처 맨 기관 실사를 하고 계시다면 실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① 중앙 부처 공무원 (회/1년) 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회/1년) ③ 기타()
8. 만약 서비스 수행기관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귀 부처에서는 기관에게 주로 어떤 페널티를 주시나요?(모두 응답)	① 없다. ② 시정조치 ③ 영업중지 조치 ④ 해당 사업에서 퇴출 ⑤ 기타()
9. 혹시 전년도에 페널티를 부과한 기관은 몇 개 정도 인가요? 페널티 수준별로 응답해 주세요	① 없다. ② 시정조치(개) ③ 영업중지 조치(개) ④ 해당 사업에서 퇴출 ⑤ 기타(개)

3. 다음은 귀하가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의 근로자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황
1. 현장에서 귀 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근로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① 2012년 ()명 ② 2013년 ()명 ③ 2014년 현재 ()명
2. 귀 부처에서는 사회서비스 수행기관 근로자들의 고용 현황에 관한 실적치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① 보유하고 있다 ②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귀 부처에서는 사회서비스 수행기관 근로자들에 대한 주 자격 조건을 사업지침에 명시하고 있나요? 있다면 주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 해당되는 사항 모두 체크	① 명시하지 않고 있다 ② 필수 교육이수 조건이 있다. ③ 자격증 소지자야 한다 ④ 기타()
4. 사회서비스 수행기관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얼마인가요?	① (실적치) 평균 만원 ② (추정치) 평균 만원 * 파악 가능한 수치를 적어주세요
5. 사회서비스 수행기관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① 시급제 ② 주급제 ③ 월급제 ④ 모름()
6. 사회서비스 수행기관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인가요?	① (실적치) 평균 시간 ② (추정치) 평균 시간 * 파악 가능한 수치를 적어주세요
7. 사업지침상에 사회서비스 수행기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나요?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다음은 사회서비스 수행기관 근로자들의 법적인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귀 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 지침 상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 해당되는 사항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연장근로수당 지급 ② 야간근로수당 지급 ③ 휴일근로수당 지급 ④ 주휴근로수당 지급 ⑤ 연차수당 지급 ⑥ 퇴직금 적립 및 부여 ⑦ 명시된 것이 없다.

4. 다음은 요즘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2014년 4월 기준으로 약 4,6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방식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문화, 교육, 돌봄 등 관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들이 존재합니다.

질문	현황
1. 귀하가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요?	① 있다 ② 없다
1.2 없다면 협동조합들이 참가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① 인가제이기 때문에 인가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② 특정 공공기관에게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등록제이는 하나 사업지침 상에 제한이 존재한다. ④ 제한조건은 없지만 협동조합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다 ⑤ 기타()
2. 귀하가 담당하시는 사회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협동조합의 참여를 고려하거나 활성화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2.1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범부처 사회적협동조합 담당자 FGI 질문지

협동조합 운영자 간담회 실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8)

※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조 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가능성 모색 및 방안연구’와 관련된 FGI 조사입니다. 각 협동조합 운영자(이사장 또는 사무국장)께서는 평소 운영하고 계시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소신껏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할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한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협동조합설립 시, 지원을 받으셨나요? 어떤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시설 임대, 자치구 설립지원 등 자활센터나 사회적기업으로의 지원내용 포함)

☞

3. 협동조합 운영 상,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요?
(예: 시설부족, 시장확보 어려움, 홍보부족, 비협조적인 담당공무원 등)

☞

4. 협동조합운영에 있어 가장 시급히 만들어져야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예: 협동조합 공공사업 우선권부여, 홍보사업, 중간지원단체의 전문성제고, 시설장기 임대 등)

3. 국외 출장 대상 기관 질문지

<출간지원단체_상티에>

북미 지역에 앞서 한국은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면서 약 3,500여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122개에 그쳤.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있는 캐나다의 지원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를 삼고자 합니다.

1. 소속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합회의 지원사업(※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 요망)
1) 소속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건물유류료, 사업비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소개, 경영컨설팅, 회계지원 등)
2) 지원방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만약 사업비 지원을 한다면 기부형태인가요? 아니면 대출 형태인가요?
4) 만약 소속 사회적협동조합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해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요청한다면 연합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보증 등)
5) 혹시 소속 사회적협동조합의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합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인건비 지원, 교육제공, 구직알선 등)
6) 연합회가 위와 같은 지원을 소속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하는 대신 소속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나요? (※ 월 회비, 발전기금 납부 등)
2. 주 정부 사회서비스사업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합회 지원 (※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 요망)
1) 혹시 주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대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연합회가 특별히 지원하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사업정보 제공 등)
2) 만약에 주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 대행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연합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사업체 조정 등)
3) 주정부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중 연합회차원에서 소속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전략적으로 담당하기를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 노인돌봄, 아이돌봄, 교육 등)
4) 만약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주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받는다면 주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 혜택이 있는지요?
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합회의 관리
1) 연합회에서는 소속 사회적협동조합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회계감사 시행 등)
2) 만약 소속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영미숙 등 잘못 운영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요? (※ 자금지원 중단 등)
4. 주정부와 연합회와의 관계
1) 평소 주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연합회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 사업개발, 사업자선정 자문, 사업자 관리, 사업개발 등)
2) 지속적인 관계가 있다면 혹시 주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본 표본에 앞서 한국은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면서 약 3,500여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122개에 그쳐,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있는 캐나다의 지원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를 참고자 합니다.

1. 정부 사업 진행에 따른 지원 (※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 요망)
1) 귀 기관이 주정부가 발주한 사업 중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로부터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받는 사업)
1.1 전체 매출에서 주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1.2 사업을 수행하면 주 정부로부터는 어떻게 비용을 지불받고 있나요?
2) 주 정부가 발주한 사업이외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2.1 조합원 이외에 일반인도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3)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컨소시엄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3.1 컨소시엄으로 정부 사업에 지원시 다른 기관에 비해 사업우선권이 주어지나요?
3.2 컨소시엄으로 사업 참여시 정부로부터 받는 특별한 지원방안이 있나요?
3.3 컨소시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참여 사회적협동조합들과 어떻게 배분하나요?
3.4 컨소시엄 구성은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연합회에서 구성해 주나요?
4) 이외에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2.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 자체로써 받는 지원(※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 요망)
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인가되면 되면 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으로 무엇이 있나요? (※ 사업우선권지정, 면세제도, 세금인하, 기부금단체로 인정, 공적요원 과징, 자활봉사기관 인정 등)
2) 주 정부 이외에 지역협동조합연맹이나 연합회로부터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사업비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최저임무 지원, 국제협력 등)
3)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본은 주로 어디서 조달하나요?
3.1 연합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무상지원인가요? 아니면 대출인가요?
3.2 혹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연합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증)
4) 연합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인건비 지원, 임금체계 구축, 교육지원, 인력 조달 등)
3. 사회적협동조합과 연합회와의 관계 (※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 요망)
1) 연합회에서 회계업무 등 지원을 받는대신 사회적협동조합은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나요? (※ 월 회비, 발전기금 조성 등)
2) 사회적협동조합이 부실해지면 연합회는 어떤 재제를 할 수 있나요?
4. 타 협동조합과의 물품 구매 관계
1) 귀 협동조합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조달 시, 다른 협동조합의 물건을 우선 구입하나요?
2) 우선 구입한다면 혹시 연합회 차원에서 어떤 규정들이 존재해서 인가요?

<주 정부>

※ 표본에 앞서 한국의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면서 약 3,500여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122개에 그쳤.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있는 캐나다의 지원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로 삼고자 합니다.

1. 주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 요망)
1) 현재 주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 종류는 얼마나 되나요?
2) 주 정부는 사회서비스 사업 제공기관들에게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나요?
3) 주정부 사업 중 제공기관으로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2.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 요망)
1)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사업 참여시 재단 등 다른 법인에 비해 어떤 특혜들이 존재하나요? (ex: 사업 우선권 부여, 세금감면 등)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에 한해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 면세, 건물임대료 면제,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2.1 지원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 1년단위 or 다년 방식, 사업전체 운영비 지원 or 인건비, 운영비 등 개별지원방식)
2.2 혹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정책도 있나요?
3) 사회적협동조합과 기타 재단 등 비영리기관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4) 사회적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대행한다면 주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중 모른 사업에 참여가능한가요? 아니면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있나요?
5) 만약에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주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한다면 개별 사업자 대비 특혜가 존재하나요?
6) 혹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사업체가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에 속한 근로자에게 특별히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나요?(ex: 인건비, 교육비, 인력조달 지원)
7) 혹시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이외에 독자적으로 일반인이나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이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3.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 요망)
1) 주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이 주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재제조치를 취하는 지요? (ex: 사업중단, 인가취소)
4. 협동조합연합회와의 업무협조
1) 평소 주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협동조합연맹이나 연합회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ex: 사업자선정 위탁, 사업자 관리, 사업개발)
2) 혹시 지속적인 관계가 있다면, 주정부는 연합회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나요?